

또 하나의 일본적 이중성을 경계한다

한편에서는 보수 우익의 전면적인 대두를 앞장서서 견안하고 있는 일본인,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익단체에서 만든 극우적인 교과서 채택을 밟고 나서 만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본인—이 둘 동일한 일본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두 가지 얼굴에서 오늘의 일본이 가진 또 다른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국화와 칼'로 비유되고 있는 이 같은 일본인의 이중성은 과연 이후의 일본을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작 · 검정 통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일본의 극우 경도현상은 국기 · 국가법 제정, 자위대법 개정, 小泉 총리의 폭발적인 인기, 헌법개정 등을 비롯한 패전사 극복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전반적인 체제 '보통화'의 명분으로 상당히 치밀한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왜 일본은 저 같은 우경화 질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일본의 극우노선의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현재 일본의 국가, 그러한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이 맞고 있는 목표의 상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공동화현상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라는 나라나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 그 모두가 유독 특정한 목표나 가치에 의존해서 살아오는 데 익숙해 있고, 그들의 지향목표나 가치가 뚜렷했을 때는 그 만큼 그에 만족해 왔던 역사적인 과거가 있다.

명치시대 이래 일본은 세계대전 이전에는 '부국강병', 대전 이후에는 '고도 경제성장' 등이 각각 뚜렷한 국가 내지는 개인의 목표로 군림하여 왔으며, 이런 목표는 '국가의 정당성,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전 · 전후로 일본의 국가와 국민들을 이끌면서 안정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해온 이러한 국가 내지는 개인 목표 그 자체가 탈냉전 ·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시대상황의 도래와 더불어 한꺼번에 상실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과 일본인을 앞서 끌고 나오던 뚜렷한 추구 목표가 상실되면서, 목표없는 나라, 목표를 잃은 개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목

표지함에 익숙해진 곳에서의 목표의 부재와 목표의 상실에서 오는 당혹이 바로 근래 일본이 맞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혼돈의 내용이다.

오늘날의 일본과 일본인들이 처해 있는 이 같은 목표상실의 시대 상황이 바로 새로운 목표설정의 요청, 즉 공동화된 공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위치지우자는 노력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강한 요청이 바로 새로운 보수우익의 발흥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그들을 강하게 지탱시켜 오던 군국주의·천황제·탈아론·제국주의 정책 등 극우적인 구시대 잔영을 구성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신보수는 전쟁기의 국가, 동원체제의 값어치를 다시 소리 높여 외치면서 제국주의적 만행을 미화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파행적인 항수는 일본열도가 대륙에서 고립된 섬나라가 아니라, 세계 대양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중심국가라는 대동아공영 사상의 핵심논리이기도 했던 脫亞論的 海洋史觀으로까지 끝없는 날개를 펴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의 신보수는 강력했던 과거의 회복을 현재의 나약한 일본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일본의 극우 보수화 경향이 만들어낼 피해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일본의 우익 편향성에 대해 대일 규탄을 확대시키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등 일제에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일본의 극우 보수화 경향이 만들어낼 피해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일본의 우익 편향성에 대해 대일 규탄을 확대시키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등 일제에 의해 탄압 받았던 인근 국가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피해는 그러한 과거 제국주의적 국가목표의 복원을 통해 현실적인 위기 극복을 시도하는 당사자인 그들 일본과 일본인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의해 탄압받았던 인근 국가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피해는 그러한 과거 제국주의적 국가목표의 복원을 통해 현실적인 위기 극복을 시도하는 당사자인 그들 일본과 일본인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건전한 사회세력이 극우단체가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거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를 일단 성공시킨 것은 그런 면에서 이 교과서가 가지는 역사기술의 왜곡성과 그에 따른 자신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 일본인 스스로가 견제하고 나섰다.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본과 일본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주 '국화와 칼'로 대비되는 이중성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찾는다. 국화꽃과 같은 평화스러움과 나약함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칼과 같은 폭력성과 잔혹성 또한 언제나 살아 있는 일본과 일본문화의 내용이라는 점은 일본인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는다. 꽃꽂이를 생활화하고, 다소곳이 茶道의 예절을 이어가려 애쓰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께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중심적인 생활철학의 하나로 유지시켜 가고 있는 일본과 일본인, 무사도와 폭력집단을 숭상하고 타국에의 침략 전쟁을 되풀이했으니 잔인무도한 이민족 지배의 과

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그것에 오히려 향수마저 느끼고 있는 일본과 일본인, 이들 상층적인 이중성의 모습은 우익단체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와 군국주의 부활, 극우 보수정치의 발흥으로 이어지고 있는 총력 보수 우경화의 한복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제작과 이의 검인정 통과 호 이어진 이른바 '자유주의 사관'의 확산, 그리고 이와는 다른 이 교과서에 대한 거부 운동이라는 두 가지의 얼굴로 오늘의 또 다른 일본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일본과 일본인의 이 같은 이중성의 내재화는 自我不確實性의 일본을 만들어내는 데도 크게 작용한다. 푸른 색깔인지 붉은 색깔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포장된 것은 개인이나 국가의 경우를 막론하고 일본인과 일본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중요한 특징적 내용의 하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같은 자아불확성이 무정견·우왕좌왕·애매모호한 어정쩡한 상태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일본적 특성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간교성이 있다. 비폭력과 폭력, 평화와 전쟁, 중용과 극단, 국화와 칼과 같은 이중적인 가치의 공존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극단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늘 비극단적이고 나약한 요소를 압도해 오곤 했다. 폭력·전쟁·칼의 영역이 결정적인 역사현장에서는 항상 비폭력·평화·국화를 압도해 왔고, 그것이 일본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낸 보다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경적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대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과 일본인의 자아불확실적인 이중성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양극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또 이런 양극현상이 언젠가는 결국 전면적인 극우 보수화 확대 현상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비판적인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입장보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일본의 보수 우익노선이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지세력과 비축된 힘을 싣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보수 우익의 전면적인 대두를 앞장서서 견인하고 있는 일본인,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익단체에서 만든 극우적인 교과서 채택을 발벗고 나서 만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본인, 이들 동일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두 가지 얼굴에서 오늘의 일본이 가진 또 다른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화와 칼'로 널리 비유되고 있는 일본인의 강·약, 흑·백, 평화·폭력, 진보·보수 간의 독특한 이중성이 작금의 혼돈된 일본사회를 바로 잡아가는 하나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혼돈과 파행의 일본사회를 더욱 왜곡시키면서 씻을 수 없는 화를 자초하는 또 하나의 기만으로 작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전적으로 일본인의 몫이다. 일본인이 꾸준히 가꿔온 이중성의 특성, 그것이 21세기를 앞장서서 개척하는 세계 속의 선진 일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히로시마로의 전략을 가속화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의 오늘의 선택에 달렸다.

‘기생적 민족주의’에서의 탈출

193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일본의 신민족주의는 동서냉전의 종결과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정계 일부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여론과 매스미디어 전체의 공기가 극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거대 여당이 주로 정치적 마무리를 한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히고 위정자·미디어·국민 모두를 휩쓴 전체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石田英敬 / 일본 東京대학 교수 · 鶴岡哲 / 일본 一橋대학 교수
 小森陽一 / 일본 東京대학 교수 · 高橋哲哉 / 일본 東京대학 조교수
 번역 / 안 석(본원 연구원)

현대 일본의 신민족주의

전후 일본의 신민족주의로서는, 1980년대 초반 ‘전후 정치 총결산’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수상이 ‘동경재판 전정사관’ 등의 ‘자학적인 사조’로부터 탈각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공식참배 등 일련의 ‘매파’적 언동이 떠오른다. 나카소네 수상의 노선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제대국’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국제화’를 통해 ‘정치대국’으로 연계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나,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 좌절했다. 경제번영의 절정에 있었기에, 대중소비 사회의 과실에 도취해 있던 국민 다수에 있어서도 ‘위로부터’ 국가주의 강매는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못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신민족주의는, 전혀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식의 ‘위로부터’의 고취가 아닐 뿐더러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아니다. 동서냉전의 종결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정계 일부의 움직임에 호응해서 언론인을 비롯한 문화인 등 일부의 미디어를 통해서 민족주

의적인 언동을 집중호우적으로 흘려보내고, 여론과 매스미디어 전체의 공기를 극적으로 바꾼 상태에서 거대 여당이 주로 정치적 마무리한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히고, 위정자·미디어·국민 모두를 휩쓴 ‘전체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카소네 수상이 주창했지만 불발로 끝난 ‘자학사관’의 극복이나, ‘일본인의 자부심’ 회복이라는 슬로건은 더이상 일부 반동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일반 학생이나 시민에게도 최신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게 되어, 지금에 와서는 ‘전후 정치 총결산’의 최종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밀어붙이기 헌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중반의 신민족주의와 오늘날의 신민족주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쇼와(昭和) 천황의 사망과 현 천황의 즉위, 냉전의 종결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걸프전쟁, 민족분쟁의 격화,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나 개방정책의 진전, 전 ‘중군위안부’ 등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전쟁책임의 고발, 거품경제의 파탄에 의한 장기 경제불황으로의 돌입,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지하철 사린가스사건, 도카이무라(東海村) 우라

늪 가공시설의 임해사고 등에 의한 '안전신화'의 붕괴, '학급붕괴'나 소년범죄의 '홍악화'에서 보이는 교육시스템의 파탄 등등, 이러한 상황의 격변이, 이번 신민족주의 대두의 배경을 형성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역사수정주의와 신민족주의

최근의 신민족주의에 있어 '아래로부터'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교육학자 후지오카(藤岡信勝)를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독일 문학자인 니시오(西尾幹二)를 회장, 후지오카를 부회장으로 해서, 만화가 고바야시(小林よしのり) 등이 가담한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다. 그들은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을, 전승국에 의해 밀어붙여진 일본=악당론의 '자학사관'이라며, 역사교과서가 '반일적' 기술에 가득 차 있다고, 격렬한 교과서 비판을 전개했다.

후지오카는 '자유주의 사관'을 정의함에 있어, 메이지 국가에서 '건전한 민족주의'를 발견하는 시바(司馬遼太郎)의 문학을 인용하며,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경대학살도 '종군위안부' 문제도 '국내외 반일세력'에 의한 날조라면서, 일본의 전쟁책임도 식민지 지배책임도 부인하는 그 입장은, '건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역사수정주의에 귀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세이론(正論)』, 『쇼군(諸君)』, 『SAPIO』 등의 우파계 미디어, 혹은 고바야시의 인기만화를 통해서 광범위한 계층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매우 영성찬 논리로 일본군의 전쟁을 미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후 평화주의에 대한 터부의 파괴로서 환영받고, 사

최근의 신민족주의에 있어 '아래로부터'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교육학자 후지오카를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독일 문학자 니시오를 회장, 후지오카를 부회장으로 해서, 만화가 고바야시 등이 가담한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다. 그들은 전후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반일적' 기술에 가득 차 있다며 격렬한 교과서 비판을 전개했다.

리사육의 개체를 초월하는 '공(公)=국가'의 복권을 내걸고 6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니시오의 『국민의 역사』는 민족 나르시시즘과 대서양 루산티만 사이를 동요하며, 어디까지나 어두운 결론에 도달하는 기괴한 역사 에세이집이지만, 조직적 구매 등에 의해 이것 또한 '베스트셀러'화하는 데 성공했다(2000년 6월 현재 약 75만부). 그들은 풀뿌리 수준에서는, 복고주의적 민족주의 단체 '일본회의' 등과 연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역사교과서로부터의 '종군위안부' 관련 기사의 삭제와, '국가정사(正史)'가 되기 위해 구상된 그들 자신의 교과서 채택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운동이 분명히 민간의 언론인과 문화인이 주도하고, 재계인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식을 취했지만, 정치적 수준의 움직임과 결코 뗈 수 없다는 것이다. 1993년 8월, 자민당이 하야하고 연립정권 수상이 된 호소카와(細川護熙) 수상은 "저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우파 국회의원 105명이 '역사검토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식인을 초빙해서 '자학사관' 비판 연구회를 열고, 그 결과를 1995년에 『대동아전쟁의 총괄』로 간행했다. 후지오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역사검토위원회'는 1996년에 결성된 역사교과서 공격의 중심이 되는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의 모체이며, 그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후지오카·니시오·고바야시 등의 주장의 대부분은, 전후에도 변함없이 보수세력의 일부를 점해 온 복고적·역사 수정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것은, 그것이 교묘한 미디어 전략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호소하고, 울트라 민

족주의에 대한 여론의 경계를 해제하는 데 성공한 점이다. 그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냉전의 종결과 함께 강화된 일본인의 굴절된 '피해자 의식'이 있다. '서방의 일원'으로서 냉전의 '승자'였을 우리가, 왜 마치 패전국처럼, 일제히 전쟁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변영의 극에서 '경제패전'으로, '제2의 패전'으로 추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과거를 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금방 '자존심'이 회복된다고 역설하는 신민족주의자의 언설에서 한 순간의 위안을 발견한다.

기생 민족주의로서의 신민족주의

1999년은 신민족주의가 정치수준에서 법적 표현을 찾아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일본붕괴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공(公)=국가'를 외치는 신참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충분히 효과를 거둔 것을 확인했다는 듯이, 이해의 제145 통상국회에서는 일련의 국가주의적 법률이 잇달아 성립했다.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국기·국가(國歌)법, 도청법, 개정주민기본대장법(改正住民基本臺帳法), 개정출입국관리법 등등, 전후 보수정치가 반 세기간 계속해서 꿈꿔왔지만 실현할 수 없었던 일을 단번에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자공(자민당·자유당·공민당 연립)' 거대 여당의 존재와, 민족적인 가치의 돌출을 비판하지 못하고, 역으로 그것을 '정상화'로서 용인해 가는 저널리즘의 동향이었다.

신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기·국가법이 중요하다. 히노마루·기미가요는 전전·전중에서는 절대주의적 천황제와 동일시되어 사실상의 국기·국가로서 국민통합의 '상징의 정치'에 계속해서 이용당해 왔다. 그것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정식의 국기·국가로서 법제화된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의도한 것은,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히노마루 게양·기미가요 제창의 강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식적인 국기·국가가 아니다'라는 반대의 근거를 박탈하는 것

이었을 것이다. 강제가 아니라 수상·문부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후의 학교 현장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라는 형식의 강제가 일반화하고, 반대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는 관리의 강화가 진행되었다. 국기·국가법에 한정되지 않고 이번에 성립한 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보다 명료하게 나누고, '국민'과 '외국인' 쌍방을 엄격한 감시하에 뒀, 국가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이물(異物)'로서 배제해 가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에 대한 무자각적인 귀속감·일체감에서부터, 설마 자신이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쪽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소수자에 부과되는 압력·폭력에 대해 계속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중요한 것은, 히노마루·기미가요로 상징되는 '위로부터의' 국가의식의 주입이,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에 보이는 군사적·정치적인 대미종속의 심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시, 상징천황제는 오키나와를 희생해가면서도, 안보조약에서 '고쿠타이(國體)유지'를 위한 담보를 추구했다.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보수파 민족주의는 일관해서 초강대국 미국의 우산아래서 이익을 발견해왔고, 그 의미에서 한번도 기생(종속)·민족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반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시하라(石原愼太郎) 지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놓고 '유사'시에 있어 미군에의 전면협력을 약속해버리는 모순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전쟁에 국가전체가 전면협력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있어 국민통합의 강화가 불가결하고, 패권국 미국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지금 다시 '열강'에의 길(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화)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와 신민족주의

국기·국가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기미가요'의 가사는 전전의 천황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전후 일본의 국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타났다(예를 들어 가토우(加藤典洋)). 이에 대해 정부는, '기미가요(君が代)'의 '기미(君)'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의미하고, '기미가요(君が代)'의 '요(代)'는 '국(國)'을 나타낸다. 즉 가사 전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천황을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하는 우리 나라의 긴 번영과 평화를 기원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을 근거로 한 천황제 비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제 그 자체를 문제화하는 발상이 미디어를 포함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상징천황제 민족주의가 현대 일본사회의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상징천황제에 있어 "요쿠산(翼贊)" 체질이 노정된 것은, 원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말의 쇼와(昭和)천황 와병시의 '자숙' '기장(記帳)' 소동, 사거(死去)와 그것에 뒤따른 세습의식의 보도내용은, 전후 일본인이 천황제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쇼와천황 개인에 대한 감정적 동일화 또한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성공이라는 쇼와의 '국민이야기'의 중추로서, 상징천황을 계속해서 필요로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다.

현 천황의 재위 10년 기념식전에서도, 모리(森喜朗) 수상의 '천황중심의 신국' 발언에서도, 위정자 측이 현행헌법의 상징천황제를 끌어들이 '정당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은 항상 '전전의 천황주권의 부활이 아니냐'라는 형식에 그쳐, 전후 천황제 그 자체를 공격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구도가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히노마루·기미가요로 상징되는 '위로부터의' 국가의식의 주입이,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에 보이는 군사적·정치적인 대미종속의 심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시, 상징천황제는 오키나와를 희생해가면서도, 안보조약에서 '고쿠타이 유지'를 위한 담보를 추구했다.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보수파 민족주의는 초강대국 미국의 우산 아래서 이익을 발견해 왔다.

'천황을 떼 놓은 민족주의'라는 논의가 있다. 천황은 '더 이상 일부러 눈썹을 찌푸리면서까지 문제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요미우리(讀賣)신문사 '헌법개정시안' (94년)에서부터, 후지오카(藤岡), 니시오(西尾), 고바야시(小林) 등의 교과서 비판, 후쿠다(福田和也)의 보수주의까지, 현대 일본의 신민족주의도 '천황을 떼 놓은 민족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오즈카(大塚英志)).

그러나 후쿠오카나 니시오가 모리수상의 '신국발언'을 재빨리 지지하고, 사카모토(坂本多加雄)가 '국민이야기'의 중심에 상징천황제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한 것처럼, '자유주의사관'도 '만드는 모임'도 천황제를 긍정하고 있다. '천황제를 떼 놓은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면, 신민족주의들이 술선해서 일체의 천황제 폐지를 주장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 원래 현행 헌법에 엄연히 새겨진 상징천황제를 그대로 놔두고, '천황제를 떼 놓은 민족주의'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포퓰리즘적 배외주의와 신민족주의

모리수상의 '신국(神國)' 발언(2000년 6월 15일)에 앞서 이시하라 도지사(도지사)의 '삼국인(三國人)' 발언(같은 해 4월 9일)은 전자와 다른 위상에 위치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리 수상이 밀실의 담합에서 태어난 구 정치의 상징인데 반해, 이시하라 지사는 도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적' 지도자이다. 취임 이래, 디젤 차규제나 대은행에 대한 외형표준과세 등 '대담한'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해, 변함없는 관료정치에 짜증을 느끼던 도민의 갈채를 받았다. '신국발언'이, '신도정

치연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고조의 압력단체에서의 내부용 립·서비스적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삼국인' 발언은, 육상 자위대 제1사단의 창설기념회 연설이며,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3군'의 병사들'을 향한 '공명정대'한 낭독이자, '열원(熱願)'이었다.

위험한 것은, 바로 그 포퓰리스트적 수단에 호소한 배외주의적 선동이다. '삼국인' 발언의 문제성은, 단순히 재일한국인, 대만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역사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불법 입국한 삼국인, 외국인'이라는 식으로, 명확히 의미가 다른 말을 잇달아 뱉어냄으로써, 재일조선인·중국인이나 장기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일반에 대한 불신이나 공포를 의도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들' 일본인과 '외국인'을 적대관계에 놓고, 동경의 흉악범죄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면 전부 삼국인, 즉 불법입국에서 놀러 앉아있는 외국인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데마고기를 사용하여, 외국인 = '매우 성가신 존재'라는 배척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도청(都廳)이나 미디어에 드러난 반응의 8할이 이시하라 옹호의 발언이었다는 것은, 이시하라 포퓰리즘 정치의 무서움과 함께, 시민사이에 민족주의적 외국인혐오가 광범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시하라의 민족주의는, 굴절된 백인 콤플렉스와 아시아인 멸시가 섞인 인종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삼국인' 뿐만 아니라 '지나(支那)' '북선(北鮮)' 등의 차별 용어를 계속사용하기를 꺼리지 않은 이시하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일본인이 그 지역에서 '명예 백인' 취급받았던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반미 민족주의자를 자칭하는 그가 '중국상대의 전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신가이드라인에 협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 구조가 일관되어 있다. 일견 '근대적인' 이시하라 포퓰리즘 정치의 근거에 있는 것은, '일본' 과의 무매개적 동일화, '일본 국가'의 '체내화'라는, 울트라·민족주의 특유의 나르

시시즘적 구조이다. '나 같은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일본국가가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즉 내 몸 속에 일본이 있다는 일체감이다' (고바야시와의 대담, 『SAPIO』 1999년 8월 22일/9월 8일호)

민족주의의 문법

제3차 국민국가기에 있어서 일본의 민족주의

제147회 국회에서부터 중·참양원에서 헌법조사회(調査會)가 상치(常置)되어 일본국 헌법개정을 시야에 넣은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전장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제 '전후정치의 총결산'은 국민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수정이라는 최종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대일본제국 헌법 하 50여 년간의 제1기 국민국가, 일본국 헌법에 기초한 마찬가지로 전후 50여 년에 걸친 제2기 국민국가라는 두 개의 국민국가에 이어, 제3의 국민국가가 세워지려는 조짐이다. 게다가, 현재의 정치계나 언론계에 있어, '국가형태'를 두고 논의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의 국민국가체제의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국민-국가'라는 국민과 국가를 분절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정의하는 구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의 결정적 무능력을 의미한다. 정치적 이성 대신에 민족주의만이 목소리가 커져 가는, 바로 그곳에 이 나라의 위기가 있다.

물론 냉전 후의 세계체제 속에서 국민국가의 존립 조건은 전반적으로 재정의되어, 많은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민족주의가 분출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명에서 해방되어 민족항쟁에 빠진 발칸의 민족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있어 국민국가를 넘어선 통합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의 움직임도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경제대국'이 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정치적 소인'으로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뒷전으로 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까지도, 냉전 후의 세계 속에서의 정치적 방위(方位)를 재정의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민족주의는 언제나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 (앤더슨)의 위기 징후이자 증상이다. 병리적인 민족주의를 중화하는 장치를 얼마나 정치적 공동체의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는가가, 그 나라 정치체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여론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귀속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적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민족주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다.

정치의 성숙도와 민족주의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에 있어 진행중인 사태는, 정치의 무능함 때문에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향해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의해, 정치의 부재와 통합능력의 결핍을 메우고자하는 경향의 일반화이다. 이것은 비유하면, 정치계 및 언론계의 '화력붕괴' 현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태이다.

민족주의의 〈문법〉

민족주의는, 현상으로서의 일국에 고유한 가치나 정치적 주장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세계체제에 있어 공통의〈문법〉을 갖고 있다.

얼마나 민족주의가 자국의 민족, 문화를 독자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정체성을 역사적인 특수성, 배외적 가치에서 구한다고 할지라도, 민족주의는 근대 세계체제가 낳은 것이며, 초역사적인 것도 자연적 감정에 근거한 것도 결코 아니다.

민족주의는, 내향화된 국가의지의 담론이다

민족주의는 항상 일의적(一義的)으로는 국가를 들

정치의 성숙도와 민족주의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에 있어 진행중인 사태는, 정치의 무능함 때문에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향해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의해, 정치의 부재와 통합능력의 결핍을 메우고자하는 경향의 일반화이다. 이것은 비유하면, 정치계 및 언론계의 '화력붕괴' 현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태이다.

려싼 담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항상 다른 국민국가와의 갈등관계에 있어 파악되고 있다.

'서양열강'의 지배나, 제국주의 전쟁이나 식민지화, 혹은 경제 패권전쟁 등, 역사적인 정신외상(토라우마)의 장면에서 시동하여, 처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이야기가 시동하는 것이다.

보불전쟁 후의 프랑스든, 제1차 대전 후의 독일이든, '국민의 역사'는 그래서 언제나 내향화된 '국

민'의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민족주의가 항상 전쟁의 메타포로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주는 감언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된 정치'인 것이다.(고바야시의 『전쟁론』은, 이 의미에서, 클라우제비츠의 감언을 역전시켜, 정치를 평화시에 있어서 전쟁의 계속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담론의 본질을 그대로 실현시킨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문맥에 있어서, 전쟁을 금한 헌법9조야말로 국가의지의 루산티만의 공격대상이 된다. 헌법의 제약에 의해 '보통국가'가 될 수 없고, '강요된 헌법'에 의해 대미중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제9조 문제는 국가의지의 욕구좌절(frustration)이 수렴해가는 장소로서, 민족주의의 정치적 담론의 정념원이 되어왔던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세계화시대에 있어, 'money패전'이나 '제2의 패전'이라고 불렸던 사태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담론을 자극하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지배 담론이다

근대의 국민국가는, 사람들을 국민으로서 동질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공동체 속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국가에 보다 가까운 인간과, 먼 인간을 선별하고 서열화해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권위체계에 자신을 집어넣고, 그 권위의 후광을 얻어, 사람들에게 대해 권위있는 입장에 서는 “이익”을 위정자에 제공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이나 학교와 군대가, 그와 같은 권위체계를 신체화하도록 한 역할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이지만, 천황제라는 독특한 신권적 권위의 체계를 발명한 일본의 근대국가에서는, 그 서열화와 배제의 체계가 폭력적인 지배의 맹위를 떨쳤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권위의 체계는, 학교를 시작으로하는 기미가요(君が代)·히노마루(日の丸)의 강제에 있어 부활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세계문화의 혼합이 진전되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시대에 왜, 히노마루·기미가요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을 민족적인 기호에 묶어 두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정치적 상상력이라면, 정치적 원리,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에 정치적 공동체의 기초를 들텐데, 무조건적으로 민족적인 상징을 강제하는 것에 의해, ‘국가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민족주의의 지적빈곤이 있다.

기업적 집단주의, 농촌적 공동체나 가족적 기반이 무너져, 학교교육의 위기가 현재화하고, 일본적인 ‘규율사회’가 붕괴하여, 사회적 아노미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공적권위의 전반적인 붕괴현상이 진전되는 속에, ‘민족적인 권위체계’의 유지가 도모된다. ‘국가’와 ‘공공성’을 고의로 혼동하고, 국가의 권위 아래로 사람들의 동원을 선동하는 데 보이는 것처럼, 민족주의는, 국가권위의 위기를 말해주는 담론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픽션(의제) 전통의 담론이다

국민국가는 근대의 세계체계가 만들어낸 픽션의 정치공동체이다. 민족적인 기억, 민족적인 역사, 달력, 여러 제식이나 의식, 기념비나 기념물, 서훈제도 등 다

양한 상징제정에 의한 ‘전통의 발명’(홍스봄)을 통해, 이 픽션은 기초지워진다. 근대에 발명된 국민이, 마치 역사를 관통해서 영속하는 공동체를 창조해 왔다는 것으로 여기는 환상의 공동체가 창출되는 것이다.

근대 일본 국민국가의 창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천황제가 그 ‘전통발명’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전후의 ‘상징천황제’는, 제1기 국민국가의 ‘상징체계’를 그대로 온존하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제2차 국민국가는 독자의 국가 상징계(象徴系)를 제도로서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천황제’를 통로로 해서, 민족주의는, 전전으로의 회귀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라(大平)내각의 원호 법제화에서 시작해서, 메이지 국가의 축일(祝日)부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참배문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는, 제1기 국민국가의 민족상징 복권의 도달점으로서 있었다. 역사수정주의나 ‘국민의 역사’가 지키려는 것은, 이 환상의 공동체로서 국민을 의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만들어진 상징체계가, 현재의 미디어·이벤트 사회에 있어 그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소거 사태의 진전을 앞에 두고, ‘스펙타클 사회’에 있어, 하위문화나 대중문화와 접촉한 상징조작이 노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국기·국가법안의 성립 후의 식전이나 이벤트가 나타내주고 있다.

민족주의는 국민의 불안을 위안해 주는 담론이다

파시즘의 예를 들것까지도 없이, 민족주의의 대두에는, 국민 측에 있어서의 균질적인 구성의 붕괴와, 계층분화, 집단적 가치의 상실이 대응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민족주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공식이다.

장기불황, 잇따른 도산, 구조조정, 실업, 자살, 가속화되는 계층분화, ‘새로운 격차의 시대’(21세기의 매니페스토)(1) 참조)와 ‘새로운 위험사회’(같은 책)에 있어, 한 때 공유되었던 ‘균질적인 중간대중’의 신

화는 완전히 붕괴하고, '국가의 퇴장(退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연대적으로도, 사회 계층적으로도, 문화자본에 있어서도 각자 떨어져 있어 '자기책임' 속에 유기(遺棄)되어 있다. 관료나 경찰의 모델 해저드나 스캔들에 나타나 있는 위정자의 통치능력 상실이나, 금융위기에 자기중심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금융기업.

목표를 잃은 사회에 만연하는 불안과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강한 일본'이나 '힘이 나는 일본'의 메

시지에서 위안을 구한다. 터부 깨뜨리기나 단도직입적 어투에, 관료주의적 언사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매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극우 정치가 이시하라 도지사는, 바로 그와 같은 민족주의에 의한 '위안' 회귀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민족주의 병리는 외국인 배척의 거울에 드러난다

국민이 원래 상상된 공동체라면, 그 상상의 공동체는 그림자로서 배척되지만 그와 동시에 상상향(想像項)을 그려낸다. 세계화된 세계, 남북문제라는 근본모순에 추동되어 인구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 상대화된 국경, 혼합된 문화, 눈뜬 새 없이 유통하는 정보의 홍수, 이와 같은 현재 세계에 있어, 각 국가의 민족주의 병리가 분출해오는 장소가 '외국인문제'이다.

불황은, 사회의 수축현상을 일으켜, 그 때까지 받아 들여졌던 외국인들이 '관용'되지 않게 된다. 호황시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불황시에 있어 내쫓는 것, 1960년대 이후 선진공업국은 항상 이 양극을 왔다갔다 해왔고, 치안의 악화나 불황·실업이, 외국인 차별의 담론으로서, 민족주의에 환류해 간 것 또한 세계에 공통하는 경향이다.

민족주의 담론은, 항상 국제정치도 국내 정치도 '전쟁의 연장'으로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족주의는 여기에서도 외국인의 '위협'을 둘러싼 담론으로서 등장한다. 전쟁의 담론이야말로, 국제정치의 외환과 국내정치의 내환을 잇는 마지막 동기가 된다. 이시하라의 '삼국인 발언'이, 자위대의 사열식에 있어 '삼군'을 앞에 둔 연설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시하라 발언에 현저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에 대해, 도시치안, 범죄문제로서 결정화된 것은, 프랑스의 극우 '국민전선'의 루·펜이나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헤이더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 표준'에 기초한 극우 담론이, 일본에서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주의 담론은, 항상 국제정치도 국내정치도 '전쟁의 연장'으로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족주의는 여기에서도 외국인의 '위협'을 둘러싼 담

론으로서 등장한다. 전쟁의 담론이야말로, 국제정치의 외환과 국내정치의 내환을 잇는 마지막 동기(last motif)가 된다. 이시하라의 '삼국인 발언'이, 자위대의 사열식에 있어 '삼군'을 앞에 둔 연설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 문제만큼, 국민권리의 경계('국민'과 '비국민'의 구별)를 명백히 하는 쟁점은 없으며, 기본적인 권이나 복지국가나 민주주의의 '망상'을 폭로하는 데 '적합한' 화제도 없다. 혹은, 개별적인 사건에서부터, 사법형사제도나 행정당국의 '저자세'의 악패를 논의하는데 적합한 재료도 없다. 그와 같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외적 존재로서, 외국인은 '기분나쁜 존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역사수정주의, 민족적인 상징의 부활, '국가 형태'의 재정의, 국가 상징의 강제와 기본적 자유의 억제, 계층분화하는 중간계급이라는 민족주의의 항상향(恒常項)이 맞물린 지점에서, 외국인이라는 '도시 속에 사는 공상의 적'을 대상으로, 극우는, 근대 법치국이 의거하는 민주적 전제를 흔든다. 인종주의가, 시민사회의 기본원리를 침식하는 미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때이다. 제2차 대전이후의 세계 틀, 복지제도나

사회권, 기본적 인권, 그리고, 기성의 보수정권이라면 공격을 터뜨리 한 원칙을, 극우세력은 적나라하게 공격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신선한'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지지를 넓히고,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기반을 침식해간다. 루산티만과 증오의 체제로 사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해간다.

이상의 민족주의 문법을 되새기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주의도, 세계 속에서 보이는 '병리'의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역사수정주의나, 외국인 차별의 담론타입, 세계화하는 세계에 대한 영합과 반동, 포스트 냉전기의 국민국가체제의 모순 노정 등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유형화되어 있어, 세르비아나 오스트리아나 일본 등에 보이듯이, 냉전 하에 있어 억압된 민족주의의 기층이, 냉전의 종언에 의해 한꺼번에 노정되어 온 것에조차, 공통적이다.

상상의 냉전을 사는 일본

'보통국가' 론과 신민족주의

여기서, 80년대 중반의 민족주의와 오늘날의 신민족주의 사이에 있어, 냉전의 종언 및 걸프전쟁이라는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신민족주의의 조짐이자 도약대가 된, 모종의 국가론이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되었던 것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국가' 론이 그것이다.

이것은 걸프전쟁에 있어 다국적군에 대한 재정면에서의 가담과 전쟁종결 후의 페르시아만으로의 해상자위대 소해정(掃海艇)파견을 계기로, UN중심주의라는 명목아래 자위대합법화, UN평화유지활동(PKO), 및 UN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가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오자와(小澤一郎), 하타(羽田孜), 호소카와(細川護熙) 등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탈당자에 의한 신생당, 일본신당 결성은, 오늘날의 연립정권상태화에 길을 열었지만,

그 당초 방침에서는, '보통국가' 론에 의한 개헌준비의 착수, 아시아 각국에 대한 형식적 사죄에 의한 '아시아 시대'에 대한 대응, UN 상임이사국을 위한 외교대책이, '미래지향'이라는 깃발아래, 신자유주의적인 자기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지배층의 냉전 후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모종의 합리적인 전략사고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돌출한 신민족주의는, 거품붕괴를 계기로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 경제위기에 의해서 마련된 개헌에의 길에 올라타는 한편, 개헌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특히 중국이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을, 타자에 의한 전쟁책임의 승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소카와 수상에 의한, 말뿐이고,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극히 불충분한 사죄를, 일본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대상'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여론의 그리고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1999년에는 '국기·국가법'의 성립이라는 국수주의적 반동이 현실화되고, 올해에는 모리수상에 의한 '신국' 발언이 튀어나오기에 이르렀다. '보통국가' 론이라는 일정한 합리성에서부터 '신국' 발언에서의 적나라한 비합리성으로, 이 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떤 필연에 의해 전화해 간 것일까? 또, 이 과정의 종착점은 과연 어떤 사태인가?

'신국' 이데올로기의 파괴력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근대의 민족주의에는, 특정 민족을, 인류의 보편적인 범형으로서, 즉 다른 민족의 모범으로서 제시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는 모방 불가능한 존재로서 예외화하는, 모순적인 운동이 구조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나찌 독일은 이 분열증 중 하나의 극한적 현재화(顯在化) 형태였다. 물론, 나찌는, 동시대

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을 '신에 선택된 백성', 독일을 '신국'으로 여기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보통국가'와 '신국'에 상당하는 대극적인 관념은, 어떤 민족주의에도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이런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항상 '병'이며, '건전한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아프리카헤이트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 등에 '신국'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세계는, 이 이데올로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이후, 한편으로는 민족의 논리 밖에 나와 이 아프리카를 해소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민족이 이 분열을 인정한 한계를 넘어 현재화(顯在化)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서냉전의 수혜자, 일본

그렇다면, 이 '발병'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하는 제2의 사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동서냉전이라는 시대 및 냉전의 종언이라고 불리는 사태에 대해, 이 나라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 반세기 간 세계를 뿌리 깊게 규정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몇 배를 넘는 양의 병기가 투입된, 실태에 입각해서 말하면 결코 '냉'전이 아니었던 이 체제간 모순의 시대로부터, 일본만큼 은혜를 입고, 이익을 얻은 국가는 없다.

냉전덕분에 천황제는 온존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쟁배상은 면제되고, 한국전쟁덕분에 경제부흥의 기회를 잡았으며, 베트남 전쟁덕분에 고도성장이 촉

냉전덕분에 천황제는 온존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쟁배상은 면제되고, 한국 전쟁덕분에 경제부흥의 기회를 잡았으며, 베트남 전쟁덕분에 고도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쇼와 천황은 전쟁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채, 냉전시대 전체를 살아왔던 것이다. '신국' 이데올로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 모두를 의식적으로는 어쨌든 '신평'으로 여기고 있었다.

진되었다. 그리고 쇼와 천황은 전쟁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채, 냉전시대 전체를 살아왔던 것이다(이는 일본에 있어 전쟁의 기억구조를 매우 뿌리 깊게 규정하게 되었다). '신국' 이데올로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 모두를 의식적으로는 어쨌든 '신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의 호경기의 통칭으로서 '진무(神武)경기'라든가 '이와도(岩戸)경기'라는 식의 명칭이 창안되어, 미디어를 통해 대중 속에

정착해간 것에서부터도, 전후경제 민족주의가 '신국' 이데올로기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90년대 초, 냉전은 소련의 소멸과 함께 끝난다. 일본의 지배자들은, 일본은 냉전의 '승자'이고, '승자'에 어울리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예를 들어, 상임이사국)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심리적으로도, 걸프전쟁이 미국의 지배층에 있어 베트남에서의 패배를 보상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일본의 지배층에 있어 냉전에 있어서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패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냉전이 '자유주의 진영'의 '반공 십자군'이었던 이상, 전전의 대일본제국의 치안유지 법체제를 포함한 반공 전체주의도, 다소 정당화되는 지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냉전에 독자적인 역사해석을 암암리에 항상 부여했던 것이며,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여기는 전승국 측의 해석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자유주의 진영' 내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언은,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일본에게 유리했던 구조전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틀이 의미를 잃고, 주변 아시아 각국이 개발독재기를 탈피하고, 일정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함과 함께, 일본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피해국 민중과, 더 이상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냉전의 '동맹자'였던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도, 냉전의 '패자'였을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날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시작으로 하는 20세기 국제법 정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그때, 거품이 꺼져, 80년대의 '재팬·엑스·넘버원'적 '자존심'은 일거에 붕괴되었다. 상상 속의 '승리'와 현실의 곤경 사이의 낙차는 너무나 컸다. 고통을 견디고 현실을 직시하기 보다, 과거의 영광 이미지에 과대망상적으로(나르시시하게) 동일화하는 쪽이 편했다. '힘이 나쁜 일본사'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국민의 국가’와 공화제

그러나, 모리 수상이 공언하기에 이르기 전부터, '신국' 이데올로기는, 전후 천황제 및 그것을 지탱하는 정치세력 속에서 연명해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민족주의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3의 점이다.

1946년 1월 1일의 소위 '인간선언'도, 천황 및 황족이 사후에 신이 된다는 신앙에 입각한 궁중의식을 전폐시킨 것이 아니었다. 또, 정치체제로서도, 헌법 1조를 둘러싼 법철학자 사이의 주류적 해석과 달리, 전후 천황은 일관해서 '헌없이 군주에 가까운 존재'로서 군림해왔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공화제를 추창하는 자는, 전전과 마찬가지로 전후에 있어서도, 항상 공산주의자로 여겨지는 위협을 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에, 일본형 냉전시상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성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오히려 우파적 뉘앙스조차 띤 '공화주의'를,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추창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어떻게 강변하더라도 '보통국가'가 아니다.

일본이 상상 속의 '냉전'에서 탈피하여, '보통국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공화제를, 이 정치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서, 정치적 공공(公共)공간의 온갖 장에서, 당연하게 논의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912년, 신해혁명에 의해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래로, 동아시아의 독립국('만주국'은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은, 일본을 제외하면 항상 공화제를 채용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시대가 끝나자, 동방국가는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서방국가는 '민국' (중화민국, 대한민국)을 썼지만, 이 두 호칭은 모두 군주제와 대비되는 공화제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전후 일본의 좌익운동이 체제변혁 후의 정치체제를 구상할 경우, 호칭으로서 거의 모두가 항상 '공화국'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냉전에 규정된 언어의 선택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일본민국'이라는 호칭은, 냉전의 문맥에서는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일본인의 역사적 상상력 속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모리 수상의 '신국' 발언이래, 선거전 속에서 야당 각 당은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국민의 국가(民の國)'의 입장에 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공산당을 제외하는 정당에 있어, 이 '국민의 국가'는 결코 공화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민의 국가(民の國)'는 '민국(民國)'이 아닌 것이다.

작년의 '국기·국가법'의 성립과정에서 명백해진 것은, 이 나라에서는 국기·국가 문제가, '보통국가론'('어떤 나라에도 국기·국가가 있다')라는 '신국' 이데올로기의 분절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 법

안이 가결된 날, 일본 민족주의에 내재하는 분열증은, 진정으로 한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있다.

이 법안의 성립과정과 이번의 '신국'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비교하면, 하나의 기묘한 구도가 떠오른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기미가요' '히노마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의결이나 여론조사를 보는 한, 이 나라의 압도적 다수파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역시 여론조사를 보는 한, '신국' 발언에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전후 민주주의적인 정치 의식이 갖는 깊은 모순이 나타나있다.

모리 수상의 머리 속에서는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지지받고 있는 이상 '신국'도 당연히 지지받아야 하는 것인데, 일본국민의 다수에 있어, '신국'이라는 관념과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관념의 과대망상 정도에 입각해서 보면 '기미가요'는 '신국'보다 작고, '히노마루'는 '기미가요'보다 작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며, 지지자의 수는 그것에 반례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노래와 이 깃발은 일본근대사에 있어 항상 '신국'의 노래와 깃발이었고, 그것이 확실히 공적으로 부인된 적이 한번도 없다. 우리들의 생각은 모리 수상과 같다. '히노마루' = '기미가요' = '신국'이라는 등식은, 1945년 8월의 단절을 넘어, 냉전을 기회('신평')로 삼아 연명한 천황제 일본 민족주의의 전전 전후를 관통하는 정형인 것이다. 그러나, 모리 수상과 달리, 우리들은 '신국'의 관념을 부정한다. 따라서 '히노마루'도 '기미가요'도 부정하는 것이다.

모리 수상의 발언을 '개인'의 자질문제로 축소시켜, '끝난 일'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일본인 각자가 '히노마루' '기미가요'와 '신국'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재고해 보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로서의 '기미가요'가, '신국' 이데올로기에 의거하는 군주제 국가의 영속을 기원하는 노래요, 국가로서의 '히노마루'가 신앙을 매개로 해서 '신국'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음은 명백하다.

모리 수상의 발언을 '개인'의 자질문제로 축소시켜, '끝난 일'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 발언을,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노마루' '기미가요'와 '신국'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재고해 보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생각해보면, 국가로서의 '기미가요'가, '신국' 이데올로기에 의거하는 군주제 국가의 영속을 기원하는 노래인 것, 국가로서의 '히노마루'가, 태양신=아마테라스 신앙을 매개로 해서 '신국'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음은 명백하다. '신국'이 공공연

히 발설되게 된 이상, 더 이상 이점을 애매하게 뇌둘 수는 없다. 이 깃발, 이 노래를 그래도 아직 '국민의 국가'의 국기·국가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것을 '히노마루' '기미가요'(특히, 이것들의 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선 이 깃발, 이 노래를 수단으로 삼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에 대해서야말로, 자신의 설명을 주장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국' 주의자와의 '의도하지 않은 공범관계'를 끊고, '보통국가'가 '신국'으로 반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미래의 전쟁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극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고 있으며, 중국이 그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가 본격적으로 포스트 냉전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국이 냉전의 '승자'가 되지 않고, 북한이 냉전의 '패자'가 되지 않

도록 만드는 것에 의해서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있어 남북정상회담 후 진행될, 남북통일에 의해 태어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가'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통일이 자주적인 동시에 평화적으로 실현될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가? 남북통일에, 어떠한 기존 국가모델을 들이대는 것도, 이상만의 국가상도 무효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 신민족주의는, 목전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전대미문의 움직임, 있는 그대로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볼'수도 '알'수도 없다. 일본을 '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평'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만일 여태껏 그러했던 것처럼 불어주지 않으면 '신평'을 (스스로) 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욕망에는, 구미에 존재하는 중국 위협론을, 일본형 냉전 사상체계 대로 동아시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을 '패자'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이용하는 이외의 활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중국을 분열시킨다'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선전포고'는, 이 욕망의 솔직한 표명이다.

미국의 몇몇 전략연구소는, 작년 이래로, 2020년대에는 동아시아에 큰 전쟁의 위기가 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일본이 '신국'이데올로기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더 이상 일본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있는 한, 이 미래 전쟁의 책임을, 지금부터, 이미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생 민족주의를 넘어서

기생제국주의의 탄생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의 공포를, 자신들만이 세계의 중앙에 위치한 선진문화국가라고 가상하고, 다른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뒤쳐진 사람으로서 배척하는, '존황양이(尊皇攘夷)'라는 국내에서만

통용하는 '중화사상'으로 숨기고, 권력투쟁을 통해, 실제로는 불평등조약의 강압을 받아들여 개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메이지유신' 후의, 근대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의 걸음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 복종하면서 조약개정을 진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구미열강의 외교윤리를 가급적 빨리 내면화한다는 자기 식민지화에 의해, 아이누·모시리·류큐(琉球)라는 주변지역을, 식민지화 해갔다. 그리고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대영제국과의, 조약개정에 성공한 직후에, 구미열강 수준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서,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침략하는 청일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국제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 국가에 종속 및 기생하면서,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사이에 표류하면서 부국강병해 가는, 근대일본의 기생제국주의가 시작된다. 이 구도 속에서 한계의 지점에서 승리한 러일전쟁 후, 구미열강과 대등한 '일등국'인 것을 강변하면서, 일본형 민족주의의 구조가 거의 확정된다.

구미의 헤게모니 강국에 대해서는, 선망·질투·공포를 품으면서도, 복수심에 가까운 원한을 불태우고 (이런 감정을 니체는 루산티만이라고 명명했다), 군사적으로 일본보다 약한, 대만이나 한반도를 시작으로 하는 주변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내면화했다고 강변하는 '문명' (강박 관념적인 '서양 중심주의')이라는 미명하에, 존대하고 기고만장하게 둘러싸기(동화)와, 배제(차별)를 동시에 발동하는, 폭력적인 분열증적 지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방향을 향한, 소심한 자존심과 무근거한 존대함이 교차하는 곳에, 기생·민족주의가 발생한다.

존대하게 될 시의 무근거함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양이(攘夷)'를 뒷받침하는 '존황(尊皇)' 즉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라는 역사로 변환된 신화적인 '고쿠타이(國體)' 담론인 것이다. 그리고 '천황' 신화에 의해 무근거한 존대함의 공백이 충만해졌을 때, 수

치심이 소거된 것이었다. 일련의 모리(森喜朗)의 '실언'은, 이러한 기생천황제·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발현이외의 것이 아니다.

반미 민족주의에서 기생·경제 민족주의로

패전 후, 이 구조가 굴절되면서 증폭된다.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에 직접 점령된 것에 의해, 일상적으로는 증오와 원한을 억압한 형태로, 선망과 질투를 북돋는 동시에, 개개의 정치적 국면에서 원한을 폭발시켜 첨예화하는 반미민족주

의가 형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과잉적으로 자기를 미국화해가는 욕망에 뒷받침된 형태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미국적 기준으로 측정해서 자기만족하고, 그 기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주변지역의 국가를 무시하는 의식 또한 낡아, 미국과의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길항(拮抗)해가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욕망하는 식으로 패턴을 반복했다.

더욱이 구식민지였던, 대만, 한반도, 중국대륙의 국가들이 독립하고, 논리적으로는 전승국이 된 것에 대한 선망과 질투의 동전 뒷면에 나타난 감정이, 패전 후의 일시기에 '삼국인'이라는 특별한 뜻을 지닌 차별적인 단어를 유통시켰다. 이시하라(石原愼太郎)의 '삼국인' 발언은, 이러한 기억을 재현한 것이다.

한국전쟁에 의해, 냉전구조 속에 편입된 후에는, 중국이나 북한·남한에 대한 선망과 질투는, 공포를 부채질하면서 증오와 멸시로 전화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미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은 소련이라는 다른 하나의 헤게모니 강대국을 향해 전도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레드 퍼지(공산주의자 숙청)를 계기로 해서, 과잉적 반공주의로서 침투해간다. 그것에 편승한 우익 테러리즘이 사실상 용인되는 속에서, 일본은 고도

패전 후, 미국의 점령하에서 증오와 원한을 억압한 형태의 첨예한 반미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스스로를 미국화해가는 욕망에 뒷받침된 형태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미국 기준으로 측정해서 자기만족하고, 그 기준에서 뒤떨어져 있는 주변국가를 무시하는 의식 또한 낡아, 미국과의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길항해가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욕망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경제 성장기에 돌입해 갔다.

이 시기까지의 기생·민족주의가, 어떤 과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변지역의 국가에 대해, 존대한척 행동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고, '천황' 신화에 의해서 조차,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일본형 공동체주의적 기업이 발전해가는 것이, 자존심과 존대함을 지탱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기업의 생산총액이, 마치 '국가' 위신의 상징인 것처럼 취급되는 속에서, 경제지표를 유일한 근거로 한 냉전적 기생·경제 민족주의가 구조화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기생 경제 민족주의가 기생적인 것은, 미국과의 독단강화 속에서,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한 전쟁배상을 면제됨과 동시에,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군사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국내의 경제 부흥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생성은 경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전년의 6월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대규모 대일굴욕 외교반대 투쟁은, 미국의 중개에 의해, 당시 한국의 박정희 쿠데타 정부 자신이, 계엄령 선포하여 탄압했던 것이다.

외교 면에서도, 주변지역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의 조종을 미국에 일임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 그리고 전후책임을 추궁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권을 지키고,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민주적인 일본'이라는 자기상을 온존하면서,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망각하는 데 부심했다. 침략전쟁의 책임을 기술

한, 이에나가(家永三郎)가 교과서 재판을 일으킨 것이, 한일조약 조인 10일 전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1967년의 '명치100년제(祭)' 무렵부터, 과거 일본의 영광을 추복하는 역사수정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천황' 이미지가 왕자와 그 아내와 함께, 무근거한 공백의 충전제로서 경제발전 위에 투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냉전적 기생·경제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붕괴하는 것이, 88년부터 90년에 걸쳐서이다. 이시하라와 소니의 모리다(盛田昭夫)가『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출판한 해, 90년 1월 18일에,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라고 발언한 모토지마(本島等) 나가사키 시장이 우익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받았다. 전년 6월에는 '천안문사건'이 있어, 동구 민주화의 폭풍 속에서, 11월 베를린의 벽이 무너졌다. 그 후 단숨에 냉전구조는 해체되었다. 일본정치가 '리쿠르트사건'에 의해 비리 투성이라는 실체가 폭로된 89년 7월의 참의원선거 이후, 말하자면 55년체제의 붕괴가 거품경제의 파탄과 함께 진행되어 갔다.

기생쇄국 민족주의

더이상 냉전구조형 기생 경제 민족주의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구소련에 향해진 공포와 증오와 멸시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 진전에 의해, 거품기에는 일본이 형님 역할을 했지만, 그 후 중국이 완전히 미국을 바라보게 되어, 멸시할 수 없게된 결과, 질투와 그것의 뒷면인 증오가 강화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이 나라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과잉적 공포와 증오와 멸시를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주변지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선망이나 질투가 전면에서 나타났다. 그것과 연동해서 구 '중군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해서, 인근국가의 피해자들에 의

한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이 일체히 고발되었다. 이 때, 패전기의 토라우마 상처가 도진 것이었다. 거기서 등장한 것이, 앞에 상술한 신민족주의=관민일체 기생·쇄국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21세기적 개국으로

21세기적 개국에 필요한 것은, 건전한 수치심의 회복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선거 열설에서, '두 민족이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말해버리는 모리(森喜朗)와 같은 남자가, 이 나라의 총리대신이라는 것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감수성의 발동이다. 현정권의 중심에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속속 내보이고 있는 수치를, "우리들은 짊어지고 싶지 않다, 우리들은 가슴을 펴고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당연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의 권리로서 나라의 위정자에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그 위정자를 그만두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를 대표하게 한다는 능동적 감수성으로의 이행이다.

건전한 수치심을 회복하고, 소심한 자존심을 버리고, 용기있는 자존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항목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상적인 국가모델을 기존의 헤게모니 강국에 구하고, 언제까지나 선망과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기준을 냉정하게 회의하면서, 적어도, 환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자연환경, 노동조건, 안전보장 등의 전역을 고려한, '넷·글로벌리제이션', '바이오·글로벌리제이션', '에코·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상을, 자주적인 동시에 근린국가와의 대등한 대화 속에서 모색해 가는 것이다.

둘째로, 미국에 종속, 추종하는 것뿐만이 외교노선을 전환하여, 일본이 독자의 자주적인 외교정책 기본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선망과 멸시도 동시에 그 만들 때, 도대체 일본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은가를, 과거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현실 진행중

인 국제정치의 상황에 입각해서 정책화해야 한다.

한반도에 있어 남북정상회담 후, 더이상 무책임한 '북한공포'를 전제로 해서, 군사전략, 특히 제 145회 국회에서 강행된, 소위 '신 가이드라인법'을, 즉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후, 주한 미군 문제가 외교교섭의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발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변야고에 예정된 신기지의 '15년' 한정사용과 같은 현실은 폐식 잡꼬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질투와 멸시를 극복하고, 매래 전쟁을 억지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급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로, 주변지역과의 자주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 책임, 전쟁책임, 전후책임 문제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책임', '국가가 범한 인도상의 죄'의 책임은, 배상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 일괄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위정자의 기만적 발설에 의한 수치를 수용하길 거부하고, 각국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정책으로서 내놓아야 한다. 특히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2002년의 한일공동주최에 의한 월드컵 때까지 확실히 해두고, 세계 전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술한 세 가지를 실천할 경우에 내부용의 『국민의 역사』라는 이야기로 무근거한 존대함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고립하기 위해 자기무덤을 파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일을 향하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중국과

자주적 외교를 위해서는 더이상 미국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 책임, 전쟁책임, 전후책임 문제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책임', '국가가 범한 인도상의 죄'의 책임은, 배상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 일괄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위정자의 기만적 발설에 의한 수치의 수용을 거부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만에 있어서도, 단일한 '국민의 역사' 따위에 집착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효이다. 그렇다면, 민족·역사를 넘어서, 환태평양지역의 21세기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의 재서술을, 자주적 자발적인 동시에 상호 대화적으로 진행해가는 국경을 넘은 운동이 필요 불가결하다. '역사'는, 과거를 회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루산티만의 거대한 덩어리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말미에서 미래를 절망으로서밖에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치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가 저술한 『국민의 역사』는, 자원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패전 후 일관해서, 전쟁책임의 기술을 억압해 온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도 그만둘 필요가 있다. '국경없는 역사학자 모임'에 의해 배양되어 가는 미래 지향의 전망을 제시하는 역사기술을, 용기를 가지고 교과서로서 출간해야 한다.

다섯째로, 21세기적 개국에는, 당연하게도, 21세기적 내지잡거(內地雜居) 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움직임은, 많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에 있어서도 큰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일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리조차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 혐오를 넓히려 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지잡거하는 영주외국인에 대해, 정치적 권리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인과 대등한 법적권리를 조속히 부여해야 한다.

민족주의의 '편협'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위정자들인 것이다. (이 글은 『世界』 2000년 7월호에서 전재한 것임)

다민족 국가 일본의 구상

1990년대를 통해 더욱 늘어난 외국 출신자가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일본은 이제 단일민족국가 아닌, 또 한 전전의 다민족제국과도 다른 다민족국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등과 다민족 공생의 이념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통합정책이 불가결하다.

山脇啓造 / 일본 明治대학 조교수 · 近藤敦 / 일본 九州産業대학 조교수

柏崎千佳子 / 일본 慶應대학 조교수

번역 / 조찬우(일본 와세다 대학 석사)

머리말

21세기의 일본은, 급속한 소자화(小子化)·고령화(高齢化) 및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1997년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장래추계인구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2007년 정점에 달해, 2050년에는 현 인구의 20%가 감소된다고 한다. 더욱이, 1999년의 합계 특수 출생률(1인의 여성이 생애에 출산하는 자녀의 수)은, 이 추계가 상정하고 있던 출생률을 밑도는 과거 최저의 1.34로 되어버린 것이 판명되고 있어,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2001년도에 일본의 인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추계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 아래 정부의 자문기관 및 경제단체에서는 일본이 향후 경제의 안정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노동력 인구를 외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를,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성장 노선을 재고하고, 생활의 질을 중시한 성숙사회, 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순환사회로의 전환의 호기로서 간

주하는 사고방식도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하면,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은 이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순노동자'의 수용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자세였다. 2002년도 초에는, 2000년도의 국제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장래추계인구가 발표된다. 그것을 계기로,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방침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견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일본이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또는 이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명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후,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구식민지 출신자의 안정화는 물론, 1980년대 이후에 입국해 들어온 새로운 외국인의 정착에 의해서, 일본사회의 민족적 구성의 다양화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점이다. 그 배경에는 세계화

의 진전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조류의 상징적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IT관련기술자의 수용은, 일본에서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이다. 다민족공생의 국가와 사회의 구축은, 21세기의 일본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외국인의 관리를 주안점으로 하는 출입국관리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출입국정책과, 평등과 다민족공생의 이념에 근거한 통합정책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수용의 역사와 현상을 개관한다. 그리고 민족공생의 국가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념에 대해서 살피고, 나아가서 기본적인 법제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정책을 제언한다.

외국인 수용의 역사와 현재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용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한 일본사회의 다민족화의 현상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전후의 역사를, 1980년경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고찰해가기로 한다.

1950년대~1970년대 : 주로 구식민지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후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에 관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온 것은 출입국 관리법(1951년 제정, 입관법이라고 약칭)이다. 입관법은, 일본이 수용을 인정하는 외국인의 활동유형 등을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관한 일본정부의 방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순노동자'의 수용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자세였다. 2002년도 초에는, 2000년도의 국제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장래추계연구가 발표된다. 그것을 계기로,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한 재류자격이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인구과밀을 이유로, 비숙련의 외국인노동자 및 영주목적의 외국인의 입국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약60만 명의 구 식민지(거의 다 한반도) 출신자가,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후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어, 제일 외국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1970년대까지, 외국인 정책이란 한국·조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제일 한국·조선인은 입관법의 재류자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 법적 지위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1965년 한국과 일본간에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국적의 1세와 2세에게 영주자격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북한국적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그대로였다. 일본의 법 제도는, 국민과 외국인의 격차가 커서, 사회보장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제도도,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 취득은 동화적인 재량 귀화에 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귀화 후의 성명에 대해서는 일본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1970년대가 되자, 제일 한국·조선인 중에서 2세, 3세의 비율이 늘어나, 취직 차별을 규탄하는 운동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이에 대해 일부의 자치단체는, 공영주택이나 아동수당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을 철폐했다.

1980년대~1990년대 : 신이민의 증가와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모색

1980년대를 전후해서, 국제인권규약의 비준(1979

년), 난민조약에의 가입 및 입관법의 개정(1981년)이 실행되어, 일본은 외국인 정책에 커다란 전기를 맞는다. 우선, 정주를 전제로 한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이 1978년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영주목적의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던 방침의 부분적 변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중교회복 후에 시작된 중국 귀국자의 수용도, 1980년대가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인도차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정주촉진센터가, 중국귀국자에 대해서는 정착촉진센터가 개설되어 일본어 교육 및 생활적응 연수가 이루어졌다.

재일 한국·조선인에 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전술한 입관법 개정에 의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영주가 인정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및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의 국적요건이 철폐된다. 이렇게 하여, 내외인 평등과 영주자격의 확립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할 때마다 지문채취를 당해야만 했다. 그러한 실태 때문에, 재일 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확산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일본기업 등의 해외로의 현지 진출 증대 및 엔고(円高) 등의 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근린아시아 제국으로부터의 돈벌이만을 위해서 유입되어 들어온 노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바로 신 이민자의 등장이었다. 처음에는 풍속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았었지만, 차츰차츰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이 증가해, 여성의 취업처도 공장이나 음식점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대다수는, 초과체제자 등 비정규적으로 취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호경기에 심각한 일손부족이 발생했던 1980년대 말이 되자,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외국인 수용을 둘러싸고 '개국파'와 '쇄국파'의 논쟁이 일어났다.

1989년, 외국인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입관법이 재개정 된다. 재류자격의 종류가 늘어나, 전문·숙련직의 외국인의 수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일계인은

활동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1990년대를 통해서 브라질인 등 남미출신자가 급증하여 간다. 일계인노동자는 아이치켄이나 시즈오카켄, 군마켄 등의 공장이 많은 특정의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인 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997년에는, 아이치켄 고마키시에서 14세의 브라질인 소년, 일본인 소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가슴이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계인의 수용은, 노동력부족과 초과체제자의 급증에 대해 대응한다는 면이 있었다. 초과체제자는 1993년에는 약30만명에 달해, 그 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전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 내용은 똑같은 노동력부족 대책으로서, 1993년에 시작했던 것이 기능실습제도이다. 이것은, 종래의 연수제도를 변경하여 연수종료 후의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변화가 있었다. 말하자면, 1991년에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특별영주자격이 인정되어, 1993년에는 영주자의 지문날인 의무가 폐지되었다(2000에는 전 외국인에 대해서 폐지). 재일 한국·조선인은, 계속해서 공무취입권 및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1996년에 카와사키시가 일반직채용에 관한 국적조항을 철폐한 것을 계기로, 몇 군데의 정령지정도시 및 토도우후켄(都道府縣)에 있어서 국적조항의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에 있어서 외국인을 둘러싼 동향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현상이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일관해서 늘어나고 있다. 1999년에는 연간 3만건을 돌파하여 혼인총건수의 4%를 차지했다. 개정국적법(1985년)이, 부친이 일본인의 경우에 한해서 일본 국적이 계승되는 부계혈통주의를 그만두고,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한 것도 작용해서 일본국적의 '더블류'(일본인과 외

국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가 증가해 있다. 또 한 가지는, 유학생의 증가이다. 일본정부가 들고 나온 유학생10만인계획(1983년)에 의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 중국 등 근린아시아제국 출신의 유학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졸업 후, 일본사회에서 취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근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현재

1999년 말 현재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대략 156만 명, 총인구의 1.2%로 나타나 있다. 이중, 전쟁 전부터 체재하는 한국·조선인 및 중국인의 비율은 저하 경향에 있고, 현재에는 주로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 입국한 신이민자가 60%를 넘어서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북한이 52만 명의 특별영주자를 포함해서 64만 명으로 등록자 전체의 41%를 점하고 있다. 이하, 타이완 출신을 포함한 중국(29만 명, 19%), 브라질(22만 명, 14%), 필리핀(12만 명, 7%)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출신자(75%)와 남미 출신자(18%)를 합치면, 전체의 90% 이상이 된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여성이 85%인데 반해, 이란인 및 파키스탄인의 경우 남성이 90%를 넘는 등, 남녀의 비율이 출신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등록 통계에는 초과체재자 및 밀입국자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초과체재자수는 현재, 23만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의 통계가 때때로 일본사회의 다민족화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한편으로, 외국에 뿌리가 있으면서 일본 국적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식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귀화에 의해 일본 국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변화가 있었다. 1991년에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특별영주자격이 인정되어, 1993년에는 영주자의 지문날인 의무가 폐지되었다. 재일한국·조선인은 계속해서 공무취임권 및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적을 취득한 사람은 1999년에는 연간 16,000명을 넘어섰다. 그 중에는 '한국·북한' 국적자가 60%를 점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그 밖에 국가들의 출신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들도 부모의 한쪽이 일본인이면 출생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은 금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이누 및 오키나와의 사람들과 같이 일본사회에 있어서 다문화공생을 생각함에 있어 중요한 존재이다.

과 제

1980년대 이후의 외국인 증가에 대해서, 당초, 행정은 그다지 수용태세를 갖지 않았었고, 다수의 신 이민자가 살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주택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거차별이나 보증인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어린이에의 대응이 과제로 되어 있다. 언어의 벽은, 그밖에도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병원이나 법정에서의 통역 등, 전문용어가 많은 분야에서는 인재가 부족하고 태세의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초과체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의 보장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많다. 1999년 9월에는 초과체재의 기간이 10년 가까운 이란인 가족들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동경입관에 집단 출두했다. 전국의 시민단체 및 국내외의 학자가 체류 허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00년 2월에 일본인과 친척관계가 없는 신 이민자로서는 처음으로 체류 특별허가를 얻게 되었다. 23만명의 초과체재자의 처우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KSD오직사전 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연수생의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으로, 연수 제도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모순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이 확립되었다고는 하나, 전후보상, 민족교육, 공무취업권(특히 관리직에의 임용), 지방참정권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 예를 들면, 민족교육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후 일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미 50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학교는, 아직도 각종학교로밖에 인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의 진학이 허가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또한, 일본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코리아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보장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일본인' 으로서 통학하고 있다.

이미 영주자로 되어있는 구식민지출신자에 대해서, 근년에는, 신 이민자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향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현상으로부터도 짐작할 수가 있다. 연간 영주허가수(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는 1998년에 영주허가의 요건이 완화된 것도 있고 해서, 1997년의 11,600명에서, 1999년에는 19,700명으로 늘어나, 더욱이 2000년에는 30,000명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외국인을 일시체재자가 아닌, 일본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시점은 갈수록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다. 향후 한층 더 외국인의 정주화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의 구성

정주외국인의 증가에 의해, 제도 면에서 많은 과제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이 대응에 쫓기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

러한 개개의 과제를 떠받들 수 있는 기본적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제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일본사회의 구상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단일민족사회'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인' 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외국인' 이라는 고정관념도 뿌리깊다. 향후,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단일민족 지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합정책의 필요성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 여러 영역에서 마찰도 생길 것이다. 또한, 현재 같은 불황기에는 외국인노동자가 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기 쉽다. 다른 외국에서도, 경기의 악화나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이민 배척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예를 볼 수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경기의 저미가 계속되면 '외국인' 에 대한 맞바람이 더욱 강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인이 증가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이다. '일본인' 대 '외국인' 이라는 사고의 틀이 때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해버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인과 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나 소음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난 경우, 외국인이나, 또는 문화가 틀리니까라는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의 전달방법이나 주민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결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그것을 싸잡아서 문화 및 습관의 차이로 환원해버리는 것은, '일본인' 과 '외국인' 의 대립관계밖에 시야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일본인' 대 '외국인' 이라는 도식이 폐해가 된다. 현재와 같이, 일본인의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외국인노동자가 일본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일본인의 피해 측면이 강조되는 한편,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사회에서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자명한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일본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등하게 취급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인의 일을 빼앗는다는 식의 인상을 갖게되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는 일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는 특정의 산업이나 직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인과 외국인과는 직접 경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인 취로자의 고용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외국인범죄'라는 센세이셔널한 제목으로, 외국인의 증가를 바로 치안의 악화와 연결짓는 것과 같은 보도도, 역시 '외국인'을 한데 묶어서 취급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마치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근거가 되어있는 범죄통계 데이터에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경시청은 '재일 외국인'이라는 분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영주자들을 뺀 다양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살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범죄목적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국제절도단과는 별도로 구별되어야만 한다. 경찰이나 매스컴 등이 누차에 걸쳐 편향된 정보를 토대로 한 '외국인범죄'를 강조하여, 일본인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한 일이, 외국인주민을 보다 더 소외시키고, 외국인과의 공생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외국인의 증가에 의해서, 일본인이 폐를 당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한편에서는,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사회에서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자명한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 때문에, '일본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사회 안에서 대등하게 취급되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주태에의 입거 또는 취직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인이거나 일본적 마이너리티는 사회참가는커녕 사회의 일원이라는 실감조차 가질 수 없다.

수용태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입국해 온 외국인이 일본사회 안에서 주변화 되어가는 예가 이미 눈에 뜨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에 개정 입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급증한

일제인의 어린이들의 경우, 일본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비행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 외국인의 수용에 의한 경제·사회의 활성화라는 플러스 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대될 수도 있다. 외국출신자의 소외나 사회적주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통합'이란 어떤 형태로든 사회를 바르게 하나로 합해 가는 것으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대 일본에서는 민족적 소수자 및 식민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정책도 단일민족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자에의 시점은 극히 결여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본론에서 제시하는 통합정책은 다양성에 바탕을 둔 사회의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서서, 외국출신자나 민족적 소수자가 각각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부정 당하는 일이 없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출신자에게는, 받아들이는 사회의 제도나 문화에의 일정한

적용이 기대되지만, 한편, 받아들이는 사회 쪽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변혁이 요구되며, 또한 문화의 변용도 기대된다.

평등과 다문화공생

통합정책의 기본으로서, 또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사회 만들기를 향하여 두개의 원리를 들고싶다. 하나는, 평등의 이념이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평등은 실현할 수 없다. 국적이나 출신,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사회참가가 저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속성을 배려한 시책이 필요하게 된다. 법률에 의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통역서비스 및 일본어 습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평등한 사회참가의 조건정비를 실행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똑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을 바에는 누구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사회의 제도나 교육의 내용에 반영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통합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원리는, 다문화공생의 이념이다. 본론에서는 다문화공생을,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 가면서 대등한 관계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다문화공생의 이념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다문화공생사회가 실현된다면, 평등한 사회참가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의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문화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소수자에게 밀어 부친다든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제일 코리안들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억압당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통명(通名) 사용을 강요당해 왔다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인도차이나난민을 시작으로 신 이민자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통명을 사용하는 등,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평등과 다문화공생이라는 두 개의 원리에 바탕을

둔 통합정책은, 미주·북미·오세아니아 등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시책을 참고로, 일본사회의 특성 및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입안, 실시하여 간다는 것을 말한다. 제 외국의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의론에서는, 다른 가치관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어떻게 타결을 지을까하는 것이 과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향후, 종교나 습관 등의 차이보다, 기존의 규칙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 같은 습관에 대해서, 문화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일본사회의 다양한 룰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나 기준을 재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족적 소수자의 문화를 장려하는 일은,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의 위기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논조도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승인했다고 해서, 사회로서의 통합이 저해된다고만 말할 수 없다. 반대로, 다른 문화를 억압하는 것 같은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민족적 소수자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을 약화시켜, 사회적 주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정치문화, 공공문화, 대중문화 등이라는 차원의 '문화'는, 반드시 특정의 민족적 아이덴티티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를, 사회의 구성원이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일도 과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 '다문화'라고 해도, 다수파 '일본인'의 언어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당면 계속될 것이다. 그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창조와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여가는 일이 목표가 된다. 민족적 출신에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참가가 가능한 사회,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가면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일본이 이러한 사회라고 느껴진다면, 사람들의 귀속의식도 강해질 것이다.

다문화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키워 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용을 재고하고 시민적 아이덴티티의 육성을 더욱 중시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NPO(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 재외외국인 문제에서의 행정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을 주체로 하는 활동이 각지에서 외국인

의 생활지원과 권리옹호를 맡아 왔다. 근년, 자치단체와의 연대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외국인에 관계되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NPO나 자원봉사자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시민사회의 기초가 확실한 것으로 되어갈 것이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사회만들기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일본에 있어서 다민족 사회의 구상은, 국제적인 동향에도 호응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외국인의 정주화가 진행되어, 사회의 내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외국인(이민)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는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입국행정을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인구가동의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통합정책의 충실을 꾀하여 간다는 방향성이다. 종래의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이것과는 달라서 '관리'를 주안으로 하고, 통합을 위한 시책은 결여된 것이었기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정책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착,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정치참가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시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통합정책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새로운 행정부문을로서, 내각부산하에 '사회통합국' (가칭)을 설치하는

오늘날 외국인의 정주화가 진행되어 사회의 내부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외국인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선진국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입국행정을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인구가동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통합정책의 충실을 꾀하여 간다는 방향성이다.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크게 법제도 및 국가로서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구분해서 논하여 가기로 한다.

기본적인 법제도의 정비

법제도의 정비는, 외국인의 평등한 사회참가를 위한 조건 만들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다음절의 통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넓은 의미의 '통합'은, 양자를 합한 것이다. 법제도의 평가에 직면해서는 입관법, 국적법, 또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라는 3개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의무 등, 외국인의 재류(在留)를 '관리'하는 측면이 강한 현행의 외국인등록법은 폐지한다.

입관법의 개정

중전후 일본의 출입국정책의 기본 방침은, 영주자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제도로서, 관리정책에 주안점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인구과밀을 이유로 이민이 장려되었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에는 인구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의 수용을 둘러싼 문제들은, 하나의 국가정부로만은 대처할 수 없다. 출입국행정에 관해서는, 이민의 송출국과 수용국과의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일이나, 밀입국 및 국제적인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국이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통합정책의 분야에서는, 국제기관이나 NGO의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옹호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일본도, 이러한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의 감소가 문제되고 있으며 신 이민자 외국인의 정주화도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총합정책의 이념 하에, 안정된 거주나 취로, 그밖에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기본을 둔 재류자격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영주허가요건을 완화한다. 영주자격의 준비는 유능한 인재의 정주를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진행시키는데 중요하다. 미주위원회는 올해 들어 EU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도 5년의 거주로 사실상의 영주권을 EU전역에 인정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본에는 현재 일제인이거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뺀 일반의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국적취득에 필요한 5년을 크게 웃도는 1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IT기술자 등의 정주를 촉진시키는데는 곤란하다. 그런 까닭에 영주자격취득의 거주요건은 원칙상 5년으로 한다.

두번째로,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현행의 외국인 연수제도 또는 기능실습제도는 약 1년간의 연수를 기업에서 받은 외국인노동자가, 계속해서 2년간 기술실습생으로서 일한 뒤에,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에 있었지만, 그 실태는 인력부족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순환 방식을 전제로 한 노동인력 공급으로 되어버렸으며, 구조적인 모순을 낳고 있다. 또, 오직사건으로 매스컴에 의해 밝혀진 KSD 산하의 아이므저팬 문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인을 싼 노동력으로 써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수용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한정 하여 운용한다.

세번째로, 장기의 비정규체재자(밀입국자 또는 초과체재자)에 대한 재류특별허가의 기준을 만든다. 정규의 자격을 갖지 못한 많은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특정분야에서의 국내의 노동력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정규거주자의 경우 노재, 의료, 교육 그 밖의 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

부분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은 다른 인권침해에 연결되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대량송환은 사실상 곤란하며 일본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전술한 바와 같이, 10년 가까이 체재한 후에 재류특별허가를 요청, 비정규체재자가 입관에 출두해 있다. 이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후의 비정규체재생활의 장기화를 선택시켜,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시정하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된다. 또 이미 일본생활에 익숙해져, 일본어도 배우고, 보다 숙련도가 높은 일거리에 취업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일본사회에 있어서 손실되는 요소도 많다. 정규의 재류자격을 인정하는 정규화가 새로운 비정규체재자의 안내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규모의 일반 암네스티가 아닌, 개별의 재류특별허가에 의해서 대처해야 한다.

현행의 재류특별허가의 운용은 선례가 대략적인 기준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비정규체재자는 10년의 거주,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5년의 거주를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재류특별허가를 준다.

네번째로, 난민성이 있는 사람의 재류특별허가도 별도로 검토한다. 난민조약상의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으로의 송환에 의해 더욱 혹독하게 인권침해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년, 일본에서도 특별히 재류를 허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비인도적인 강제퇴거의 금지는 국제인권규약이 요청하는 바이며, 재류특별허가 사유로써 법률로써 명문화시켜야 한다. 향후 국내에 있어서 인권에 뿌리를 둔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증가하는 세계의 난민문제에도 진지하게 대처하는 시점도 필요하다.

국적법의 개정

국적취득에 제한이 많은 현행의 국적법은 통합정책

을 진행시키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국적법의 개정에서, 일본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외국인에게는 일본국적이 취득하기 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확립을 꾀하는 것과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쉽게 하는 것은 통합정책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정주에서 영주에, 나아가서 국적취득이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통합을 법적 지위의 면에서도 지탱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생지주의(生地主義)적 요소를 확대한다.

현행의 국적법에 의해서는 양친모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일본국적은 취득하지 않는다. 사회통합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이후에는 한쪽의 부모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의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에, 생래(生來)의 외국적의 포기는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또 현행의 국적법에서는 무국적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가 불충분하여, 법률의 재고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일본 국적취득의 기준으로서, 거주요소를 중시한다. 출생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경우, 지금까지는 거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장기에 걸쳐 합리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주년수, 범죄력이 없는 것등을 조건으로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다만, 체류기간이 길고,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국적의 취득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적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영주자의 지위의 보장도 동시에 실현하는

국적취득에 제한이 많은 현행 일본의 국적법은 통합정책을 진행시키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국적법의 개정에서, 일본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외국인에게는 일본국적이 취득하기 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확립을 꾀하는 것과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쉽게 하는 것은 통합정책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로, 귀화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귀화의 조건으로 5년의 거주기간, 소행선량, 생계유지능력, 종전의 국적 방기(放棄) 등이 규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도 귀화의 허가는 최종적으로 법무대신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후에는 귀화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무대신에 의한 재량권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귀화불허가로 된 경우, 신청자는 이유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또 귀화조건 중에 종전의 국적 방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번째로, 이중국적의 취급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적은 한사람이 하나만을 갖는 것으로서 이중국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고가 강했다. 그러나 정주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구미 모든 나라에서는 개인의 권리향상이라는 관점만이 아닌,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통합의 시점에서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해져 왔다. 그도 그럴 것이 거주국에서의 국적 취득시에 종전의 국적방기가 조건으로 되어있는 경우 외국인이 신고나 귀화를 하지 않고 외국국적에 머물기 쉽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적과 민족적·문화적 아이덴티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일본사회에서는 '일본국민'과 '일본민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자문화(自文化)를 버리고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특히 귀화제도는 그런 동화적 압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해 왔다. 그런 만큼 국적제도의

개정은 국적에 대한 의식개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국적취득이 용이하게 된다고 하여도 외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자가 그 출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국적취득이 지금까지와 똑같은 동화적 성격을 띠게 된다. 현재, 특별 영주자를 대상으로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본국적취득자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보장의 문제에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함은 물론이다.

외국인 기본법의 제정

전후 일본에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 과 '외국인' 과의 사이에 법적 지위의 격차가 컸다. 특히 재류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식민지출신자는 그 권리가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980대 이후, 사회권의 보장 및 법적 지위의 안정화가 진행되었지만, 식민지배의 역사에 배려해 행해진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정책으로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정비에 대해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다. 남겨진 전후보상의 과제에 대처하는 일과 함께, 근년의 신 이민 외국인의 정주화에도 대응하는 법적 지위의 재평가를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새로운 '외국인 기본법' 을 만들어 외국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본법에 의거한 법적 지위의 보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법적인 증거를 부여하는 것이며, 영주자에 대해서는 국적참정권 등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면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영주시민'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다.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내외인 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한다. 또 외국인도 국민과 같이 법적 및 법령의 준수, 납세, 주민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

덧붙여 말하면, 구 식민지출신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 제일 한국·조선인이나 대만출신자를 대상으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원호법이 성립했지만, 입법 취지에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지급액은 일본인에 비해 너무도 적은 금액이다. 그런 점을 바로잡아 새로운 입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후보상의 일환으로써 식민지배에 관한 기록의 수집·보존·공개 및 역사교육을 위한 국립자료관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권리를 종류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자유권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업선택이나 거주에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양태에 따라서, 또는 권리의 성질상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에 대해서는 권리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며 나라의 안전에 관련된 일부의 공무원직을 제외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과 평등하다. 또 재판받을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등 수익권에 관한 내외인 평등도 기본법에 명기한다.

사회권에 관해서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에 관한 국적요건이 철폐되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보장은 부족한 분야가 있다. 먼저, 영주자·정주자 등에 한해 준비되어진 생활보호는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해야만 한다. 다음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후,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희망에 따라 후생성 연금과 건강보험을 별도로 나누어서 건강보험만의 가입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긴급치료에 대한 의료부담에 한해서는 생활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교육에 관해서는 재류자격의 유무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참정권에 대해서는 현재,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심의에 부쳐지고 있지만, 선거권만을 인정하는 제도는 선택한 사람이 선택되는 가능성을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된다. 거기에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 주민의 직접청구권 등 모든 지방참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를 조례에서 정하는 자치단체는 그 투표권도 영주외국인에게 인정한다.

문화적 권리에 관해서도 외국인기본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음절에서 논하는 것과 같은 다문화공생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의 교류·발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정책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옹호, 정보제공, 일본어학습 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또 개인 차원의 권리보호에 더해, 사회적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시책을 병행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이전에 국내에 소수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1991년에는 국제연합인권소위원회에서 아이누 사람들이 소수민족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거둬 표현되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선해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정책

국가의 통합정책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으로 '사회통합국' (가칭)을 내각부의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통합국'은 관계성청과 연대해 자치단체와도 협력하면서 아래와 같은 시책을 진행시켜 간다.

첫 번째로,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의 평등한 사회참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법률에 의한 차별의 금지이다. 작년 문제시되었던 고

일본정부는 “국내에 소수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1991년 국제연합인권소위원회에서 아이누가 소수민족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거둬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루시의 목욕탕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 금지' 등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이 일어나는 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헌법 14조가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개별법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면도 있다. 일본은 1994년에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금년 3월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조약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써, '민족차별금지법' (가칭) 제정을 서둘러야만 한다. 또한, 현재

법무성에서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인권구제기관의 위원에 민족차별금지위원을 첨가시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이 받고 있는 불평등의 시정이 필요하다. 제일 한국, 조선인의 고령자는 이전의 국적조항 때문에 무연금자로 되었다. 특별급부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는 있지만, 일본인과의 격차는 크다. 또한, 일본에서 일한 뒤에 귀국하는 외국인의 연금이 만기가 되어도 배당금도 없고 부금도 못 찾게 되는 문제도 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탈퇴일시금은, 3년분이 한도이기 때문에 환불기간의 연장이 과제이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안고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번째로, 외국인 출신자는 그 대부분이 노동자이며, 노동 분야는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동직업안정소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NGO 등과 연대해가면서 통역태세를 정비한다. 또한, 실업자의 증가를 막고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

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중요시된다. 여러 연령층의 외국인 출신자를 시야에 넣어가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의 적정화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동기준 감독자의 지도·감독체제를 강화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현재에도 재류자격에 상관없이 내외인 평등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고용, 노재 배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임금미지급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노동계약의 체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여, 고용보협가입의 의무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의 고용형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경기의 조정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청부계약의 명목으로, 위법으로 노동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업자의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해서 파견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칙을 과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비준해야만 한다.

네번째로, 외국인의 공무취임과 정치참가의 촉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당연의 법리'에 의거해 외국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관공서의 의사형성에의 참여'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행정견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으로 철회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철폐를 진행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이 아니면 취임 할 수 없는 직종을 검토해 법률로서 명시한다. 또한, 정치참가의 분야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후술의 '다문화공생회의'(가칭) 등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마이너리티의 각종 심의회, 자문위원회에의 참가를 재촉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번째로,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관해서는, 최근 아이누문화진흥법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사업에의 조성이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후로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문화공생사업에 대한 조성제도를 설치해, 다양

한 문화적 커뮤니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통합정책에 관계되는 기초 데이터의 수집도 국가의 사업으로써 중요하다. 외국인 또는 일본국적 소수민족 대해서 인구동태, 취로상황, 교육, 사회생활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여, 통합시책의 기획, 실시,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한다.

지방자치의 정책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나 문제군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대단히 크다. 더욱이 구체적인 다문화공생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편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은 지방분권의 추진에도 호응한다.

첫번째로, 자치단체행정은, 내외인 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은 외국인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주민등록으로 일원화하여 외국인을 일본인과 평등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과 별개의 외국인등록을 하는 일은 외국인 관리의 발상에 기초가 되며,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언어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빠뜨릴 수 없다. 자치단체는 홍보활동이나 생활상담 등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언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내외인 평등의 실현과 같이 중요한 것이 다문화공생의 추진이다. 1980년대 후반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교류협회'(이하, 협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국제화'에 몰두해왔다. 협회는 외국인주민에 관한 분야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의 재정난 속에서 축소 경향에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청내외의 체제를 재고해볼 시기에 이르렀다.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레벨의 다문화공생사회만들기에 구체적인 지원책 실시가 시급하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출신자를 위해서 공영주택·보육원·유치원·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영주택에서는 외국출신자도 역할을 하도록 입주시 자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의 담당 부국(部局)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다문화공생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행정의 여러 영역이 외국인주민에 관계될 것이며, 이후에는, 협회이상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다문화공생의 실현에 적극대처 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덧붙여서, 관서지방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국제화'에의 대응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외국인의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각 자치단체의 인권시책 중에, 외국인의 시점을 적극적으로 반응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협회의 역할 재정의도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자매도시 제휴 등 대외적인 국제교류로부터 지역사회에 눈을 돌린 다문화공생의 추진 쪽으로 중점을 옮겨와야 할 것이다. 향후, 시민센터가 공익의 실현에 보다 넓게 참여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협회는 다양한 시민단체(NPO)와 자원봉사자의 육성 및 지원, NPO의 네트워크화, 자치단체와 NPO의 연대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레벨의 다문화공생사회만들기에 구체적인 지원책의 실시가 시급하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출신자를 위해서 공영주택, 보육원, 유치원,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영주택에서는 외국출신자도 자치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입주시에 자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대규모의 집합주택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을 상주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출신자가 많은 지역에는 자치회, 학교, NPO가 연합한 '지역공생연합회'(가칭)를 설치해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공민관을 다문화공생사회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공민관을 이용한 일본어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어강좌나 일본어 자원봉사자 양성강좌의 개설을 이후에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장소의 제공,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 단체에 의한 일본어 교실은 단지 학습의 장에 머물지 않고 일본어 자원봉사자와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 간의 교류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문화공생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도 각지의 공민관에서 개최하여, 국적이나 민족이 달라도, 다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기른다. 나아가서, 개발교육이나 환경교육 등을 통해서, 지구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형성도 목표로 해나간다.

끝으로,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의 정치참여를 지역차원에서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에의 관여는, 평등한 사회참가의 기본의 하나이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회의가 설치되어, 외국인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행정에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향후, 일본국적 소수민족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외에 일본국적 소수민족도 위원에 포함시키고, 또한 NPO관계자 등 다수파 '일본인'도 포함된 '다문화공생회의'(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회의의 구성원은, 공모에 의해 선출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회의가 복수 존재하는 토도우후켄

(都道府縣)은 그들의 회의를 네트워크화 하는 연합회의를 조직한다. 다문화공생회의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피선거권을 보완해 폭넓은 목소리를 자치단체의 정책형성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교육정책

지금까지의 일본공교육은, 대상이 되는 아동·학생이 모두 일본국민이라고 전제해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요령을 기본으로 시행해져 왔다. 2002년부터 실시될 신 학습지도 요령에도 외국인 아동·학생의 존재가 상정되어 있지 않으며, 2000년 12월에 제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답신도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아동·학생 중에는 일본에 정주, 영주 또는 일시 체재하는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중국적'이나 귀화한 사람 등 일본국적자의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다.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이러한 모든 아동·학생들을 시야에 넣은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선, 공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을 개선한다. 학습지도요령에는 공교육의 대상으로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질 것을 명기해야한다. 이미 몇몇의 자치단체는 외국인 교육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일본국적 소수민족의 존재도 배려한 다문화공생교육기본방침(가칭)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동·학생의 증가에 따라 공교육에 따른 언어교육의 바람직한 태도도 질문되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금년들어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교육(JSL)'의 연구에 겨우 착수하였지만 일본어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인 정주화를 전제로한 일본어 교육의 커리큘럼만들기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국어·일본어·외국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언어교육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원양성과정의 개혁을 실행한다. 각 대학에 있는 일본어 교육관계과목의 개강 및 확대를 촉진, JSL의 교육 허가의 신설을 검토한다. 한편, 다문화공생교육에 관한 과목도 확대해 전 교원지방자의 필수로 한다. 한편 외국인 교원도 일본인과 같은 자격으로 채용해 특히 외국인 아동·학생이 많은 학교에서의 채용을 추진한다.

교육의 현장에서는, 다문화공생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첫번째로, 일본은 단일민족국가 아니고, 국민 중에는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아동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나 사회의 교재나 수업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시민적 아이덴티티 육성을 위한 교육을 행한다. 국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본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어야 하며, 평등과 다문화공생의 이념을 배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일코리안 등 외국인의 정주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출발점으로 지구시민적 아이덴티티로도 연결해 나간다. 세번째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재일 한국인이 많은 관서지방의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빈약한 재정지원아래 오랜 기간동안 실천 되어왔다. 이후에는, 같은 언어나 문화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아동·학생들이 일정한 수에 달하는 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문화공생교육에는, 지역사회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열린학교만들기'를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깊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 어린이의 일본어교육, 그리고 교과학습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일본어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각 학교마다, 교직원과 보호자와 지역의 자치회나 자원봉사 단체로 구성된 '다문화공생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어린이들의 일본어 학습 및 교과학습의 지원

태세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근년에 들어, 조선학교와 일본의 공립학교 사이에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열린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외국인 학교와의 교류도 더욱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출신 학생의 입학에 관한 대응자세도 필요하다. 또 중학교의 야간학급은, 지금까지 중국귀국자 등 외국인출신의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더욱 증설해서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 외국출

신자의 경우, 외국인학교로의 통학도 선택지가 된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학교라고 하면 조선학교가 태반을 차지했지만, 근래 수년 급속히 브라질학교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또 그 외의 외국인으로부터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생의 감소로 공립학교의 통폐합이 일어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시설을 외국인학교 설립에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학교(민족학교)의 법적 지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학교가 달성해야 할 대부분의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해 그것을 달성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규의 학교로 인정해, 일본학교와 같은 졸업자격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그러한 인가를 받은 학교에는 일본의 사립학교와 같은 조성금을 교부해 주어야만 한다.

다민족공생의 내일을 향하여

현재의 외국인 이민수용 논의는 인구감소라는 요인이 전면에 나와있는 점에서 10여년 전의 '외국인노동

다문화공생교육에는 지역사회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열린학교만들기'를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어교육이나 교과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교직원과 보호자와 지역의 자치회나 자원봉사 단체로 구성된 '다문화공생위원회'를 조직해 일본어 학습 및 교과학습의 지원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자문제' 때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논의의 방법에는 그때와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 '개국인가? 쇠국인가?'라는 당시의 질문방법에는 전전(戰前)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외국인이나 일본국적 소수민족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변해 있지 않다. 장래의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의 수용이 필요한지 아닌지라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수용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대일본제국은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총인구의 30%를 비일계 '신민(臣民)'이 접하는 다민족국가 되었다. 식민지의 대만·조선에서는 내지인과 외지인의 법적인 평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동화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전후(戰後)의 일본은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피력해왔다. 거기에서는 헌법상의 인권의 보편성이 승인되어지면서도 일본인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국적'의 벽이 쌓아져 민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은 등한시 되어왔다.

세계화가 발전한 오늘날, 일본이 단일민족 지향으로부터 탈각할 필요성이 이제야 겨우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될 사회의 구상이나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여되어 있다. 1990년대를 통하여 더욱더 늘어난 외국출신자가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 지금부터의 일본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또한 전전(戰前)의 '다민족제국'과도 다른, 다민족국가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평등과 다문화공생의 이념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통합정책이 불가결한 것이다.(이 글은 『世界』 2000년 7월호에서 전재한 것임)

일본의 단일민족 정책

고대 이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민족의 단일성 주장은 다분히 사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적 가설이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 가설이 안팎으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아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단일민족 신화와 크게 거리를 두고 발전되고 있는 민족환경의 급격한 변화 사이에서 나타는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가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민족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민족주의와 민족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재일한인이 설자리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조정남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머리말

오랫동안 일본의 민족관계를 상징해 온 '單一民族'의 신화는 최근 들어 그 신화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和族이 민족적 주도성을 계속하는 단일적 민족관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민족관계를 지속시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는 뚜렷한 소수민족(에스니티)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일본인 대다수는 일본은 '日本人' 내지는 '大和民族', 和族이라고 불려지는 민족으로 성립된 단일민족사회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단일민족론자의 입장에서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공존해 온 다양한 민족집단을 극히 미미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이들 異民族 등을 별개의 독립적인 민족적 위치로 성격 짓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전지해 온 단일민족의 신화를 계속 옹호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민족상황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인적이동 증가추세의 영향은 일본

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통적인 일본의 민족상황도 두드러지게 변화되었다. 난민 유입의 급증, 유학생의 급속한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 국제결혼의 확산 등을 통한 일본 사회 내의 외국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개별 민족집단의 민족적 존재성이 새로운 시대환경과 더불어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런 시대여건과 국내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민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오랫동안 단일민족 사회의 순수성을 주장해 오던 일본으로서도 더이상 단일민족의 순수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크게 변화되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일본 인구 1억 2556만 8504명의 1.08%인 136만 2371명이 '등록된 외국인'이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6.7%(28만 7054명), 1985년보다는 60.2%(51만 1759명)가 각각 증가된 숫자다.²⁾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본의 인구 구성이 변화되면서 전래적인 단일민족 사회의 명분은 더이상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른바 '先

住民族인 아이누와 재일코리안, 중국인처럼 오래 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민족집단과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3세계 각 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더해 장·단기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 사회의 신화 속의 일본은 바야흐로 다양한 소수민족(에스니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³⁾

구체적으로 현재 일본의 민족구성은 (1) 일본 국적을 보유한 '혈통'에 의한 일본국민 (2) 귀화 내지는 동화정책의 압력에서도 '소수민족'으로서의 문화를 잃지 않고 있는 귀화한 코리안, 아이누 등의 일본국민 (3) 일본 국적이 없으면서도 일본 사회에 '在日'로서 定住하고 있는 사람 (4) 정식 입국 수속을 거쳐 일본에 입국, 장기체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돌아갈 모국이 있는 일반 외국인 (5) 광의의 난민 (6) 불법 입국 체류자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재일외국인 급증이 가져온 일본사회의 민족관계 변화와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인의 해외 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도 일본 민족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또 다른 한 내용을 구성한다. 즉 국제적인 인적 교류의 보편화 경향에 따라서 '在日外國人' 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在外日本人'의 수적 증가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현상 또한 일본의 민족구도를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본인의 해외 이주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동안은 주로 일찍부터 일본인의 대규모 이민 대상국이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극히 상징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던 것이나, 최

일본의 민족구성은 ● 일본 국적을 보유한 '혈통'에 의한 일본국민 ● 귀화 내지는 동화정책의 압력에서도 '소수민족'으로서의 문화를 잃지 않고 있는 귀화한 코리안·아이누 등 ● 일본 국적이 없으면서도 일본 사회에 '재일'로 정주하고 있는 사람 ● 일본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면서 돌아갈 모국이 있는 일반 외국인 ● 광의의 난민 ● 불법 입국 체류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 들어 재외 거주 일본인의 상황은 거주 국가의 다변화와 이주 인구의 대량화가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인의 민족 환경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렇듯 '재일외국인'과 '재외일본인'의 동시적인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민족관계는 기존의 단일민족국가 의 틀을 근본적인 면에서 허물어뜨리기 시작하였으

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일민족'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던 일본의 민족정책 또한 커다란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인위적 '단일민족사회' 논의 형성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일본 국가통합의 중심적 개념으로 명확히 떠오르는 것은 명치 초기 '內地雜居' 논쟁의 시기였다. 1899년에 이르러 그 동안 일본 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을 둘러싸고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소위 '內地雜居' 문제가 제한적으로나마 전향적 결론을 보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일본은 '日本人'과 '外國人'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1899년 서구 열강이 기존의 일본과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의 전제로 일본 국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에 대해 그 동안 강요해 오던 특정 거주지 설정 철폐와 외국인의 여행, 거주, 영업 자유의 승인을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일본은 국내 외국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의 철폐와 淸國人 노동자가 일본인과 같이 어울려 사는—'內地雜居'를 허용했다. 여기서부터 비

로소 일본에서는 '일본인' 과 '외국인' 이 혼재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내지잡거론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입장에 섰다. 내지잡거 반대론의 중심인물이었던 井上哲次郎은 그의 『内地雜居論』에서 "다양한 인종이 한 나라에 잡거하여 다양한 풍속 종교 언어 등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대개는 그 나라의 통합력을 손상시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태고적에는 다양한 인종의 인민들이 모여 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 아래서 서구 열강의 국민국가 체제와 효과적으로 경쟁해 가기 위해서도 일치단결된 '단일민족'에 의한 국민국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⁵⁾

결과적으로 일본은 외부에서의 강요로 내지잡거를 허용하면서도 그들의 단일민족론은 조금도 손상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거주지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내지잡거 허용에 앞선 1899년 3월 2일 「北海道舊土人保護法」을 공포하여 보다 적극적인 아이누족의 격리를 통한 동화정책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3월 16일에는 父系血統主義의 '국적법'이 법률 제66호로 공포되어 이듬해인 1900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더라도 국무대신, 대심원장, 제국의회 의원 등의 중요 직책에는 등용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순수한 일본인과 귀화 일본인 사이의 분명한 구획을 설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출생하던 외국에서 출생하던 아버지가 일본인이면 그 자식은 일본인이 되나(동법 제1-4조), 반대로 일본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생활했다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그 자식은 외국인으로 분류 관리되고, 만약 이들이 귀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2류일본인'의 지위밖에 가질 수 없었다.

결국 국적법은 순수한 일본인과 귀화에 의한 일본인이라는 두 '종류의 국민'을 설계해 놓았을 뿐 아니

라, 또 이 같은 '국민'과 이들과는 또 다른 범주의 '외국인'과의 경계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하여 '외국인'(어떤 의미에서는 동화하지 않은 원주민,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도 포함)은 국가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질적인 민족적 요소들을 단일민족 사회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요소로 치부하려 했다.⁶⁾

단일 민족론의 수단

일본이 명치이래 강력한 국가체제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일본민족의 '단일성' 조장을 통한 이른바 '단일민족론'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고대 이래 일본열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구성은 인종적으로 대단히 복잡적이었다. 원주민인 아이누, 남방계 인구,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건너간 이른바 '渡來人' 등 수많은 외래의 민족집단이 섬나라 일본에서 함께 공존해 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들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인구 구성의 다양성에서 오는 마찰과 분열을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이른바 '단일민족'의 신화를 주형하기 위해 애써왔다.

통일국가로서의 일본을 새롭게 건설함에 있어 가장 먼저 봉합해야 할 과제는 다양한 에스니시티 간의 분열성이었다. 이러한 분열성은 고대로부터의 다양한 종족집단 간의 거리는 물론 이러한 거리가 봉건제 아래서 더욱 고착화되면서 전반적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에스니시티 간의 경계 의식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원활한 국가통일의 이루어질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했다. 여기서 명치 개혁의 주도자들이 이러한 인종적·지역적인 분열을 봉합하고 전반적인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로 단일민족적인 민족통일의 새로운 과제를

신국가체제 구축의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갖가지 대안들을 강구해 나갔다.

일본에서 단일민족국가라는 의식은 명치 이후 국민의식으로 정착된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단일민족 국가인 일본에서는 유럽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국내의 소수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미 생활력을 잃은 원주민인 아이누, 명나라 말기 극소수의 망명자들, 임진

왜란 이후 한반도에서 끌려온 포로 등은 아주 미미한 존재로 일본의 민족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면 일본민족의 형성도 단순한 동일 민족의 통일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봉건제도의 붕괴에 의한 민족 단일성 형성 또한 국가적, 국민적 통일에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자결권적 사상은 일본민족의 형성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민족도 국민도 아주 단순하게 혼합되고 동일화되었으며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중앙집권적 국민통일 또한 초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씨족사회의 해체에 따른 근대국가의 성립도 고대국가에 직결하여 생각하게 되고, 인종도 부족도 씨족도 민족도 국민도 그 모두가 초역사적으로 동일시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⁷⁾

그러나 고대 이래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일본민족의 단일성 주장은 다분히 사실과는 거리를 둔 신화적 가설이다. 한 국가, 한 민족, 한 언어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단일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코 고대로부터의 일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보면 막부 말기 국학자들의 이데올로기에 그 발단을 두고 있는 것

작금의 국내외적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단일민족론은 상당한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족정책의 기초로서 단일민족에 대한 집착한 여전하다. 이는 지금에 와서 민족단일성의 논리를 방기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 단일성의 논리가 그동안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명치 유신 이후의 일이다. 일본은 유신 이후 당면한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국민 단일성의 논리를 전국화하고 일반화해 나가려고 애써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단일민족론의 일반화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일민족 논리는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대만과 조선 등을 병합하고 그곳의 외국인을 일본국민으로 편입시키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복합적 민

족론'에 그 자리를 물러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태평양전쟁의 패배와 이에 따른 점령지에서의 퇴각과 더불어 일본은 다시 단일민족론으로 그들의 민족정책을 재수정, 국민적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일본이 근대 국가 성립 이래, 제국주의기의 약 50여 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민족 신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그들 민족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민족적인 이질성의 정도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현존하는 민족적인 이질성에 대한 통합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균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한 민족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단일민족론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제반 국내외적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단일민족론은 상당한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족정책의 기초로서 단일민족에 대한 집착한 여전하다. 이는 지금에 와서 민족단일성의 논리를 방기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이 단일성의 논리가 그동안 상당 부분 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일본의 민족정책

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단일민족의 신화를 주형하기 위해 동원한 제반 정책을 살펴보자.

이민족에 대한 동화 작업

일본은 그들의 '단일민족성'을 지탱하기 위해 일본인의 구성이 다양한 외래집단이 바다를 건너와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묘한 입장을 취한다. 일본에서는 과거 여러 민족집단이 일본으로 건너온 사실은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외래 '渡來人' 집단이 일본열도의 주도 민족인 '和人' 내지는 '아마도' 집단에 의한 장기간의 동화과정을 통하여 이미 '日本人化'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민족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일본열도에 이민족의 도래는 있었지만 이런 사실이 일본의 민족적 단일성에 하등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주요한 이민족 집단에 대한 동화과정을 정리해 본다.

아이누 정책

일본의 대내적인 원주민집단으로는 우선 '아이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蝦夷(아이누) 혹은 '舊土人'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아이누'는 일본의 근대국가 성립 이전인 幕藩時期부터 탄압과 격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누에 대한 본격적인 동화정책이 펼쳐진 것은 일본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명치 정부 이후의 일이다. 당시의 아이누 수는 대체로 2~5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명치 정부는 이들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동화정책을 시작했다. 명치2년 막부는 우선 蝦夷島를 北海道로 개칭함과 동시에 '아이누'를 '舊土人'으로 바꿔 불렀다.⁹⁾

뿐만 아니라 명치 정부는 북해도와 아이누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이곳에 開拓使를 두고 일상불란한 동화정책을 펼쳤다. 북해도에 파견된 개척사는

많은 內地人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북해도의 개척과 함께 이곳 주민과의 공존을 꾀하는 한편, 이곳 주민에 대해서는 종래의 습관을 말소시키면서 동화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누에 대해서는 우선 과거 3백여 년 간 계속시켜 온 漁場請負制度를 폐지시키고 이들을 청부인들로부터 해방시켰으며, 부락 통치의 권한을 戶場役長으로 옮기는 등으로 아이누들의 '日本人化'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⁹⁾

명치 정부는 또 내지인(일본인)을 대거 북해도로 이주시켜, 그들로 하여금 북해도 개발과 또 아이누에 대한 동화의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숫자로 보면 명치5년 8만 8900여 명에 불과했던 북해도의 인구는 명치10년이 되자 18만 여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명치15년에는 2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인구의 급증은 명치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해도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본토인을 대거 이곳으로 이주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인구의 급증이 가져다준 영향 또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북해도로 이주해 온 본토인은 그곳에서 장기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정착 의지보다는 그곳의 갖가지 자연자원이라든가 해산물의 남획에 여념이 없는 이른바 일확천금에 들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인구 증가는 자연히 북해도 천혜의 각종 자원의 고갈을 야기했으며, 그곳의 자연자원에 의지한 삶을 영위해 오던 아이누 집단에게는 명치 정부의 본토인 이주 정책이야말로 민족집단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해도 개척사는 아이누를 과거의 수렵이나 어업생활에서 정착적인 농업종사자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들에게는 명치5년 제정된 「北海道土地拂下規則」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불하하는 한편 가옥이나 농기구와 종자를 나눠주고 더러는 농업지도원을 파견하여 농사일을 지도하는 등의 권농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농업과는 인연이 없이 살아온 아이누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일본은 일본인의 구성이 다양한 외래집단이 바다를 건너와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묘한 입장을 취한다. 과거 여러 민족집단이 건너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도래인' 집단이 일본열도의 주도 민족인 '화인' 내지는 '야마토' 집단에 의한 동화 과정을 통하여 이미 '일본인화'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민족성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주장한다.

없었음은 물론이다. 불하받은 토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등 농사를 통한 정착 의지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본토 화인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세상물정에 눈이 밝지 못한 아이누는 갖가지 면에서 본토에서 건너온 화인에게 잦은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북해도에서의 본토인들과 아이누와의 이런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명치 정부는 아이누에 대한 보호와 동화를 목적

으로 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이른바 「北海道舊土人保護法」으로 결실되었다.¹⁰⁾

새 보호법은 우선 토지의 피해로부터 아이누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북해도 구토인 한 가정에 1만 5천 평 이내의 토지를 조건부로 주었는데, 이 토지는 상속 이외에는 소유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질권·저당권·지상권 또는 소작권의 설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아이누를 農民化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부여된 토지의 용도 이외 사용이나 이를 다른 사람들이 편취하는 일이 없이 본인만이 계속하여 농사짓는 일에 이 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명확히 했다. 이는 아이누에게 부여된 농사용 토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많은 경우 본토의 일본인이 편취하는 일이 다반사여서¹¹⁾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아이누 정착을 위한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¹²⁾

보호법은 민법상의 금치산 규정 비슷하게 보이나, 이는 급격한 사회적 환경변화 과정에서 비문화민족인 아이누를 원시적인 생활로부터 문화적인 생활로 유도

하면서 동화시켜 나가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동법에서는 토지문제뿐 아니라, 아이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의 자식에게는 무료 취학케 하고, 또 학교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등 제반 사회 문화 시설의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아이누는 본시 문자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치 정부는 대대적인 '土人教育'이라는 명목의 일본어 교육을 통한 동화정책을 추진, 거의 대부분의 아이누가 이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어를 습득, 자연적인 동화의 길을 따르

게 했다.

또 아이누에게 일본의 호적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日本國民'으로 만들어나갔다. 아이누가 어떤 과정으로 일본의 호적을 가질 수 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内地雜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일본식 氏名으로 개칭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이누와 일본인(和人)의 혼혈도 진전되어 '혈통' 적으로도 '순수' 한 아이누의 수는 격감했다.

아이누에 대한 이 같은 명치 정부의 동화정책의 결과 소화10년 경부터 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이들의 수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이누 인구의 이 같은 고정화 현상은 명치 이래 아이누의 일본인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더이상 동족집단의 증가가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치 이래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아이누족을 일정한 장소에 정착시키고, 농토를 주고, 어업조합을 설립하여 생계를 도와주고, 또 문자를 가르쳐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각종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등으로 「구토인보호법」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성과는 대단했다. 특히 이 법의 근간

이었던 권농정책의 성공은 특기할 만하다. 당초 수렵 생활을 하던 아이누를 和人化하는 데 농업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¹³⁾

일본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으로 아이누의 일본인으로서의 동화 정도는 크게 진척되었다. 1980년의 국제인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일본 국내에 소수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기된 일본 정부의 보고서나, 1986년 “일본은 단일민족국가”라는 中曾根 수상 발언은 아이누의 동화 정도를 그대로 반영한 정치적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인 대책

고대부터 한반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일본으로 유입해 들어갔음은 역사적으로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유입뿐 아니라 더러는 한반도의 특정 집단이 일본을 정복해서 일본의 주력 집단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도 별다른 이론이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듯 일본을 형성하고 있는 인구집단 가운데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의 일본 유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인구 유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이의 역사적인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유입 인구가 그 후 긴 역사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차별성이나 독자적인 정체성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대의 인적 교류를 별개로 하고 근대에 한정해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는 임진왜란 때로 볼 수 있다. 당시 대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江戶幕府에서 이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단 행정기관으로서의 宗門人別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차별은 명치유신 이후, 1871년 호적법이 제정되면서 한인도 일

본 호적에 등재되었으며,¹⁴⁾ 이후 1899년 처음으로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이들의 동화는 법적으로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인에 대한 동화정책은 그 후 일제의 한반도 합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한인에 대한 동화정책이 명실상부한 단일민족화를 목적으로 한 동화작업이었다면 이때 즉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외국과 외국민족을 예측화시키는 과정에서 동화는 형식적인 동화 즉 제국신민으로서의 차별성을 띠는 ‘예속적 공존’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의해, 당시 한인은 이미 외국인 이 아닌 ‘皇民’ 내지 ‘大日本帝國의 臣民’이 됨으로써 일본국적자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일본통치하의 한인에게 부여된 일본국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國籍類似制度로 공법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이는 단지 ‘一視同仁’으로 불리던 동화주의의 형식적인 가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통하여 인접국과 그 국민을 식민지화했던 일본은 이때부터 민족질서도 제국적인 민족질서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서는 이미 과거 단일민족 사회를 전제로 했던 이민족집단에 대한 동화와는 다른 다민족 공존의 제국주의적 민족환경 속에서의 개별 이민족 집단에 대한 식민적 동화라고 하는 데 그 커다란 차이가 있다.¹⁵⁾

이러한 제국적이고 식민적 원칙에 입각한 이민족 정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내용과 형식적 내용 사이에 차이를 둔 이중적인 정책이었다. 때문에 國籍과 戶籍은 불가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인에게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朝鮮民事令」에 근거한 조선호적을 별도로 만들어, 이것을 한인에게만 적용함으로써 민족차별의 법적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일본식 교육이나 創始改名을 강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한인을 일본인화하는 이

중적인 이민족 정책을 교묘하게 병존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일본 정부의 한인 '동화'의 법적 픽션으로서의 호적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부터는 이가 곧바로 한인 '배제' 메커니즘으로 돌변해 갔다.

종전 당시, 이주나 강제 연행에 의해 일본 국내에 거주하던 한인의 수는 200만 명도 넘었으나, 일본 패전 후 그 반수 이상은 고국으로 되돌아갔으나 약 60만 명은

갓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먼저 전후에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재일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정지시켰다. 재일한인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불충분한 형태로나마 선거권이 부여되어 왔으나 일본은 패전 후인 1945년 12월 중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시키로 하면서 재일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배제 정책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1946년 12월에는 「일본으로의 불법입국에 관한 각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반 년 후 「외국인등록령」의 전신이 된 것으로 일단 일본에서 본국으로 귀국했던 한인의 '불법' '재'입국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종전시 대거 귀국했던 한인은 남한에서의 심한 인플레이션과 콜레라의 유행 등 어려움이 겹치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각서에는 "본국에 돌아간 비일본인은 상업교통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본에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입국을 차단했다. 당시 한인인과 대만인은 여전히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각서 및 1947년 5월에 제정된 「外國人登錄令」

전후 일본 정부는 먼저 재일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정지시켰다. 재일한인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불충분한 형태로나마 선거권이 부여되어 왔으나 일본은 패전 후인 1945년 12월 중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시키로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에서는 이들의 신분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갑자기 변경시켜 이들에 대한 배제정책을 분명히 했다. 1951년에는 「출입국관리령」이 제정되고, 1952년 전후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부터는 조선과 대만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갑자기 '외국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패전 후 일본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한인인과 대만인 등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법률 126호2조6항'에 의해 재류자격을 규정할 수 없는, '여권'이 없는 불안정한 신분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그들의 전쟁 수행에 일방적으로 동원됐던 한인이나 중국(대만)인을 일본 민족의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단일민족국가' 신화는 이때 한층 강화되었다. 1955년에는 외국인등록법에 指紋捺捺制度가 도입되어 이른바 '외국인'으로서 재일한인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또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일본국적의 보유를 수혜 조건으로 하는 국적 조항이 도입되었고, 재일한인의 공무취임권을 부정하는 '당연의 법리'가 주장되기에 이른 것도 이 시기였다.

'당연의 법리'라는 것은 일본 국적의 보유가 일본의 공무원에 취임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뜻한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나 국가 의지의 형성'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장차 이러한 직책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채용 단계에서 국적 보유를 의무사항으로 하여도 좋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당연의 법리'는 지방공무원과 교원 등의 채용에도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보다 확대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외국인 배제 정책은 1965년 한일조약,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체결되어 '협정영주'라는 자격이 설계되면서 또다른 변형을 만들어냈다. 이는 재일한국인을 韓國籍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인정받으며, 일본에서의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법적 우대 조치를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많은 '在日韓國人'이 탄생된다. 그리고 이때 '한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조선적'으로 취급되어, 협정영주권자가 받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태어난 협정3세의 처우는 1991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견 재일한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처럼 보이는 이 정책의 배경에는 특수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려는 당시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가 크게 작용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황국 신민'들의 '외국인 화' 정책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더불어 일본은 신속하게 전쟁기에 설계했던 제국주의적 민족질서를 정리해 나갔다. 패전의 황망함 속에서도 그들의 제국주의 식민정책으로 흡수 병합한 이웃나라 국민과 또 전쟁에 강제 동원했던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신민' (주로 한국인)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루빨리 이른바 '일본민족'에서 제거하려는 작업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추진했다.

당초 일본의 왜곡된 정보 제공 등에 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SCAP, 이하 GHQ로 지칭)의 조처라는 간접적 방법으로 시작된 제국주의적 민족질서 정리작업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일본의 전후처리를 주도한 미국 국무성은 전후의 재일한인의 국적 처리에 관해 '조선 - 조선 이외의 한인 - 재일한인의 귀환' (1945년 7월 6일)이라는

정책 입안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는 전후 본국으로의 귀환 대상자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모든 한인'으로 하고, 이와는 달리 '일본국적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본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귀환을 원하는 사람은 전부 귀환하여 본국의 국적을 찾으면 되고, 일본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본에 계속 남아 일본인으로 생활할 수도 있도록 하는 자유 의사에 의한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다.¹⁶⁾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재일한인에 대한 당초 미 국무성의 입장은 최종적인 GHQ의 기본방침 속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GHQ 초기 재일한인 정책의 기본방침이 된 것은 1945년 11월 1일 발표된 「일본점령및관리틀위한연합국최고사령관의후초기의기본지령」으로 여기서는 연합군의 재일 한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解放民族'과 '敵國民'이라는 이중적이고 애매한 것이었다.¹⁷⁾

최고사령관은 대만계 중국인과 한인을 군사상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민족으로서 취급해야 한다. 그들은 이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일본신민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 국민으로 취급해도 좋다. 그들의 국적·주소·현재지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만약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고사령관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 귀환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권은 연합국민의 귀환에 주어진다.

이 기본정책은 1946년 6월 5일자 「在日非日本人의引揚등에관한국동위원회의정책결정」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전후 재일외국인에 대한 연합군사령부의 일관된 기본 방침으로 기능했다. 이로써 재일한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방민족'이 되기도 '적국민'으로 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더불어 일본은 신속하게 전쟁기에 설계했던 제국주의적 민족질서를 정리해 나갔다. 패전의 황망함 속에서도 그들의 제국주의 식민 정책으로 흡수 병합한 이웃나라 국민과 또 전쟁에 강제동원했던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신민'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루빨리 '일본민족'에서 제거하려는 작업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추진했다.

급될 수도 있는 어물쩍한 성격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 연합군 사령부는 재일외국인의 처리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보다도 이들의 본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귀환된 이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정책의 주안을 두었다. 연합군사령부는 이러한 재일외국인의 본국 이양의 이유로, 첫째 해방민족을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1945년 11월 1일의 「初期基本指令」에서 밝힌 원칙의 이행, 둘째 파인인구를

를 가급적 감소시키는 것으로 극도로 열악한 일본의 식량사정을 완화시키는 목적, 셋째 일본의 경찰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중국인과 한인을 치안대책으로 송환시키려는 목적 등을 거론하고 있다.¹⁸⁾

그러나 그 후 연합군사령부는 “본국에의 귀환을 거절하는 한인은 정당하게 수립된 조선정부가 조선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다(1946. 11. 5, GHQ민간정보교육국 발표·1946. 11. 12, GHQ 섭외국 발표). 이는 식민지 지배하 일본제국 신민의 지위로부터 해방된 것이 분명한 한인의 강한 반발을 받아 “인양을 거절하고 이 나라에 거주하기를 선택한 한인은 일본의 법률 및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이를 선택한 것이다. 법률 및 규칙의 준수 의무를 한인에게 면제하는 것 같은 재일한인에게 유리한 차별대우는 일종의 치외법권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도 시인될 수 없다”(1946. 11. 29, GHQ 섭외국 발표)고 수정 발표 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일본에 잔류하는 한인은 조선정부의 수립에 관계없이 일본법상 일단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다”(1948. 8. 16, POLAD 「재동경미국정치고문」 문서

제580호 '재일 한인의 지위')는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속지주의적 시민권 발상이 망국의 한을 경험하여 국적을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핵으로 생각하는 한인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제국주의 국가 미국정부와 그의 하수인이었던 GHQ의 민족해방 사상 결여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상과 같이 연합군사령부가 재일한인을 비롯한 전시 동원된 외국인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국적 선택

을 내용으로 하는 그들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데는 상당부분 일본 정부의 의도가 그 배후에서 작용하면서 연합군 사령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재일외국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여 이들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소요를 최소화하고 또 전후의 피폐한 경제 상황 아래서 경제적인 배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몫을 줄이려 했다. 일본 정부가 당시 재일외국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데서도 이들의 전후 외국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다.²⁰⁾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내무·사법·농림·후생·대장성 등 관계성이 일체가 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락을 긴밀히 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며, … 그들 중 본국 귀국 희망자는 조속히 귀환시키고, 일본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본인과 같은 배급과 단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기 위해서 등록을 실시하여 귀환 희망 유무를 조사하고, 불량분자는 강제송환하고, 불량 단체는 강제 해산을 명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 사법권을 확립하며, 이

들의 불법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잔류 희망자에 대해서도 이들의 사정을 분명히 알아보고 이에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이들의 귀환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잔류자에 대해서는 물자 배급 등 하등의 특권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단할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겉으로는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을 자기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실제로는 더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방해하면서 이들을 가급적 그들의 모국으로 내몰려는 '추방' 의지를 처음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추방' 계획은 직·간접으로 연합군사령부의 재일외국인 정책에 반영되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또 그 후 외국인 등록법으로 비화되면서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강제 동원된 이들은 전후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일본국민'의 위치에서 '재일외국인'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강제당했다.

일본정부는 전후 한결같이 이들에 대해 본국으로의 '귀환'이나 '일본 내의 외국인화'를 통한 '분리와 배제'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정책으로 황민화했고, 또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했던 이들 이민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지금의 상황에서 더없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하여 이들로부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식민지 국민의 배제 즉 '외국인'화 정책은 일찍부터 준비되어 왔다. 1949년 당시 吉田茂 수상이 GHQ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한인을 일본정부의 비용으로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 일본 잔류를 희망하는 한인은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허가는 일본의 경제부흥에 공헌할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한인에게 부여된다"²¹⁾는 한인 강제추방 정

책의 승인을 요청한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강제 추방 요청은 연합군사령부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그 후의 한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들을 처리하는 GHQ측의 원칙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1945년 12월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 부칙에서 일본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 전 항의 사람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수 없다"면서, 재일한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참정권으로부터의 배제를 일찍이 법제화했으며, 또 1947년 5월의 외국인등록령을 "제11조 대만인 가운데 내무대신이 정하는 사람 및 한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재일한인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본국민이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이 가진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분간 정지한다"는 명분으로 참정권으로부터 배제하면서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고 거주권마저 부정(입국허가가 필요하며, 강제퇴거가 있다는 것은 일본에서의 거주권이 부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했다. 바로 여기서, 의무는 일본인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으나 참정권과 거주권이라는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박탈된 기형적인 일본국적—재일외국인이 출현한 것이다.²²⁾

일본의 재일외국인의 배제정책은 전후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불법화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전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 동안 일본에 거주하다가 일단 본국에 들어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한인을 '불법입국'으로 취급한 것이 1946년 4월부터 기록되고 있다. 이 시기 한인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왜 불법화되었는가. 이 배경에는 GHQ가 작용하고 있었다.

1946년 3월 16일자 GHQ지령(SCAPIN제822호 '인양')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되어 있다.

본국에 인양된 비일본인은 연합군최고사령관의 허가가 없는 한, 상업교통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본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령의 원주, 이 지령의 전반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 '비일본인'(non-Japanese)이라는 용어는 중국인·대만인·한인·오끼나와인을 포함한다.

또 1946년 4월 2일자 GHQ의 지령(SCAPIN 제852호 「비일본

인의 입국 및 등록」)에서는 “점령군에 속하지 않은 비일본인은 수시로 일본 입국의 허가가 부여될 것이다”고 규정, 일본에 있던 한인이 일단 본국에 돌아갔던 사람이 일본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GHQ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에서 본국으로의 귀국은 자유지만, 본국에서 일본으로의 입국은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 자유왕래의 금지다. GHQ의 허가가 있으면 일본 입국이 허가되나, 그것은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가 없으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 많은 한인의 밀입국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SCAPIN 제852호의 명령에 근거하여 47년 5월 2일에 지령 제207호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시행했으며, 그 후 '불법입국'은 외국인등록령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리고 이 GHQ에 의한 한인의 일본 입국 금지조치는 전후 재일 한인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전후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의 입관법제의 제약 근원은 특히 이 두 개의 GHQ 지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²³⁾

일본은 당초의 「외국인등록령」(1947년 포츠담 칙령 207호)이 실시된 지 2년 후인 1949년 12월 3일 「외국인등록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1949년 정령

일본의 재일외국인 배제정책은 전후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불법화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전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 동안 일본에 거주하다가 일단 본국에 돌아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한인을 '불법입국'으로 취급한 것이 1946년 4월부터 기록되고 있다.

381호)를 공포했다. 이에 의해 일본은 등록증명서 교부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일한인의 실태를 장악하기 위한 일제 교체 제도를 신설, 재류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련번호제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에 의해 포츠담 칙령이었던 「외국인등록령」은 폐지되고, 1951년 10월 4일 포츠담 정령으로서 제정된 「출입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 동관리령(1952

년, 법률126호 4조)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을 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2년 4월 28일 출입국 문제 및 강제퇴거 문제가 분리되면서 「출입국관리령」(1952년 법률126호)에 이어, 또 하나는 「외국인등록법」(1952년 법률 제125호)이 제정 실시되었다. 이로써 재일한인을 규제하고, 탄압하는 기본법이 완성된 것이다.²⁴⁾

일본에서는 재일한인의 외국인으로서의 국적 귀속국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 재일한인을 외국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재일한인을 강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방 법규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며 인권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²⁵⁾

그래서 당시의 한인은 한반도에 있거나 일본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일본 법률에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권리의 행사에서는 다양한 차별을 설계하면서도²⁶⁾ 의무에서는 일본들과 똑같이 취급했던 것이다. 특히 재일한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재일한인이 '일본국민' 이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후 과거 일본에 빼앗긴 민족교육을 되찾기 위해서 재일한인은 각지에서 자주적으로 민족학교를 건설했다. 그러나 1948년 1월, 일본의 문부성은 한인은 그 자식들에게 조선의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며 '일본국민' 으로서 일본 학교에 취학시키는 '의무' 가 있기 때문에 한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민족교육을 부정했다.

이렇듯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일본의 일방적인 기회주의적 입장을 유지시켜 왔다. 일본은 패전국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전쟁시의 병합민족에 대한 국적선택이나 원래의 국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차별정책을 고집, 이것이 현재의 재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뿌리라고 작용하고 있다.²⁷⁾

결국 이렇게 하여 전후 일본에 살고 있던 과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국신민' 이 되었던 사람들은 전후에도 자기들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으로 배척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적으로 다시 '추방' 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국 송환정책

재일 한인 송환정책

해방 후 240만 명 정도이던 재일한인 거의 대부분이 귀국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던 동포는 1948년 통계로 약 60만 명 정도였다. 이 한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했고, 1946년 8월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9월에는 '출입국관리연락협의회'를 설립했다. 이런 가운데 吉田내각은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인을 그들의 고국으로 보내기를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일본의 식량사정, 둘째 일본경제 재건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범죄 우

려를 들고 있다.²⁸⁾

이런 과정을 거쳐 그때까지 일본의 법률로 '일본국민' 이던 재일한인 60여만 명은 졸지에 '외국인' 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재류자격이 없이 재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입법으로 종래의 법제를 정비한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령」을 개악한 「외국인등록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 「외국인등록법」은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기 때문에 재일한인의 반대운동에 의해 수차 실시가 연기되다가 3년 후인 1955년에 실시되었다.

재일한인은 「출입국관리령」(1981년 6월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으로 개정) 제24조의 강제퇴거 조항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당했으며 이는 '한일조약' 체결 이후 특히 증대했다. 1950년부터 1980년 6월까지 강제송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4만 6089명이나, 이 가운데 재일한인이 대다수인 3만 3864명(74%)이다. 강제 퇴거의 이유는 불법입국, 재류자격 외 활동, 일본 내지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 법령 위반자, 치안 교란자 등이나,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불법입국으로, 앞의 기간에 1만 9962명이 大村 수용소로부터 집단 송환당했다.

또 협정영주권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특별법」 제6조에서 퇴거강제 사유를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본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 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는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게 했다.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한 거류권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1969~1973년에 걸쳐 4회나 「출입국관리령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재일한인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 「UN난민조약」에도 가입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조치로 「출입국관리령」의 개정을 1981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 요강은 재류 조건과 강제 퇴거 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으나, 이는 재일한인의

일본인애로의 동화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적 대응이었다.²⁹⁾

북한 송환 정책

해방 이후 재일한인의 집단적인 귀국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전쟁에 패한 일본의 경제가 극도로 피폐함에 따라 재일한인의 생활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해질 대로 열악해지고, 이에 민족적 차별까지 더해, 재일한인의 약 80퍼센트가 실업 내지 반실업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총련과 일본의 일부 행정

기관까지 의도적인 부추김 속에서 1953년부터 자의 반 타의반으로 북한의 전후 복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1958년 8월이 되자 조총련 등이 앞장서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을 선전하며 재일한인의 북한 귀국 운동을 펼쳤다. 이에 북한 당국도 이들의 귀국을 환영,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모든 조건을 보장한다고 발표, 귀국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졌다.³⁰⁾ 뿐 아니라 일본 정계에서도 전 총리대신 鳩山一郎을 포함한 초당파 인사를 발기인으로 하는 '재일조선귀국협력회'가 결성(1958. 11. 17)됐고, 이러한 귀국운동에 고무되어 재일한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지지 결의한 지방자치체도 북송 협정 조인까지 283곳에 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9년 2월 13일 일본 정부(岸內閣)는 세계인권선언의 "누구나 自國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도 갈 수 있고, 또 自國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 북한으로의 귀국 실현을 보장하는 '關議了解'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재일한인을 배제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³¹⁾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한 거류권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1969~1973년에 걸쳐 4회나 「출입국관리령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재일한인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 「UN난민조약」에도 가입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조치로 「출입국관리령」의 개정을 1981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 및 민간 측에서는 이 북한으로의 '귀환'이 '한일회담'을 방해하며, 또 한일 양국을 이간시키는 술책이며, 북한정권을 승인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군사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민단은 2월 초 '북한송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북한송환'은 한국 주권의 침해로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항의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특히 전국적인 북송반대 투쟁 운동을 전개, 국내외의 각 방면에서의 항의 선전 운동을 활발히 떠나갔

다. 이에 반해 조총련 측은 귀국촉진요구대중집회를 각지에서 개최하고 朝日적십자회담을 요구하면서 神戶~東京 간 자전거 행진도 벌였다. 4월 13일에는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사의 중개료, 朝日赤十字 대표단 회의가 열려, 6월에는 귀환에 대한 협정문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8월 13일에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귀국협정」이 조인되었다.

이렇게 되자 민간측의 반대운동은 더욱 가열되었다. 8월 15일 新瀉에서 북송반대 민중결기 대회를 시작으로 9~11월에는 연속적으로 쫓기대회와 항의대모 등을 개최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남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 기운이 재일동포 사회에 퍼져 있었고, 또 민간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강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그래서 12월 14일 제1차 귀국선이 975명의 재일한인을 태우고 북한 청진항을 향해 떠났고, 이후 모두 9만 3천여 명이 북송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귀화정책

일본은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으로 '재일의국인' 등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일본인에 대한 귀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귀화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당초 그 공동체에 예속하고 있지 않던 개인을 새롭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은 국적법 제5-9조에서 귀화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일본 국적의 취득방법은 출생시의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외국인의 '歸化'에 의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일본에서는 血統主義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라도父가 반드시 일본인이어야 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普通歸化'와 '特別歸化'의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으며, 전자는 일반 외국인의 일반적인 귀화를 치칭하며, 후자는 일본에 어떤 특별한 관계나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귀화의 조건을 완화 내지는 면제시켜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³²⁾

明治政府는 '戶籍'과 대칭적인 '國籍'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구체화시킨다. 근대 이전에는 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氏와 名'을, 명치정부는 공적인 권력 시스템인 '戶籍' 가운데 포함시켰으며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모든 귀화자들에 대해서 일본식의 '氏와 名'을 호적에 등재하도록 강요했다. 국가에 의한 '氏名' 규제는 '타민족' 동화의 촉진과 '타민족'의 통제를 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아이누에게 아이누식 씨명을 포기시키고 일본식 '氏名'을 사용하여 호적에 등재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아이누의 당초의 씨명이 없어져가는 것과, 아이누의 문화가 그 모습을 없애가는 것이 거의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되어 갔다.³³⁾

재일한인의 경우에는 과거 '創氏改名'한 부모의 성을 通名으로 상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편의상 그 씨명을 인정한다는 한인 고유의 호적 실무도 있었다. 또 회망하는 경우, 轉籍하는 것으로 본인의 조선식 씨명뿐 아니라, 부모의 조선식 氏名까지를 호적으로

부터 말소하는 것도, 또 '귀화에 의한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형식상 완전히 없애는 것도 가능했다. 귀화에 따라 씨명을 일본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귀화가, 외국인을 그 민족성을 보지한 채 받아들이는 '市民的 歸化'가 아니라, 그 민족성을 소거하고, 일본인 사회에 완전히 융합, 소수민족으로서의 존재를 숨기고마는 '同化的인 歸化'의 심벌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귀화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즉 '後天的日本人'의 경우에는 출생에 의해 민법상으로 氏를 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귀화에 의해 새롭게 일본인으로서의 氏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귀화에 의한 氏의 설정은 일본인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氏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氏는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귀화시 자유로운 氏名の 설정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며, 현실적으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신 호적의 취득 과정에서 일본류의 氏名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귀화인의 氏名을 일본인화함으로써 더더욱 귀화에 의한 '일본인화'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명을 통한 귀화인의 씨명 등재는 거의 관례화되어 왔다.³⁵⁾

또 신戶籍法이 생기고 난 이후 상당기간까지는 귀화자가 새로운 氏名을 만들려 할 때는 호적법 50조 및 동 시행규칙 60조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어 왔다. 호적법 제50조는 일본인의 경우에는 출생에 의해 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씨의 새로운 창설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불필요하여 씨에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귀화자의 씨명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씨명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한정하고 있다. 호적법 시행규칙 60조에서는 호적법 50조에서 말하고 있는 씨명에 사용할 수 있는

평이한 한자를 (1) 常用漢字表(소화56년 내각고시 제1호)에 게재된 한자 (2) 별표에 기재된 한자³⁶⁾ (3) 가다가나 및 히라가나 명 등을 들고 있다.³⁷⁾

일본의 외국인 귀화현황을 보면 일본의 귀화정책의 경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귀화는 구국적법(1950년 신국적법 제정) 제정 실시 이전에도 '內務省通達'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다. 구국적법 아래서 외국인의 귀화 수는 1899~1950년(명치 32년 4월 1일부터 소화25년 6월 말까지)까지 총 303 명으로³⁸⁾ 이 숫자는 전후 신국적법 아래서 1952~1973년까지의 귀화자 약 6만 2천 명에 비교해 보면 현저히 적다. 전전의 구헌법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재일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거의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들은 귀화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이들은 귀화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화됨으로써 그들의 영토 변경의 결과, 그들에게는 일본 국적이 부여(대만인은 구국적법 시행, 한인은 구국적법의 條理에 의해)됨으로써 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본국민화'가 강제되었던 것이다.³⁹⁾

1950년 신국적법의 시행부터 1988년까지 귀화가 허가된 외국인인 19만여 명이나, 이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이 재일한인으로 추정된다.⁴⁰⁾

전후 일본의 외국인 귀화 상황을 보면 먼저 1950년대(1952. 4~1962)에는 총 2만 8579명의 외국인이 일본적으로 귀화했는데 그 대부분이 조선국적이었다. 1960년대에는 재일한인의 일본 귀화가 한층 증가되는 상태로 매년 2~3천 명의 한인이 귀화했다. 특히 1960년대 한인의 귀화의 증가는 두 가지 배경에서 그

1970년대에 들어 귀화자 수는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특히 1972년 이후 그 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1972년 가을의 중·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해, 그 직전에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일본으로의 귀화를 바라는 재일중국인(대만계 중국인)에 대해 그들의 국적상실을 허가하기 시작, 이들 무국적이 된 사람들로부터 일본으로의 귀화 신청이 1972년 말부터 쇄도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1959년 8월에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사이에 「재일한인귀환협정」이 성립, 그 해 12월부터 재일한인의 복송이 개시되었는데 바로 이 복송이 일본에 남아 있는 다른 재일교포들에게 일본으로의 귀화를 한층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1964년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조약'의 성립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귀화장려 정책으로 많은 귀화자가 나타나게 된다.⁴¹⁾

이 당시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에 대대적인 귀화장려책은 귀화조건을 완화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정부는 "외국인의 일본 귀화가 매우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든다는 소문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과거 다소의 비행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후 상당기간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계속 하면서 누워치고 있는 사람 역시 귀화자로 손색이 없다는 등으로 전에 없던 이민에 대한 완화책을 법무성이 언명하고 있다. 이때 일본은 가능한 많은 재일한인을 귀화시키려 노력했던 것은 확실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이 시기에 많은 재일한인이 실제로 귀화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⁴²⁾

1970년대에 들어 귀화자 수는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특히 1972년 이후 그 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1972년 가을의 중·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해, 그 직전에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일본으로의 귀화를 바라는 재일중국인(대만계 중국인)에 대해 그들의 국적상실을 허가하기 시작, 이들 무국적이 된 사람들로부터 일본으로의 귀화 신청이 1972년 말부터 쇄도했기 때문이다.

재일 한인의 귀화 허가자 수 추이

연도	귀화허가 총수	조선국적자	조선국적비율(%)	연도	귀화허가 총수	조선국적자	조선국적비율(%)
1950-51	16	-	-	1970	5,379	4,646	87
1952	282	232	82	1971	3,386	2,874	84
1953	1,431	1,326	93	1972	6,825	4,983	73
1954	2,608	2,435	94	1973	13,629	5,769	42
1955	2,661	2,434	91	1974	7,393	3,973	54
1956	2,547	2,290	90	1975	8,568	6,323	74
1957	2,582	2,312	90	1976	5,607	3,951	70
1958	2,594	2,246	87	1977	5,680	4,261	75
1959	3,076	2,737	89	1978	7,391	5,362	73
1960	4,156	3,763	90	1979	6,458	4,701	73
1961	3,013	2,710	90	1980	8,004	5,987	75
1962	3,614	3,222	89	1981	8,823	6,829	77
1963	4,100	3,558	87	1982	8,494	6,521	77
1964	5,445	4,632	85	1983	7,435	5,532	74
1965	4,008	3,438	84	1984	6,169	4,608	75
1966	4,735	3,816	81	1985	6,824	5,040	74
1967	4,150	3,391	82	1986	6,636	5,110	77
1968	3,501	3,194	91	1987	6,222	4,882	78
1969	2,153	1,889	88	1988	5,767	4,595	80
				계	191,442	145,572	76

출처 :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歸化』(明石出版, 1990), p. 7.

재일중국인의 대량 귀화현상은 1974년에 일단 수그러들었다.

이 사이 재일한인의 귀화는 서서한 상승세를 보여, 1970년대에는 연간 4천~5천 명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에 의해 상대적 비율이 90%에서 70%로 떨어지긴 했으나, 절대 수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때부터는 교포 2~3세의 귀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특징이었다.²³⁾

이렇듯 일본 정부가 신국적법 제정 이래 외국인, 특히 재일한인에 대한 귀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은 일본이 기본적으로 재일한인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일본 정착화를 전제로 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이것 때문에 단일

민족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허물 수는 또한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재일외국인 특히 재일한인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조정하는 유일한 대안의 하나로 일본은 바로 위와 같은 일본으로의 '귀화'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크게 강조하고 나섰다.

즉 일본은 계속하여 일본 사회에서 이질적인 소수 집단 남아서 그들의 민족관계를 다원화하고 복잡화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재일한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귀화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일본 민족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외형적인 민족적인 갈등과 반단일민족적 관계의 만들어내는 갈등의 소지를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일본으로의 귀화를 한다고 해서 기존까지 존속되어 왔던 이 민족적인 차별성을 완

전히 불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으로의 귀화 절차를 마치고 법적으로 일본인화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귀화 이전과 거의 동일한 일본 사회로부터의 갖가지 차별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동포사회에서 귀화자들과 미귀화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대립, 귀화자와 그 가족의 정체성의 혼란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잔존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일본 당국의 별다른 대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단지 귀화인구를 양산시킴으로써 그들 사회내 다민족적인 갈등의 해소에만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왜 일본 정부는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귀화정책을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 했는가. 일본에 있어 재일외국인에 대한 귀화정책의 더욱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재일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소수민족화'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재일외국인의 일본인으로 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후반기(정확히 1964~1968)는 전후 재일한인 사회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기도 했다. 1959년 말에 시작된 재일동포의 복송이 일단락되고, 잔류한 재일한인은 일본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재일한인 가운데는 전후 일본에서 출생한 인구가 반을 넘었다. 세대교체에 의한 재일한인 사회의 구조변화가 양으로부터 질로 전환되어 가던 시대이다.

또하나 중요한 배경은 한일조약 체결에 의한 소위 '協定永住'라는 새로운 재류권이 창설되어,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정치적인 분열이 생긴 것이다. 즉 본

재일외국인의 일본인으로 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후반기는 전후 재일한인 사회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기도 했다. 1959년 말에 시작된 재일동포의 복송이 일단락되고, 잔류한 재일한인은 일본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재일한인 가운데는 전후 일본에서 출생한 인구가 반을 넘었다.

국의 분단상황이 재일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쳐, 커다란 혼란과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정치적 입장에서 협정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남겨놓음으로써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의 모순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이 모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 시기에 귀화 촉진 책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 당시 일본 민사국 제5과 국적 제3계장으로 있던 川上富次가 『民事月報』에 쓴 「한인 귀화사건의 장

래」라는 글에서 재일한인이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채 장래 일본 국내의 '소수민족'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귀화가 필요하다는 치안적 발상을 하고 있던 것도 바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또한 같은 시기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소속으로 한 일조약 교섭에서 법적지위위원회의 일본측 위원이기도 했던 池上努는 재일한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문제의 자연소멸)은 본국에의 귀국이든지 일본에의 동화 = 귀화임을 강조하고 있다(『法的地位200の質問』(經文社, 1965년).

면 장래 재일한국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결과, 일본정부로서는 진정으로 일본에 정착하여 일본인이 되려고 하는 한국인에게 언제까지 외국적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화 즉 귀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⁴⁵⁾

같은 시기 내각 조사실에서 발행하고 있던 『調査月報』(1965. 7)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서 일본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주하는 이민족이 언제까지나 이민족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일종의 소수민족문제로 장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피차 쌍방의 생활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이들에 대한 동화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대부분을 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귀화인은 반일본인으로서 일조 쌍방 사람들로부터 백안시되는 일이 있어 커다란 고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2세 3세로 나아감에 따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나라시대 반도로부터 한인을 다수 유치하여 나라현에 집단 거주시킨 것으로부터 飛鳥 문화가 발달되었으나, 오늘날 그들의 자손은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또 치안문제로서도 귀화를 대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⁶⁾

이상과 같이, 일본의 귀화행정은 그때그때의 행정 방침과는 별도로 그 정책목적의 기초에 재일한인의 '소수민족화' 방지를 위한 동화라는 치안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당국의 입장을 가장 분명히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재일외국인 약 65만 명 가운데 60만 명 가까이가 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그것도 매년 다수의 귀화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이 아닐까. 이들 재일한인의 수는 앞으로 그들이 대거 본국에 송환되던 가, 또는 일본에 귀화하는 식의 방법 등으로 그 절대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30년 후에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와 같이, 장래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에서의 소수민족문제의 원인이 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그런데 재

일한인 대부분은 종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살아오던 사람 혹은 그들의 자손이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이미 일본인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그 대부분은 이미 일본인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라가 강제적으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지금 일본인으로서의 귀화를 회구하고 일본사회에 융화하는 것을 서약한다면, 이대로 외국인으로 처우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귀화조건을 대폭 완화하든가 혹은 일본국적 선택에 대한 특별입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시책면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본다. 원래 한인은 일본인이었다. 소화27년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본국적을 잃고 외국인이 되었다. 따라서 동조약 체결 당시 적어도 일본에 있었던 한인에 대해서는 국적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⁴⁷⁾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재일외국인들에 대한 귀화정책의 배경에는 재일한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은 이미 본국에 귀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 내에 '소수민족'의 존재가 공식화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의 단일민족적 민족질서가 중대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초조가 있다.⁴⁸⁾

본국으로 내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귀화'라는 '합법적'인 명분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내려는 일본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정책 대안은 현재도 그 틀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시켜 오면서 일본 민족구성의 단일성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적법 재정리 -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

일본은 근래에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인의 국제 결혼 추세에 대비한 단일민족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또하나의 대비책으로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2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의 통혼 급증 등을 비롯한 새로운 민족환경을 국적법에 반영하면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단일민족적 환경과의 마찰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 그 중요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⁹⁾

먼저, 종전의 父系血統主義로부터 父母兩系主義로의 변경이다. 즉 1985년의 국적법은 기존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서 兩性平等의 원리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 국제결혼의 경우,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거에는 모두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런 상태로서는 일본인 여성의 상대적인 권리가 국적법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앨 수 없고 또 일본인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 대거 외국인 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본정부는 국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모 어느 한 쪽만이라도 일본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취적을 법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국적법 제 3조). 1985년 이후 외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 가운데 약 55%가 재일한인 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으로, 그 수는 연평균 2,086건(1980~1988년)을 넘고 있다. 이 결혼에 의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본과 한국, 일본과 조선의 두 가지 국적을 출생과 더불어 권리로 취득하기 때문에 重國籍을 가진 아이들이 장차 일본 내에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 때문에 일본정부는 국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모 어느 한 쪽만이라도 일본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취적을 법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1985년 이후 외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 가운데 약 55%가 재일한인 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으로, 그 수는 연평균 2,086건을 넘고 있다.

이러한 重國籍者는 22세에 도달하기까지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적을 포기하는 선언(選擇宣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국적법 14조). 그러나 문제는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적 포기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이나 조선국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적 포기선언은 일본정부에 대한 일종의 결의 표명에 지나지 않으며, 다분히 정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5년의 국적법은 그 경과 조치로 외국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 198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20세 미만의 자식은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 간에 한해 신고만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의해 3년 간 1만 5621명의 미성년자가 전의 국적을 보유한 그대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⁵⁰⁾

1985년 국적법 개정에 의한 또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그때까지 출생과 귀화에 한정되어 있던 국적취득 방법 이외에 届出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에 있어 일본 국적의 취득은 자국적을 포기, 가족 이동, '일본인다운 氏名'에의 改姓을 강요당하는 동화적이고 굴욕적인 귀화의 방법밖에 없었다.

1985년 계출에 의한 국적 취득과 귀화제도와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귀화가 법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계출에 의한 국적취득은 본인의 의사표시(계출)만으로 국적이 취득된다는 점이다. 또 귀화는 종래의 국적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계출에 의한 취득에서는 종전 국적의 포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어 官報에 고시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계출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국적취득의 의사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것만으로 곧 국적취득의 효력이 발생, 법무장관의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은혜인 것에 비해서 제출에 의한 것은 출생에 의한 취득에 가까운 권리로서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출에 의한 국적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1) 일본국민의 準正子: 일본국민의 부모의 혼인 및 그 인지에 의한 적출자가 된 20세 미만의 사람(3조) (2) 해외에서 일본인 부 혹은 모에게서 태어나 일본국적 보유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잃은 20세 미만의 사람(17조 1항) (3)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일본국적 선택 선언을 할 것을 官報에서 催告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본국적을 상실한 사람(17조 2항) (4) 1985년 법의 경과 조치로, 1985년 1월 1일부터 3년 간에 한해 법 개정 이전에 일본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20세 미만의 사람(부칙 5조·6조) 등이다.⁵¹⁾

이렇듯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신속적인 국적취득 방법을 표방한 신국적법은 일본국적 취득 방법을 다양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로의 전향적인 국적법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인의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일본인의 피해를 가진 대량의 외국인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법적인 대비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국적법 개정과 더불어 행해진 호적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및 그 자식은 外國姓으로 독립된 호적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지금까지의 호적제도는 일본국민만이 호적등록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일본인끼리의 결혼과 같이 부부 그 어느 편의 姓으로 독립한 호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원칙으로서 외국 성의 호적은 인정되지 않았다. 외국인과의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남편의 외국 성을 따르려면 가정재판소에 '氏變更許可審判申請書'를 내, 그 허

가를 필요로 했다.

그런데 호적법 개정은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과 외국성 사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국민도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독립된 호적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단지 배우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는다(16조 3), 배우자의 외국 성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결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씨 변경계를 市區町村의 호적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호적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107조 2). 夫婦別姓을 희망하는 사람은 종래의 성으로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결혼을 한 일본인은 일본인끼리 결혼한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夫婦別姓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85년 국적법 개정까지 호적제도는 원칙적으로 외국성으로 호적을 만드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귀화 후의 씨명은 '일본식 씨명'으로 하라는 창구 지도가 행해져, 호적에는 '일본식 씨명' 밖에 기재되지 않았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부터 1988년까지 약 14만 5천 명의 재일한인이 일본으로 귀화했으나 이들 전부가 일본명으로 改姓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일본국민 가운데 異民族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된다. 일본정부는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에도 일본적 純血主義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민의 흔적을 배제하려 해왔다.⁵²⁾

1985년 법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다가나 姓이나, 조선 姓, 중국 姓 등이 일본호적에 등장,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존재이던 일본국민 가운데 異民族의 존재가 현재화하게 되었다. 소위 '단일민족국가'의 픽션을 제도로서 지탱하여 온 호적이 국민 가운데 이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 그 신화의 일각이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1985년 국적법 개정 때의 호적법 개정으로 귀화의 동화적 의미가 강하던 '日本の氏名'의 강제 규정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1986년 4월 이후의 歸化許可申請手引(신판)에는 '日本の氏名お用いる'라는 부분

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1월 1일 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귀화사 개성을 강요당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명으로 귀화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출신 민족의 姓으로 다시 변경 신청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절차를 통해 다수가 자기의 본명을 회복했다(1985년 국적법 시행이전, 귀화에 의해 잃었던 본명으로서의 변경을 허가한 예는 겨우 2건이었다).⁵³⁾

단일민족사회의 문제점

최근 일본가 단일민족의 신화로부터 이탈 조짐을 구체화하는 데는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流入集團에 의한 多民族的 상황 전개,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생활해 오던 소수민족 집단의 自民族意識의 고양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유입집단의 증가

일본의 경제력 향상과 해외 활동 신장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라 안팎으로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의 민족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민족질서 변화 내용 중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외국인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일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일본 내에는 재일한인·재일중국인 등 일제시대부터 공존해 온 '오래 된 외국인' 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들 이외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와서 장·단기간 일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참 외국인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참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1975년부터 시작된다. 베트남 전쟁 종결과 함께 전쟁난민이 유입됨으로써 일본의 외국인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재일한인·중국인으로 대표되던 재일외국인 사회가 이 '난민'의 유입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 난민의 수용을 주저해 왔지만, 국제인권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일본의 입관정책은 일대 전환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이들 신참 재일외국인을 몇 부류로 나눠서 살펴보자.

신참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1975년부터 시작된다. 베트남 전쟁 종결과 함께 전쟁난민이 일본에 상륙함으로써 일본의 외국인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의 재일한인·중국인으로 대표되던 재일외국인 사회가 이들 '難民'의 유입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 난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기를 상당기간 주저해 왔으나, 1979년 内外國人 평등원칙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

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일본의 入管政策은 일대 전환을 피할 수 없었다.

그때까지 일본은 '외국인의 출입국은 국가의 자유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에 관해서도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있던 기존의 入關行政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외국인과 자국민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새로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1981년에는 1960년대부터 현안이 되었던 入管令의 개정이 실현되었고,⁵⁴⁾ 이듬해 「難民條約」 「難民議政書」가 발효됨과 동시에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이 시행되면서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1982년 입관법에서는 전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대부분이 재일코리안)의 영주자격 심사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특별영주제도가 개시되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일본인' 이외의 일본사회 구성원(재일외국인)의 지위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런 조치의 배경으로는 재일한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안정에 따라서 이들이 과거 동화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內國民待遇를 용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권 보장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공존의식의 발로가 그 배경이 되었다.

1985년부터는 개정 국적법·호적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출생시 일본국적 취득 방법이 지금까지 父系血統主義로부터 父母兩系血統主義로 변해, 부모 중 그 어느 편이 일본인이면 그 자식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일본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자기의 호적상의 성으로 하거나, 그 결혼으로부터 태어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식이 외국인 부모의 성을 호적상의 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일본 국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재일한인과 일본인의 결혼으로 생겨난 아이들도 일본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재일한인 가운데 일본국적자의 수는 귀화에 의하지 않더라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한인식 성을 비롯, 일본식의 성과 다른 외국식의 성을 가진 '일본국적자'도 계속 늘어나면서 일본사회의 다민족적 구성이 겹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때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귀화시에 일본명으로서의 행정지도 내지는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일단 일본식 이름으로 귀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잃어버린 원래의 민족적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법정 투쟁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다.

출입국관리령의 전향적인 개정, 난민인정법의 개정과 호적법과 국적법의 개정은 일본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적 인적교류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런 인적교류의 인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의 현실적인 공존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단일민족국가'라는 일본사회의 민족적 신화에 대한 공개적인 회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둘째, 일본의 단일민족국가 신화에 또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한 것은 1991년 재일한국인에 관한 韓日法的地位協定에 관한 각서의 교환이다. 이 각서 교환 직후 당시 일본 海部 수상은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직된 단일민족국가관에 대한 이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일본 국내에 특별한 역사적인 경위를 가지고 일본인과 생활을 함께 해온 재일한인이 많이 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계적인 시야에 서서 금후의 일본사회의 건설을 진전시킴에 있어서는 국내에 함께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은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인간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의 일상생활에서 재일한인, 또는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다른 외국인의 입장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한층 깊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 기존의 단일민족국가 원리에 대신하여 '多民族共生'의 새로운 일본사회의 구성 원리를 제창하고 나섰다.⁵⁶⁾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대다수 일본인이 그들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해 오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재일한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일본사회에서의 '存在性'을 상당부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곧 기존의 단일민족국가의 신화가 갖고 있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점차 분명히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더이상의 무관심이나 외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 강구가 일본 정부로

서도 불가피했던 것이기도 했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급증이 단 일민족의 신화 해체에 미친 영향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정주외국인화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별다른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만 있으며, 이들은 또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일본과의 우호를 위한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별한 외국인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1980년대 전반까지 유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유학생에 대한 일본인의 우호적인 인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다. 이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업을 구하거나 또는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 등으로 '定住外國人化'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또다른 단일민족 신화의 중대한 도전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더욱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中曾根 수상의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이 행해지고, 이것이 일본사회의 유학생수와 이들의 '정주외국인' 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유학생에 의한 아르바이트의 실질적인 자유화와, 입국 수속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1982년부터는 출입국관리령 개정 이후 법률 운영상 유학생의 자격 변경이 가능해져, 유학 이후 계속 일본에 머물러사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넷째, 일본의 민족구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내용은 국제결혼의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일본인의 국제결혼 추이는 자연 이에 의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령·난민인정법·호적법·국적법의 개정은 국제적 인적교류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인적교류의 인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의 공존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단일민족국가'라는 민족적 신화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예컨대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1991년 4708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8098명으로 4년만에 거의 배로 증가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1990년에 6만 3519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12만 5967명으로 급증, 해마다 1만 2천여 명씩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 30년간의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1975년은 일본인 남성과 외

국인 여성의 결혼건수가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건수를 상회한 해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을 제1기로 하면, 제1기에는 일본인 여성과 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제2기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순위는 한국·조선 등이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3기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 이후 거품발생에 의해 일본인들의 해외이주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엔화를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또한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건수도 1985년부터 1990년 사이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 수도 1987년에는 1만 22명이었으나, 7년 후인 1994년에는 2만 254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⁵⁹⁾

다섯째, 일본의 단일민족국가 신화를 허물고 다민족구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그동안 해외로 이민 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던 이른바 日系人の U턴 현상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그곳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일계인과 그 자손이 일본으로 U턴하는 현상은 최근에

국제결혼 추이

연도	총 건수	夫 외국인	母 외국인
1965	4,156	3,089	1,067
1970	5,546	3,438	2,108
1975	6,045	2,823	3,222
1980	7,261	2,875	4,386
1985	12,181	4,443	7,738
1990	25,626	5,600	20,026
1992	25,862	6,439	19,423
1993	26,657	6,565	20,026
1994	25,812	6,596	19,216
1995	27,727	6,940	20,787

출처 : 『國際人流入』, 제117호(1997년 2월), p. 38.

와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혈연적으로는 일본인과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외국생활에서 오는 습관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재입국 내지 정주 현상은 단순한 해외동포의 모국 이주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1990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생활 터전을 잡고 일하고 있는 일제 브라질인은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거의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2~3세대이다. 비록 이들 일제인은 비일본계보다는 혈통적으로 순수하고 또 이들에 대한 대우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게 사실이지만 이들 역시 순수한 일본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섯째, 이른바 '歸國子女' 문제가 일본의 민족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대외 관계의 다변화와 함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해외생활자 경험자의 귀국 자녀들 또한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본의 민족

질서를 동요시키고 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가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상당기간 생활하는 동안 현지의 교육과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와서도 쉽게 고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일본의 교육환경이나 사회환경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면서 처지가 비슷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거나 독특한 교육의 기회를 유지시키면서 일본의 단일적 민족질서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다.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

일본의 단일민족의 신화에 대한 도전은 앞에서와 같은 새로 일본사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다양한 민족 집단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 동안 계속하여 일본인과 생활을 같이 해온 전래의 소수민족 집단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개별 민족의식의 고양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 전래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집단인 재일한인과 중국인은 그 동안 갖가지 이민족에 대한 차별, 또 귀화 강요 등과 같은 단일민족화 정책의 강요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극도로 은닉시키면서 일본에서의 생존에 매달려왔다. 그 동안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거나,

여전히 자민족의 민족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민족감정이나 민족의식을 걸로 내세우기보다는 이를 숨기면서 일본사회에서의 생존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전래적인 일본의 소수 민족 집단은 최근들어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정체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는⁵⁷⁾ 일본의 '單一民族'론은 기만이라면

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소수 민족과 교류를 갖거나, '世界先住民族會議'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국경을 넘은 소수민족과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지위를 과시하고 민족적인 유대를 강화하려고 힘쓰고 있다.

재일한인의 경우, 단일민족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반발이 '指紋押捺拒否運動'으로 구체화됐다. 1980년에 시작된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삼시간에 확대되어 1985년에는 1만 6천이 넘는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거부 또는 유보하기에 이르렀다.⁵⁸⁾ 이러한 운동확대의 계기가 되었던 1980~1984년의 지문날인 거부자 107명 거의가 재일한인 2~3세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과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20%가 넘고 있음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재일한인이 벌이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한마디로 하면 이는 재일한인의 일본사회에의 '定住外國人'으로서의 '참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수자인 '일본인'을 부추기면서 국가구성원 = 국적 = 국민 = 민족을 동일시하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昭和三十四年 일본 왕이 죽었을 때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정책에 대해, 피

일본의 대외 관계 다변화와 함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해외생활 경험자의 귀국 자녀들 또한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급기야는 이들이 일본의 민족질서를 동요시키기에 이르렀다.

고인이 그것을 거부, 끝까지 인권 침해의 유무를 묻는 법정심리의 계속을 주장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在日の論理'는 무엇인가. 이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법률에 따르지 않으려면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려면 귀화하여 일본인이 돼라"는 일본식 '國家의論理'를 바꿔, 국적 개념의 상대화에 의해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金英達은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관리에 관한 '국가의 논리'를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즉 (1) 일본은 국토가 좁고, 자원도 결핍하고 인구가 과밀하여 수용인구에 한계가 있다는 국가 정원의 사상 (2) 국민과 국가의 충성(병역), 보호(여권)의 관계 (3) 혈연에 의한 국가 구성 (4) 동일 언어·문화·풍속을 가진 동질화 사회 (5) 국민에 의한 정치적 자결과 외국인에 의한 내정간섭의 배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가의 논리에 대항하는 '在日の論理'는 (1) 일본에서 태어난 2~3세대가 재일한인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약 90퍼센트), 일본생활자라는 정주성 (2) 구식민지 사람으로서 일본의 국가 책임(강제연행, 재일한인의 국적선택의 일방적 권리 박탈을 포함)을 추구한다는 역사에 대한 보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재일한인이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나 국적의 개념은 추상적인 朝鮮에 속박된 고정관념적인 민족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의 일상의 생활현실과의 적응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의 여러 유형

유형	1	2	3	4	5	6	7	8
혈통	+	+	+	-	+	-	-	-
문화	+	+	-	+	-	+	-	-
국적	+	-	+	+	-	-	+	-

출처 : 編岡安則, 『在日韓國, 朝鮮人』(中公新書), p. 4.

일본의 다민족화

이상의 여러 논의를 통하여 일본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일민족 사회의 신화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여 실질적인 다민족적 민족관계를 조심스럽게 모색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의 단일민족 신화를 지탱시켜 온 가장 일반적인 논거는 소위 '시마구니' (島國)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島國論은 최근 들어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한 '架橋論'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일본의 다민족적 전통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인은 그들의 민족적 단일성과 문화적인 일체성은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불가피했고, 이러한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단히 동질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왔을 뿐 아니라, 피의 순수성도 지켜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른바 '섬나라'론의 일반적인 논거이자 그 동안 일본인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떠받쳐 온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래적인 섬나라 논리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즉 일본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단절적인 의미보다는 아시아 대륙의 남북을 상호 연결해 주는 교역 역할을 활발히 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 교류는 물론 문물의 교류도 일찍부터 아주 활발하

게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 이른바 架橋論의 내용이다.⁵⁹⁾

일본은 오래 전부터 배를 사용하여 해외와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심지어 쇄국정책을 폈던 江戸時代에도 長崎·出島·對馬 등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았을 정도로 꾸준한 대외 교류를 지속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외교류의 기본적인 특징은 물품·기술·종교·문화·학문 등의 '수용'을 국가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외국의 문물을 특유의 일본색을 가미한 '동화의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일본화 내지는 일본문화화해 갔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대외관계는 식민지정책이나 이민정책을 제외하면 '受信形'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發信形'이라고는 볼 수 없다.⁶⁰⁾ 이러한 일본의 異文化와의 접촉 형태에 대해 이를 "열린 受容性과 동화에 의한 閉鎖性"으로 설명하는 사람도,⁶¹⁾ 또 이를 "포섭의 강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排斥精神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⁶²⁾

이상과 같이 일본의 문화는 결코 '섬나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전부터 외부와의 교류과정을 거쳐 다양한 문화에 접하고 이를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 수용 패턴이 다문화 공존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화와 배척을 내포한 '폐쇄적' 형태였음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문화에 대한 대처 태도가 결과적으로 일본인 특유의 '안'과 '밖'의 구분 의식을 강하게 키워

왔고, 여기서 밖에 대한 강한 배척심을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다민족화의 경과

‘日本人’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人’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족’(에스니시티)과 ‘국적’(내셔널리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예컨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때, ‘중국계’라는 것은 에스닉적인 요소를 말하며, ‘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리티를 말한다.

여기서 민족적 요소를 ‘혈통’과 ‘문화’로 나누고, 여기에 ‘국적’을 포함하여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일본인’으로부터 ‘비일본인’까지의 개념 구도를 유형화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 여기서 +,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혈통란의 +는 그 사람이 소위 ‘일본민족의 피’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는 타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문화면에서는 그 사람이 언어·가치관·생활습관·생활양식 등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말하고 -는 그렇지 않음을 말한다. 국적에서의 +는 그 사람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는 그렇지 않음을 말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일본인’에서부터 ‘비일본인’까지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⁶⁹⁾

이상의 유형분류에서 일본의 민족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과 ‘비일본인’이라는 개념은 결코 대립하고 있는 양단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순수한 일본인’의 이미지로부터 ‘순수한 외국인’이라는 양극 사이에는 다양한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혼혈 정도의 다양성이나, ‘일본문화’와 이 문화 내면화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연속체를 구성할 수

일본사회는 애매한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일본적’으로의 ‘동화’ 강요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없애버리든지,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범주화해 간다. 일본에 사는 사람은 모두 확실히 ‘일본인’이든가 ‘비일본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은 ‘일본인’이며 ‘비일본인’은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제약당하는 것이다.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혈통·문화·국적’의 세 가지 기준으로 ‘일본인’부터 ‘비일본인’까지의 유형 분류를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등한 비중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혈통’적인 이미지가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형 2~4는 두개의 +와 하나의 -로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인 유형2와 유형3에는 ‘일본인’에의 포용력이 강한

반면, 혈통이 -인 유형4는 ‘비일본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

셋째, 일본사회가 ‘단일민족사회’ 내지는 ‘단일문화사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코 일본사회는 ‘단일민족사회’는 아니다. 결코 일본사회는 ‘단일문화사회’이지도 않다. 8가지 유형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많고 적음이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질적 사회’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그것은 일본사회가 다수자들에 의해 소수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허용도가 낮은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사회가 ‘동질성이 높은 사회’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토착 원주민에 대한 박해를 가하면서 계속된 ‘이민’의 나라로 형성된 미국이나 55개의 소수민족을 포섭하고 있는 중국 등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질적 사회’라는 언명에는 ‘일본은 동질적 사회여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일본사회는 애매한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얼마간의 이질성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일본인’적인 것으로의 ‘동화’ 강요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없애버리

든지,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범주화해 간다. 일본사회에 사는 사람은 모두 확실히 한 '일본인' 이든가 '비일본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은 '일본인'이며 '비일본인'은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제약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관념적으로 일본은 '단일민족사회'라는 신화를 언제까지나 유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일한인의 일본 정주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외국인인 이들을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은 '在日'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부르고 있다. '재일○○'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는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일본인이 아무런 의문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들 외국인들을 일본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멤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

려는 의도가 '在日'이라는 용어법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단일민족의 신화에 이와는 크게 거리를 두고 발전되고 있는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환경의 급격한 변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가 오늘날 일본이 맞고 있는 가장 커다란 민족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포기할 수 없는 단일민족의 신화적 전통과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다민족화의 추세 속에서 오늘의 일본은 방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현실적인 민족문제를 둘러싼 방황은 그것이 단순한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바로 일본의 국가적인 정체성과 일본의 정치적인 정체성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신간안내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일본의 민족문제

조정남 저 / 교양사 / 값 15,000원

- 주요 목차**
- 일본의 민족상황
 - 일본민족의 형성
 - 일본민족론의 전개
 - 재일외국인 정책
 - 재외일본인 정책
 - 일본의 민족적 과제
 -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 1) 아이누 민족 과 제일코리안에 대해서 전자는 그 숫자의 미미성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특이한 주거집단으로 파악하면서 이들을 독자적인 에스닉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 2) 入關協會, 『在留外國人統計』平成3年版(1996. 7. 30)
- 3) 梶田孝道編, 『國際社會學』(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p. 293.
- 4) 그 후에도 청나라 노동자의 실질적인 雜居制限속이라고 할 수 있는 칙령이 발표돼, 청의 노동자들은 廳府縣長官의 허가 없이는 농업, 어업, 광업, 토목건축, 제조, 운반, 중계업 등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단지 이들은 '가사에 종속된, 또는 취사나 급사 일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케 되었다. 이에 따라 청나라 사람들은 이른바 '三刀業(양복제조, 요리, 이발) 및 가사 사용인 등의 분야로만 진출하게 된다.
- 5) 앞의 책, pp. 294-296.
- 6) *Ibid.*
- 7) 幼方直吉, 『單一民族國家の思想と機能』, 『思想』, (1979. 2), pp. 26-27.
- 8) 일본정부가 1878년 아이누에 대해 사용하던 행정용어다. 이는 이들 아이누는 당초는 '土人(원시적 생활을 하는 土着人種)'이었다는 비하적인 의미. 梶田孝道編, 같은 책, p. 297.
- 9) 우선 이상정부제도의 폐지는 북해도에서 松田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제도로 북해도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특종의 실력자에게 주민들에 대한 행정권을 장악, 그들 피치 차는 사 생활면에까지 청부 자에 의한 생사여탈 권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폐해는 대단히 컸다. 喜多章明, 『アイヌ沿革誌』(北海道出版企画センター, 1986), pp. 72-74.
- 10) 이 법은 당초 1893년 加藤政之助의 손에 의해 제5회 帝國議會에 제출되었으나, 그 후 보완 작업을 끝내고 1899년(明治 32년) 제13회 帝國議會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양원을 통과 입법화됐다.
- 11) 1974~1975년 북해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속에 의해 이어져 오는 토지는 당초 급여된 토지의 17%밖에 되지 않았다. 梶田孝道編, 같은 책, p. 298.
- 12) 喜多章明, 같은 책, p. 76.
- 13) 앞의 책, pp. 245-247.
- 14) 幼方直吉, 『單一民族國家の思想と機能-日本の場合』, 『思想』(1979. 2), pp. 27-28.
- 15) 梶田孝道, 같은 책, p. 299.
- 16) 金太基, 『米國の對在日朝鮮人占領政策-政策形成過程を中心に』, 『思想』(岩波書店, 1993. 12)
- 17) 宮崎章, 『占領初期における米國の在日朝鮮人政策』, 『思想』(1985. 8), p. 124.
- 18) 大沼保昭, 『出入國管理法制の成立過程』, 『法律時報』, 50권 5호, pp. 78-79.
- 19) 金英達, 『占領軍の在日朝鮮人政策』, 靑丘文化社, 『靑丘』1995. 春, p. 48.
- 20) 『戦後連絡中央事務局政治部 執務報告』(제2호)(昭和21. 4. 15) 宮崎章, 같은 글, p. 133에서 재인용.
- 21) 1949년 吉田茂 수상이 맥아더 사령관 앞으로 보낸 서한,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金英達, 앞의 글에서 재인용.
- 22) 金英達, 같은 글, pp. 48-49.
- 23) 金英達, 같은 글, pp. 50-51.
- 24) 앞의 책, pp. 112-113.
- 25) 앞의 책, p. 68.
- 26) 첫째, 선거권·피선거권 문제로 종래는 유자격자였으나 1945년 12월 개정된 중의원의원선거법 부칙, 참의원선거법 부칙, 지방자치법 부칙 등에서 한인의 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는 조처에 의해 참정권이 거부당했다. 둘째, 1946년 4월 2일 「미일본인의입국및등록에관한각서」에 의해, 1947년 5월 3일의 「외국인등록령」(칙령 제207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이에 의해 내무대신이 정한 자 및 한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동법2조)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1947년 6월 22일의 「출입국관리사무국설치에관한각서」에 의해 점령군사령관의 출입국 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일본정부가 행하게 된 점과 관련이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49년 8월 1일에 「출입국관리에관한정령」을 공포, 그에 근거하여 1950년 9월 30일 「출입국관리청설치령」을 공포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의 관리·등록·강제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1951년 10월 4일에 「출입국관리령」을 제정, 그 제2조 2항에서 재일한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했다.
- 27) 姜敏,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 같은 책, pp. 220-221.
- 28) 앞의 책, pp. 222-223.
- 29)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1989), pp. 16-17.
- 30) 박경식, 같은 책, pp. 398-399
- 31) 앞의 책, p. 400
- 32) 江川英文外, 『國籍法』(新版)(有斐閣, 1994), pp. 90-91.
- 33) 梶田孝道編, 같은 책, pp. 302-303.
- 34) 昭和28년(1953) 6월 24일 「民事第1062號民事局長通達」(여기서는 귀화 후의 nome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했다)
- 35) 本間透, 『國籍法及び戶籍法の一部改正に伴う歸化者の氏名に關する問題點について』, 法務省民事局編, 『民事月報』(39-10호, 1984. 10), p. 14.
- 36) 丑, '宀', '乃' 자 등을 비롯한 160자.
- 37) 그리고 동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잠정적으로 앞의 한자이외에 '亞', '惡', '寫' 등을 비롯한 195자를 추가로 써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日本, 『戶籍法施行規則』참고.
- 38)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63명(전체의 53.8%), 다음이 영국인 39명(12.8%)의 순이다. 大森和人, 『國籍事務の趨勢と今後の傾向』, 『民事月報』(24권 10호), p. 70.
- 39) 幼方直吉, 『在日朝鮮人, 中國人の歸化と家制度』, 福島正大編, 『現代日本の家族政策』(東京大學出版會, 1976), pp. 74-75.
- 40)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歸化』(明石書店, 1990), p. 7.
- 41) 앞의 책, pp. 15-18.
- 42) 앞의 책, p. 21.
- 43) 앞의 책, pp. 23-25.
- 44) 川上富次, 『朝鮮人歸化事業の將來(その二)』, 『民事月報』(1965.12), pp. 68-71.

- 45) 金英達, 같은 책, pp. 127-128.
- 46) 「재일한인에 관한 재 문제」, 『靑島月報』(1965. 7), pp. 73-74 ; 金英達, 같은 책, pp. 129-130.
- 47) 『戶籍時報』(1967. 7) ; 金英達, 같은 책, pp. 142-143.
- 48) 중국인의 귀화도 전후 별다른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 소강상태를 계속해 왔으나, 1972년 '중일공동성명'(1972. 9)을 전후하여 전체 재일 등록 중국인 4만 8천여 명 중 1천 명 이상을 넘어서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1972년에는 귀화자 수가 1,303명, 1973년에는 7,338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 후는 해마다 약 1천 5백여 명선을 유지해 왔다. 永野武, 『在日中國人』(明石書店, 1994), p. 220.
- 49) 일본국적법은 소와25년 5월 4일 법률 제147호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소와27년 7월 31일(시행은 동년 8월 1일), 소와59년 5월 25일(시행은 소와60년 1월 1일) 두 차례의 개정을 하고 있다.
- 50) 石田玲子, 「1985年國籍法改正と民族性」, 『靑丘』(1990. 여름호), p. 48.
- 51) 앞의 책, p. 50.
- 52) 石田玲子, 위의 글, p. 53.
- 53) 앞의 책, pp. 54-55.
- 54) 1969~1973년 사이에는 네 번 출입국관리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외국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가 있어 폐기되었다. 이들 법안에는 재류지역내에 있어서 활동의 지정이나 정치활동을 금하는 '준수조항'이나 강제수사에 가까운 '사실조사 제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梶田孝道, 『國際社會學』, p. 305.
- 55) 앞의 책, p. 304.
- 56) 『國際人流』 제117호(1997. 2), pp. 38-40.
- 57) 아이누의 경우 명치 이래 강력한 동화정책 때문에 거의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스스로를 아이누라고 칭하는 인구는 약 2만 5천여 명(1985년도 북해도민 민정부 조사)으로 집계되고 있다.
- 58) 梶田孝道, 같은 책, p. 311.
- 59) 榊野善彦, 『日本論の視座 - 列島の社會と國家』(小學館, 1990).
- 60) 中野秀一浪, 今津孝次郎 編, 『エスニチイの社會學』(日本, 世界思想社, 1996), p. 174.
- 61) 青木保, 『文化の否定性』(中央論社, 1988).
- 62) 間庭充幸, 『日本的集團の社會學 - 包攝と排斥の構造』(日本, 河出書房新社, 1990).
- 63) (1) 유형은 '일본민족의 피'를 이어, '일본문화'를 내면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순수한 일본인으로서 이미지를 가진 존재다. 일본사회의 대다수가 자기는 이런 의미에서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존재다. (2) 유형은 '일제1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민족의 피'를 계승하고 있고,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미와 하와이에 이민하여, 이민선의 국적을 취득한 '일제1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유형은 해외에서 성장한 일본인이다. 이들은 일본의 피와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해외 귀국자녀라고 불리는 사람 중의 일부가 이 부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4) 유형은 '귀화자'들로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귀화자'들은 법적으로는 '일본인'과 다르지 않다. (5) 유형은 '일제 3세' 혹은 '중국 간류교아'로 이들은 일본의 피를 가지고 있으나 이문화를 내면화하고 또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6) 유형은 민족교육을 받지 않은 '재일한인' 등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나 이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외국국적이다. (7) 유형은 아이누 등이다.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또 독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8) 유형은 '순수한 비일본인'으로서의 '외국인'이다. 이들은 이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이문화를 내면화하고, 또 외국국적의 사람들이다.

「새 역사교과서」와 한일관계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힘이 강해지더라도 하면,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한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일본은 다시 침략국가가 될 것이다. 그것은 1차대전이후의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일본도 다분히 이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한국 측이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保坂祐二 / 세종대 인문대 교수

서론

한국과 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한 논문이라든가 서적이 해방 이후 적지않게 발표되었고 출판도 되었다. 이러한 글들의 대부분의 내용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얼굴이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인과 일본인은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많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한국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한일간 우호와 개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먼저 가장 문제가 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새 역사교과서'(扶桑社, 2001) 시판본의 문제점을 훑어본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를 '황국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일본측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 현대사에서 양국을 지배해 온 중심적인 사상을 비교해보겠다. 그 중심사상 중의 하나인 '손자

병법'을 살펴보면서 두 나라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간단히 훑어보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우익 위주의 정치로 치닫는 것을 보면 일본의 미래가 불 보듯 들여다보인다.

일본 정부나 정치인이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여, 한국 정부의 일본문화 개방과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써온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다.

본론

「새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2001년 7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측 역사교과서 재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경직상태에 빠졌다. 특히 문제가 된「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만드는 모임」)이 펴낸「새 역사교과

과서」는 이후 일본의 각 서점에서 비소설부문 베스트 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 교과서의 위험성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정내용 이외의 기술 부분에 더 분명히 나타나 있다.

「새 역사교과서」의 가장 앞에 실린 '역사를 배우는 의미' 라는 글 중에서 천명한 역사관은 역사를 판단하는 선악관(善惡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역사를 배우는다는 의미는 현대의 기준으로 과거의 부정이라든가 불 공평성을 심판하거나 고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유한 선악관이 있었고 특유한 행복이 있었다.¹⁾

사람, 민족, 시대에 따라 사고방식이라든가 느끼는 방식이 각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간단히 하나의 사실을 선명히 그려내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중략) 역사는 민족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라의 수만급 역사가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²⁾

역사를 고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자. 역사에게 현재의 선악관념을 맞춰 현재의 도덕으로 심판하려는 재판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그만두자.³⁾

이와 같이, 사람과 민족 및 나라와 시대에 따라 역사는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선악관에는 타국이 이 교과서를 비판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고, 일본인 학습자가 과거에 대해 선악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사고 정지를 권장하는 이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즉 교과서가 쓰여진 역사관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새 역사교과서」는 '동경재판 재판'에도 속하지 않

고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원칙에 불과하고 분명히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으로 쓰여져 있고,⁴⁾ 더욱이 '대동아전쟁 찬양사관'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명기하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찬양하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동아전쟁과 일본군을 찬양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주만 공격) 미 함대는 잇따라 침몰하고 비행기도 계속 불타고 큰 전과(戰果)를 올렸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국민의 기운이 크게 높아졌고 오래 끌어온 중일전쟁의 음울한 기분이 좋아졌다.

② 일본군은 정글과 고무나무 숲 사이를 진군하면서 영국군을 격퇴하고 싱가포르를 향해 쾌진격했다.

③ 일본은 미군·네덜란드군·영국군을 물리치고 결국 100일 정도로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리했다. 이것은 수백 년에 걸쳐 백인에 의한 식민지 지배 때문에 신음하고 있던 현지 사람들이 협력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다. 이 일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의 많은 인민에게 독립에 대한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④ 얼류션 열도의 애츠섬에서는 불과 2000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2만의 미군을 상대로 한 걸음도 퇴각하지 않는 채 (중략) 옥쇄(玉碎 : 전멸을 미화한 말: 필자 주)했다. (중략)일본군은 항복하지 않고 잇달아 옥쇄해 갔던 것이다.

⑤ 오키나와(沖繩)에서는 철혈 근황대(鐵血勤皇隊)의 소년이라든가 히메유리(百合) 부대의 소녀들까지 용감하게 싸웠고(후략)⁵⁾

이와 같이 교과서가 아니라 전기 소설을 읽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큰 전과', '쾌 진격', '대승리', '옥쇄', '용감' 과 같은 일본군을 미화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독자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시키는, 객관성이 결여된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유도하고 있다.

「만드는 모임」의 대표인 니시오 칸지(西尾 幹二)는 편저서 「새 역사교과서 <만드는 모임>의 주장」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굴복한 동경재판사관과 소련의 경직된 유물론에 굴복한 사회주의 환상사관—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제대로 된 원래의 역사다운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정신적인 주권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못할 것이다.⁶⁾

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일본인의 자기회복'이다. 그러나 자기회복이라는 자국만의 문제에 세계사를 동원시킨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고 역사의 진실을 자국위주로 왜곡시키려는 뿌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그는 한국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래 이래, 일본의 행동 속에 항상 「악마적인 것, 범죄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한국인의) 역사관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이 어떤 당혹감을 느끼고 무서운 느낌을 가진다. (중략)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의 문제이다. 일본인의 영혼의 문제이다. (중략)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잠시 생각해 본다는 마음의 여유를 한국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과연 무례하고 매우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⁷⁾

즉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국내문제이기애 한국측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자기회복'을 위해서라면 역사를 둘러싸고 주변국가와 마찰이 생겨도 어쩔 수가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새 역사교과서」는 '동경재판 사관'에도 속하지 않고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원칙에 불과하고 분명히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으로 쓰여져 있고, 더욱이 '대동아전쟁 찬양사관'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명기하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찬양하고 있다.

있다.

또 한국과 관련된 「새 역사교과서」 기술의 특징은 한일비교에 의한 한국 멸시 기술이다. 일본·한국의 순서로 기술하는 수법으로 일본인 독자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도록 조작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 멸시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교과서 속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배우면서 독자적인 율령(律令)을 만들어 낸 나라는 일본 이외에는 없다. 신라는 당의 율령 속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을 뽑아서 사용했고 직접 율령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란 국호가 정해진 이 시기 이래, 연호를 사용되게 되었다. 한편 신라는 당나라 연호 사용을 강제 당해 이것을 받아들였다. 일본에 있어서의 율령과 연호의 독자성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복속(服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립국가로서 걸어가려는 의사를 내외에 표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⁸⁾

청이 영국에게 패배하고 홍콩을 할양해 개국했다는 정보는 「네덜란드 풍설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즉시 알려져 막부말의 지도자라든가 지식층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위기의식이 부족하여 9개월이나 지난 후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 내용도 간단했기 때문에 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큰 변화를 몰랐다.⁹⁾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경험한 후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구미열강이 만들어낸 국제법을 수용하려고 했다. 한편 중국이라든가 조선, 월남 등은 구미와 전혀 다른 고래로부터의 국가개념을 따르고 있었다.

고래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가 존재했다. 조선이라든가 월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있었고 중국의 역대 왕조에 복속(服屬)하고 있었다.¹⁰⁾

이러한 기술은 메이지 시대에 나온 일본맹주(盟主)론이라든가 일본중심의 화이(華夷)형 세계관을 재생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멸시 기술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일본에 조공했다든가 왜구 속에 조선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든가 조선을 '이씨조선'으로 기술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침략'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략'과 그에 가까운 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언어 사용이 불공평하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회색시키는 의도적인 기술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세기 중반에 신라가 당나라와 연대하고 백제를 공격했다. 당이 수륙 13만의 군대를 반도에 보냄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300년에 걸친 백제와의 친교는 물론이고 반도 남부가 당나라에게 침략당한다는 직접적인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¹¹⁾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출병의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되어 버렸다.(소제목: 조선으로의 출병)¹²⁾

15세기 초에는 조선이 200척의 배와 1만 7천 명의 병력으로 대마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¹³⁾

막부는 이에야스(家康) 시대 대마도의 소(宗)씨를 통해 히데요시(秀吉)의 출병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시켰다. (중략) 17세기 초에 사츠마(薩摩)번은 군대를 보내 유구 왕조인 상씨를 굴복시켰다.¹⁴⁾

이처럼 「새 역사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가치중립성을 완전히 어긴 책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통과시킨 문부 과학성의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끊임없이 왜곡시키는가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면 결국 천황제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일본이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것은 '천황제'라는 형태인데, 일본 고래의 종교인 신도(神道)가 바로 그 근본에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군주제는 있다 해도, 나라 자체로는 기독교 국가이거나 불교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본만은 기독교국가도 아니고 불교국가도 아니다. 1945년까지 일본은 일본만의 독특한 국가신도(國家神道)를 사실상 국교로 했던 정교일치 국가였다. 전후 국가신도가 해체되었고, 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인간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천황제는 해체되지 않았다.

천황 중심의 황국(皇國) 사상을 내세워 아시아를 침략했던 일본이 만약 그들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징적인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 자체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파헤쳐나가는 일을 일본은 되도록 피해 왔고, 외면해 왔다. TV 드라마만 해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의 역사드라마는 거의 방영된 적이 없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검토하기 시작하면, 천황제의 성립 기반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가 위기에 빠질 뿐이라고 일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에서는 특히 근대사를 깊이 검토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겼고, 그러한 조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한 이념적 배경

천황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본이 내세운 것이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근거를 둔 황국 이데올로기이다.

그러한 기술이나 그것을 해석한 서적들 중에는 침략 이데올로기로 이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① 일본의 신들이 만든 일본이란 나라는 현재의 일본 열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뜻한다는 것¹⁵⁾ ② 일본 즉 세계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 자는 신의 직계인

천황밖에 없다는 것(天壤無窮의 神勅)¹⁶⁾ ③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가 일본을 통일하고 초대 천황으로 즉위했을 때, 세계를 한 집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는 것(八紘一宇)¹⁷⁾ ④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동생신인 수사노오가 신라에 내려갔다는 구절을 근거로 수사노오가 일본 신의 동생으로서 한반도의 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한국합방을 정당화했던 것(일제시대 역사교과서¹⁸⁾ 등) ⑤ 백제·신라·고구려는 진구(神功) 황후에게 굴복하고, 일본에 조공하기에 이르렀다. 즉 조선은 일본의 조공국이었다는 것.¹⁹⁾

이와 같은 주장 중, 특히 조선이 일본에 조공하던 속국이라는 주장은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德川) 시대를 통해 계속 주장되어 왔던 것인데,²⁰⁾ 막부 말의 많은 지도자들이 조선을 대마도에 속해 있는 속국이라고 생각했었고, 조선통신사를 조공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한론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조공을 거부한 조선을 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¹⁾

이러한 일본의 사고방식은 일본중심의 화이(華夷)형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이것은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이고, 조선이라든가 중국은 이적(夷狄)에

천황 중심의 황국 사상을 내세워 아시아를 침략했던 일본이 만약 그들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징적인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 자체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파헤쳐나가는 일을 일본은 되도록 피해 왔고, 외면해 왔다. TV 드라마만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드라마는 거의 방영된 적이 없다.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근대에 들어와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13세기부터 형성되어 온 세계관이다.²²⁾ 이것이 근대에 들어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을 거쳐, 일본의 고쿠타이(國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의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²³⁾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이 근세 이후 아시아와 세계를 자국 일본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아시아를 멸시하며, 자국 일본을 아시아와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미화해

왔다. 이것이 일본의 침략성을 낳은 이념적이고 심층적인 근거가 되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는 우월 의식 속에 현존하는 일본식 화이형 세계관

일본식 화이형 세계관을 일본은 메이지(明治) 시대에 실현로 옮겼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한 다음, 1910년 8월 한국을 병합하여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2년에 괴뢰 만주국을 건립하여 중국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다. 그 후 일본은 중일전쟁에 돌입, 1941년에는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발발시켰다.

1945년에 패전한 후, 일본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만약에 일본이 물질적으로 좀더 풍부했다 라면 절대로 미국에 패하지 않았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니까 “이기면 관군이 되고 패하면 역군이 된다”는 것이 패전 후 일본인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패전 후의 인식이 일본인의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

어 일본식 화이형 세계관은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화이형 세계관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우월 의식과 주변민족에 대한 멸시의식이 표리일체가 되어 현재까지 많은 일본인들의 의식의 한 부분을 형성해 왔다.

전후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황국사상에 이어지는 교과서 왜곡문제

황국주의로부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시작되었지만, 침략을 합리화시켜주었던 황국주의의 논리자체를 전후에 한번도 제대로 본격적이고 완벽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국사관에 입각한 현재의 교과서 왜곡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일본의 패전 당시부터 줄곧 내포하고 있었다.

아시아 침략 의도는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뿌리를 내렸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 침략 의도를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의한 아시아 침략에 대한 언질은 메이지유신 당시부터 본격화되었다.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등 유명한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메이지 정부의 중진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라든가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는 실제적인 정한론(征韓論)자들이었다.²⁴⁾

그러나 동경 우에노(上野) 공원에 있는 사이고 타카모리의 동상 아래에 있는 설명문을 보면, 그가 정한론에 반대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대중용 선전 문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역사 인식의 실상이다.

침략과 전쟁을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위대한 사명이었다고 미화시킨다

일본은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훌륭한 일이었다고 반대로 미화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침략을 아시아인을 백인지배에서 해방하는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고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전쟁의 목적은 황도(皇道)주의에 의해 아시아민족을 '황화(皇化)' 시키는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었다.²⁵⁾ '황화'란 황도주의를 각 민족에 강제로 주입시킨 다음, 일본에 의한 아시아 전체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대동아전쟁'은 아시아에서 서양인을 추방한 다음에 일본인에 의한 아시아 전체 지배, 식민지화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목표 부분을 현재까지도 일본은 자국민에게까지 숨기고 있고, 오히려 일제에 의한 침략을 미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황국사상은 전쟁 중에 일본인의 참혹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었다

전쟁터에서의 참혹 행위를 일본군국주의는 일본의 신화를 인용하여 정당화시켰다.

당시의 어떤 서적에는 '탄환·폭탄·어뢰 등에 의한 맹렬한 전투가 '민족황화'를 목적으로 한 대동아권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출현'을 목적으로 한 '정화를 위한 고행'이라고 정당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불결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추하면 추할수록 맹렬한 정화가 요청된다'고 강조되어 있다.²⁶⁾ 이러한 전투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언질은 어떠한 참혹 행위도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화된다는 심리를 군인들에게 부여해 주는 위험사상이다.

전쟁 중, 일본군이 행했던 참혹 행위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규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 참혹 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 양심을 마비시켜 놓았고, 오히려 전쟁터에서의 참혹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황국사상은 이처럼 참혹 행위를 민족황화를 위한 선한

행위로 의식을 역전시켜 놓은 위험한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황국사상은 전쟁 중의 일본군의 참혹 행위를 오히려 더욱 선동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왜곡은 현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① 일본은 국가의 과거의 행위와 의도가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 판단하는 길조차 잃어버렸다.

국가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올바르게 못하게 되면, 그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과거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국가가 그러한 상태이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일본 내에서의 가치관 붕괴와 가치관의 과도한 다양화, 교육의 붕괴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②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과목은 선택과목이다.

고등학교 역사과목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역사를 배우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이러한 경향은 역사와 단절되고 뿌리가 없는 일본인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은 과거를 직시하는 기초적 사고방식이 라든가 교양지식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변국가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로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채, 문제점을 숨기고 있다. 사람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③ 역사왜곡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길을 막아버렸다.

과거 일본의 잘못이 엄청나게 큰데도, 국가가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서민이 알게 된다면, 일본인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거나, 양심을 가지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과거 청산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양심적인 일본 지식층은 이미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과거의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시키고, 혹은 검증되지 않는 역사를 사실화시켜 기술하는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 일본 속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길을 막아버렸다. 따라서 당시의 식민지 주민에 대한 진정한 보상의 길도 막아버렸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잘못이 엄청나게 큰데도, 국가가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서민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인 스스로의 무력함을 느끼거나,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과거 청산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양심적인 일본 지식층은 이미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과거의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밀어버리거나, 자신은 그런 일과 무관하다는 자세로 일관하려고 한다. 일본인들의 올바른 판단의 길을 마비시킨 책임은 전후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있다.

한·일간 사고방식의 차이

병학의 나라 일본과 유교의 나라 조선

조선시대 500년 간에 걸쳐 조선의 국교는 유교였으나, 일본이 역사상 줄곧 키워온 사상은 병학(兵學)이다.

1192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가마쿠라(鎌倉)에 막부를 연 이후, 1868년 메이지 원년까지 일본은 약 700년에 걸쳐 사무라이(武士)가 나라를 통치하는 무사들의 국가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전쟁의 전략술을 가르치는 병학

이 지배자들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며 사상이었다.

『손자병법』의 나라 일본

특히 8세기 경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무사들이 지침서로 삼은 최고의 병서였다. 일본의 무사들은 칼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손자병법을 공부했다.

『손자병법』을 기초로 삼아 유명한 야마가류(山鹿流) 병학을 창시한 야마가 소코오(山鹿素行: 1622~1685)는 뛰어난 병학자이면서 황국사상가였다. 그의 황국사상과 병학이 막부 말,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을 통해 메이지 정부에 계승되어갔다. 요시다 쇼오인의 제자들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한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 대부분이었다. 즉 메이지 정부의 중진들의 기초사상은 손자병법과 황국사상에 있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과 ‘독도와 죽도’로 나타내는 양국 국민과 정부의 실루엣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²⁰⁾이라는 문구이다.

이것이 유교적 발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의 ‘적’이란 ‘이기기 위해 연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유교에서 ‘적’이란 ‘이적(夷狄)들이기에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안 되는 상대’이다.

그러므로 적에 대한 연구라는 발상자체가 한국에서는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일 간의 발상 차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상대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를 현재도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외교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독도영유권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다.

먼저 한국 측의 대일 자세를 알아본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나 실증로나 확실한 우리 땅이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어느 정치가의 말로 대변되듯이, 한국 측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일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측은 어떠한가.

일본은 한국의 주장을 철저히 연구해 나가면서도 그 주장의 허점을 찌르려는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성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라.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나란히 올려져 있다. 그것도 조목조목 빼놓지 않고 가득 차 있다.

한국의 외교통산부 사이트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세계인이 다 들어가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곡된 정보라도 해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일본측 사이트에는 ‘죽도(독도)’는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하여 일본 땅이 되었는지를 밝혀놓았고, 한국측 주장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해 놓았다. 두 나라를 잘 모르는 제3국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인가. 아예 없는 쪽보다는 왜곡된 말이라도 있는 쪽을 더 믿게 될 것이다. 민간차원의 독도관련 사이트는 여럿 있으나 치밀하게 준비된 한국정부 차원의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세기 『세종실록』에 기재되고 있고 메이지 시대 초기의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다이조칸(太政官)도 한국영토라고 인정한 바 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인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선제공격을 일본이 앞서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공격당한 다음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유교적 평화주의의 행동 양식을 현재도 갖고 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평화주의와 병행해서

적을 이기기 위한 정보전략과 선제공격도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에서는 역사과목이 선택과목이다. 역사공부를 했다해도 왜곡된 역사교과서인데다 아예 역사공부를 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한국인·한국정부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납득시키기 위해 부디 '일본어'로도 사이트라든가 설명서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주의와 병행해서 적을 이기기 위한 정보전략과 선제공격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역사과목이 선택과목이다. 역사공부를 했다 해도 왜곡된 역사교과서인데다 아예 역사공부를 하지 않은 일본인이 많다는 사실을 한국인·한국정부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도 사이트라든가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손자병법식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았다

그것은 손자병법이 갖는 현실주의적 논리 때문이다.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기기 쉬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전쟁하기 전부터 반드시 패배할 상대와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²⁸⁾

즉, 이 가르침은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손자병법과 황국사상에는 평화사상이 결합되어 있다

손자병법은 어떻게 하면 적을 잘 침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근거를 둔 황국사상에도 물론 대외적인 평화사상이 들어 있지 않다. 황국사상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천황 통치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 성업에 동참하는 것이 일본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 되어 있다. 천황을 받드는 세계가 가장 행복한 세계이므로 그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침략주의와 직결되어 있다. 손자병법은 황국사상과 함께 침략을 부추기는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가능한 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 착실하게 준비를 하여 반드시 이익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만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 들어오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의 회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며 상세한 계획을 준비한다. 이러한 근본을 알고 보면 손자병법에 있다. 이익이 보이지 않는 사업은 아예 벌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

이에 비해 한국에는 평화사상이 있다

이것이 유교의 교린(交隣)관계라는 평화외교인데, 단군 사상 중에도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시대 일본이 약300년 간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평화국가였던 까닭은 도쿠가와 막부가 유교를 정통사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민중이 일어나서 정치 권력을 타도한 역사는 없다

1910년대로부터 1920년대에 걸쳐서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라는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데 언론이 자유로웠던 그 시대는 군부가 일으킨 5.15사건(1932)이라든가 2.26사건(1936) 등으로 문민정치가들이 대거 살상을 당하면서 끝이 났다. 일본의 문민정치가들이 무관들에게 폭력으로 위협을 당해 입을 다물어버렸던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황국사상은 쇠퇴한 부분도 있으나,

이처럼 펜이 총칼에 패했던 역사밖에 일본은 갖고 있지 않다. 즉 일본은 폭력과 물리적인 힘에 약하다는 것이다. 정의라든가 진리가 폭력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나라가 일본이다.

무사들이 힘을 쥐고 있었던 일본은 무사들이 언제나 일본의 역사를 바꿔나갔다. 같이 역사를 만들어나간 것이다.

일본 국민성의 이러한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역사를 재대로 정리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민중의 힘이 권력을 무너뜨린 역사가 많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침략국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고, 해방 후에도 부패한 정권이라든가 군사정권에 의해 자유를 목살당했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민중은 힘을 모아 총칼과 무력에 대항해 왔다.

1894년의 동학 농민전쟁에서는 총 한 자루 제대로 갖지 않았던 민초들이 한반도 남부를 거의 점령했고, 1919년 3.1운동 때에도 전국의 민중이 일어섰었다. 해방 후, 1960년의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고, 1980년의 광주사태는 전두환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끊임없는 민중의 힘으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시민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꼭 민중이 앞에 나서서 나라를 만들어 지켜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중은 근현대사를 창조하는 주인공들이었다. 한국에서는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나간 것이다.

한국인은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에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올바른 의견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고 믿는 국민이다.

결론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국측이 왜곡 부분 수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일본정부가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우호 관계로 향하던 한일 간은 급랭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위에서 논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손자병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상대만을 골라 싸운다.

그러므로 일본이 지금 한국에게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은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게 약자로 보여지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대일 정책에 초강경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②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일본을 연구하는 장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과 끊임 없이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일본에 대한 연구를 폐쇄하거나 축소시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다시 일본을 모르게 되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적어도 약자로 보여서는 안 된다.

③ 일본인에게 한일관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일본 중·고등학교와 관계 단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내의 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효과이다. 일본인들에게서 한국을 배울 기회마저 빼앗아버리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일본인은 아예 재대로 된 역사를 알 기회와 역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강경 대우와 미래를 위한 준비는 따로 해야 한다.

④ 문화교류라든가 역사교육 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일본을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다, 고등학교에서는 역사가 선택과목이므로 한일 간은 불씨가 계속 남겨지는 셈이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일본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의 문화 교류, 역사 여행, 일어로 된 한일 간 현안 소개 사이트, 일어로 된 관련 책자, 드라마, 만화 등을 통해 일본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가야 한다.

⑤ 일본은 일반 국민의 힘이 약한 나라이다. 그러한 국민 개인의 힘을 한국의 일반 국민과 연대

일본 내에서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다, 고등학교에서는 역사가 선택과목이므로 불씨가 계속 남겨지는 셈이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일본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의 문화 교류, 역사 여행, 일어로 된 한일 간 현안 소개 사이트, 일어로 된 관련 책자, 드라마, 만화 등을 통해 일본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가야 한다.

하면 강해질 수 있다. 한국의 일반인 단체라든가 시민연대 등과 일본 내 일반인의 단체와 연대하여 강한 활동 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힘이 강해지더라도 하면,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한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일본은 다시 침략국가가 될 것이다. 그것은 1차대전 이후의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일본도 다분히 이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오히려 한국 측이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1) 西尾幹二他, 「市販本: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p. 6.
- 2) 上掲書, p. 7.
- 3) 上掲書, p. 7.
- 4) 君島和彦, 「新しい歴史修正主義批判」, 上村聡他, 「いらない!〈神の國〉歴史」, 公民教科書(明石書店, 2001. 3), pp. 41-42.
- 5) 上掲書, pp. 276-282.
- 6) 西尾幹二編,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の主張(徳間書房, 2001), p. 18.
- 7) 上掲書, pp. 22-23.
- 8) 「新しい歴史教科書」, p. 54.
- 9) 上掲書, p. 174.
- 10) 上掲書, p. 198.
- 11) 上掲書, p. 51.
- 12) 上掲書, p. 121.
- 13) 上掲書, p. 107.
- 14) 上掲書, p. 131.
- 15) 伊藤榮四郎, 「皇道世界經綸論」(大正洋行, 1944), pp. 1-2. ('일본 고래의 명칭 '大八洲國'의)' '八'은 '八千島(國)'이라든가 '八百萬神' 등에 나타난 '八'과 같고 '彌'라는 뜻이고 매우 숫자가 많다는 표시이고, '八洲'는 많은 섬들에서 이루어진 일본열도, 나아가서 세계만국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략) 두 신의 '수리고성(修理固成)'의 대업은 낳으신 국토의 명칭을 보아도 그 본질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6) 『日本書紀:神代』: 토요아시하라(豊原)의 천 오백 가을 미즈호노 구니(瑞穂國=日本)는 이것 바로 우리 자손이 왕이 될 땅이다. 우리 황손(皇孫)이며, 왕으로 즉위하고 통치해라. 가라. 보조(寶祚)는 번영하고 바로 천양(天壤)과 함께 무궁할 것이다.'
- 17) 『日本書紀:神武天皇即位前記』, '兼六合以開都, 掩八紘而爲宇, 不亦可乎'
- 18) 朝鮮總督府編, 「初等國史(第六學年)」(朝鮮總督府, 1944), p. 18. '신대(神代)인 옛날에 수사노오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로부터 조선지방에 내리셔서 땅실의 은혜를 배꿀 수 있는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 19) 坂本大郎 他 校注, 「日本書紀上」, 『日本古典文學大系 67』(岩波書店, 1967), pp. 332-339. "황후는 신의 교험(教驗)을 느껴, 신기(神祕)를 제사드리며 스스로 서방을 정복하고자 했다. (중략) '나는 신기의 교를 받아 황조의 영을 쓰면서, 푸른 바다를 건너가 직접 서방을 정복하고자 한다. (중략) (중략)신라에 이르렀을 때, 파도가 멀리 나라 안으로까지 미쳤다. (중략)신라왕은 이리하여 공포에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중략) 선사(船師)는 바다에 가득 차 있었고, 군기들은 햇빛에 빛났

다. 고취성(鼓吹聲)으로 산천은 모두가 떨었다. (중략) '동방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 한다 하더라. 또 성왕이 있는데 천황이라 한다고 하였다. 분명 그 나라의 신병(神兵)임에 틀림없다. 어찌 거병(擧兵)하여 이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신라왕은) 백기를 들고 스스로 굴복했다. (중략) 이것에 의해 신라왕은 항상 팔십선의 조(調)를 일본국에 조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그 유연이다. 여기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들도 신라가 국적을 거두어 일본국에 항복했다고 듣고, (중략) 일본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중략) '지금부터 오래오래 서번(西蕃)이라 칭하면서 조공을 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 20) 拙文: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1999, 고려대, pp. 38-40) "독일의 여행가로 1690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일본에 거주했던 엔겔베르트-켄펠(Engelbert Kaempfer: 1651-1716)은 당시의 일본이 쇠국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저서인 『日本誌-日本の歴史と紀行』 속에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고 적어 놓았다. 즉 '일본에게 알려져 있는 여러 주(州) 외에 일본 내에는 일본국 영토는 아니지만 일본의 수호아래 통치되고 있는 많은 地가 있다' 라고 하고, 琉球諸島 朝鮮 千島列島를 들고 있다. <荒野叢典, 『東アジアの中の日本開國』, 『明治維新(近代日本の軌跡1)』(吉川弘文館, 1994), P. 24> 그는 91년과 92년 2회에 걸쳐 일본까지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수는 교양 있는 일본 청년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 자신이 '적은 인원수 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우리들 네덜란드 상인이라든가 중국 상인들은 말하자면 연금상태처럼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과의 교류라든가 그들과 共同으로 일하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고, (일본은) 완전히 쇠국상태에 놓여 있다' 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도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기록의 출처는 당시 일본 지배층이거나 지식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켄펠이 일본에 거주한 시기는 1690년대 초인데, 豐臣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후인 1607년에 조선과 德川(도쿠가와)막부 사이에 국교가 재개된 이래, 17세기에는 일곱 번에 걸쳐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 땅을 밟았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1429년 尼利攪攪(아시카가요시노리) 장군시대를 비롯해서, 1811년 德川家齊(도쿠가와 이에나리) 장군시대까지 약400년간 17회였으나, 17세기에는 1607년, 1624년, 1634년, 1643년, 1655년, 1682년의 일곱 번이나 방문하여 가장 빈번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통신사 외교는 대등한 입장으로 실시된 交隣外交였다. 그러나 德川막부는 조선에 대하여는 대등한 외교관계(=文隣關係)를 표명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조선통신사가 마치 조공사인 양 연출하여, 조선을 속국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당시 제일 외국인의 대조선인식이란 德川시대 지배층들의 대조선인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 17세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德川막부가 약300년에 걸쳐서 조선을 사실상 속국시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쇼오인 등의 대조선 인식은 그러한 사실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의학자였던 필립-볼프강 폰-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는 1823년에서 1830년까지 나가사키(長崎)에 체류했는데 그도 저서 『日本』 속에서 日本이 朝鮮 琉球 蝦夷 千島 등의 보호국 및 근린제국을 식민지로 하여 이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 19세기의 대조선인식도 켄펠과 마찬가지로 일본 지배층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서양인들에게 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서양 나라들에 대하여 쇠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1) 예를 들면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특히 조선의 잘못을 엄중히 책하고, 納貢奉貢함이 옛날 성행했을 때와 같게 하며, 복으로 만주를 분할하고, 남으로 대만과 필리핀 여러 섬을 다스린다.' <『吉田松陰全集』第1卷(大和書房, 1936), p. 596>
- 22) 拙文, "八紘一宇 사상에 대한 일고", 『일어일문학 연구』 제37집, pp. 390-391.
- 23) 上掲論文, p. 391-392.
- 24) 예를 들면 기도 타카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신주(神州=일본), 정치(政紀)를 일신하여 사방으로 임한다. 여기에 서양 제국들이 벌써 交款을 수용했다. (중략) 조선만이 고편(孤邊)으로 토경(土境)을 접하면서도 통신이 끊겨 사절도 갈 수 없다. 도쿠가와(德川)씨 이래 병예(聘禮)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오지 않게 된지 벌써 20여 년이나 되었다. 지금 바로 천황 친어(親御)의 날을 맞이하여, 그 옛날에 조선이 대마번(對馬藩)에 속하여 성의를 표했듯이, 그들이 다시 와서 판사(款謝)를 올려야 하는데, 인습 위태 구습을 행하며, (중략) 감히 상국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모습은 나 무리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만약 (조선이 만국의) 공리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단연히 결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군대, 함선, 군사금, 군수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田保橋漢, 『近代日鮮關係研究(上)』(宗高書房, 1935), pp. 303-304)>
- 25) 桑原玉市, 『大東亞皇化の理念』(富士書店, 1942), pp. 102-103. "대동아전쟁은 민족해방운동이다.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은 민족황화(皇化)운동이라는 것과 동의어이다. (중략) 대동아전 여러 민족은 천손(天孫)민족에 의한 '황화'가 실현될 때 비로소 인류로서 생존의 영광과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동아 황도(皇道)낙원'의 출현이다. 이 '대동아 황도낙원'의 출현이야말로 민족황화운동의 최종목적이고 민족해방운동의 수확이어야 하고, 따라서 바로 대동아전쟁의 목적인 것이다."
- 26) 上掲書, pp. 102-103. "천부행위는 탄환과 폭탄에 의해 그들이 받아야 하는 고행이다. (주) 민족황화란 그들 민족에 대한 하늘의 바위 문을 여는 일인 셈이고, 즉 대동아전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출현하시는 일이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출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더러움을 닦아내고 고행이 행해져서 정화가 행해진다. 이것이 고전의 기술을 보면 분명하다. 따라서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출현이 대동아민족에 대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를 위한 고행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그 불결함이 깊고 추하여 할수록 맹렬한 정화가 요청되기 때문에 탄환, 폭탄, 어뢰 등에 의한 맹렬한 정화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27) 『孫子: 謀攻編』
- 28) 『孫子: 軍形編』

전후 일본과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 헌법 해석과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현상, 학설 그리고 지방의회 및 정당의 입장과 동향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 선거 참가 문제의 가능성과 금후의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다.

이기완 / 본원 연구원 · 고려대 강사

서론

오늘날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 속에서 회자되는 세계화와 국제 협조주의 개념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해 온 경계가 희미해지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규모의 인적 이동이 금후 한층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추상적인 수사어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과 원인에 의해 국경을 넘은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 정주(定住)함으로써,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외국인¹⁾들이 공생(co-existence)하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면한 주요한 과제는 국가 공동체에서 다른 문화·언어·종교 등을 유지하는 외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기초한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놓인 일본도 외국인에 관한 제(諸)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 제시를 강요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주 외국인²⁾ 참정권 문제³⁾는 헌법 해석과 맞물려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단일민족 국가관⁴⁾이라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하

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정당화해 온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던진다.

전후 일본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영주 외국인 참정권 운동을 축으로 해서 전개되지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발언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 원리에 관한 추상적 논의의 범위를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론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학설이 증가하지만, 기존 학설과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그다지 분명하지는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보류'해 온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그러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헌법 해석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논점이 되고 있다⁶⁾. 이것은 각 국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움직임⁷⁾, 국제화 진전 및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고양⁸⁾, 재일 한인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획득 운동⁹⁾, 그리고 지방자치 수준의 영주 외국인 정치참가 움직임 등에 기인한다. 더욱이 종래 국민주권 하에서 참정권은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국민주권·국민·국적'이라는

관념적, 추상적인 결합체가 오늘날 '상대화'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국가의 치자와 피치자의 동질성 이데올로기하에서 성립된 국적을 기초로 한 '불가분 일체성'인 국민주권원리는 세계화 시대에 그 상대화를 강요받고 있고, 당사자가 어느 국가를 생활 본거지로 하고 있는가에 의해 국적을 인정하는 '실질적 국적'론도 등장하고 있다.¹⁰⁾ 또한 개인의 국가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나타내는 국적도 이중국적(二重國籍)을 용인하는 추세이고, 재외 투표 제도(在外投票制度)를 포함한 이중참정권을 인정하는 경향조차 발견된다.

이러한 때 1995년 2월 28일 최고 재판소가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정책 문제'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¹¹⁾ 이것을 계기로 영주 외국인 선거 참가는 일본 정치의 '현실적 문제'로 급부상한다. 지금까지 영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¹²⁾ 이 판결을 계기로 입법 정책에 의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운동은 영주 외국인 참정권의 합헌성 유무를 다루는 법정 투쟁이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어떻게 입법화를 추진할 것인가, 또한 어떤 법안을 만들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된다.¹³⁾ 이러한 의미에서 이 판결은 일본의 외국인 참정권 운동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¹⁴⁾

그러나 1995년 최고 재판소 판결로부터 6년이 경과한 지금도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헌법 해석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채택 급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엔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정당정치에서 찾고,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한 정당내·정당간 정치 동향을 중심으로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 역학을 규명하려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현상, 학설, 그리고 지방의회 및 정당의 입장과 동향

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 선거 참가 문제의 가능성과 금후의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다.

외국인 지방 참정권 동향: 일본과 제 외국의 현상을 중심으로

제(諸)외국의 지방 참정권 현황(現況)

19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기본적인 이익은 국가를 단위로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국가의 이념이 보편화된다. 국민국가와 국민주권이라고 할 때 국민이라는 의미는 그 국가 영역 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 즉 정주자(定住者)를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은 국민과 외국인 차별의 역사이다. 근대국가는 정주자에게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구별을 꾀한다. 국적이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인적 이동이 빈번해지고 본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거주지의 강제 이동, 박해로부터의 도피, 전후 동서 냉전에 의한 난민 발생, 식민지의 독립에 따른 일부 주민의 중주국으로의 이동,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EC통합 진전에 따른 EC제(諸)국 시민의 영역 이동 등이 겹쳐, 국경을 초월한 인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본국 밖에서 생활하고, 외국으로 생활 본거지를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1970년대 이후 국적에 의한 정주자 및 비(非)정주자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의 정치참가 문제를 낳고,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많은 국가에서 정치 과제로 부각된다. 유럽에서 영주 외국인 선거권의 도입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¹⁵⁾ 첫째,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이다. 전후 급속한 경제 회복을

달성한 서유럽에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을 보충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 초청과 출산에 의해 서구 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이민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서구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일환으로 선거권 보장이 논의된다. 둘째, EC를 중심으로 한 유럽통합 움직임이다. 1974년 12월 파리 수뇌 회담에서 유럽의 정치적 협력 촉진 방

근대 국가는 정주자에게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구별을 꾀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적에 의한 정주자 및 비정주자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의 정치 참가 문제를 놓고,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각국에서 정치 과제로 부각된다.

국민에게 한정하지만, 그 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다. 그 후 1985년 8월 29일 제정된 법률은 적어도 5년 간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¹⁷⁾고 되어 있다. 또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년 거주를 조건으로 지방선거권을 18세 이상의 전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침이 제기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가맹국 상호간에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가 검토된다. 1986년 10월 EC위원회가 EC가맹국 시민에 대해 거주 국가의 지방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침을 표명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모든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특정 외국인에게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가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방식에는 세 가지 모델—상호주의형(相互主義型), 정주요건형(定住要件型), 그리고 호혜요건형(互惠要件型)—이 있다.¹⁸⁾

첫째, 스페인 및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상호주의형이다. 1978년 스페인 제헌 의회는 스페인 국민만이 제23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단체 선거에서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 수준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주요건형이다. 1983년 네덜란드 헌법은 국정 수준의 참정권은

셋째, 구(舊)식민지 출신 외국인과 유럽통합을 위한 특정 국가 간 호혜적인 참정권을 서로의 주민에게 인정하는 호혜요건형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 시민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연방 시민 및 아일랜드 시민에게 국정·지방 수준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조건부로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설립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을 앞두고 1992년 12월 24일 '기본법'을 개정하여, EC가맹국 시민에 한하여 지방 참정권을 인정한다.¹⁹⁾ 프랑스는 프랑스 태생의 알제리아인에 대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함과 동시에 모든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1992년 6월 25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에 앞서 개정된 '헌법'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EC가맹국 시민에 대해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조치는, EU가맹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가맹국 시민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국내법 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 각료 이사회 회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EU는 '국적의 상대화=국적과 시민권의 분화'를 실현한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이외의 유럽 각국과 아시아·아프리카 시민에게는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EU가 EU시민에게만 외국인 지방 참정

〈표 1〉 각국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현황(2000년 1월 현재)

국 가	국정선거		지방선거		이중국적	부여 여건	근거법률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스웨덴	x	x	o	o	△	3년 이상 거주	선거법
덴마크	x	x	o	o	△	3년 이상 거주	선거법
노르웨이	x	x	o	o	△	3년 이상 거주	선거법
네덜란드	x	x	o	o	o	5년 이상 거주	헌법
아일랜드	△	x	o	o	o	국정선거는 유럽연합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선거권만 인정, 지방선거는 6개월 이상 거주 전 외국인	헌법
핀란드	x	x	o	o	△	1991년부터 보장	헌법
스위스	x	x	△	△	o	일부 주에서만 실시	연방헌법
스페인	x	x	△	△	o	상호주의 원칙	헌법, 선거법
포르투갈	x	x	△	△	o	상호주의 원칙	헌법
아이슬란드	x	x	△	△	o	유럽연합 시민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거주	선거법
영국	△	△	△	△	o	영연방 시민과 아일랜드 시민	국민대표법
호주	△	△	△	△	o	영연방 시민	연방선거법
뉴질랜드	o	△	o	△	o	선거권은 1년 이상 거주, 피선거권은 1975년 시점에서 선거인명부등록인과 영연방·아일랜드 시민	선거법
일본	x	x	x	x	x		
한국	x	x	x	x	x		

참조 : o은 부여, △은 일부의 시민에게만 부여, x은 부여하지 않음.

출전 : 近藤敦「外國人參政權と國籍」, 明石書店, 1996年, p.182 및 「讀賣新聞」, 1999年 12月 31日 등을 참고로 제작됨.

권을 부여한 것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고조된 외국인 배척(xenophobia)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⁹⁾

한편 미국은 부모 국적을 계승할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럽 각국과 달리,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인정하는 입장²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 국한된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이중국적' 및 '이중참정권'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참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중국적과 이중참정권을 용인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정주(定住)하는 이민 노동자의 증대에 즈음해서 특히 2세의 편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결혼의 증대로 인해 가족 국적의 일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¹⁾ 〈표 1〉은 주요 각국의 영주 외국인의 국적·지방 수준의 참정권과 이중국적 현황을 보여준다. OECD가맹 23개국 중 귀화할 경우 종래의 국적

포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가 14개국이다.²¹⁾ 또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제국은 일반적으로 귀화의 경우 종래의 국적 포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택권에 기초하여 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가 이중국적에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단, 독일도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와 실무가 일치하지 않고 이중국적은 확대 추세에 있다.²²⁾

일본의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현황

일본은 1920년 선거부터 일본 본국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에게 국정·지방의 선거권을 인정하지만, 패전 후 1945년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²⁴⁾에 의해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 등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 이것은 강화조약 체결까지는 제국 신민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과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다.²⁵⁾ 또한 1947년 5월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외국인 등록이 최초로 의무화된다. 이 '역사상 최후의 칙령'에는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은 이 칙령을 적용하여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²⁶⁾ 여기에서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본래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제3국인'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전승 국민도 패전 국민도 아닌 '제3의 범주'로 사용했던 "the third national"의 일본어 번역이지만, 그 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종종 멸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⁷⁾

전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강화·독립을 달성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대일 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의해 주권을 회복한다. 이를 계기로 60만 명에 이르는 구식민지 출신자들은 일제히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다. 이 국적 처리는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일 평화조약에 국적 변동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도 아니며 더욱이 일본 국내법이 그것을 정한 것도 아니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독립에 즈음해서 '국적 선택권'이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법무성 민사국장 통지(通知)'²⁸⁾만으로 외국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

이것은 구식민지 출신자에 대해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서독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서독은 1956년 5월 국적 문제 규제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국적 문제를 해결한다. 즉 합병에 의해 오스트리아인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독일 국적은 오스트리아 독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단 독일

일본인과 재일 한인·조선인은 단일 민족 감정을 중시하는 소위 '역사적 민족'이기 때문에, 재일 한인·조선인이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당연히 저항감이 있던 것 만큼, 일본 보수 정치인들 역시 참정권과 이중국적 부여에 반대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인은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의해 독일 국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인에게는 국적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일본에서는 전전 제국 신민으로 간주된 사람들이 전후 일방적으로 외국인으로 배제되고, 그 결과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채택한 제도는 법무 대신의 자유재량에 의한 귀화, 즉 재량 귀화(裁量歸化)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본은 단일 국적이 전제이기 때문에 출신 국가의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과 재일 한인·조선인은 단일민족 감정을 중시하는 소위 '역사적 민족(historical nation)'²⁹⁾이기 때문에, 재일 한인·조선인이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당연히 저항감이 있던 것만큼, 일본 보수 정치인들 역시 이중국적 부여에 반대한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통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³¹⁾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지 못한 채 수면 하에 있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1989년 국정 선거에 관한 소송과 1990년 지방 선거에 관한 소송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³²⁾ 또한 1993년 9월 9일 오사카부(府) 키시와다(岸和田)시의회를 시작으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또한 정당 수준에서는 신당사키가게 시마네(島根) 지부가 1994년 1월 7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영주 외국인의 입당을 인정하고, 더욱이 동년 11월 12일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³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5년 2월 28일 최고 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허용 견해'를 보여, 국민 여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으면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는 정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³⁴⁾ 따라서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치 문제, 즉 국회의 숙제가 된다.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세 가지 학설: 헌법 해석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거권을 둘러싼 이론 문제는 현재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일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90년대 들어 외국인 선거권을 둘러싼 헌법 제소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황당무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헌법학의 해석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대 일본 헌법학에서, 참정권은 사회권 및 입국 자유 등과 함께 외국인에게는 보장할 수 없는 대표적인 권리로 간주한다. 국민주권원리를 채용하는 헌법 하에서 참정권은 국민이 자기가 소속한 국가의 정치에 참가하는 권리이고 외국인에게 이것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참정권은 해당 국가의 국민 이외의 사람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주권국가의 변용은 이러한 기존 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강요하고 있다. 참정권 그 중에서도 선거권을 일정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그 결과 국민주권원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입법 조치에 의해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최근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를 둘러싸고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외국인 선거권을 둘러싼 학설은 헌법과 외국인 선거권의 규범적 관계 및 국정·지방 선거권의 허용이라는 두 가지 좌표축에 의해 분류된다.³⁵⁾ 즉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부정설 혹은 금지설',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허용설',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요청된다는 '요청설'로 분류된다.³⁶⁾ 이 구분은 공무원 선정(選定)·파면권의 주체인 헌법 15조 1항³⁷⁾의 '국민'과, 지방 선거권의 주체인 헌법 93조 2항³⁸⁾의 '주민'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민이 국민을 전체로 하는가의 여부가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지방 수준에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설은 거의 이 주민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헌법 93조 2항에서 말하는 주민은 헌법 15조 1항의 국민과는 달리 영주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 참정권 금지설

이것은 국정·지방 수준에서 외국인 선거권·피선거권의 전면 부정을 당연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배적인 학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공히 국민주권 조항(헌법 1조)에서 직접 파생된다. 둘째, 헌법 15조 1항의 국민과 93조 2항의 주민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고, 양자는 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과 주민의 차이는 '지역적 넓이'에 국한된 것이다.³⁹⁾ 국민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주민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의회 수준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지방 수준의 선거권 연원을 93조 2항에서만 찾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 수준의 선

거권을 국정 수준의 선거권과 분리해서 생각함으로써 국정 수준의 선거권에 적용되는 선거에 관한 원칙이 지방 수준의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될 우려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원리에서 당연하게 도출되는 귀결이다. 이 입장은 “인간이 가진 참정권이 그가 속한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의미하고, 외국의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국가라는 성질상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정권은 그 국가의 정치에 참가할 권리이며, 특히 선거권·피선거권이라는 것은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여할 국민 고유의 권리”라는 관점을 취한다.⁴⁰⁾ 이 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국정·지방 선거는 구분되지 않고, 영주 외국인 참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 즉 외국인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만이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 원천인 것을 요청하는 국민주권원리에 모순된다.

재판소도 영주 외국인의 지방자치 선거권을 둘러싼 사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판지(判旨)를 전개한다. “참정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존재가 그 전제로서 필요하고, 국가 정치에 참가할 권리는 그 권리 성질로부터, 그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부여할 것인가,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결정한다.”

그러나 일본인과 생활 실태를 같이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국제화에 대응한 행정이 요구되는 오늘날 영주 외국인의 의견·이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수단을 봉쇄하는 금지설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동을 중시하고 그

199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헌법 해석과 맞물려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종래 일본 헌법학에서는 참정권은 외국인에게 보장할 수 없는 대표적인 권리로 간주되지만, 외국인 선거권을 둘러싼 헌법 제소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학의 해석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장을 새롭게 파악하는 ‘신고유권설’⁴¹⁾과, 그 인권 보장 및 국민주권 원리와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견해⁴²⁾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하게 주장되기에 이른다.

지방 참정권 허용설

이러한 금지설에 대해, 헌법이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학설이 오늘날 점차 유력시되고 있다. 이 학설은 영주 외국인에게 국정·지방 수준의 참정권을 모두 인정하는 전면 허용설과 지방 수준의 참정권만을 인정하는 부분 허용설로 분류된다.

우선 전면 허용설에 의하면, 국민주권은 군주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은 “군주 및 봉건적 특권계급 이외의 사람과 인민을 총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국인에 대한 국적 보유자라는 의미의 국민은 아니다. 즉 이 학설에 따르면 국민주권 원칙은 해당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그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이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³⁾

이 전면 허용설은 역사적 사실을 경시하는 난점이 있다. 국민주권은 대내적으로 군주의 지배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부의 지배에 대항하는 의미도 지닌다. 이 점에서 국민주권은 국적 보유자로서 국민 및 그것에 의해 구성되는 국민국가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주권·국민·국적 개념이 상대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민 개념을 국적으로부터 분리해서 이것에 영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⁴⁴⁾

최근에는 국민은 국적 보유자에 국한되지만, 주민

은 영주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부분적 허용설이 유력 시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주 외국인은 헌법상 국정 참정권과는 별개의 지방 참정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주권원리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 수준의 외국인 선거권은 부정되지만 그것은 국정의 원리에 국한된다. 지방 선거권의 주체를 정한 93조 2항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 원칙 규정인 92조로부터 파생되며, 이 원리가 지방 수준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⁴⁵⁾ 즉 지방자치 수준에서 영주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방자치의 취지는 주민 자치에 있으므로 주민인 영주 외국인의 정치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지 않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외교·방위와 같은 대외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외국인을 참가시키는 것은 일본 헌법이 허용하고 있고, 그 적부 판단은 국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것은 국정 수준과 지방 수준을 구별해서 헌법 15조 1항이 국민주권원리(헌법 1조)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법 93조 2항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 원칙(헌법 92조)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부레아(D.Breer)의 '이중의 정당성 이론'에 의해 뒷받침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의해 부여된 임무인 기관 위임 사무⁴⁶⁾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사무를 행한다. 따라서 이 이중의 임무에 대응해서 이중의 민주적 정당성이 고려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이념은 자치단체의 정치 행위가 국가 의사와 구분되는 주민 의사에 의한 지역적 정당성(아래로부터의 정당성)에 의해 지탱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위는 법률에 기초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이상, 정당성의 연원이 국

민에게 존재한다는 국가적 정당성(위로부터의 정당성)의 계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3조의 주민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해석은 "국민주권원리와의 관계에서 하등의 문제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⁴⁷⁾ 즉 일본 헌법이 15조 1항에서는 국민, 93조 2항에서는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것을 고려한 것이다.⁴⁸⁾

지방 참정권 요청설

이 학설은 국적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의 영주 외국인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11조가 일본 국민인 주민과 외국인인 주민을 양분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헌법 14조의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위헌 무효가 된다. 참정권의 귀속 주체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지표는 형식적 국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일반 의사의 형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또한 헌법 15조 1항은 적극적으로 선거권의 자격을 일본 국민에게만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최저 요건'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⁴⁹⁾

외국인 참정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한 위헌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근거한다. 첫째, 헌법 10조가 인정하는 재량 범위를 일탈해서 구식민지 출신자의 국적 청구권을 무시하고, 그 결과 그들을 일본의 선거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국적법은 위헌이다. 둘째,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은 국적이 없더라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거 참가를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⁵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이다. 정치 이념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이 인민에 의한 자기 통치이고,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주

〈표 2〉 지방의회의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의견서 채택 현황

연도	도도부현 의회			시(市)의회			읍(町)의회			면(村)의회			합계		
	수	채택수	채택비율	수	채택수	채택비율	수	채택수	채택비율	수	채택수	채택비율	수	채택수	채택비율
1995.12	47	26	55.31	687	450	65.50	1989	431	21.66	579	120	20.72	3302	983	29.76
1997.6	47	29	61.70	690	489	70.86	1986	622	31.31	579	167	28.84	3302	1307	39.58
1998.4	47	31	65.95	691	501	72.50	1985	653	32.89	579	172	29.70	3302	1357	41.09
1999.3	47	33	70.21	691	513	74.24	1985	665	33.50	579	180	31.08	3302	1391	42.12
2000.10	47	36	76.59	691	529	76.55	1985	724	36.47	579	200	34.54	3302	1489	45.09
2001.5	47	36	76.59	691	530	76.70	1985	725	36.62	579	202	34.88	3302	1493	45.21

출처 : 民團中央本部國際局編<

권에서 말하는 주권자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정치사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모든 사람, 즉 해당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느 국가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정치 참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생활 실태에 있는 영주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⁵¹⁾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정치과정: 지방의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헌법학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견해를 정리하고 있고, 1995년 2월 최고 재판소 판결은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본 절에서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동향을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고양, 헌법 해석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급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정당내·정당간 정치에서 규명하려 한다. 물론 당면 현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절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전체적으로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입법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우선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장 및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지방의회의 입장 및 동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99조에 의거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오사카 키시와다시 의회는 1993년 9월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관한 지방의회 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한다.⁵²⁾ 이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동년 6월 오사카 지방 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된다.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영주 외국인이 자치단체의 정치, 행정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일정의 이해를 표시한다. 그 후 지방의회에 의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결의와 의견서 채택이 급증한다.

지방의회의 입장은 외국인도 주민이고, 적어도 영주 외국인은 주민자치의 담당자로서 자격을 가진다는 생각이 점차로 확대된다. 특히 법 개정에 의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도입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수는 1994년 10월 106개, 1995년 2월 대략 200개이던 것

이, 1996년 5월에는 1200개를 넘어서고 있다.⁵³⁾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년 의견서를 채택하는 지방의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도·부·현 의회와 시의회 중에서도 정령(政令)지정 도시 의회⁵⁴⁾ 및 도·도·부·현 청 소재지 시의회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의견서 채택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높고, 외국인이 적고 국제화가 진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 특색이다.

1995년 2월 28일 판결에 대해 자치성(2001년 1월 총무성으로 개편)은 “지금까지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가의 입법 정책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자치성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첫째, 영주 외국인 중에서 압도적 다수인 재일 한인·조선인 사이에도 의견이 사분 오열되어 있다. 즉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은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지방 참정권 획득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둘째, 북유럽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를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독일·프랑스 등처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셋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⁵⁵⁾

이러한 가운데 1996년 10월 28일 동경도 의회는 “영주 외국인의 지역사회에의 참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갈 것을 결정하는 의견서를 채택한다. 이 결정에 대해 자치성 선거과(選舉課)는 “이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와 각종 단체로부터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입법 정책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⁵⁶⁾ 더욱이 하시모토 내각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로 검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입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참의원 회의장에서 “지방 참정권 획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면, 재일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도 대단히 기뻐할 것이고, 세계도 또한 일본의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⁵⁷⁾고 연설한다. 이에 대해 오부찌 케이조 수상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간사장은 몇 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니시다 마모루(西田司) 자치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요구한 재일 한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해 “시·읍·면(市町村) 및 도·도·부·현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대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⁵⁸⁾ 게다가 1995년 4월 7일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재일 한인·조선인의 소송에 대해 오사카 고등 재판소는 1999년 2월 24일 “헌법상,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0년 9월 29일 야마가타시(山形市) 현의회(縣議會)는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시즈오카(靜岡) 이시카와(石川) 지사는 2000년 10월 도·도·부·현이 국가로부터 외교와 국방 등에 관한 법정 수탁 사무 처리를 맡고 있는 것을 이유로 지방에 한정된 참정권이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앞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말부터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비율이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 의견서 채택을 취소하는 지방의회도 증가하고 있다. 즉 2000년 말경부터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 채택 움직임이 있던 지

방의회에서도 점차로 신중론이 확산된다.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각 당의 동향과 정당간 정치: 1995~2001.6

영주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보면, 자민당이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최초로 착수한 정당은 신당사키가케이다. 신당사키가케의 시마네 지부는 94년 1월 외국인의 입당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발표한다. 그 입당 규약은 "적법하게 현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배우자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연간 3천 엔의 당비를 납입할 수 있는 자" 등이다. 일본 정당 중에서 외국인 입당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더욱이 11월 12일에 신당사키가케는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을 발표한다. 이것은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長)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⁵⁹

자민당은 헌법 15조 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95년 3월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95년 5월 24일 '중간보고'를 발표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첫째,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참정권이란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상 자리 매김을 명확히 한다, 등으로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⁶⁰

일본 사회당(현재, 일본 사민당)은 1995년 3월 8일 '정치개혁추진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검토한 결과, 5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즉 일본 사회당은 "영주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일 외국인에 대해 지방 선거의 선거권 부여를 요구한다. 이 문제는 일본

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특별 영주자 등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신진당은 1995년 1월 26일 일본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재일 외국인에 대해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를 검토할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5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특별 영주자 및 영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도·도·부·현, 시·읍·면(市町村) 수장 및 의원 선거권은 인정하지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셋째, 신고제에 의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더욱이 신진당의 공명당계 후유시바 테쓰조(冬柴 鐵三)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계속한다.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여 스스로 지방 참정권을 부여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부여한다. 이러한 견해는 그 후 신당평화·공명(후에 공명당으로 합류)의 정책적 근간이 된다.

공명당은 영주 외국인 지방 선거권 부여를 일찍부터 주장한다. 공명당은 국정 수준에서는 신진당에 합류하지만, 지방의회 수준에서는 공명으로 존재한다. 그 공명은 95년 2월 24일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 93조 2항 주민 해석의 명확화를 꾀하기 위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제언'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공공단체의 수장 및 의원 선거권은 인정하지만, 피선거권은 의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종래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헌법개정 논의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지만, 최고 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다.

1995년 2월 최고 재판소 판결을 전후한 시기에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해 각 정당은 표면적인 찬성⁶¹을 보이지만,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커다란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첫째, 외국인의 대상과 범위

를 둘러싸고 영주 외국인 등과 같이 재류 자격으로 구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주 연수(3년 혹은 5년)로 분류할 것인가의 대립이다. 둘째, 선거권만을 부여할 것인가, 피선거권도 포함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다. 셋째,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다. 대상자 전원을 선거인 명부에 기재할 것인가, 신고한 사람만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다. 넷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다. 특히 자민당은 상대국이 일본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에게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타당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⁶²⁾

각 정당의 표면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연립정권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점에 기인한다. 첫째, 연립 여당(자민·사회·사키가케)은 국회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입법을 목표로 하여, 정치개혁협의회에서 협의를 계속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와 상호주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다.⁶³⁾ 즉 연립 여당 내에서 사회·사키가케 양당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자민당이 신중한 자세를 표명하는 것에 의해 연립 여당내의 조정이 난항을 거듭한다. 둘째, 자민당의 복잡한 당내 구조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이다. 94년 6월 30일 역사적인 3당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여 성립된 무라야마 연립정권에서 제1당의 위치를 점한 자민당은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사회당과 사키가케에 대한 배려에서 표면적으로는 찬성의 태도를 취하지만, 실은 당내 반대파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셋째, 정당간 이합 집산에 의한 불안정한 정당 구도와 정계개편 속에서 각 당의 정책 입안 능력의 결여이다.

결국 1995년 2월 최고 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고조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

안 논의는 정계개편 흐름 속에서 자민당의 복잡한 당내 구조, 연립 여당내의 대립, 그리고 야당의 입법 노력 결여 등으로 정계의 관심사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가운데 95년 10월 17일 연립 여당은 정치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립 여당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3당 정책협의 대상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한다.⁶⁴⁾

그런데 이 문제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동년 10월 6일 민주당과 신당평화·개혁(공명당·개혁 클럽)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차 정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한다.⁶⁵⁾ 또한 1998년 11월 17일 공산당 시이 카즈오(志位 和夫) 서기국장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 공산당 제안"이라는 법안 요강을 발표해,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정치과제라는 견해를 명백히 한다.⁶⁶⁾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공산당은 12월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두 법안을 비교할 경우, 특징적인 공통점은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이고, 커다란 차이점은 공산당이 외국인 피선거권을 승인한 것에 대해, 민주·공명 양당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자민당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캐스팅 보트를 권 공명당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정기국회(1999년)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논의는 하나의 쟁점이 된다.⁶⁷⁾ 1999년 3월 양 법안은 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만,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자민당내의 신중론이 강하고, 특히 상대국 정부에 재류 일본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은 공명당

후유시바 간사장과 자유당 니시노 아키라(西野 陽) 중의원 의원 등 재일 한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서 지역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요구가 높은 것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도 문제를 어렵게 하는 한 측면이다.⁶⁸⁾ 더욱이 민단은 연내 입법화를 요구하며 여야당에 적극적인 공작을 전개하지만, 조총련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즉 민단은 영주 외국인이 지역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조총련은 참정권 부여를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간주하여, 양 단체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⁶⁹⁾ 이러한 민단과 조총련의 입장 차이는 자민당 내의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공명·민주 양당 공동 제출의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9월 26일 오부찌 수상과 공명당 칸자키 타케노리(神崎 武法) 대표가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을 발족시킬 것에 합의한다. 10월 4일 3당 연립정권을 형성한 자민·자유·공명 3당은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할 때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공동으로 성립시킨다는 데 합의하나, 자민당 내 일부의 반대로 지방 참정권 법안의 성립 시기는 명시되지 않는다. 10월 19일 열린 정책책임자회의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대해 연립 여당은 각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당내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일단 보류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당파 '일본 의회 국회의원 간담회'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 宣伸, 에토·카메이 파) 회장과 히라누마 타케오(平沼 赳夫, 에토·카메이 파) 간

**1995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가 지방
자치 선거에 있어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
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정책 문제'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정치문제 즉 국회의 숙제가 된
다.**

사장은 오부찌 수상에게 "3당 연립정권의 합의에 기초하여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가 졸속으로 법제화되면, 후세에 되돌릴 수 없는 화근을 남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요망서를 제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⁷⁰⁾ 10월 27일 3당 간사장 회담에서 공명당 후유시바 간사장이 민주당과의 공동 제출 법안(98년 10월)에, 북한 등과 같이 국교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영주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 참정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수정을 가

한 새로운 법안 요강을 제시하고 임시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⁷¹⁾ 자유당 후지이 히로히사(藤井 裕久) 간사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공명 양당만으로 참정권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자민당에 당내 조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⁷²⁾ 즉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대해 연립 여당은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는 자유·공명 양당과 신중한 심의를 주장하는 자민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2000년 1월 21일 자유·공명 양당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한다. 이 법안은 1998년 10월 민주당과 신당 평화·개혁의 공동 제안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당분간 외국인 등록 원표의 국적 기재란에 국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어, 국명란에 국명이 아닌 지명인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총련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가 보류된 점이다.⁷³⁾

공명당 후유시바 간사장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방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주적·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 주민에는 지

역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외국인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재일 한인·조선인 등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주 외국인에게조차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지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분출하고 있고 그 수는 1439개 지방 단체에 달하고 있다.⁷⁵⁾ 또한 자유당 오자와 이찌로(小澤一郎) 당수는 민족적 감정의 용어리를 풀고 결과적으로 귀화도 촉진해, 영주 외국인이 진정한 일본 국민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정치적·제도적 측면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⁴⁾

그러나 자민당 에토·카메이 파⁷⁶⁾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면 국가 붕괴를 초래한다고 말해, 선거권 부여보다는 귀화 조건 완화 방안의 검토를 당 집행부에 요구한다. 파벌 회장인 에토 타카미(江藤 隆美)는“선거권을 갖고 싶으면 귀화하면 된다.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 된다”⁷⁷⁾는 입장을 밝힌다. 더욱이 초당파 ‘일본 의회 국회의원 간담회’ 시마무라는“이 사안은 국가 형성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문제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써서 반대한다”고 말해, 공명당 중심의 3당 연립정권 해소를 오부찌 수상에게 건의할 자세를 보인다. 더욱이 조총련은 2월 23일 이 법안에 대해“재일 조선인의 귀화, 동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⁷⁸⁾고, 법안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러한 가운데 자민당 노나가 히로무(野中 廣務) 간사장은“자민당 내의 의견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면, 자유투표로 활로를 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가”⁷⁹⁾라고 말해, 자유투표라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립시킬 방침임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자민당 내의 신중론이 강해 당내 조정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한 결과, 정치운리·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은 5월 25일

심의 미료인 채 폐기된다. 그것은 6월 총선거를 앞두고 중의원 해산에 의한 조치이다. 중의원 의원 선거 후, 7월 5일 특별 국회에서 공명·보수 양당과 야당 제1당인 된 민주당이 각각 단독으로“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長)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양 법안은 내용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2000년 9월 21일 개최된 제150회 임시국회의 초점은 영주 외국인 지방 선거권 부여 법안이다. 개회를 목전에 두고 자민당 신중파 의원으로부터 반대가 속출하고(특히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 正邦) 에토·카메이파, 자민당 참의원 의원 회장), 그 날 자민당 반대 의원들은“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오쿠노 세이스케(奥野 誠亮) 회장)을 결성한다.⁸⁰⁾ 이러한 가운데 9월 28일 개최된 자민당 선거제도 조사위원회(위원장·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 正暉) 중의원 의원)는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나카야마 회장은 공명·보수 양당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연립여당의 대응과 입법 정책 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나가 간사장은“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공명당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1999년 10월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을 형성할 때 체결한 정책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방 참정권 부여 도입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그는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 1995년 최고 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면서“참정권 부여는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10월 2일 참의원에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송부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헌법이 정한 국민주권원리에 반한다”고 하는 강한 반대론이 속출하여 노나가 간사장은 당내 조정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⁸¹⁾ 하지만 노나가 간사장은 2000년 말까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성립시키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 이 문

제는 연립정권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했듯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는 연립 여당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줄곧 요구해 온 것이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한 공명당은 2000년 6월 총선거에서 대폭적으로 의석을 상실하여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연립정권 해소 유혹에 빠진다.⁸²⁾ 그런 공명당에 대한 배려에서 노나카 간사장은 법안 성립에 찬성 의사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일본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성립보다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⁸³⁾ 이들은 노나카 간사장이 연립 유지와 과거 속죄 의식에서 이 법안 성립에 기를 쓰지만, 그것이 일본을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자민당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사무국장인 히라사와 카쓰에이(平澤勝榮, 오부찌파) 중의원 의원은 "공명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제일 한국인 속에 참가학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공명당은 그런 사람들의 표와 한국에서의 포교 활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 도입에 적극적이다"⁸⁴⁾고 말하면서, 만약 공명당이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국가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왜 시간을 들여 논의하지 않는가 라고 비판을 가한다.

한편 공명당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정심회장, 민주당 오카다 카쓰야(岡田克也) 정조회장, 사민당 쓰지모토 키요미 정심회장, 그리고 공산당 등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찬성할 입장을 분명히 한다.

원칙적으로는 자민당을 제외하고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적기 때문에, 정당간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 수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2000년 11월 16일부터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법안을 심의할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비구속 명부식을 도입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다.⁸⁵⁾ 더욱이 이 법안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파의 대립 속에서 가까스로 심의가 시작되지만, 자민당 내부의 조정이 난항하여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법안

은 성립되지 못한 채, 제150회 임시국회는 12월 1일 폐막되고, 이 법안은 계속 심의의 형태로 차기 국회로 이월된다.

공명당 칸자키 대표는 2001년 1월 7일 "자민당 내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대신에 특별 영주자에 한해 일본 국적의 취득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것과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⁸⁶⁾고 말해, 차기 정기국회에서 성립시킬 강한 의욕을 보인다.

하지만 공명당과 동일 보조를 취해 온 민주당내 동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의원들에 의해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생각하는 모임'(우에다 키요시(上田清司) 의장)이 발족한다. 이 모임은 2월 7일 "참정권 부여는 일본 국적 취득이 전제이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 선거권 부여 법안의 취소를 당 집행부에 요구한다.⁸⁷⁾ 더욱이 이들은 특별 영주자의 일본 국적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선거권 부여 논의를 동결하자는 자민당 반대파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 이것은 연립 여당 내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공명당

에 커다란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자민당 신중파에게 반대 명분을 주는 좋은 '미끼' 를 제공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자민당내의 '숨은 반대파' 들도 공공연히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해 반대의 기치를 드높이기 시작한다. 2001년 2월 15일 자민당 야마사키(山崎)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⁸⁵⁾ 또한 하시모토 파 회장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는 "영주 외국인을 만든 것은 과거 일본 정책에 기인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⁸⁶⁾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에 대해 공명당은 자민당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법안이 위탁되어 있는 '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피력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립 여당은 2001년 4월 '국적 프로젝트 팀'이 제시한 '특별 영주자 국적 취득 특별 법안'을 금년 중에 제출하여 성립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본다.

5월 28일 자민·공명·보수 여당 3당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의 계속 심의에 합의하지만,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신속하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것은 네 가지 점에 기인한다.

첫째, 자민당내의 보수 강경파가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대한 반대론이 대세를 점한다.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 자세를 취해 온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 純一郎)와 야마사키 타쿠(山崎 拓)가 각각 수상과 간사장이 된 것도 법안 체결을 한층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또한 자민당 내 숨은 반대파와 강경 반대파인 에토·카메이 파는 특별 영주자 등의 국적 취득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다. 둘째, 연립 정권에서 공명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이

다. 2000년 6월 행해진 제42회 총선거에서 공명당·개혁 클럽은 47의석에서 31의석으로 참패를 당한다. 셋째, 공명당과 동일 보조를 취해 온 민주당내의 의견 분열이다. 민주당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생각하는 모임'이 지방 참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 취득이 전제라고 하면서 당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넷째,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 채택 움직임이 있던 지방의회에서 점차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

본 논문은 전후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논점과 현황을 개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국제 환경의 변화와 각 국의 외국인 지방 참정권 현상(現狀) 및 동향,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제 현실, 지방의회의 입장과 동향, 그리고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를 둘러싼 각 당의 동향과 정당간 정치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간단히 되돌아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헌법과 영주 외국인 참정권 사이의 관계이다. 헌법학설은 전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학설의 다수는 국정 선거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외국인에게 부여해도 좋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즉 학설은 국정 선거에 대해서 금지설을, 지방 선거에 대해서 허용설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정한 통치체계 하에 지방자치의 보장이 있다는 것은 국민·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중의 통치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통치 체계에 의한 보장과 지방자치에 의한 보장이다. 이것

은 지방자치의 보장을 받는 국민·주민이 속하는 지방 공공단체와 국가는, 예전처럼 후자에 의한 후견적 감독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예지(叡智)로서 상호의 모순·대립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주민 의사가 가능한 한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조직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민 개념에 “생활의 본거지를 가지고, 또한 영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진 영주 외국인”⁹⁰⁾ 즉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생활

기반에 있어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레아의 ‘이중의 정당성 이론’에 비추어 일본 헌법도 입법 정책상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후 일본 정치와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 사이의 관계이다. 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강화·독립을 달성한 일본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구식민지 출신자들을 일방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에 기인한다. 이 문제는 1995년 2월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 문제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쟁점이 된다.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고양 및 헌법 해석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급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청에 의해 각 정당들은 표면적인 찬성을 보이지만, 정당 수준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 수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민당을 제외하고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정치에 시민으로 참가하는 것이 선이고, 그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주 외국인 자신을 위해서도 지방 참정권 부여는 바람직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의 본질인 ‘민주주의’이다.

적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점이 영주 외국인 참정권 법제화 움직임을 방해하는 최대 요인이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국민 일부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제일 한인·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에 의해 국민 일부로부터 지지표를 상실할 것이라는 불안이 자민당으로 하여금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서유

럽에서 영주 외국인이 좌익 또는 사회 민주당계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다⁹¹⁾는 것도 자민당내의 신중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 번째는 자민당내의 복잡한 당내 구조로 인한 정당내·정당간의 타협과 조정의 어려움이다. 자민·사회·사키가케 3당 연립정권(1994.6)→자민·자유 양당 연립정권(1999.1)→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1999.10)→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2000.4) 등을 형성한 자민당은 연합 파트너, 특히 공명당에 대한 배려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찬성의 태도를 취하지만, 실은 당내 숨은 반대파와 강경 반대파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자유 양당에서도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고, 이 문제를 둘러싼 연립 여당의 공명당과 야당 민주당의 협력 관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입법화에 성공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7월 29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자유 양당이 특별 영주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된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을 '국민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시민을 분할하고 차별화 하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영주 외국인 속에서 참정권을 부여받은 자와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자의 분할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모든 인간은 지구상의 어느 국가 혹은 자치단

체의 정책 결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정치에 시민으로 참가하는 것이 선이고, 그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고, 자기 실현에 왜곡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주 외국인 자신을 위해서도 지방 참정권 부여는 바람직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의 본질인 '민주주의'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는 '편협한 정치의 세계'에서만 논의되고, 국민에게 충분히 개방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에 걸맞은 공적인 논의의 장이 부여되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 1) 해머는 한 국가 내의 인구를 권리와 체제 혹은 거주 형태, 외국인(foreigner), 정주 외국인=영주자=영주시민(denizen), 그리고 시민(citizen)으로 분류한다. T. Hammer, 'The Civil Rights of Aliens' in Z. Layton-Henry(ed.), *The Political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Western Europe*(London: Sage, 1990), p. 75.
- 2) 대상이 되는 영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정한 '영주자' 약 8만 명과 '특별 영주자' (전진 일본 식민지였던 한반도·대만 등으로부터 일본에 와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손) 약 54만 명, 합계 약 62만 명이다. 영주 외국인이란 용어가 오늘날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영주 외국인이란 명칭의 개념·자격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의 영주 자격자, 둘째, 소위 한일 법적 지위 협정 및 동 협정 실시에 따른 출입국관리 특별법에 기초한 영주 자격자, 셋째, 1981년 입국관리법에 의해 특별 영주권이 인정된 사람. 大沼保昭『外國人の人權論再構成の試み』(『法學協會百周年記念論文集』有斐閣, 第二卷, 1983年), p. 384이하를 참조. 일반적으로 영주 외국인이란 "일본사회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그 생활 실태에 있어 자기의 모국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일본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 있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입장이지만,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萩野芳夫『外國人の法的地位』(『公法研究』第43卷, 1981年), p. 41.
- 3) 밀리는 외국인의 정치참가 형태를 ①선거, ②모국의 정치참가, ③자문기관, ④노동조합, ⑤정당가입, ⑥직접행동 등을 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거참가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과 정당은 의미 있는 경료가 되지 못한다. M. J. Mille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Noncitizens' in W. R. Brubaker(ed.),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North America*(America University Press, 1989).
- 4) 단일민족 국가관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大沼保昭『新版單一民族社會の神話をこえて』東信堂, 1993年을 참조.
- 5) 江橋崇(a)『外國人の参政權』(樋口陽一·高橋和之『現代立憲主義の展開』上)有斐閣, 1993年), p. 185.
- 6) 최근의 논의를 개관한 것으로는 岡崎勝彦(a)『外國人の地方参政權—地方自治體における外國人の政治參加』(『公法研究』第56號, 1994年10月), pp. 105-116. 中村睦男(a)『外國人の地方参政權』(『ジュリスト』第1036號, 1993年12月), 長尾一祐(a)『外國人の選舉權』(『法學教室』第54號, 1985年3月), 後藤光男(a)『外國人の選舉權』(『産物信喜·高橋和之編』憲法判例百選(1))別冊ジュリスト, 有斐閣, 1994年) 등을 참조.
- 7)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북유럽 제국이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 그 후 유럽에서는 EU통합에 따른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에 의해 가맹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지방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宮地基『外國人の選舉權をめぐる憲法上の論點について—ドイツにおける學說, 判例の檢討を中心として』(『神戸法學年報』第7號, 1996年4月), 高田篤『外國人の選舉權』(『法律時報』第64卷, 第1號, 1992年1月) 등을 참조.
- 8) 국제와 인권과 인권의 보편성 및 국제 인권의 전지에서 외국인 인권 보장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米澤廣一『國際社會と人權』(口陽一編『講座憲法學(2)主權と國際社會』日本評論社, 1994年) 및 中村義幸『定住外國人の人權』(『憲法問題』第2號, 1991年5月) 등을 참조.
- 9) 선거권 획득에 대해서는 한국 민단과 북한 조총련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 민단은 선거권 획득 운동을 열심히 전개한 반면, 북한 조총련은 일본에 정치적으로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권 획득 운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는 「在日外國人の選舉權—在日韓國人の觀點から—」(日本選舉學會『民主的選舉制度成熟へ向けて—政治文化基盤整備の觀點から—』選舉研究シリーズ, 第3號, 北樹出版, 1992年), p. 13이하를 참조.
- 10) 芦田健太郎『永住者の權利』信山社, 1989年, p. 73.
- 11) 『判例時報』第1523號, 1995年, p. 49.
- 12) 메이지 헌법 하에서 제국신민에 편입된 식민지 사람은 일본 국내에 거주할 경우 중의원 의원 선거법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인과 동등하게 중의원 의원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구식민지 출신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정지'되고, 그 후 1950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참의원 의원 선거법을 총괄하는 형태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일본 국민'으로 한정한다. 이 사이의 경위에 대해서는 江橋崇(b)『外國人法制』(『ジュリスト』第1073號, 1995年8月), p. 300 및 野中俊彦『選舉法制』(『ジュリスト』第1073號, 1995年8月), p. 26이하 등을 참조.
- 13) 岡崎勝彦(b)『定住外國人と地方参政權』(後龍達先生還曆記念委員會編『アジア市民と朝鮮人』日本評論社, 1993年).
- 14) 梶田孝道『外國人參政權—西歐の經驗と日本における可能性』(宮島高·梶田孝道『外國人勞者から市民へ: 地域社會の視點と課題から』有斐閣, 1996年), p. 115.
- 15) 長尾一祐(b)『外國人の参政權』世界思想社, 2000年, pp. 6-7.
- 16) 위의 책, pp. 7-8.

- 17) 網中政機『外國人の地方参政権—い、なぜ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か—』(『名城法學』名城大學法學會, 第45卷, 第2號, 1995年), pp. 106-107.
- 18) 岡崎勝彦(a), 앞의 글, p. 110.
- 19) 江橋崇(c)『ヨーロッパにおける現状』(徐龍達編(a)『共生社會への地方参政権』日本評論社, 1995年), p. 255.
- 20)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인정하는 입장이 기본인 경우를 생지주의(生地主義)라고 한다. 부모의 국적을 이어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를 혈통주의(血統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정 기간의 거주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거주주의(居住主義) 요소가 이 두 양식을 보완하고 있다.
- 21) 近藤敦(a)『外國人參政權と國籍』明石書店, 1996年, pp. 14-15.
- 22) Sopemi,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nual Report 1994, 1995, p. 163.
- 23) 近藤敦(a), 앞의 책, p. 181.
- 24) 일본의 선거제도 변천에 대해서는 植正夫『日本選舉制度:普通選舉法から公職選舉法まで』九州大學出版會, 1986年 및 李起完『戰後日本における選舉制度と政システムに関する再檢討』(『法學新報』日本:中央大學出版會, 第108卷, 第1號, 2001年)등을 참조.
- 25) 松田利彦『戰前期の在日朝鮮人と參政權』明石書店, 1995年, p. 123.
- 26) 田中宏(a)『新版 在日外國人一法の壁, 心の溝』岩波書店, 1995年, p. 64.
- 27) 田中宏(b)『Q&A外國人地方参政権』五月書房, 1996年, pp. 46-47.
- 28) 법무성 민사국장 통지(1952년 4월 19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은 일본 내지(內地)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둘째, 본래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이었던 사람이라도, 조약발효 전에 신분행위(결혼, 양자 등)에 의해 일본 호적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해서 일본 국적을 가진다. 셋째, 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귀화 수속을 밟아야 한다. 田中宏(a), 앞의 책, p. 66.
- 29)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1990), p. 73.
- 30) 『週刊AERA』朝日新聞社, 2000년11월20일, p. 76.
- 31) 近藤敦(a), 앞의 책, p. 21.
- 32) 전자는 89년 11월 17일, 오사카에 거주하는 영국인 앨런 힉스씨에 의해, 후자는 90년 9월 14일 오사카 거주 재일 한국인 11명에 의해, 각각 체소되었던 것이다. 그 개요에 대해서는 徐龍達『總論:「共生社會」のための地方参政権』(徐龍達編(a), 앞의 책), p. 6.
- 33) 徐龍達, 같은 글, pp. 6-10.
- 34) 『朝日新聞』1995년 3월 1日付, 『毎日新聞』1995년 3월 1日付, 『判例特報』第1523號, 1995年, p. 49.
- 35) 青柳幸一·山越由理『定住外國人の參政權:選舉權と被選舉權』(『横浜國際經濟法學』横浜國際經濟法學會, 第4卷, 第1號, 1995年), p. 47.
- 36) 각 학설의 주된 논거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岡崎勝彦(a), 앞의 글, 中村睦男(a), 앞의 글, 長尾一祐(a), 앞의 글, 後藤光男(a), 앞의 글.
- 37) 헌법 15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고유의 권리이다.
- 38) 헌법 93조 2항에 의하면 지방 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한 그 밖의 관리는 그 지방 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39) 小林武『地方政治における外國人の選舉權—ヒッグス・アラン地方政治參政權訴訟 大阪地裁1994年1月28日判決—』(『南山法學』南山大學法學會, 第18卷, 第4號, 1995年), p. 175.
- 40) 宮澤俊義『憲法Ⅱ(新版)』有斐閣, 1974年, pp. 241-242.
- 41) 手島孝『憲法學の開拓編』三省堂, 1985年, pp. 247-270.
- 42) 村原素雄『地方自治權の本質』(『法律時報』, 第48卷, 第4號, 1976年), p. 133.
- 43) 浦部法穂(a)『日本國憲法と外國人の參政權』(徐龍達編(b)『定住外國人の地方参政権』日本評論社, 1992年), p. 45.
- 44) 近藤敦(b)『「外國人」の參政權—デニズンシッフの比較研究』明石書店, 1996, pp. 195-198.
- 45) 宮地基, 앞의 글, pp. 259-269.
- 46) 기관 위임 사무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본래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시장과 지사 등이 이것을 관리·집행한다. 단 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 기관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
- 47) 岡崎勝彦(a), 앞의 글, pp. 108-109에서 재인용.
- 48) 長尾一祐(c)『外國人の人權—選舉權を中心として』(芦部編『憲法の基本問題』有斐閣, 1988年), p. 177.
- 49) 岡崎勝彦(a), 앞의 글, p. 111.
- 50) 小林武, 앞의 글, pp. 176-177.
- 51) 相馬達雄『定住外國人と地方自治への參政權』(創立20周年記念論文集發行部會編『法學の精華』大阪經濟法科大学出版部, 1992年), p. 171이하를 참조. 또한 浦部法穂(b)『憲法と國際人權』(『國際人權』, 第1號, 1990年), p. 27 및 渡久丸『外國人の人權と日本國憲法—とくに定住外國人の參政權に限定して—』(『島大法學』, 第36卷, 第4號, 1994年), p. 62이하를 참조.
- 52) 田中宏(b), 앞의 책, p. 91.
- 53) 『決議:意見書の採擇急増民團闘へ』(『朝日新聞』1995년4월12日付) 및 『朝日新聞』1996년5월17日付.
- 54) 지방자치법 제252조 19항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정령지정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1995년 현재 정령 지정 도시(12)는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관한 의견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정령 지정 도시는 다음과 같다. 札幌市, 仙臺市, 千葉市, 横浜市, 川崎市, 名古屋市, 京都市, 大阪市, 神戸市, 廣島市, 北九州市, 福岡市.
- 55) 『中日新聞』1995년 3월 1日付.
- 56) 『讀賣新聞』1996년 10월 29日付.
- 57) 『朝日新聞』1998년 10월 9日付.
- 58) 『讀賣新聞』1998년 10월 10日付.
- 59) 江橋崇(d)『定住外國人の地方参政権と民主主義』(徐龍達編(a), 앞의 책), p. 66.
- 60) 『讀賣新聞』1995년 5월 25日付.
- 61) 1995년 3월 10일 재일 한국 청년 상공인 연합회가 행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국회의원 90%정도가 인정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의원·참의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응답률: 42%)에서, 참정권을 부여해도 좋다고 답한 의원이 88%,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3%, 당장은 곤란하지만 장래에 부여해야 한다가 5%로 집계된다. 『讀賣新聞』1995년 3월 11일付.

- 62) 田中宏(中), 앞의 책, pp. 99-100.
 63) 岡崎勝彦(c)「定住外國人の地方自治體における選舉權」(『法學教室』第177號, 1995년 6월), p. 47.
 64) 『讀賣新聞』1995년 10월 18일付.
 65)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으로, '영주 외국인'의 정의를, 특별 영주자(재일 한인·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 및 그 후손으로 1999년 말 약 52만 명 정도) 및 영주권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66) 『日本共產 ホームページ』(2001년 7월 5일) http://www.jcp.or.jp/seisaku/006-0609/eijyuu_gajin_sanseiken_.html.
 67) 1998년 12월 31일 현재 참의원(252의석)의 정당간 세력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당: 104, 민주당·신속총회: 55, 공명당: 24, 자유당: 12, 일본공산당: 23, 사회민주당·호헌연합: 14, 참의원의 회(會): 11, 이원클럽·자유연합: 4, 무소속: 5 등이다. 『朝日新聞』1999年版, p. 195.
 68) 『讀賣新聞』1999년 5월 2일付.
 69) 『讀賣新聞』1999년 5월 2일付.
 70) 『朝日新聞』1999년 10월 22일付.
 71) 『讀賣新聞』1999년 11월 1일付.
 72) 『朝日新聞』1999년 11월 4일付.
 73) 『朝日新聞』2000년 1월 22일付.
 74) 『公明 ホームページ』(2001년 5월 22일) http://www.komei.or.jp/komei_news/contents/2001/05/22/022_.html.
 75) 『小澤一郎(自由首)ホームページ』(2001년 7월 5일) http://www.ozawa-ichiro.jp/s1/s1_1.htm
 76) 에토·카메이 파는 1999년 7월 22일 무라카미·카메이 파와 에토 그룹이 합쳐 생긴 파벌이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자민당 내 파벌 세력은 다음과 같다. 오부치 파: 95명, 카토 파: 70명, 모리 파: 64명, 에토·카메이 파: 63명, 야마사키 파: 30명, 구코모토 파: 17명, 코노 그룹: 17명, 무과벌: 18명 등이다. 『朝日新聞』2000年版, p. 73.
 77) 『読球新聞』2000년 1월 20일付.
 78) 『朝日新聞』2000년 2월 24일付.
 79) 『朝日新聞』2000년 3월 1일付.
 80)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가한 각 파벌은 에토·카메이 파: 12명, 야마사키 파: 3명, 구(구)코모토 파: 3명, 코노 그룹: 2명, 모리 파: 3명, 하시모토 파: 4명, 카토 파: 2명, 무(無)과벌: 4명 등 총 33명이다. 출처: 『在日本大韓民國民間中央本部國際局調べ』.
 81) 中島健「永住外國人に地方參政權を付與すべきか—地方自治の法的意義を考察する中で—」(<http://www.geocities.co.jp/WallStreet/7009/mg0011-3.htm>).
 82) 1999년 6월 25일 실시된 제42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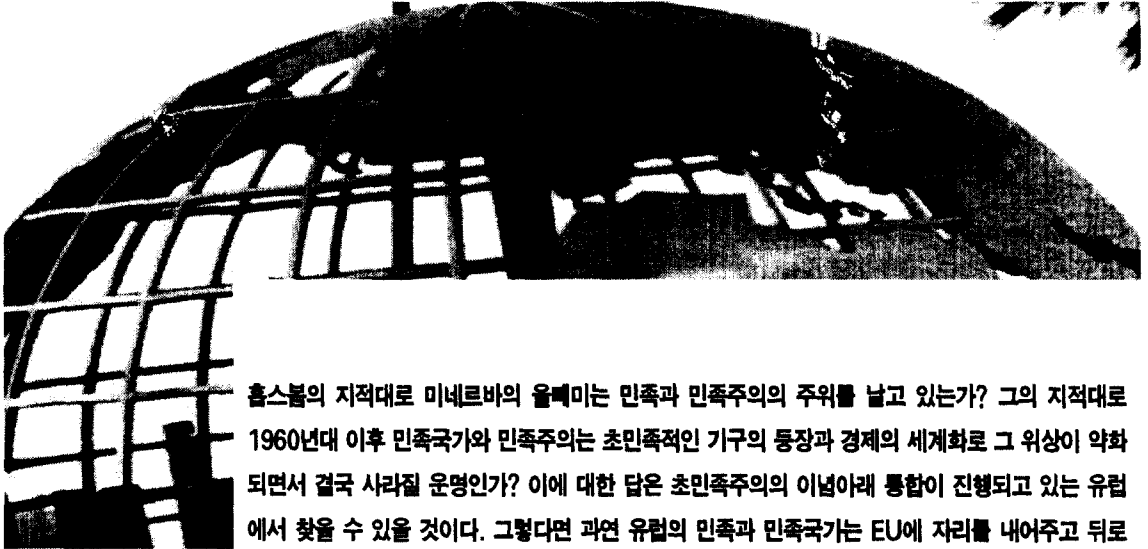
의석수	연립여당				야당							무소속	합계
	자민	공명	보수	개혁클럽	민주	자유	사민	공산	무소속회	자유연합	사키가케		
선거전 의석	271	42	18	5	95	18	14	26	4	1	1	4	499
선거후 의석	233	31	7	0	127	22	19	20	5	1	-	15	480

참조: 2000년 2월 2일 참의원을 통과한 정수삭감법에 의해 이번 총선거는 비례대표가 200에서 180의석으로 감소한다(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80).
 출처: 『朝日新聞』2000년 6월 26일付.

- 83) http://www.economist-japan.com/2000/2001007/cont_j01.html.
 84) 『産経新聞』2000년 10월 3일付 및 『正論』産経新聞社, 2000년, 12월號, p. 57.
 85) 『朝日新聞』2000년 10월 14일付.
 86) 『讀賣新聞』2001년 1월 8일付.
 87) 『讀賣新聞』2001년 2월 3일付 및 『朝日新聞』2001년 2월 8일付.
 88) 『朝日新聞』2001년 2월 16일付.
 89) 『讀賣新聞』2001년 4월 15일付.
 90) 横田喜三郎「外國人の地位に關する總合研究(1)」(『日本管理法令研究』第14號, 1947年), p. 12.
 91) 梶田孝道, 앞의 글, p. 104. 그러나 외국인의 투표행동을 계급적 관점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한 래스(Rath)에 의하면, 영주 외국인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주의 정당보다도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J. Rath, "Voting Rights" in Z. Layton-Henry(ed.), *op. cit.*, p. 146.

집중탐구

유럽의 통합과 개별 민족주의



홀스볼의 지적대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주위를 날고 있는가? 그의 지적대로 1960년대 이후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는 초민족적인 기구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로 그 위상이 약화되면서 결국 사라질 운명인가? 이에 대한 답은 초민족주의의 이념이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의 민족과 민족국가는 EU에 자리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났는가?

김용찬 / 본원 연구원

유럽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앙리 4세는 분열된 왕국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위대한 유럽 공화국' (a Great Republic of Europe)을 주장한 바 있다. 칸트는 공화국의 헌법에 기초한 '유럽 국가 연방'이라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이후에도 통합된 유럽이라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유럽통합운동은 과거와 다른 국면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민족국가가 성립되고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민족정체성이 다른 어떠한 정체성보다도 우위에 있는 시기에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제도화와 통일된 유럽이라는 이상에 대한 추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초민족주의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난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초민족적 기구인 EU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통합의 시작이 지속적인 경제발전, 공산주의에 대한 공동 방어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EU를 통해 '유럽국가'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와 함께 강도 높게 추진된 유럽통합의 역사는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유럽 연합조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통합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지향점을 알려주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단일통화를 위한 계획, 공공정책과 안보정책에 관한 조약, 사법과 국내업무에서의 긴밀한 협조 등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조약은 1996년 암스테르담 회의를

통해 민족국가의 저항으로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다.²⁾

초민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민족주의와 민족 정체성은 부정적이고 사라져야만 하는가, 실제로 민족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유럽정체성의 형성은 가능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민족주의와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성'의 기초이며 안정의 담지체로 역할하고 있다. 공동의 기억과 신화, 상징을 가지지 못한 유럽인들에게 유럽정체성의 형성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³⁾ 유럽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도 유럽의 민족국가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이 범람하고, 민족의 상징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민족은 헌신과 충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첫째 다소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통합주의자들의 논리적 기반이 되고 있는 초민족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을 개괄한다. 둘째 중심적으로 초민족주의자들의 이념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함께, 구체적 사례로 유럽의 주요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유럽국가'를 추진하는 초민족주의자들의 정책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195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동구권의 붕괴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초민족주의자들의 '하나의 유럽'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본격적 전개는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의 이념과 정체성형성 정책

유럽통합의 이념적 기초 :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

유럽통합의 주요한 동기는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했다. 전쟁에 대한 거부감과 나찌즘의 홀로코스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유럽 통합은 정치적인 이유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영역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⁴⁾ 실제로 유럽통합을 추진하고, 지지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발생이 민족주의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고 민족주의 이념에 대해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유럽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민족적인' 정치질서를 유럽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유럽의 아버지'들은 초민족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민족주의와 국가간의 경쟁, 민족국가의 정치권력 독점화는 평화에 위협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초민족주의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cosmopolitanism과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다. 다른 이념들과 달리 출발자체가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와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초민족주의도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EU와 같은 초민족체제의 창설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초민족주의의 경향은 동유럽에서 발흥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서유럽의 민족주의와 구분 지으면서 위협하고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부정적이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는 초민족적인 제도이며, EU의 확대와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

또한 세계국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많은 권력이 세계국가에 집중될 것이라는 민족국가의 위기의식이 원인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세계국가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약소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약소국과 국가 없는 민족들,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그룹들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는 것이다.⁸⁾

초민족주의자들은 최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혼동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극우파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외국인공포증, 반민주주의, 강한 국가 등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현재 서유럽 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족정체성의 쇠퇴가 극우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과거보다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약해지고 있으며, 조국을 위한 희생의 의지도 줄어들었고 외국인공포증은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반면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주 나타나고 있다. 다정체성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나찌의 상징과 각종 상징물과 깃발, 노래 등을 동원하고 있다.⁹⁾ 극우파들의 정체성 형성을 막으려면 민족정체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 긴박한 과제인데 대안으로 유럽정체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청년층에 기반한 극우 세력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지 1933년 이전의 '독일의 길'과 '반서구주의' 등을 뚜렷이 했던 youth movement나 국가사회주의와는 연속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¹⁰⁾ 따라서 극우운동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재발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세계화의 추세와 EU와 같은 초민족적인 실체의 등장은 전통적인 민족국가를 주권과 영토, 정체성, 폭력과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하게 하고 있으며 탈전통민족국가(post-traditional nation-state)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 예로 EU와 개별 민족국가의 상호관계가 실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적인 통제에 있어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Euro화의 도입, 영토에서는 쉐엔협정의 실행, 폭력에 있어서는 UN과 NATO와 같은 기구의 역할이 기존 민족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형성에 있어서는 탈전통민족국가는 초민족주의와 다민족주의의 정체성과 지역적, ethnic적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¹¹⁾

전체적으로 초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국가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EU와 같은 초민족적인 체제의 도입과 강화를 주장한다.

유럽정체성의 형성

유럽통합의 강력한 주창자였던 Jean Monnet가 "우리들은 국가들간의 연립(coalition)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EC는 '인민의 유럽'을 형성하는 것을 1970년대의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¹²⁾

초민족주의자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유럽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문화적인 분야'(cultural sector)-즉 예술, 유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정보와 교육, 스포츠-로 설정하고 통합의 과정을 이

분야에 확대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유럽인의 정체성'을 유럽인들이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럽의 문화적인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¹³⁾

Vaclav Havel은 1994년 3월 8일 발표한 유럽정체성 헌장을 통해 "유럽은 고대문화(antiquity)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법 규칙과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치 공동체로서의 유럽'에 대한 언급에서는 근본적인 가치로 관용(tolerance), 인본주의(humanity), 우애(fraternity)를 제시하고 이는 고대문명과 기독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유럽정체성은 개인과 이념의 자유로운 교환과 가치에 대한 보호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다언어교육, 시민의 권리 확대, 문화와 교육을 통한 유럽정체성 증진, 공동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초민족주의자들은 EU내에서는 민족국가의 경쟁이 유럽통합이 시작할 때 보다 훨씬 감소되어 있으며 최근의 일련의 진전들이 유럽인이라는 소속감의 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98년 영국과 프랑스의 Saint Malo 선언을 통해 주어진 공동의 외부 안보정책과 1999년 서유럽연합(West European Union)의 EU로의 통합은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주었으며 EU내에서 '사법과 평화, 안전보장' 영역의 발전과 유럽외부의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은 '유럽의 애국주의' 감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¹⁵⁾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책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많은 지원이 할당되고 있는 영역이다. EU는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시민권의 도입과 문화, 교육,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과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실행에 옮겨왔다.



EU는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 시민권의 도입과 문화, 교육,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과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실행에 옮겨왔다.

유럽시민권의 도입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EU의 시민권'이라는 표제가 달린 새로운 Part II가 추가되었다. EU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은 자동적으로 EU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조약은 유럽시민에게 다섯 개의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의 참여의 권리, 외교적 보호의 권리, 유럽의회에 대한 청원의 권리, Ombudsman 지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시된 유럽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권리를 중심으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의 참여와 외교적 보호, 자유로운 이동은 개별 회원국들 수준에서의 합의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적 보호의 경우 국제관례상 지켜지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시민권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즉 "연합의 시민권은 민족국가의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으며 보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¹⁶⁾ 부분적인 수정이지만 이것은 EU와 민족국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EU는 민족국가 시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가장 형식적인 개념의 시민권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EU의 문화정책

EU의 문화정책은 '유럽의식의 대행자' (agents of European consciousness)들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제도, 정책 등을 통해 'European idea'를 확대시키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책과 논문들, 저널들, 대학의 교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학문분야에서 제도화된 분야로 'EU study'가 확대되었고, 이 분야 연구자들을 통해 EU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유럽위원회는 EU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을 각종 제도들의 엘리트로 충원했고 고용된 정치학자나 환경전문가, 신학자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¹⁷⁾

또한 공통의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해 다양한 상징(symbol)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기와 Euro화, 각종 제도들, 범유럽적인 미디어와 언어들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상징을 창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범유럽적인 미디어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The European*은 유럽의 정치와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유럽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했지만 구독자 층의 절반 이상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분히 반유럽적인 영국과의 관련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 영역에만 국한되게 되고 1998년 정간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 다국어어를 사용하면서 위성 방송을 하는 *Euronews*는 상업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실패의 원인은 확실적인 내용이었다. 결국 재정적인 어려운 끝에 1998년 이후 *European public broadcasters*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는 인터넷과 우편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책과 문서들을 회원국들의 언어로 번역해 보내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¹⁸⁾

EU의 교육정책

유럽통합주의자들은 유럽정체성, 유럽시민의 창출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고 교육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은 최근에 시행된 정책이다. 사실상 교육에 관한 규정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전혀 없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Title VIII에서 사회정책, 교육, 직업훈련과 청소년 훈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training)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126조와 127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26조에서는 유럽공동체가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명확히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¹⁹⁾

유럽시민의식과 유럽인의 책임의식이라는 개념은 교육내용 중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시민의식 개념은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되고 있다. '유럽차원'이라고 알려진 연구의 주제는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현재 학교교육과정과 교사연수과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방문과 교류, 교육과정개발에 있어서의 협력 등은 유럽차원의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어 교육의 확대나 평화교육의 확산 같은 공동연구도 유럽차원 활동의 특징적 구성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⁰⁾

EU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과 Socrates와 Youth for Europe III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Leonardo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Socrates 프로그램을 통해 1999년까지 진행되었다.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로 직접 이동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표는 회원국의 문화적 유산에 근거해서 유럽시민의식의 강화, 회원국 언어에 대한 지식의 향상, 교육의 상호문화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동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¹⁾

EU의 이주민(immigrants)에 대한 정책

EU의 이주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유럽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유럽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과 둘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1957년 로마조약은 '자본, 노동,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개방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1985년과 1990년 쉐엔 협정에 의해 확대되어 1996년 시행되어졌다.²²⁾ 구체적으로 EU국가간의 이동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검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쉐엔 협정 지역 외부에서의 유입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모든 유럽인들은 특별한 조건 없이 회원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원국들은 비자발급과 망명에 관한 공동의 규칙에 동의했다. 또한 공동의 이주민 정책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시민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개별국가에 의해 결정되지만 'jus sanguinis', 'jus soli' 와 귀화라는 시민권 획득의 원칙은 공통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고 초민족주의자들은 주장한다.²³⁾

반면 쉐엔 협정은 유럽내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이주를 규제하고 있다. 망명, 이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관한 공동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압류, 외국인의 본국송환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한 EU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정도 이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실행가능성에 관계없이 유럽통합 추진론자들은 민족국가의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시민권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부분적인 수정이지만 이것은 EU와 민족국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난제 중의 하나인 이주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의 해소와 안정, 평화의 달성이라는 유럽통합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간주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민족국가의 난제에 대한 해결자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91년 Community Relations에 관한 전문가들의 유럽 위원회 이사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 이주민들을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인정의 필요, 이주민들이 소속감을 제고시킬 필요,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의 필요 등을 강조했다.²⁴⁾

1994년 6월 유럽이사회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공포증에 대한 유럽인들의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Kahn Commission를 설립했다. 유럽위원회는 같은 해 백서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조약의 개정을 촉구했다. 하나의 유럽을 향한 결정적인 조치의 하나였던 Schengen협정이 1995년 발효되었다. 같은 해 유럽위원회는 '반인종주의 유럽의 해' (European Year Against Racism)를 제안했다. ETUC와 UNICE는 고용에 있어 인종적 차별에 관한 공동의 시행법률을 생산해냈다. 한편 1996년 정부간 회의에서 1997년 새로운 조약의 수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6월 각료이사회는 1997년을 인종주의, 외국인공포증,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유럽의 해로 만들 것을 결정했다.²⁵⁾

유럽통합의 이념과 정체성형성에 대한 비판

초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초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의 현대적 위상과 진정한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초민족주의의 프로그램은 과연 성공적으로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있는가?, 실제로 초민족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주의는 약화되고 있는가?, 현대의 민족주의는 부정적인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nthony D. Smith는 유럽공동체가 '초국가' (super-state), '초민족' (super-nation), 혹은 '독특한' (sui generis)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초국가'가 되기 어려운 점은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독점권과 군사력 행사의 조정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초민족' 적이기 위해서는 유럽인들의 다수가 진정한 유럽의식을 각인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와 민족정체성의 약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반면 '독특한' 어떤 것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부분적인 권력의 공동관리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민족문화와 정체성의 처리와 재부각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며 지속적으로 '유럽의 유산'과 '유럽의 신화'의 등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⁶⁾

초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민족주의와 민족정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화와 기억, 전통 등을 창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족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민족의 신화와 기억, 전통 등을 점차적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유럽국가를 추구하면서 초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의 '수사의 삼각의 구조'²⁷⁾ 중에서 '타락한 현재' (degraded present)를 통해 유토피아적인 미래 (utopian future)를 제시하는 구도를 원용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유럽통합이 제기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현재에 대한 부정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민족주의가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인 전쟁을 탈피해, Europeanism을 통해 전쟁이 없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럽통합의 이상향적인 미래를 제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민족주의자들의 수사와 같은 구도를 가졌다.

그러나 민족국가를 초월해 유럽국가로 가는 과정에 유럽인들을 왜 대규모로 동원하지 못하는가, 왜 정책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수사의 삼각 구조'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초민족주의자들이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축은 '영광스러운 과거' (glorious past)로 신화와 전통, 상징, 기억 등 민족을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원천이다. 단일한 언어와 종교, 영토, 전쟁에서의 승리 등이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민족주의적 동원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인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역사는 존재하는가? 실제로 유럽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민족국가의 영광만이 찬란하다. 나폴레옹 전쟁의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의 역사로, 대영제국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로, 비스마르크 통일운동에 의한 프로이센의 통일은 독일의 역사로, 마치니의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이탈리아의 역사로 남아있지 결코 유럽의 역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초민족주의자들의 유럽통합, 유럽국가의 건설은 항상 유럽인들을 동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족국가는 약화되고 있는가? 초민족주의자들은 우선 경제적인 부분에 착목한다. 세계화의 중심 내용

는 것이다.

초민족주의자들이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새로운 등장으로 경계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도 국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이나 집단행동은 다분히 아나키스트적이고 범죄에 가까운 것이며 대중적인 지지를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³¹⁾ 정치적으로도 미미하게 대표되고 있으며 여러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이들을 민족주의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대부분 불우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심정적 울분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대전 당시 나찌의 정치적 행위와 군중동원과는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야기된 이데올로기의 공백과 유럽통합 등의 진전은 극우세력들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감소로 인한 소외계층 등이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영향력은 전쟁의 시기와는 달리 줄어들었고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현저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파시스트적이고 극우적인 정치세력은 민족주의 정당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유럽정체성 형성에 대한 비판

유럽정체성 형성은 유럽시민권의 제기와 강화, 민족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과 민족에게 다정체성(multiidentity)의 시대에 민족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David Miller는 nationality³²⁾에 대한 도전을 유럽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urope of the regions'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관리정책에 의해 공존하고 있는 지역들의-Catalonia, Brittany, Bavaria, Scotland-존재가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있으며 민족주의는 진보에 반하는 것으로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iller는 nationality는 공공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연대성(solidarity)을 제공해주고 정치적인 충성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보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에서 기성의 엘리트들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동원에서 예를 찾고 있다.

따라서 nationality는 특정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모든 정파들에게 민족적인 특징의 진정한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nationality는 각 정파들이 단결할 수 있는 인식의 여지를 제공해준다.³³⁾

Anthony D. Smith는 유럽정체성의 창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범유럽적인 대중적 전통과 가치, 상징과 경험을 확대시키려는 초민족주의자들의 정책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른바 'top down' 방식의 유럽통일의 진행과 이에 따른 하향적 침투는 대중적 이념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둘째 유럽인의 유대(European bond)의 성격과 유럽의 특징적인 문화를 정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³⁴⁾

또한 현대 유럽인들에게 의미와 힘을 갖고 통일시킬 수 있는 공통된 유럽의 신화와 상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신화-상징복합체'는 기원과 내용에 있어 민족주의적인데 예로는 로마 제국, 게몽주의, 프랑스 혁명, 이탈리아 통일운동, 볼셰비키 혁명 등이다. 반면에 민족주의의 전당과 기념물은 도처에 있다. 민족적인 상징, 깃발, 휘장, 사원 및 기념물은 곳곳에 가득하며 시민들의 충성심을 환기시키고, 자

부심을 북돋는 데 반해 유럽의 기념물과 휘장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⁵⁾

로마의 유산이나 기독교 전통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초기에 분리된 문화적, ethnic적 전통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비유럽적인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유럽은 비유럽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에 다르다. 민족성과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바스크, finns, 헝가리), 영토(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법(로마, 독일), 종교(카톨릭, 정교, 개신교), 경제, 정치시스템(민주주의, 중앙집권국가, 연방주의)에서 다르다. 부분적으로 특정요소들을 공유하지만 모든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초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family of culture'의 건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유럽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고 규범화된 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체제들은 모두 민족적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³⁶⁾ 또한 외교정책과 방어에 있어서는 공동정책의 형성에 실패하고 있으며 민족국가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³⁷⁾

결국 유럽정체성을 확립해 민족정체성³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통된 유럽의 기억, 기념물, 전통, 가치, 신화, 상징을 형성해야 하는 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중세의 기독교와 절대왕정 시대의 제국주의,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통일 운동 등은 모두 이미 개별국가의 기억과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의 불균등한 확산으로 인해 통일적인 신화와 상징으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유럽정체성을 확립해 민족정체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통된 유럽의 기억, 기념물, 전통, 가치, 신화, 상징을 형성해야 하는 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유럽인들의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의 형성은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

기가 되지만 실제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제기된다. 즉 국가단위와 민족단위의 forum과 실질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미디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적인 이슈의 토론은 모두 민족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일반 대중들은 민족국가의 이해를 고려한 정보만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초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화 등이 유럽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행위들은 유럽을 넘어 전세계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기원지가 유럽지역이라고 해서 이미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것들이 유럽적인 것으로 한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은 서유럽과 달리 제반의 가치들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경험의 미숙, 민주주의의 미성숙, 자유주의의 미약 등이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편차가 있고 유럽 내에서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치들이 개별 유럽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Philip Schlesinger는 유럽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적인 전장'(new cultural battlefield)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진전은 문화적 통합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유럽정체성의 형성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유럽과 동유럽 모두에서 민족주의자들은 민

족국가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은 집중화와 파편화(fragmentation)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유럽시민권의 소개이다. 유럽시민권의 도입은 유럽통합이 현존하는 민족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해온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유럽시민권은 근본적인 결합들 속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권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에 대해 책임 있는 특정 국가와 연계되어왔으나 국가가 아닌 EU는 민주성의 부족이 현저하기 때문에 시민권의 도입은 사실상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유럽시민권이 정착하려면 국적보다는 거주에 의해서 참정권이 보장되는 등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확대되어야하고 단일선거구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

또한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충성(loyalty)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럽시민권은 추상적이고 제한된 권리만을 부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내면화하는 과정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도입된 유럽 시민권은 권리를 중심으로 제안된 것이다.

유럽시민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많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체류권의 경우 시민은 자신이 체류할 나라의 사회보조금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고, 선거권의 경우에도 선거지에 입후보한 정당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정당과는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체류국에서 선거를 하는 경우 자국에 신청을 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개별 민족국가에서도 지방선거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유럽시민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모두 유럽의 시민이 될 수 있는데 결국 회원국의 시민권은 민족국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시민권의 획득은 절대적으로 민족국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EU가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를 선언한 이주민들의 상당수가 유럽의 시민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시민권 강화의 노력은 외부에 대해 '유럽의 요새화'⁴¹⁾를 실현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시민권의 강화를 통해 유럽의 단결과 블록화는 이를 수 있겠지만 외부와는 철저히 분리된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래의 이념적 기반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유럽통합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 영국 · 독일 · 프랑스의 경향

EU에 대한 국민의 태도

유럽통합에 대한 일반 유럽인들의 지지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민족주의자들은 대중들은 유럽통합을 엘리트의 프로젝트로 생각하며 자국의 이해가 보존되어지는 한 유럽통합에 최소한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U의 "bring Europe closer to the people"의 운동 속에서도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는 1991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다. EU의 민주주의의 부족(democracy deficit), 정당성의 결

여, 각료이사회에의 폐쇄적 운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가입에 대한 지지는 1991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1년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시기로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EU의 낙관적 미래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던 시기였다. 이후 EU 정책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초민족주의자들은 국내 경제와 사회안정의 악화가 유럽통합의 지지도가 낮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이 EU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이중충성(dual allegiance)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하거나 EU의 경제정책을 통해 개별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이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²⁾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특정국가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유럽통합의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가 호전된 최근의 조사에서도 지지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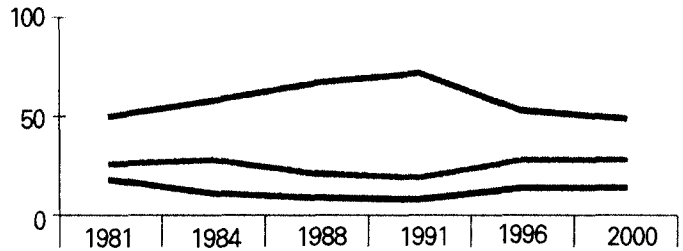
또한 유럽통합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통합의 문제, identity의 문제들을 민족국가 내부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환원시켜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경제사회적인 문제의 해결로 유럽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현재 지지의 하락을 민족국가 내의 문제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영국은 36.4%, 네덜란드 36%, 포르투갈 35.5%의 투표율을 보였고 당시 비평가들은 유럽의회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1999년 결과는 훨씬 투표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4%, 네덜란드의 경우 29.9%, 핀란드의 경우 30.1%, 스웨덴의 경우 38.8%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관심의 표현인지, EU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지를 논쟁했다.⁴³⁾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51.04%라는 근소한 차이로 비준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덴마크에서 비준이 실패한 것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던 시점에 유럽통합에 독일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프랑스에서의 찬성률이 낮았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 속에 반유럽통합의 정서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주요국들 간의 민족감정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의 조사에서 독일은 1987년의 경우 28%의 영국인이 독일을 신뢰한다고 했고 18%가 신뢰하

〈표 1〉 EU 가입에 대한 지지도



출처 : Eurobarometer No. 53, 2000, p. 7 도표를 재구성.
 주 : 위 그래프는 EU 가입에 대한 긍정, 중간 그래프는 중립, 아래 그래프는 반대를 의미.

〈표 2〉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

연도	투표율(%)
1984	61
1989	58.5
1994	56.8
1999	49.9

출처: Sue Wright, op. cit., p.152에서 재인용.

지 않는다고 한 반면 1997년의 경우 10%만이 독일을 신뢰하며 3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독일주도하의 유럽통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민족주의적 성향의 강화

EU에서 정부지도자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호응하면서 민족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수사와 조치들을 수정했다. 1990년대 후반 선출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은 유럽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유럽통합을 강조하는 블레어도 항상 단일통화에 가입하는 것은 영국국민의 이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신중하게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총리 조스팽은 'to build Europe without dismantling France'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독일의 수상 슈뢰더는 EU의 예산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대해 과거 영국 수상 대처의 입장을 취했다.⁴⁵⁾

영국

영국의 보수당에게 유럽통합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정치적 주제가 아니었다. 민족국가를 옹호하는 '애국적인 정당'으로 자처하는 보수당으로서는 민족국가는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많은 보수당 의원⁴⁶⁾들은 유럽통합과 보수당의 'nationhood' 정치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대처는 Bruge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identikit European personality'와 '유럽의 초국가'(European superstate)의 추상성에 대해 비판했다. 즉 연방유럽은 민족국가에 대해 지속적인 호소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메이저도 민족국가를 옹호하면서 연방유럽에 반대하고 영국정부는 민족국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이것이 보수당의 당론임을 밝혔다.⁴⁷⁾

1997년 선거에서 메이저는 유럽이슈가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수당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wait and see' 입장에서부터 단일화폐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당시 보수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51%가 단일화폐 가입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지지했으며, 41%가 절대 반대했다. 유럽정책에 있어 사소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정부간 유럽을 선호했으며 민족국가의 이해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원칙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노동당은 유럽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화하기 시작했고, 보수당 고위 간부들의 통합에 대한 적대감은 보수당 지도부가 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했다.

1997년 선거는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Referendum당은 구체적인 정책은 결여했지만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인사들을 결집시켜 선거에 임했고 80만표를 획득했다. 주로 영국의 연안 선거구에서 많은 득표를 했다. 영국독립당(UK Independent Party)⁴⁸⁾은 10만표를 획득했으며 두 정당은 전체 투표의 3%를 확보했다.

1999년 1월 보수당 당수 윌리엄 헤이그⁴⁹⁾는 'The Battle for Britain'이라고 명명된 보수당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연방을 약화시키는 것과 EU에 의한 영국주권의 침범에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동당은 과거 유럽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블레어가 당수가 되면서 유럽통합에 대해 신중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는 EU의 정책에 협력의 의지를 보이지만 주권 침해나 EU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995년 노

독일

독일의 경우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Grundgesetz)의 전문에서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국가가 추구해야하는 목표로 설정할 만큼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서독 내부에서는 1950년대 중반까지도 서유럽중심의 통합에 대한 사민당의 반대가 존재했었다. 이후 사민당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에 관한 조약을 승인하면서 태도를 변화했다. 이것은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서독 국민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⁵⁷⁾

이후 독일은 유럽통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유럽통합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패전국가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었다. 통합과정의 적극적 참여는 유럽통합이 자신들을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국가적 이해'가 철저히 작용했던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기사련, 자민당, 사민당은 유럽통합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가지면서 정책을 전개해나갔다. 1994년 9월 1일 기사련은 '핵심유럽'(Kerneuropa)을 제안해 유럽연합에 적극적인 프랑스, 베네룩스 3국과 '핵심유럽'을 통해 통합을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독일의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주변국들에게 독일의 팽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독일은 정치사회 수준에서 유럽통합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유럽연합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사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이익 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유럽 내에서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인종주의자, 반유럽주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일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치사회가 온통 독일의 민족적 이해에 몰두해 '독일의 유럽화'를 선언하면서 유럽의 통합에 주력하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New Right의 등장과 극우주의자들의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극우단체가 통독 이후 악화된 경제문제와 인종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반면에 New Right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New Right의 공통의 개념적인 핵심은 민족이다. 민족국가는 역사에서 핵심적이고 '정상적'인 주체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구조로서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보호와 운명의 공동체'로서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기술, '정상화'(normalization), '자기 확신'(self-confidence)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인 혁신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원의 부재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다.⁵⁸⁾

최근 정치사회 내부에서도 유럽통합에 대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CSU는 슈뢰더가 EU에 대한 독일의 지원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다른 야당들은 Euro화의 약세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수준까지 비약되었다. 결국 기사련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투표율도 급감했다. 1994년의 경우 56.5% 였던 투표율이 1999년에는 49.4%로 떨어진 것이다. 이 투표율은 영국의 23.0%, 네덜란드의 29.9% 보다는 높지만 1949년 이래 시행된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었다.⁵⁹⁾

1999년 유럽의회 선거가 주는 함의는 유럽정책에 대한 이견이 정치사회 내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지역별로도 유럽통합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PDS(party of Democratic Socialist)의 경우 NATO의 개입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구동독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6명의 대표가 선

는 못해왔다. 왜냐하면 영국의 정당체계는 이데올로기와 계급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ethnic 정치를 장려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⁶¹⁾

영국에서 약간의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그룹인 National Front와 British National Party에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National Front의 경우 1997년 선거에서 4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평균적으로 1% 정도의 미미한 지지를 받았다. British National party는 54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단 3명의 후보만이 5%이상의 지지를 받았을 뿐 전체적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았다. 일부 소매업을 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을 선호하는 아시아계는 보수당의 'white politics' 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을 지지한다. 그러나 보수당의 지지기반 중에서 인종주의적 요소는 분명히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선거시 보수당 후보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왔다.⁶²⁾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자수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1%정도씩 증가해왔으며 1997년에는 65,000명에 달했지만 받아들여지는 수는 감소해왔다. 1997년의 경우 37,000명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전년 대비 14%가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는 지원자격 조건이 많아지고 과정 조사의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1999년의 새로운 Race relation Act는 1976년의 법령을 강화시키고 변화시켰다. 주로 공공기관의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법령은 이주민들이 이주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민원을 'one-stop'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이 공직의 공식적인 임명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⁶³⁾

영국의 정책은 선거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국적 혹은 시민권은 법률 하에서 일관된 원칙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은 이주민 통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정책을 전개해왔다. 노동당도 자신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산업의 성장과 침체의 시기에 따라 완화와 제한의 조치를 반복해왔다. 1850년-1870년대, 1920년-1930년대, 1950년-1974년의 세 시기로 프랑스로의 이주를 구분할 수 있다. 앞의 두시기는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았고, 마지막 시기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포르투갈, 터키인 출신과 가족들이 압도적이었다. 이들은 과거 대다수가 프랑스 식민지 출신들이며 이슬람교도들이다. 여기에 1970년대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프랑스로 망명을 온 아시아계와 아프리카인 들이 정착했다.⁶⁴⁾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이주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좌와 우, republican 대 counter-national론자들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정책에 대해서 엄격함을 가져야 되겠다는 견해가 제출된 것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슬람교도들 때문이다. 1989년 Scarf 사건과 1995년 이슬람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은 이러한 불안의식을

〈표 3〉 국적 취득

(단위 : 천명)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숫자	64.6	117.1	57.3	58.6	42.2	45.8	44.0	40.5	43.1	37.0
비율	3.5	6.4	3.2	3.4	2.4	2.3	2.2	2.0	2.2	1.9

출처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p. 265, table A. 1. 7을 재구성.

독일

독일의 경우 최근에서야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쉐엔 협정 등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시민권의 부여나 이주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었던 것이다.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독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자국의 이해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1960년대 말 가족이주가 급증하면서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은 외국인의 이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책형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는 1973년 이주민들의 고용을 위한 Action Programme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당시의 주안점은 이주민들의 다수가 영위히 독일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 '동화 혹은 복귀'(assimilate or return)에 두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이주민들에 대해 제한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제시되었으며 터키인들의 이주가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1991년 1월에 제정된 새로운 Foreigner Act는 영주권을 도입했는데 제한 조건으로 이주민의 경제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인 문제보다는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고 '동화정책'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화적 자율성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주민들 사이에서 귀국하려는 성향(return-orientation)을 유지시키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⁷¹⁾

독일에서 기독교민주주의자들은(CDU와 특히 Bavarian CSU)은 불법체류자를 막고 이주의 유입을 막는 것을 옹호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녹색당원들도 이미 독일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통합에 보다 우선 순위를 두었다. 국적법의 개정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만 이주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독일의 경우 시민권에 대한 법률상의 인종문화(ethnocultural)적인 특징은 혈통에 대한 강조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13년 법안의 경우 속지주의(jus soil) 원칙이 없으며 혈통주의(jus sanguinis)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즉 외국인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나도 귀화라는 방법이외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 시민권의 배타적인 ethnic, 문화적인 속성은 이주민들의 대규모적인 귀화를 막았고 독일은 1990년대 1.2-1.5% 정도의 귀화율로 EU국가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중국적을 배제시켜 버렸다.

그러나 개혁법안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치적인 논쟁 끝에 통과된 이 개정안은 중요하게 혈통주의에 속지주의 원칙도 포함시켰다.⁷²⁾ 새로운 시민권 법안은 혈통주의의 도입과 귀화조건의 완화 등으로 인해 서유럽의 공통적인 시민권 모델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종문화적인 잔재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 해외에서 시민권의 소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용될 것이며 귀화에서 이중국적의 배제, 수수료의 증대 등은 이주민들의 귀화를 막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⁷³⁾

결론

홉스봄의 지적대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주위를 날고 있는가? 그의 지적대로 1960년대 이후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는 초민족적인 기구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결국 사라질 운명인가?⁷⁴⁾

이에 대한 답은 초민족주의의 이념아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의 궁

극적인 목적인 '하나의 유럽'을 위한 초민족주의자들의 노력은 부정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에 한계를 안고 있는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연방국의 창설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통합을 필두로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91년 이후 이러한 도전은 가속을 더하고 있는 듯 여겨졌다. 경제적으로는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EU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EU의 상징들은 유럽 각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정체성의 구체적 태인 유럽시민은 발명되어졌다.

유럽의 민족과 민족국가는 EU에 자리를 내어주고 뒤로 물러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민족정체성은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도 유럽인들에게 우선시 되고 있다. 아직도 각 민족은 민족정체성을 지탱시켜주는 상징과 신화, 기억 등에 의해 연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시민의 자부심을 느끼며 유럽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다할 유럽인은 극히 적어 보인다. 부정적인 것으로 매도당해온 민족주의는 동유럽에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과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민족국가 내에서 인종분규와 민족분규는 민족국가의 대응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족들과 민족국가들은 시작에서부터 초민족적인 실체 및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민족국가와 초민족적인 체제와의 상호작용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민족과 민족국가는 그들의 기능을 다양화하면서 지방과 초민족적 행위자에게 그들의 특정부분의 기능을 양보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⁷⁵⁾



EU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화와 확대라는 새로운 선택을 준비중이다. 이미 확대를 향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유럽의 요새'는 통합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이다.



유럽인들은 EU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EU에 대한 호감도는 나이지고 있는 것이 없으며 유럽의회 선거는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유럽의 주요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통합의 열기를 잠재우며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를 관찰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민족주의자로서의 언술을 동원하고 있다. 각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유럽인들은 점차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별 국가들의 이해에 의해 언제든지 약속이 파기되고 있다. 유럽통합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독일인들도 다음세대들에게도 유럽은 자신들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⁷⁶⁾

EU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심화와 확대라는 새로운 선택을 준비중이다. 이미 확대를 향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유럽의 요새'는 통합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이다. 민족국가들과 민족은 넓어진 공간에서 자신들의 연대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새로운 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초민족주의자들의 이상인 연방국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EU는 현재보다 더 약화된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브뤼셀 근처를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

- 1) 홍순도·김경숙 역, 『유럽의 꿈』(서울: 동아출판사, 1991), 191-192쪽.
- 2)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행과정 상의 문제와 지나친 EU의 권력확대에 대해 민족국가의 대응으로 조약의 수정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1996년 3월 정부간 회의(IGC)가 출범해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가시화 되었다.
- 3)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1), Anthony D. Smith, *Nation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Anthony D. Smith, *Myths and Memories of the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를 참조.
- 4) Anthony D. Smith(1991), p. 151.
- 5) Mary Kador, "Cosmopolitanism versus Nationalism: The New Divide" in Richard Caplan and John Feffer ed., *Europe's New Nationalism: States and Minorities in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48-57.
- 6) George Schöpflin, "Nationalism and Ethnicity in Europe, East and West" in Charles A. Kupchan ed., *Nationalism and Nationalities in the new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p. 57-59.
- 7) Philip Payton, "Ethnicity in Western Europe today" in Karl Cordell ed., *Ethnicity and Democratisation in the New Europe* (London: Routledge, 1999) pp. 24-35.
- 8) Yael Tamir, "Who's afraid of a global state?" in Kjell Goldmann, Ulf Hannerz and Charles Westin e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Routledge, 2000), pp. 262-265.
- 9) Leonard Weinberg, "An Overview of Right-Wing Extremism in the Western World: A Study of Convergence, Linkage, and Identity" in Jeffrey Kaplan and Tore Bjørge ed., *Nation and Race: The Developing Euro-American Racist Subcultur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pp. 7-29.
- 10) Peter Brandt, "Youth Movements as National Protest Cultures in Germany" in Hartmut Lehmann and Hermann Wellenreuther ed., *German and American National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Berg, 1999) pp. 427-428.
- 11) Montserrat Guibernau, *Nations without States: Political Communities in a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pp. 149-165.
- 12) Cris Shore, *Building Europe: The Cultural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London: Routledge, 2000), p. 16.
- 13) *Op. cit.*, pp. 24-25.
- 14) <http://www.eurplace.org/diba/citta/cartci.html>, 검색일: 2001. 8. 1.
- 15) Malcolm Anderson,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since 1945* (London: Routledge, 2000), pp. 46-48.
- 16) J. H. H. Weiler, "To be a European Citizen: Eros and Civilization" in Kjell Goldmann, Ulf Hannerz and Charles Westin e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Routledge, 2000), p. 171.
- 17) Cris Shore, *op. cit.*, pp. 26-29.
- 18) Sue Wright, *Community and Communication: The Role of Language in Nation State Building and European Integr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2000) pp. 140-141.
- 19) Witold Tulasiewicz, "Europe Integration and Educational Cooperation: The Politico-Economic Aspects and Educational Approaches in a Single Europe" 이호재 편, 『유럽통합과 교육협력』(서울: 법문사, 1999), p. 25.
- 20) *Op. cit.*, pp. 46-47.
- 21) 김유미, 『유럽통합과 유럽시민권 제도』(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7-58쪽.
- 22) 1985년 체결된 쉐앵(Schengen) 조약은 벨기에, 서독,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가 참여해 개인항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으로 출발했고, 1990년 일련의 안보조치가 합의되었다. 1995년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스페인, 포르투갈이 참여해 국경 내부에서의 개인과 물품의 통제를 철폐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1998년 4월 이후에 가입하였다.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 편, 『유럽연합의 실태와 전망』(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242-243쪽.
- 23) Malcolm Anderson, *op. cit.*, pp. 61-62.
- 24) Sarah Collinson, "Public Policies towards Immigrant Minorities in Western Europe" in Crawford Young ed., *Ethnic Diversity and Public Policy: A Comparative Inquiry*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8), pp. 183-185.
- 25) Ann Dummet, "British race relations in a European context" in Tessa Blackstone, Bhikhu Parekh and Peter Sanders ed., *Race Relations in Britain: A developing agenda* (London: Routledge, 1998), pp. 204-205.
- 26) Anthony D. Smith(1991), pp. 152-153.
- 27) Matthew Levinger and Paula Franklin Lytle, "Myth and mobilisation: the triadic structure of nationalist rhetoric," *Nation and Nationalism* 7 (2), 2001, pp. 178-186.
- 28) Martin wolf,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1, pp. 185-190. Wolf의 시각은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민족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족국가도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화와 민족국가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9) Anthony D. Smith(1991), p. 151.
- 30) Taras Kuzio, "nationalising states' or nation-building?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etical literature and empirical evidence," *Nation and Nationalism* 7 (2) 2001, pp. 135-151.
- 31) George Schöpflin은 극우파의 특성을 인종주의, 외국인공포증, 폭력행위 등으로 제시하고 대중을 동원하거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정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하는데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극우파의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균형감 있는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George Schöpflin, *Nations Identity Power: The New Politics of Europe* (London: Hurst & Company, 2000), pp. 70-73.
- 32) Miller는 personal identity와는 다른 집단적인 차원으로부터 nationality를 구분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믿음, 활동적인 특징, 역사, 영토, 다른 공동체와 구분되는 생각을 요소로 제기하고 있다. David Miller,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pp. 27-31.
- 33) *Op. cit.*, pp. 23-26, pp. 31-33.
- 34) Anthony D. Smith(1995), pp. 126-128.
- 35) *Op. cit.*, pp. 184-194.

- 36) 유럽연합 조약의 수정된 전문을 보면 '교육에의 광범위한 접근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회원국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및 훈련과 회원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3조는 교육분야에서 유럽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Witold Tulasiewicz, *op. cit.*, p. 26.
- 37) Anthony D. Smith(1999), pp. 238-248.
- 38) Anthony D. Smith는 민족정체성의 특징으로 역사적인 영토 혹은 조국, 공통의 신화와 역사적인 기억, 공통의 대중적이고 공적인 문화, 공통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공통의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Anthony D. Smith(1991), p. 14. 한편 그는 민족적 동질화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Anthony D. Smith(1999), p. 231.
- 39) Sue Wright, *op. cit.*, pp. 145-147.
- 40) Philip Schlesinger, "Europeanness - a new cultural Battlefield?" i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 *Nationalism V* (London: Routledge, 2000), pp. 1880-1881.
- 41) Michael Mann은 유럽통합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주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이주민 정책의 유럽의부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며 'Fortress Europe'의 건설은 유럽 내에서의 동과 남을 서유럽과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ichael Mann, "Nation-States in Europe and other continents: diversifying, developing, not dying" in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 *Nationalism I* (London: Routledge, 2000), pp. 367-368.
- 42) Keen Van Kersbergen, "Political allegiance and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 2000, pp. 11-14.
- 43) Sue Wright, *op. cit.*, pp. 152-153.
- 44) Anthony Glees, "Building a New Europe: British, Germany and the Problem of Russia," *German Politics* Vol. 8, No. 1, 1999, p. 165.
- 45) Malcolm Anderson, *op. cit.*, p. 45.
- 46) 보수당 내 유럽통합을 둘러싼 의견은 크게 3그룹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유럽통합회의론자(the Euro-Sceptics)그룹이다. 이들은 브뤼헤그룹(the Bruges Group)으로도 불리는 데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고수한다.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럽연합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유럽통합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데 당내 세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그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동적 통합론자들이다. 김병곤, "영국 양대정당의 대EU정책," 『유럽통합과 국제정치』(서울: 법문사, 1996), 135-139쪽. 보수당의 경우 대처, 메이저, 헤이그로 이어진 당수들의 견해는 경제적 통합을 선호하는 유럽통합회의주의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47) Philip Lynch, *The Politics of Nationhood: Sovereignty, Britishness and Conservative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9), pp. 66-67, pp. 77-80.
- 48) 영국독립당은 자신들의 목적은 EU가 아닌 영국의회에 모든 권위를 보존하게 하는 것과 영국이 EU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석을 획득했다. http://www.ukip.org/html/body_aims.html, 검색일: 2001. 07. 15.
- 49) 헤이그는 1997년 6월 19일 결선투표를 통해 친유럽적인 성향을 가진 Kenneth Clarke를 92대 70으로 누르고 당수에 당선되었다. Clarke의 경우 1차 투표에서는 64표를 얻는데 그것이나 반유럽주의자인 John Redwood의 지원으로 의외의 득표를 얻었다. Anthony Glees, *op. cit.*, p. 163.
- 50) 이대영,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정당의 대응,"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재편』(서울: 법문사, 1996), 127-131쪽.
- 51) 노동당 내부에는 유럽통합과 관련해 다섯 개 정도의 분파가 형성되어 논쟁을 주도해왔다. 첫째 유럽통합에 가장 적극적 접근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당내 세력은 미약하다. 둘째 당내 좌파는 유럽통합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셋째 당내 민족주의자 그룹으로 유럽통합이 영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넷째는 좌파 중에서 유럽을 통해 이념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그룹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중도파가 있다. 유럽통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슈에 따라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곤, 앞의 글, 142-146쪽.
- 52) Montserrat Guibernau, *op. cit.*, pp. 166-169.
- 53) 드골은 유럽통합은 '민족의 융합'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각 회원국이 그들의 주권전체를 보유하면서 단순한 국가간의 협력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유럽건설을 지원하면서 유럽통합을 통해 유럽을 지배하려한다는 의의심을 가지고 있던 드골은 '유럽인에 의한 유럽'을 추구했다. 이중광, "프랑스의 유럽통합 정책," 『유럽통합과 국제정치』(서울: 법문사, 1996), 27-28쪽.
- 54) 국민전선은 1972년 창설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지지율이 1% 정도에 그쳤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전선이 부상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북이프리카 출신들에 대한 반감과 유럽통합의 진전 따라 프랑스 주권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 된 것이다.
- 55) James G. Kellas,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 126.
- 56) Malcolm Anderson, *op. cit.*, p. 51.
- 57) 한중수, "통일독일과 유럽통합," 『유럽통합과 국제정치』(서울: 법문사, 1996), 82-84쪽.
- 58) Jan Möller, "From National Identity to National Interest: The Rise (and Fall) of Germany's New Right," *German Politics*, Vol. 8, No. 3, 1999, pp. 9-17.
- 59) Ludger Helms, "Turning Indifference into a Minor Landslide: The 1999 European Elections i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8, No. 3, 1999, pp. 161-164.
- 60) 이탈리아는 자국민들이 유럽 각국에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권 관심이 국내에 존재하는 외국인들은 아니었다. 과거 이탈리아로 이주해오는 외국인의 수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과 통합문제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이주법률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중심적인 내용은 유입의 조정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의 합법화(regularization)였다
- 61) James G. Kellas, *op. cit.*, pp. 119-123.
- 62) *Op. cit.*, pp. 126-127.
- 63) <http://www.cre.gov.uk/law/rra2000.html>, 검색일: 2001. 1. 31.
- 64) Melte Zøiner, *Re-Imagining: Debates on Immigrants, Identities and Memories* (Oxford: CIP, 2000), pp. 73-74.
- 65) *Op. cit.*, pp. 77-85.
- 66) James F. Hollifield, "Idea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n the limits of immigration control in France," in Grete Brochmann & Tomas Hammar, *Mechanisms of Immigration Control: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Regulation Policies* (London: Berg, 1999), pp. 91-92.
- 67) Pasqua는 1990년대 초반 내무장관을 지내면서 'Zero immigration'을 정책을 선언하고 1993년 이주민의 아이들이 국적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1990년 대 후반에는 반EU 입장을 분명히 했다.

- 68) 1952년 7월 25일 채택된 Asylum Act는 1998년 5월 11일 법률에 의해 개정되어졌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국가로부터 프랑스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으며, constitutional asylum, territorial asylum의 두 가지 형태를 새로운 보호의 형태로 재정했다. constitutional asylum은 자유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통해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territorial asylum은 본국에서 비인간적인 정책들로 인해 망명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 69) James F. Hollifield, *op. cit.*, pp. 88-89.
- 70) Malcolm Anderson, *op. cit.*, p. 60.
- 71) Sarah Collinson, *op. cit.*, 161-163.
- 72) Simon Green, "Beyond Ethnoculturalism? German Citizenship in the New Millennium," *German Politics* Vol. 9, No. 3, 2000, pp. 105-107.
- 73) *Op. cit.*, pp. 119-121.
- 74) 장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6장 참조.
- 75) John Hutchinson, "Ethnicity and modern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No. 4, 2000, pp. 666-667.
- 76)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세대가 유럽애국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71%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Dietmar Herz, "German Today: Continuity and Change,"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3, No. 1, 2000, pp. 97-98.

●●●●
신간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조정남 저 / 교양사회 / 값 15,000원

주요 목차 현대의 정치이념
소련의 정치이념
중국의 정치이념
개도국의 정치이념

난민보호에 바친 10년

논 단

緒方貞子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1991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기 10년 간의 유엔난민 고등판무관 생활을 한 필자의 체험기. 그동안 아프리카에서는 모잠비크를 비롯해 170만인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주하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지나 난민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과테말라 난민의 귀국과 멕시코 정주가 이루어졌다. 보스니아와 르완다는 아직 해결을 향해 가는 중이고, 아프가니스탄·코카서스·체첸·수단은 전망이 서지 않았으며, 서아프리카의 기니·앙골라 등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다. UNHCR(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51년에 설립)의 5천 명의 직원은 지금도 2100만 명이 넘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교육포함)를 위해 세계 곳곳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활동한다.

미얀마의 수도 양공에서 나는 라디오 뉴스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이 본국 노르웨이의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한다. 1990년 10월 조오치(上智)대학 외국어학부장 일을 하던 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자로서 미얀마를 방문해 인권침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니, 꽤 짧게 하다가 그만 두시네...”

불과 10개월 만의 사임이어서 내심으로 놀랐던 것이다.

귀국 후 다시 놀라게 된다. 일본정부에서 후미 후보로서 어떻겠느냐고 타진을 해온 것이다. 일찍이 아이 기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유엔총회행을 거절한 일도 있었는데, 두 아이는 자립하고 이미 부모에 대한 시중도 다해 가정에서의 의무는 일단락이 된 셈이었다. 그래서 만의 하나 후임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마다하지는 않는다는 정도의 코미트먼트로 후보가 되는 것을 양해했다. 그리고 잊은 듯 마는 듯 지냈는데, 온세계에서 천거된 후보자 15~16인중에서 최종후보자 3인 중의 1인으로 남았다는 말을 들으니, 아연 의욕이 솟기 시작했다. 거기까지 남았다가 제외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말이 박두해서 페레스 데 케야르 사무총장에게서 직접 전화를 걸어, 1월부터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은 이제부터 학년말을 맞아 채점을 마쳐야만 했으며, 논문지도를 맡은 학생의 지도도 있다. 1991년 1월 17일, 대학의 일에 그런 대로 단락을 지고, 황급히 단신 제네바로 떠났다.

國境을 넘느냐 아니나

그 반년 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었으며, 페르시아만 해안(걸프)이 긴장 상태에 빠졌다. 중동의 외국인 노동자가 피난민으로서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이미 1월에 걸프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는데, 우선은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 사업의 개요에 대한 브리프, 곧 학습의 매일이 계속되었다.

나는 1963년에 유엔총회에 참가, 제3위원회에서 사회·인권·문화를 담당했고, 1976년부터는 3년간, 공사(公使)로서 뉴욕의 일본정부 대표부에 부임, 평화유지활동과 인권을 담당했었다. 1982년부터는 인권위원회 정부대표를 4년

간 맡았었다. 유니세프의 집행이사회 의장도 경험했으므로, 유엔은 총회와 동시에 사업활동의 측면에서도 보아왔다.

난민보호는 처음 하는 일이다.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는 것은 교사의 습성으로, 법적인 문제, 조약의 문제에서 시작해, 각 부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온갖 사람에게 잇따라 질문을 했다. “새로운 고등판무관은 뭐든지 이것저것 묻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났던 것 같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1951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직원 23명, 연간예산은 500만 달러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주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온 개개의 난민을 원조했다.

난민이란, 난민조약(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議定書」를 아울러 말한다)에서, 정치적·인종적·신조적 박해나 분쟁 때문에 조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비호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되며, UNHCR의 역할은, 유엔의 권위하에 이같은 개개의 난민에게 법적인 보호를 베풀어주는 것이었다. 그후 대량의 난민이 이웃나라로 유출하게 되자, 그 나라에 교섭해서 토지를 선택하고, 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위생을 고려한 화장실이나 주방 등 수도공사를 갖춘 캠프를 설치하고, 식량과 의료의 보호를 베푸는 등의 사업이 늘었다.

내가 부임할 당시는 연간 예산이 약 5억 달러, 직원은 약 2500명으로 현재의 꼭 절반 규모였다. 취임을 전후해서 동서독일이 통일(1990년 10월), 유고슬라비아가 분열(1991년 6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같은 해 12월)했으며, 세계정세가 크게 변화했다. 동서의 냉전이 종결된 것이다. 그래서 난민문제의 해결도 빨리 될 것이라고 누구나가 기대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어긋난 기대로 끝난다. 우리의 일은 오히려 폭넓고, 복잡하고, 곤란해져가는 것이다.

대강의 브리프가 끝난 단계에서 유엔본부와 UNHCR를 지원해 주는 북유럽 지역으로 취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동안에 이라크에서는 후세인 정권의 박해를 받은 쿠르드 난민이 이란이나 터키의 국경으로 유출하기 시작했다. 예정을 단축하고 즉시 중동으로 날아갔다.

소형비행기로 테헤란에 도착한 다음, 국경까지는 헬리콥터로 바꾸어 타고 갔다. 생전 처음 타는 군용 헬리콥터는 고물이어서 일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1979년에 정부의 캄보디아 난민조사단장으로 타이, 캄보디아를 시찰하고 폴 포트 정권의 학살을 피해나온 난민들을 보았었다. 난민을 접하는 것은 그 이래의 일이었는데, 북이라크의 험난한 산길을 따라 하나 가득 사람들이 탄 트랙터가 속속 들어온다. 그 엄청난 수에 숨이 막혔다.

이란은 그전의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 곤란 등을 극복한 대국이었으나 난민의 유입은 130만 명이나 되어 어쩔 수가 없이 우리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터키측으로 가니까 역시 단 1주일 간에 45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국경의 산악지대에 유출해 있었다. 터키는 국내에 쿠르드인 반정부 세력과의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써 쿠르드난민을 수용하기를 싫어했다. 난민의 입국거부·강제송환·추방을 금지하는 ‘농르폴망의 원칙’은 난민보호의 대원칙이며, 그 관점에서는 수용거부는 죄악이다. 그러나 NATO 각국도 수용을 강요는 하고 싶지 않다고, 동맹국인 터키에 동조했다.

지형적으로도 터키 쪽은 절벽을 이룬다. 우선, 쿠웨이트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 다국적군은, 터키 쪽보다도 완만한 이라크 쪽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난민캠프를 설립했다. - 곧, 난민들을 그들의 자국에서 지킨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도피해 나온 자국으로 다시 쫓아내는 행위라고 인식될지도 몰라서, 그것은 난민보호의 대원칙에 반하는 일이었으므로, UNHCR의 법무관을 비롯해 모두가 크게 반대했다.

종래의 원칙을 따른다면,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도피했을 때까지는 우리들은 노터치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는 인간을 지키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며, 그럴 경우, ‘국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고 나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는 다국적군의 협력을 얻어 이라크 쪽에 캠프를 만들고, 산을 내려가 자국내의 안전지대로 돌아오는 쿠르드 난

민에 대한 원조를 시작했다. 이 결단은 난민보호의 양상을 바꾸는 큰 결단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나 자신은 이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지역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무렵 소말리아 분쟁이 격화했다. 도망해 오는 사람들을 이웃인 케냐 쪽에서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며칠이고 며칠이고 걸어서 간신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보고, 소말리아 쪽에 들어가 원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의 체력이나 정신력의 소모가 적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도무지 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도 케냐 쪽에서 월경(越境) 원조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국경 바깥쪽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 속에 들어가 긴급한 원조활동을 한다. 더구나 난민의 수가 100만 단위라는 일찍이 없는 숫자로 많아지면, 당시의 UNHCR로서는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곧 긴급 원조자금 2500만 달러를 확보했다. 긴급사태 즉응과(卽應課)를 만들고, 직원도 증원하며, 세계 어느 곳이나 24시간 이내에 물자와 전문가 팀을 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사라예보 ‘射擊의 거리’

6월이 되자 발칸 반도에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분열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이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독립을 선언하고, 특히 피투성이의 보스니아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코소보분쟁은 1998년이 되며 격화한다.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산다. 구유고는 그것이 현저해서 무슬림인(이슬람 교도)·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알바니아인·마케도니아인이 혼재해 있었다. 각 지역의 독립은 각각 다름 민족의 배척, 곧 민족정화(淨化)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성립이 너무나 다른 일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민족문제는 몇 십년, 아니 몇 세기나 거슬러올라간 옛날부터 세계의 각지에 계속 내재되는 ‘분쟁의 씨앗’이다. 동서의 냉전 구조 하에 있으면서, 그것이 잠시 억제되었던데 지나지 않는다. 냉전구조가 붕괴되자, 국내에 마그마처럼 울적되었던 민족대립이며 사회적 부정의(不正義),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갑자기 분출된 것이다. ‘분쟁’은 국제간 뿐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1984년에 옛 유고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최초로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온세계 사람들이 모였던 평화의 도시 사라예보는, 총탄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바뀌었다.

1991년 10월,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요청으로 인도원조의 주요기관이 된 UNHCR는, 이듬해 7월에는 수도 사라예보 시민에 대한 물자원조를 공수(空輸)하기로 결정했다. 공수는 처음 하는 일이었으며, 정전이 없는 상태의 전투의 한복판으로 파고 들어가는 원조활동은, 종래의 UNHCR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라예보의 시민은 버젓한 자신의 집에 살면서 도시를 포위당해 고립되었고, 식량의 조달조차 제대로 안되며, 국제적인 보호와 지원에 의지하지 않을수 없는 ‘국내난민’이 되어 있었다. 공수 개시 후, 나도 곧 사라예보로 갔다. 부고등판무원이 “무리하지 말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하고 걱정하며, 현지에도 전화를 걸어 거듭 말했다.

그후로도 여러 번 사라예보에 수송기를 타고 갔는데, 사라예보의 상공 빼듯이까지 내치 고도를 유지하다가 최후에 딱 급강하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수송기에서 내려 비행장의 창고 쪽으로 들어갈 동안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트럭 등을 늘어세워 포탄에서 지켜주었다. 비행장에서 시내까지는 통칭 ‘사격의 거리(射擊路)’였다. 우리의 오피스는 처음으로 방탄차를 구입해, 키가 150cm인 나는 15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어야 했다. 괜한 수선이 아니었다. 내가 내린 10분 후, 운전사가 유탄을 맞아 주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온 시내의 유리라는 유리가 다 깨진 상태였다. 회의를 하노라면 총성이 울리고, 때때로 폭음에 건물이 흔들린다. 행

인지 불행인지 차츰 전쟁하의 인도원조의 맹자(猛者)가 된 직원들은 그때마다 겁을 먹거나 하지는 않는다.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까지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에 깨달은 일인데, 얼른 보기에 보통 주택지대 사이에서 세르비아계, 혹은 무슬림계의 주거만이 표적공격을 받아, 집안이 처참하도록 파괴를 당한 것이었다. 참으로 원한이 사무친듯한 파괴의 흔적에 소름이 끼쳤다.

원조물자의 공수는 장기간에 걸쳤으며, 지금은 사상 최장이라는 말들을 한다. 기껏해야 2주일간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깨닫고 보니 이 공수야말로 바로 여러 외국들이 결속해서 사라예보 시민을 지원하는 일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원조물자를 수송할 때, 군의 수호를 받으면서 실시하는 일에 저항을 보이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투가 격렬하면, 먼저 가서 형편을 보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철거하는 선전대(先遣隊)의 일이나 습격을 받았을 때에 지켜주는 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물론 군대와 함께 인도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군이라는 것은 전투를 하는 집단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만, 공수, 공로(空路)의 관제(管制),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큰 물자들의 싣고 내리기, 캠프의 설치 등의 프로이다. 어떻게 군과의 협력을 도모해가느냐, 이것이 UNHCR뿐 아니라 전투하의 인도원조의 과제일 것이다.

나의 노여움

사라예보에 대한 원조물자의 수송을 일시 중지한 일은 유엔을 뒤흔든 일대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그것은 나의 노여움이었다.

그것은 1993년 2월, 세르비아계 세력이, 원조물자를 운반하는 우리들의 트럭이 세르비아 세력하의 동보스니아에 군대군데 흩어져 있는 무슬림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무슬림측은 비행장에서 사라예보의 시내까지의 루트를 폐쇄하고, 원조차체의 보이콧을 시작했다 세계를 향해 고립된 무슬림계 사람들의 운명과, 세르비아측에 대한 비난을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극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인도 원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단호히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원조물자의 수송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화평의 교섭이 좌절된다” “일개 난민고등판무관이 이와 같은 임팩트있는 결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논란이 들끓었고, 나는 뉴욕(유엔본부)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

결국 며칠 후에는 사라예보시 당국이, 무슬림측의 상황을 어필하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오히려 고맙다는 뜻을 표하는 보이콧을 거두고, 갈리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지식도 있고 해서 원조를 재개했다.

사실은 서스펜드는 몇 번인가 실시했었다. 원조물자를 실은 이탈리아군의 수송기가 격추되고 파일러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원조를 중지했다.

그것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역시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성과 동시에, 원조활동의 안전성이 어디까지 확보되느냐도 중요하다. 그 때문에 난민이나 원조활동 자체가 무력공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은 분쟁 당사자들과 교섭을 거듭해야만 했다.

우리창이 깨어진 사라예보의 시내에서는, 우리 아이디어맨 직원이 UNHCR의 플라스틱 시트와 창틀을 만들 재료며 목공도구를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집집마다의 창을 고치고 살도록 했다. 플라스틱 시트라면 깨어질 염려가 없다. 대통령부(부)의 창도 UNHCR라고 쓴 플라스틱 시트들이 끼워져 있었다. 미국의 시찰단이 온 시내에 넘칠 듯이 많은 UNHCR의 로고가 들어간 창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나 하고 놀랐다는 농담도 있다.

가장 희생이 크고 참혹했던 것은 르완다 난민이었다.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의 소국으로 투치족과 후투족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계속된다. 식민지시대는 투치족이 등용되었는데, 사회혁명이 일어나며 투치족과 후투족이 싸워 1962년의 독립 후는 다수파인 후투 주도의 정권이 되었다. 이 때는 투치족이, 같은 투치족이 지배하는 부룬디나 우간다에 난민으로서 유출되었다.

1994년,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사를 계기로 후투족과 과격파에 의한 투치족 학살이 일어났다. 50만 명이라는 대량 살육이었다. 그리고는 보복을 겁낸 후투족이 주변 나라들로 도피했다. UNHCR의 계산으로는 120만 명이 자이르, 50만 명이 탄자니아, 27만 명이 부룬디, 1만 명이 우간다로 유출되었다. 콜레라의 유행이 자이르로 피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내가 자이르의 국경 연변에 있는 고마의 난민캠프를 찾아갔을 때, 하루에 약 2천 명이 죽어갔다. 당시 고마에는 1년에 1~2회는 찾아갔었다. 몹시 운영이 어려운 캠프였던 것이다.

난민 중에는 후투족의 군인, 민병도 끼여있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학살을 감행한 전쟁범죄인이다. 난민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전범도 보호하게 된다. 나는 사무총장에게 일반 난민과 범죄인의 구분을 하기 위한 군을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교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범까지 포함한 난민의 캠프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난이 요란했다. NGO 중에는 학살자까지 원조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캠프로부터의 철수를 선언하며, 우리가 하는 방식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은 자유예요. 나는 유엔으로부터 난민보호의 임무를 맡았으므로 난민이 있는 한 쉬습시다.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캠프 안의 군인이나 민병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자이르의 친위대와 경찰의 엑스퍼트에게 우리 오피스의 컨설턴트가 되어 캠프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물질의 저장창고가 습격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르완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난민은 안전하게 국경까지 데려다주도록 하는 임무를 부탁했다. 최초에는 효과가 있었으니, 얼마 후 자이르의 재건에 말려들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르완다의 새로운 투치족 정권은 피난지인 우간다에서 귀환한 그때의 난민이다. 그들은 우리가 자이르에 있는 후투족 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비난하며, 한편 우간다에 남은 투치족 난민에 대해서는 더 원조할 것을 바랐다. 새 정권은 상당한 압력을 가해왔으나, 우리는 우간다에서 르완다로 귀환한 투치족에게도, 자이르의 내전이 격화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귀환을 당한 후투족에게도 똑같이 부흥원조했다. 그들의 집을 고치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다.

2000년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자신들은 “젊은 나라여서 경험이 적으며 혼장을 수여한다든지 해본 일도 없으나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며 액자를 주셨다.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르완다의 친구라는 것을 포고합니다.”

UNHCR라는 조직이 놓여 있는 입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떡하든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한 일을 알아준 것이다. 인간의 집단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원한을 가지며,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절감했다. 그런 중에서도 노력을 계속해 가면 밝은 빛이 보이게 되는 일도 있다. 받은 액자를 보면서, 나는 그런 밝은 빛을 느꼈다.

‘人權장수’는 아니다

유엔에서 몇 번이나 인권문제를 담당해 왔으니, 나는 ‘인권장수(전문가)’는 아니다. ‘인권’의 견지에 서면 권력에 대치해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발상이 되는데, 인도 원조의 경우는 권력층을 말하자면 끌어들이므로써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을 지키는 데 힘써야만 한다.

내가 지난 10년 간 대해 온 난민은 모두 희생자이며, 틀림없이 많은 경우가 정권의 희생자, 권력의 희생자들이다.

이 희생자의 인권을 지키는 권력측과 싸운다 했다.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출된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식량, 의료, 교육의 기회를 베풀어주는 일은, 인권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하게 가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그것을 '인도'의 견지에서 권력측에게 요구하고, 호응을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

전쟁은 좋지 않다고 외쳐보았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제일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게 되므로, 우선은 눈앞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더 좋아질 찬수를 만들어나가는 쪽이 실천적이다.

르완다에서는 콩고(구자이르) 난민의 캠프가 있다. 사실은, 이곳에는 오가타 사다코가 있다. 3년 전에 내가 찾아갔을 때에 태어난 아이이다. 나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들이 캠프를 정비하고 학교를 세우며 난민을 지원해온 일을 좋아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오가타 사다코의 집안에는 송아지를 선물했다. 르완다에서는 소가 가장 값진 선물이다. 나도 이전 르완다의 여성들의 갱생계획을 지원한 사례로서 한 마리를 받았었다. 끌고 올 수는 없으므로 캠프에 놓아두고 있었다. 프레젠틀을 한 것은 그 소가 낳은 송아지였다.

몇백 년의 원념(怨念)이 소용돌이 치는 발칸반도에서도 지난해(2000년) 봄부터, 고향을 쫓겨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해, 파괴된 집의 청소를 하고, 방 하나씩을 수리하게 되었다. 데이턴 협정에 의한 평화가 5년 계획되며, 마침내 다른 민족끼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심정이 생긴 것이다. 참을성있게 지원하면, 이와 같이 상황은 완화해 가는 것이다.

상황을 변화시켜 난민문제가 해결될 예도 있다. 가령, 캄보디아 난민문제에다. 유엔의 캄보디아 회의를 주도해 화평을 성립시키고, 일시적으로 유엔군도 보내서 통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난민의 귀환을 도모했다. 40만인이나 되는 난민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최후의 사이트투라는 커다란 캠프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을때는 감동을 느꼈다.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에서도 반가운 일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에 사는 타타르인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했다. 전후, 그들은 되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공공건물을 아타트로 개축했다. 비용에는 일본의 재계(재계)에서 각출된 난민기금을 충당했다.

이 아파트에서 사는 두 명의 여성이, 마침내 조상의 묘소 근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UNHCR가 아파트를 마련해 준 덕택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따스한 사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스탈린·루스벨트·처칠에 의해, 일본의 패전의 계기가 된 소련의 참전을 결정한 알타 회담이 실시된 크리미아 반도에, 일본의 민간이 각축한 돈으로 주거를 만들고, 그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무슨 역사의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2000년 12월로써 3기 10년에 걸친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의 임기를 종결한 즈음에, 10월의 집행위원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해결' '해결을 향해 간다'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밸런스시트를 작성해 보고했다.

해결이란 난민이 난민이 아니게 된 케이스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모잠비크를 비롯해 170만 명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주를 할 수가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지나 난민문제가 해결되고, 중남미에서는 과테말라 난민의 귀국과 멕시코 정주에 따라 우리의 임무를 종결 지을 수가 있었다.

보스니아나 르완다는 먼저 말한 것처럼 해결을 향해 간다.

전망이 서지 않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코카서스·체첸·수단이다. 특히 악화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은 서아프리카로 기니와 앙골라 등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이다. 2000년 가을에는 서티모르와 기니아에서 우리 직원이 참살되었다. UNHCR는 언제나 난민의 곁에 있어야만 한다. 난민의 다수는 열대우림·사막·산악 등 자연환경이 가혹한

곳에 모여서 지낸다. 따라서 직원들도 이같은 벽지에서 구원활동을 계속한다. 더구나, 근처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거나 혹은 전투지역 그 자체이기도 하다.

나 자신도 1년 중 절반 이상은 현장에 나가 있었다. 원래가 걱정을 잘하는 성질이 아니므로 별다른 각오도 없이 떠났었는데 부룬디에서 도중에 갑자기 돌아오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에 따랐다. 돌아오라고 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야, 사실은 생명을 노린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방화를 만난 사무소도 있었다. 살해된 직원도 있다. 그래도 직원은 2100만 명을 헤아리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각 각 그 위험한 지역에서 분투를 계속한다. UNHCR의 5천 명의 직원은 말하자면 나의 전우다. 항상 상의를 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정말이지 무척 좋은 팀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한다.

學者의 '現場主義'

나는 최초의 학자 출신의 난민고등판무관이다. 어렸을 때 외교관으로 일하던 아버지의 책장은 외교관계의 서적으로 가득 찼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외교사, 아시아, 일미관계, 일중관계를 공부하고 정책결정과정의 이론도 연구해 왔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 쇼오와(昭化) 한 자리(1~9년 사이) 출생 세대는 어찌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는 침로(針路)를 잡았는지를 해명하고자 연구에 힘썼다.

그러나 고등 판무관이 되고나서는 철저히 현장주의가 되었다. 연구자로서 공문서관(公文書館) 등에서 다큐먼트를 산더미처럼 읽으며 사물을 생각해왔으나, 현장에서 받는 임팩트는 강렬해서 현장에서 사물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정책결정과정론도 공부해왔으나 문제를 결정할 때는 헛딴이어서는 안 되고, 결단할 때는 일종의 담력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눈으로 현장을 잘 보고, 혹은 파견한 직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단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길러온 사물을 분석해가며 생각하는 습관이나 체계적으로 사태를 보는 습성을 살리고 현장에서 얻은 임팩트를 분석, 원인을 추구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5천 명의 직원도 모두 나의 결단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의 결단에 5천 명이 잘 따라와 주었다.

부임 중에 국제 정치체제는 크게 변화해서 그것이 인도 원조의 프레임워크를 크게 바꾸었다. 종래는 실시되지 않던, 난민을 자국에 돌려보내 부흥을 지원한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캠프는 어디까지나 '막간' 일 뿐이다. 되도록 빨리 자국으로 돌아가, 혹은 받아들이는 나라에 동화하고,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제3국으로 가서 보통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할 것인데, 어떤 경우도 '교육'이 앞으로의 그들에게는 틀림없는 의의가 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식량, 의료와 함께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캠프에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UNHCR가 50주년을 맞이한 작년(2000년)은 '50주년 난민교육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으로 더욱 두터운 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원한다.

이민족(異民族)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작성해 공존을 지원했다.

나의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인간의 안정보장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이를 발족시켜야만 한다. 난민 교육기금의 모금에도 나가려고 생각한다. UNHCR 퇴관 후 한동안 아무 일도 안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었는데, 좀처럼 그곳이 지내질 것 같지도 않다.(<『文藝春秋』 2001년 5월호에서 전재)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논 단

이준규
고대 정의과 석사과정

소련의 해체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게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제들이 소련의 민족정책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문제는 민족적 감정에 입각해 접근하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론

소련은 그 태동에서부터 이미 다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물려받았다. 짜르시대의 러시아가 원래 다민족적 역사와 문화 위에 건설된 대제국이었던 때문이다. 혁명 이후 소련을 건설하고 설계한 볼셰비키들의 고민은 이러한 다민족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볼셰비키들이 다민족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연방제였다. 그러나 소련의 민족정책은 연방이라는 틀 속에서의 민족들간 '대등한 자율적 결합'이라는 측면과 함께 러시아민족이 중심이 된 '러시아 중심 체제'라는 또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명목적으로는(de jure) 민족들간에 서로 대등하고 자율적인 결합으로 건설된 연방제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de facto) 러시아민족이 중심이 되어 다른 민족들을 통합해 갔던 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양 측면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것이 중앙집중적 통제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중앙의 권위가 동요하고 아래로부터 이익표출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상호모순되는 측면을 중앙의 강력한 권위와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통합하고 있던 체제가 그 중앙권위의 동요와 이데올로기의 균열 속에서 견잡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 글이 검토하고자 하는 주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수민족들에게 닥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구소련 영역내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공화국에 거주해 오고 있는 '고려인'들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구소련의 '폭력적인' 체제와 민족정책의 희생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해체이후 그 정치적, 사회적, 법적 지위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우선, 우리는 고려인들이 직면한 도전들이 근본적으로 소련의 민족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련의 민족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긴장의 요소가 소련해체이후 폭발하면서 소수민족들은 또다시 '소수민족 공화국내에서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정치적 지위와 함께 특정 지역의 거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권리인 법적, 사회적 지위마저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소련의 민족정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련이 해체 된 이후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 우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신생 국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구소련의 정책(특히, 민족정책)이 남겨 놓은 '업보'(業報)들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아시아의 변화된 상황이 고려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규명해 보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전망해 보려 한다.

구소련의 소수민족정책

구소련 소수민족정책의 논리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는 이론적으로 상호간에 긴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속에서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혁명이 민족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적' 혁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말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신봉자라면 국제주의자일 수는 있어도 민족주의자일 수는 없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체계이지만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어울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

볼셰비키 혁명과 이를 통하여 탄생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USSR, 이하 '소련')도 예외는 아니었다. 볼셰비키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레닌주의는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저개발국의 민족주의 혁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소비에트의 체제유지과정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기치보다는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동원되는 정당화의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딜레마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의 유지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민족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⁴⁾ 혁명과 내전기간 그리고 사회주의 소련의 건설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의 원칙과 다민족적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레닌이 때로는 소연방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민족들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막기도 했지만 결국 1920년대에 이르러 비러시아민족의 문화 발전을 인정하면서 민족들의 다민족성을 인정하는 '현지화' (Korenizatsiya)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스탈린은 '내용은 민족적, 형식은 사회주의적'이라는 공식(formula)하에 제한적인 민족적 자율성⁵⁾의 인정과 사회주의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결국 1940년대 조국수호전쟁(히틀러의 소련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인이 다른 민족의 '만형' (elder brother)이며 여타민족이 러시아 민족에 종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러시아인 중심주의를 전면화하였다.⁶⁾ 스탈린의 철권통치 이후 흐루시초프시기에 제기된 화해(Sblizhenie), 융합(Sliyanie)을 통한 '새로운 소비에트인간'의 창출과 이를 위한 민족간의 混婚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간 均質化 정책, 그리고 브레즈네프가 제시한 중간단계로서의 '전면적인 화해(All-around Rapprochement)와 결합(Cohesion),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통일 (Unity)이라는 민족정책도 결국은 현실과 이론의 딜레마와 긴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련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건설기에서부터 민족들의 '통합'과 '분리'라는 딜레마의 위에서 민족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가 현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지도자들은 이 딜레마와 긴장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이 긴장이 고르바초프에 이르러 폭발하게 된 것이다.

구소련 소수민족정책의 내용

구소련의 소수민족정책은 시기별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제도적으로 당국가체제와 위계

〈표 1〉 민족집단과 그들의 자치구역들(1979년 센서스)

민족집단	인구 수(백만 명)	SSR	ASSR	AG
러시아인	137.4	○	-	-
우크라이나인	42.3	○	-	-
우즈베크인	12.5	○	-	-
벨로루시인	9.5	○	-	-
카자흐인	6.6	○	-	-
타타르인	6.4	-	○	-
아제르바이잔인	5.5	○	-	-
아르메니아인	4.2	○	-	-
그루지아인	3.6	○	-	-
몰다비아인	3.0	○	-	-
타지크인	2.9	○	-	-
리투아니아인	2.9	○	-	-
투르크멘인	2.0	○	-	-
독일인	1.9	-	-	-
키르기스인	1.9	○	-	-
유태인	1.8	-	-	-
라트비아인	1.4	○	-	-
폴란드인	1.2	-	-	-
에스토니아인	1.0	○	-	-

출처: Vadim Medish(1990), p. 31.

적인(hierarchical)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제라는 틀과 사실상 그 내용을 구성했던 러시아화(Russification)정책, 그리고 러시아인 중심의 위계적 민족서열화정책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의에 따른다면 역사적 진보의 과정을 통한 민족의 소멸은 객관적 법칙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볼셰비키들은 연방모델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⁹⁾ 연방은 민족적 자치지역에 기반한 국가였다. 따라서 이 연방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소비에트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하고 위계적인 관료제의 계발이 요구되었다. 강력한 중앙집중적 당국가체제와 이것을 지탱하는 관료제가 제도적 틀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구소련의 연방제라는 제도적 틀을 채운 그 내용은 러시아인을 정점으로 하는 민족적 위계서열화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족적 위계서열화의 양상은 연방을 구성하는 원리에서부터 드러났다. 연방을 구성하는 민족들은 러시아인을 정점으로 하여 그 규모에 따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SSR),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ASSR), 자치지역(AG)의 서열(序列)에 따라 '구역'(territory)을 할당받고 그 서열에 합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자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수민족자치권의 인정은 명문화된 법적 원칙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고려가 이 원칙에 우선하곤 했다.¹⁰⁾(〈표 1〉 참조)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중심의 동화 정책¹¹⁾이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던 것도 민족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시기적으로 그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언어정책과 인구의 이주·분산정책, 그리고 강력한 산업화의 추진을 통해 민족 간의 동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중심의 동화정책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는 러시아어였다.¹²⁾ 구소련은 러시아어의 사용을 독려했을 뿐만아니라 러시아어를 '공식언어' 화했다. 모든 민족학교들에서는 러시아어를 '필수적 제2언어'로 가르쳤고 군대에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했다. 또한 인구의 이주와 분산정책도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한 동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이 소수민족의 지역에 정책적으로 이주했으며 소수민족들은 추방 등의 강제적 방식에 의해 다른 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산되었다.¹²⁾ 중앙의 강력한 추진력과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산업화도 러시아화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앙집권적으로 추진한 산업화는 중앙의 강력한 통제하에 특정 지역에 특정산업을 특화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간의 의존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통해 강력한 구심력을 확보하고자 했다.¹³⁾

구소련 민족정책의 평가와 함의

구소련은 제도적으로는 연방제 그리고 그 제도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는 매시기의 민족정책들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소련의 지도자들이 계발한 민족정책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채택해 왔던 다양한 민족정책들은 미시적으로는 시기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의 핵심적인 기조는 러시아민족을 중심으로 한 '동화정책' (Russification)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민족간 서열화 정책' - 러시아민족이 만형(elder brother)이고 다른 민족의 중심의 지위에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의 경우도 자치지역을 승인함에 있어 규모와 정치적 고려 등에 인하여 서열화시켰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으로 구소련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회주의적 형식, 민족주의적 내용"이라는 공식(formula)이 구소련을 관통하는 민족정책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이었던 것이다. 이 측면은 분명 소련내의 소수민족들이 자치를 누리고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구소련의 연방제와 민족정책은 그 안에 딜레마를 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하나의 이념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경향이 존재했다면 다양하게 분기하는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면서 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또다른 경향이 공존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구소련의 많은 지도자들이 제시한 민족정책이었지만 그러한 민족정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두 경향의 긴장은 소련의 해체를 가져 온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한 소련의 해체를 통해 폭발하게 되었다.

요컨대¹⁴⁾ 엄청난 모순을 지닌 구소련 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행위와 구성을 통제하고 '강권력으로' (by force) 지방의 민족주의적 운동의 조직화를 억제할 수 있었으며 중앙집중적 명령경제 시스템에 기반하여 국가 자원을 전국적으로 수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非러시아계 공화국들내의 민족적 사회단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관용을 제공하면서도 '하나의 다민족적 제국' (a mulietnic empire)이라는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변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바닥나고 국가적 민족정책이 침식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체제는 지속적인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라는 '위로부터의 혁명'은 이러한 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또한 Glasnost¹⁵⁾는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혹은 은폐되어 왔던 민족문제가 전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권위에서 벗어난 다원적 정치세력들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은 민족주의와 분리주의가 대중앞에 제약없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했다. 결국 구소련의 '사회주의를 중심이데올로기로 하는 다민족적 연방'의 해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문제

소련해체이후 중앙아시아의 상황과 민족문제

소련해체이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상황

소련해체와 함께 다른 공화국들과 함께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비용의 측면과 독립과 동시에 제기되는 민족국가(nation state) 건설이라는 또다른 측면에서 제기되는 이중적 과정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적 제도의 미숙,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온존, 약한 정당체계(weak party system)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구소련 시대 공산당이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집권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항세력(counterpartener)이 부재하거나 미약하다보니 대부분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¹⁶⁾ 또한 시장경제의 형성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산적한 경제적 난제들은 전통적으로 교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악화되고 있으며 對러시아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했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마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경제적 불안정과 경제개혁의 지체는 지속되고 있다.¹⁷⁾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에 편승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fundamentalism)이다. 이로 인한 공화국간의 갈등과 공화국내의 민족간 대립 등의 민족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민족문제는 종교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또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이슬람 온건파와 급진파간의 내분,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두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투르크계인들(타지키스탄만은 이란계 민족이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 시대 이 지역은 소연방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토착적인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억압당해 왔고 또한 러시아인의 대거 이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주인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위에서 소련체제에 변혁기가 도래하자 '토착민족주의'¹⁸⁾와 회교 근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것이다. 토착민족주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의 민족정책에 의해 훼손 당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복원하려는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민족의 우위확보를 위해 또다른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이슬람교가 소련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강경한 근본원리주의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소수민족의 안전에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같은 무슬림(muslim)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극심한 알력다툼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소련의 해체 후 중앙아시아의 주목할 만한 또다른 변화의 모습은 인구구성비의 변화이다.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 이 지역의 인구구성비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기 보다는 소련의 민족정책에 의한 인위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연방의 동요와 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인구구성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어 보면, 구소련의 적극적인 러시아인 이주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러시아화 정책으로 인하여 1939년에 이르러 러시아인은 카자흐 전체인구의 40.3%를 차지하게 된 반면 카자흐인은 38.2%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러시아인이 다수민족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재역전되어 1989년부터 카자흐인이 다시 러시아인 인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인의 카자흐공화국으로부터의 유출과 카자흐인의 출생을 증가, 그리고 카자흐인 우대정책으로 인한 他공화국으로부터 카자흐인의 유입에 힘입은 바 크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세는 우즈베키스탄도 예외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1989년 당시 우즈베크인이 71.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75.8%로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 러시아인의 경우에는 1989년 8.3%에서 1996년 6.0%로 감소세를 보였다.²⁰⁾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구소련시대에 '명목적 대표 민족'(titular nation)이었던 '공화국 이름의 민족'이 이제 '실질적인' 공화국의 대표민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공화국의 대표민족이 된 공화국의 대표민족들은 그에 합당한 정치적 행동을 취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였다. 이것은 그동안 침해받았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한 이 지역의 공화국들이 전반적으로 민족주의화하는 것은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화국 이름의 민족어' (자민족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자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장한 것이였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민족정책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소련의 해체이후에 민족문화의 복원과 민족관계의 전변(轉變)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nation-state building)의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의 시기에 놓여 있는 이들 국가들이 구소련 체제하에서 억압받았던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타지키스탄만을 예외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까지 어떤 격렬한 민족적 갈등에 휩쓸려 있다든지 혹은 자국내 소수민족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대우로 민족정책을 급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전반적인 민족주의화의 흐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법적인 차원에서 공화국이 토착민족(공화국 이름의 민족)에 기반하여 건설된 국가라는 자국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 민족자결체로서의 카자흐스탄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²¹⁾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헌법 본문의 제 1장 국가통치권 제 4항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國語는 우즈베크어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역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인의 나라라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소련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법률적으로 그 지역 '토착민족의, 토착민족에 의한, 토착민족을 위한 국가'임을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민족주의화의 대표적인 경향성은 언어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철저한 민족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헌법상에 우즈베크어가 국어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어와 카자흐스탄어가 공식어²²⁾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언어 정책의 민족주의화는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민족어 교육체제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 교육대학생에게 학비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전체학교의 75%가 우즈베크어를 교육하고 있다. 향후에는 학교 전체가 우즈베크어를 교육언어로 채택할 전망이다.²³⁾

토착민족의 언어가 공식어로 채택되는 언어에서의 민족주의화 경향은 국가기관의 상위직과 주요요직에서 다른 소수민족과 러시아인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89년에 카자흐어의 구사력을 대학입학과 공무원이 되는데 있어 필수로 요구하는 언어법을 통과시켰다.²⁴⁾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가요직의 90%를 카자흐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카자흐스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²⁵⁾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앙아시아 고려인 개괄 : 소수민족공화국 내 '소수민족' 으로서의 고려인

<표 2>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탈린시기 강제이주정책²⁶⁾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성의 역사에 기인한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표 2〉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1995년	1997년	1999년
우즈베키스탄	220,336	220,350	181,241
카자흐스탄	103,525	103,653	113,000
키르기스탄	17,476	16,650	20,000
타지키스탄	자료부재	자료부재	6,228
투르크메니스탄	자료부재	자료부재	2,500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검색일 2001.06.11.

첫째 높은 同化率이다. 말을 바꾸면 母國意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모국과의 관계가 상당기간 소원해왔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이들의 이주 역사는 연해주 이주의 역사까지 본다면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모국을 떠난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다보니 모국의식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강제이주로 인해 생경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잡다보니 동화(同化)에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소련의 강력한 동화정책과 귀화정책속에서 일종의 생존전략의 문제였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의 러시아 동화과정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도이다. 〈표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려인들 중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그 자체의 수치만으로는 낮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인의 97%, 우즈베크인의 98.3%가 카자흐와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에 비한다면 언어의 측면에서 보이는 동화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결국 이러한 높은 동화율은 고려인들이 '의심스러운 민족'으로 매도되어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영토의 민족' (extraterritorial nationality)으로서 생존을 위해 러시아인과 현지 중앙아시아인들 사이의 '중간소수민족' (middleman minority)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두 번째로 도시로의 진출율이 높다. 〈표4〉참조) 이점 역시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해서도 독특한 특징이다. 이는 한 민족 특유의 교육열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신분상승의 획득을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인텔리층과 화이트칼라계층에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도시거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문화 유지에 장애가 되는 효과가 있다. 도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보다는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재빠르게 융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²⁰⁾

세 번째 특징은 강제이주와 민족분산정책의 희생자로서, 강력한 동화정책과 귀화정책에 의해 동화율이 상당히 높고 민족자치구역도 가지고 있지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려인'이라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농경문화, 식생활, 주거생활, 한글신문 발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특히 한글신문의 발간은 말은 남아있어도 문자가 기릴문자화된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유동적인 상황과 고려인 : 제약과 기회의 이중적 상황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소련방에 해체된 이후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과정에서 전반적 민족주의화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제약과 함께 기회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

〈표 3〉 소련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국어 사용실태(1970년)

공화국별	고려인수	한국어가 모국어	비율(%)
우즈베크공화국	147,558	108,483	74
카자흐공화국	81,598	52,218	64
키르기즈공화국	9,404	6,067	65
타지크공화국	8,490	5,825	69
투르크멘공화국	3,493	2,549	73

출처: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서울: 1989, 동아일보사)

〈표 4〉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도시·농촌간 분포

지역	도시(%)	농촌(%)
카자흐스탄(1992년)	84.2%	15.8%
우즈베키스탄(1990년)	57.8%	42.2%

출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해외동포센터

(<http://edu03.jungang.co.kr/users/minisha/frame1.htm>) 검색일 2001.06.11

다는 신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토착민족들인 카자흐인들이나 우즈베크인 등은 러시아인과 양속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은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인과 토착민들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해왔다. 이것이 소연방의 해체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중간자로서의 이러한 위상은 전환의 과정속에서 대표적인 피해 민족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다시말해서 러시아인들, 그리고 하층민을 구성했던 현지인들과의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직, 공무원, 상인들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정치적 위기시에는 피압박 하층계급의 분노와 좌절을 대신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다.³⁰⁾

두 번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발호하고 있는 민족주의화의 경향성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격렬한 내전에 휩싸여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민족문제의 폭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나 과격파의 준동(蠢動)을 막는 것이 최대의 안보과제³¹⁾이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오히려 민족간의 화해를 위한 갖가지 정책³²⁾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토착민족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벌 양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배타적인 이슬람 민족주의화할 가능성보다는 타지키스탄과 같은 내전의 양상으로 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한국과 관계의 진전이라는 변수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이러한 인식이 중앙아시아에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의 고려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한 대우는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의 관계가 이들의 실리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한 계속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법적 지위의 문제 : 國籍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지위에서 국적문제는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 있다. 그것은 '누가 시민(citizen)인가'를 결정하는 始初的 과정이

며 이것이 결정되어야 의무가 강제되고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citizenship)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은 그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된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구소련 시절의 소수민족정책이 형성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역사적 조건이 오히려 국적 취득의 문제에 있어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국적 취득의 문제는 우선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족 국가 형성기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아직 불투명한 미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 지역 소수민족들 특히 고려인들과 같이 구소련의 강제이주에 의해 아무런 역사적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불투명한 미래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국적법에 대해 연구한 한 연구자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국적법은³³⁾ "첫째, 가장 중요한 국적법상의 고려인의 의미는 구체적인 카자흐스탄 국적법의 조항의 내용이나 구소련의 국적법과의 비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련의 해체와 카자흐인을 지배적인 민족으로 하는 공화국의 독립이 수반하는 사회경제적인 기축, 민족적 기축, 인구통계학적 기축의 변화가 국적법에도 흔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입법론적인 의미에서는 고려인만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지만 적어도 카자흐스탄의 국적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과 제1조에 따르면 소수민족이 카자흐스탄의 국적을 지니고 있는 한 그 지위에 있어서 구소련시절보다는 더욱 확실하게 시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소련의 국적법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의 국적법은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국적문제와 관련한 시행규칙들을 국적법에 상세히 규정,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념적 중요성보다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문제에 관한 한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형적인 근대적 발전지향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평가에 의한다면 카자흐스탄내에서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 자체' 만은 오히려 구소련 시절보다도 안정적인 지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고려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에 의해 러시아 국적 취득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변화된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재이주³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³⁵⁾ 또한 국적 취득의 문제는 연해주 민족자치주 건설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민족 자치영토도 없이 방랑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러움을 떨쳐 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러시아연방의 실질적인 조치의 부족과 러시아연방내 연해주의 소수민족들과 관계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비록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역사적 연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이주의 어려움에 의해 고려인들내에서도 그리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³⁶⁾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지위의 문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으로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려왔다. 고려인들이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높은 교육수준에 기반하여 농업을 비롯한 정치가, 학자, 교사, 의사, 경제인, 기사, 법률가, 문화인, 공무원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³⁷⁾(〈표 5〉와 〈표 6〉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의 정치적 지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물론 몇몇 정치인들이 정치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정치인들의 비중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표 7〉참조)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그동안 주로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지역에서 중상층, 혹은 중간층의 민족들로 인정받아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달리 정치적 지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구소련시절에도 '지위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할 수

〈표 5〉 1989년 카자흐스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려인의 인구1000명당 비율

	카자흐스탄 전체	한인
노동력 인구(15_59세)	113	251
노동인구	131	285

출처 : 장원창(1999), 34쪽.

이미 지적한 것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필두로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민족주의화 경향성에 영향받은 바 크다. 특히, 농업과 상업으로의 이직률이 높는데 이것은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독립이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열이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등 토착민족어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교육에 대한 회의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러시아와 같은 다른 곳으로의 '탈출'(exit)을 도모한다든지 차라리 한국어 배워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고려인의 장래를 생각할 때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자원이었던 경제적 수입원이 변화된 상황에서 위협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보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보다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착민족들에 대해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과두제(oligarchy)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고려인들은 러시아, 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상업활동과 농가 부업을 해왔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후 국가간 국경을 넘을 때는 VISA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업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현지의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불

있다.

그런데 소련해체이후 중앙아시아의 변화는 이러한 고려인의 지위에 있어서 또다른 변화 양상을 결과하고 있다.³⁰⁾

첫째, 높은 이직률과 이로 인한 직업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표 6〉 1989년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별 교육수준

(단위: %)

민족	대퇴, 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우즈베크 민족	6.7%	40.1%	33.8%
러시아 민족	15.8%	42.1%	31.5%
타타르 민족	9.1%	39.4%	37.3%
고려인	15.7%	40.6%	30.4%

출처 : 성동기(1999), p. 97.

〈표 7〉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고려인 숫자

기간	숫자(명)	최고회의	숫자(명)
1955-1959	1	1975-1979	1
1959-1963	2	1979-1985	1
1963-1967	2	1985-1991	3
1967-1971	1	1992-1993	2
1971-1975	2	1994-1995	1

출처 : 장원창(1999), 36쪽.

〈표 8〉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에 대한 태도 -세대별

(단위 : %)

	전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매우 찬성	15.4	21.4	12.6	14.6	16.3
찬성	22.7	26.6	18.6	23.2	25.0
찬성도 반대도 아님	17.8	10.4	15.1	20.8	23.9
반대	15.0	9.2	19.9	15.2	11.4
매우 반대	3.0	2.9	4.4	2.4	1.6
모르겠다	26.1	29.5	29.3	23.8	21.7
차이	20.1	35.9	6.9	20.2	28.3
계	1,010	173	317	336	184

출처 : 윤인진(1999), 132쪽.

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최소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적응해야 하나 그러한 적응의 과정이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의 고려인은 비록 구소련 시절 민족 정책하에서 적극적인 적응력을 보여 그 결과 높은 동화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고려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중앙아시아의 변화된 상황은 이러한 정체성마저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첫째, 언어의 문제이다. 1998년에 실시한 조사 연구³⁹⁾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가 74%이고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6.2%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의 한국어 전승의 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가 64%, '그런 것 같다'가 16.0%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전승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문 결과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속단하기보다는 현재 고려인들이 당위와 현실간의 갈등속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변화된 상황이 현지 고려인들의 언어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세대간의 문제이다. 똑같은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윤인진 교수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지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족외혼과 족내혼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자녀가 러시아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0.1%가 찬성한 반면 32.4%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도 세대가 젊어 질수록 달라지고 있다. 즉, 1세대들은 40%, 2세대들은 45.6%, 3세대들은 22.3%, 4세대들은 23.5%만이 러시아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민족들과의 족외혼에 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1세대와 2세대는 44.7%, 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세대와 4세대는 32.9%, 3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 역시 세대가 젊을수록 족외혼에 대한 선호도에서 반대의견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1990년대 말마야타의 고려인들 중에서 타민족과 결혼한 비율은 40%에 이른다.⁴⁰⁾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고려인들이 타민족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고려인들의 사고가 세대가 흐를수록 타민족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인들

중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는 고려인들의 공통 화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자치지역 건설의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자치주 건설에 대해 고려인들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1세대가 50%에 이르는 찬성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4세대로 가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님, 반대, 매우 반대, 모르겠다 등 반대 의사 표시와 의사표시의 유보를 표명한 사람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인들 사이의 세대변화가 민족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과 그에 상응하는 세대간의 차이와 변화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급격한 변화와 유동성의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인 정체성의 이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적응유형간 차이의 문제이다. 흔히들 이 문제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데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행동의 정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保持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 : 고려인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구소련의 민족정책의 논리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소련해체이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그속에 놓여 있는 고려인들의 민족적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게 많은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구소련의 민족정책속에 그 연원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기 위함이었다. 다시말해서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상황은 다민족의 공존을 강조하는 다민족 공존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와 러시아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체제였다. 이 체제는 중앙의 강력한 권위가 동요하게 되었을 때 그 다민족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이미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파열음으로서 민족간 대립과 갈등을 통해 목도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나라들도 이슬람과 투르크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었지만 구소련 체제에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발현되지 못하고 억압 받아왔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시기 분출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봄'에서 이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금 격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바로 이 점에서 민족국가 건설, 혹은 민족국가 재건의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족국가 건설기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민족주의적 열정(passion)이 분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는 또다른 배타적, 억압 행동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이주정책과 분산정책으로 인해 민족간 混在가 현실인 이 지역의 특성상 앞서 토착민족주의라고 칭했던 그러한 종류의 민족주의는 여타의 다른 민족들에게 불안정의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의 관찰자들이 자칫 오판하곤 하듯이 이 지역의 민족주의가 특정한 민족들을 향한 노골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고려인들의 경우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식과 좋은 대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현지의 고려인들에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이 존재하는 바, 그것은 법적 지위, 정치적 지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명예회복과 자치지역의 건설 문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유지 문제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위의 불안정성의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諸國들이 아직도 전환기적인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좀더 객관적인 분석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개선되고 있는 지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회복과 자치지역 건설의 문제는 고려인들내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문제 또한 감상적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또다른 말쑥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족문제를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 한정되어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새로운 민족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보아왔다.

결국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적응을 하면서도 고려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위와 안정성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1) 구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조선인, 한인, 고려인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고려인으로 통일하기로 하겠다. 현지의 한민족들이 스스로를 고려인으로 부르고 있고 또한 이에 기반하여 지칭하는 것이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객관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 2) 조정남, 『蘇聯의 民族問題』, (서울:1988, 敎養社), 22-28쪽.
- 3) 조정남(1988), 위의 책, 34쪽.
- 4)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Zvi Gitelman, . "The Nationalites", in Stephen White, *Developments in Soviet Politics*, (Macmillian, 1990) ; 조정남(1988), 앞의 책, 36-52쪽 참조.
- 5) 사실, 자율성은 민족언어 정도에 한정되었다.
- 6) 존 암스트롱(John Armstrong)은 소련의 민족들을 민형(elder brother)민족으로서 러시아인, 동생(younger brother)민족으로서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 國家(state nations)인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몰다비아인, 그루지아인 그리고 동원된 難民民族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카작인, 터키인, 키르기스인 등으로 분류한다. John Armstrong, "The Ethnic Scene in The Soviet Union : The View of the Dictatorship", in Erich Goldhagen, *Ethnic Minorities in Soviet Union*, (N.Y. Praeger, 1983)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서울: 1996,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재인용.
- 7) 특히, 흐루시초프 시기 민족간 균질화 정책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질의 타락'(Yellowing)이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이 흐루시초프의 민족정책에 의해 조성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동족들의 지원을 받으며 반체제운동을 전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정남(1988), 앞의 책, 47쪽.
- 8) Philip Goldman, Gail Lapidus, and Victor Zaslavsky, "Soviet Federalism: Its Origins, Evolution and Demise", in Philip Goldman(ed.), *From Union to Commonwealth*, (Cambridge Univ.Press, 1992), pp. 1-2.
- 9)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자치지역도 가지지 못한 민족들의 대표적인 예가 타타르인, 독일인, 폴란드인, 유대인 등이었다. 정치적인 고려는 연방이 구성되는 전방적인 과정에서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Vadim Medish, "The People", in *The Soviet Union* (Printice Hall, 1990), pp. 30-39.
-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정남(1988), 앞의 책, 189-218쪽.
- 11) Vadim Medish(1990), p. 43.
- 12) 대표적인 예가 Koreans, Germans, Chechens, Ingushes, Karachial, Balkars, Crimeans-Tatars, Meskhetian-Turks, Kalmyks, Kurds 등이다.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279쪽.
- 13) 실버(Brian Silver)는 도시와 시골에 거주하는 비러시아인들의 러시아화 정도를 러시아어 사용정도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비러시아인들의 러시아화 정도가 훨씬 높은 것을 검증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도시화도 중요한 러시아화 정책의 하나로 본다. Brian Silver, *Social Mobilization and the Russification of Soviet Nationalities*, in APSR 1974. 3, pp. 50-5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조정남(1988), 203-209쪽.
- 14) Philip Goldman, Gail Lapidus, and Victor Zaslavsky(1992), pp. 3-5.
- 15) 소련의 해체와 Glasnost라는 factor의 관계에 대해서는 Vera Tolz, "The Impact of Glasnost", in Vera Tolz (eds.), *The Demise of The USSR*, (Macmillian, 1995)
- 16) 장원창,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한인사회: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在外韓人研究』第9號, 2000, p. 7. ; 성동기, "우즈베키스탄 독립에 따른 고려인의 직업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이빠드를 양케트 분석에 따라", 『在外韓人研究』第8號, 1999, 88-89쪽.
- 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체제시절부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높았다. 독립후에 이로운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해왔다. 가장 대표적이 나라가 카자흐스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 18) 토착민족주의는 여러 민족이 일정영역에서 공존하며 살다가 민족간의 합의 관계가 변화하여 다수지배민족으로 된 토착민족이 상대적 소수민족에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일종의 새로운 억압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토착민족이란 소련방시절 스탈린에 의해 정해진 원칙들에 의거 공화국 이름의 대표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장원창, "소련붕괴 이후의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와 한인사회", 『在外韓人研究』第8號, 1999, 12-13쪽.
- 19) 이상의 내용은 문명식, "러시아인과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 『러시아지역연구』1999,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171-175쪽을 참조.
- 20) 성동기(1999), 위의 책, 93쪽.
- 21) 장원창(1999), 위의 책, 13쪽.
- 22) 공식어의 지위라는 것은 이전에 이들 지역에서 공식문서와 공식회의, 혹은 여타의 공식식상에서 사용되던 러시아어의 지위를 현지 토착민족의 언어가 대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3) 이종훈,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사)좋은벗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2001년 1월 19일 발표문, <http://www.jungto.org/gf/kor/daehwa4>. 검색일 2001.06.10.
- 24) 문명식(1999), 앞의 책, 177-178쪽.
- 25) 이종훈(2001), 앞의 책.
- 26) 이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국내에 이미 많이 존재한다. 한편, 이 과정을 구소련의 고려인정책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은 노영돈, "구소련의 고려인 정책과 현 CIS내 한인 실태", 『남북한 관계와 러시아』제19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8.

- 27) 李浣淳, "中央아시아 韓人社會에 관한 研究: 소연방 붕괴에 따른 과급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9-45쪽.
- 28)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윤인진, "독립국가연합 한인의 민족관계에 관한 의식", 『在外韓人研究』第8號, 1999, 120쪽과 138쪽.
- 29)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화 정책의 중요한 측으로서 도시화가 지적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다.
- 30) 윤인진(1999), 앞의 책, 115쪽.
- 31) 이종훈(2001), 앞의 책.
- 32) 예콜들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2년 '카자흐스탄 민족총회'를 소집하였고 각 민족의 문화발전을 지원하는 민족문화센터를 활용하여 민족문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40여 개 이상의 민족문화센터가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원창(2000), 34쪽.
- 33) 이용현, "카자흐스탄 국적법에 있어서의 고려인의 의미: 구소련 국적법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평화연구』 제8호, 1999, 120쪽.
- 34) 고려인들은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친 방랑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러시아 영토로 이주가 첫 번째 방랑이라면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두 번째 방랑이고 소련해체이후 다시 러시아 영토로 재이주하는 것이 세 번째 방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랑의 시기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재이주를 시도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정확한 숫자의 파악이 힘들지만 20-2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정남, "동아시아의 민족환경과 재외한인", 『평화연구』 제8호, 1999, 23쪽.
- 35) 러시아연방공화국은 1991년 「탄압받은 인민들의 권리회복법」, 「1993년 러시아 한인의 권리회복법」등을 제정하여 구소련시절 고려인들에 대한 강제이주와 탄압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회복을 보장하고 자치지역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36) 장원창(1999), 앞의 책, 43-45쪽.
- 37) 장원창(1999), 앞의 책, 33-34쪽.
- 38) 이종훈(2001)과 성동기(1999), 앞의 책, 99-105쪽 참조.
- 39) 임재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논총』 제39집 2호, 1999, 325-326쪽.
- 40) 윤인진(1999), 앞의 책, 125-128쪽.

신간안내

격동의 소련, 러시아 정치의 변함없는 실체인 '러시아민족주의'의 철저한 규명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조정남 저 /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값 8,500원

주요 목차 러시아민족주의의 의미 / 러시아민족주의의 성장 /
러시아민족주의의 내용과 유형 / 소비에트 체제와 러시아민족주의 /
고르바초프 정치 개혁과 러시아민족주의 /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민족주의 / 러시아연방의 민족갈등

독일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논 단

강정숙
독일 뮌헨시 교육연구소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은 16년간 장기 집권했던 보수당인 기민당(CDU) 정부를 물리치고, 1999년 새 연합정부를 세웠다. 새 정부의 연정계약의 한 중요한 부분이 이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다. 현 정부는 독일이 50년 가까운 이민사회라는 엄연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민자들을 독일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정착, 동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정책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이민자 동화정책이 주로 독일 경제의 필요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문제나 치안과 관련한 사항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현재는 이민자들이 독일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일인들과 동등하게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동화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현 독일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새 연합 정부는 이민자를 '부족한 존재'로, 독일 사회, 문화에 흡수적응을 요구했던 종래 정책을 비판하고 이민자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여 '이민자를 보살피는 게(Fuersorge) 아니고 파트너로 삼자'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독일사회 내부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고 있으며,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더구나 점점 커가는 극우파 세력은 이민자 동화정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독일 거주 외국인 현황

독일은 이미 19세기에 산업화에 따라 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와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주로 농업부문에 계절마다 이탈리아, 폴란드로부터 노동력을 불러들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나치시대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강제 징용하여 전쟁산업에 투입하였으며, 나치 시대 때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부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1955년부터 인접국가(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등)로부터 노동력을 소위 '손님노동자'(Gastarbeiter)라는 이름으로 불러들였다.

이 손님노동자들은 단기간 내 목돈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점차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로운 노동력을 불러들인다는 처음의 'Rotation 원칙'은 실용성이 없어 곧 포기하게 되었다. 스위스 작가 Max Frisch의 말처럼 노동력을 불렀으나 인간이 온 것이다. 독일에는 약 7백34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9%가 외국인인 셈이다. <표 1> 독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10 - 15%가 외국인이다. (예: 1998년에 전체 신생아의 12.7%에 해당하는 십만 명이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전 외국인의 약 15%는 정치망명이나 내란, 전쟁 등에 의한 피난민이며(1999년: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에서 온 피난민을 제외하고 1,195,500명), 이들 중 약 20%는 독일 국가로부터 피난민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피난민은 독일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큰 도시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표 1〉 외국인 수(1960 - 1999)

(단위: 1,000명)

연도	전체 외국인 수	전 국민에 대한 비중(%)
1960	686.2	1.2
1970	2,976.5	4.9
1980	4,453.3	7.2
1990	5,342.5	8.4
1999	7,343.6	9.0

출처: 독일연방통계국

〈표 2〉 국적에 따른 외국인 수(1999.12.31)

국적	총수	%	
총수	7,343,591	100	
유럽국가(총수)	1,858,672	25.3	
유럽 공동체 국가	이탈리아	675,900	8.4
	오스트리아	186,090	2.5
	그리스	365,354	5.0
	영국	110,223	1.6
	프랑스	107,191	1.5
	스페인	129,893	1.8
	포르투갈	132,623	1.8
터키	2,053,564	28.0	
유고슬라비아	737,204	10.0	
폴란드	291,673	4.0	
루마니아	87,504	1.2	

1) 예전의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포함
출처: 독일연방통계국

트 경우에는 시민의 30% 이상이, 핀렌, 슈투트가르트, 쾰른은 20% 이상이 외국인이다. 총 외국인의 22.5%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18세 이하의 외국인 중 2/3가 독일에서 태어난 셈이다.〈표 3〉

이민자의 사회적 상황

독일은 복지사회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Sozialhilfe),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 또한 사회의 복지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독일 GNP의 약 10%는 외국인에 의해 창출되고, 독일 산업의 일정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음식업, 건설업, 병원, 양로원 등) 그러나 50년 가까운 이민생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들이 독일사회에 동화되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서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갖고 있으며 고질적인 저소득, 고실업률(1998년: 19.8%, 독일 평균보다 약 2.5배가 높다), 자녀의 저능아 특수학교 고 취학률 등 많은 문제들을 겪고있다. 위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악순환은 계속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있다. 특히, 이민가족의 청소

〈표 3〉 연령에 따른 외국인 수(1999.12.31)

연령	총 수		그 중 독일에서 출생	
	외국인 수	% ¹⁾	외국인 수	% ²⁾
6세이하	552,944	7.5	490,918	88.8
6-18세 이하	1,084,672	14.8	626,261	57.7
18-60세 이하	5,133,477	69.9	518,768	10.1
60-65세 이하	258,477	3.5	2,981	1.2
65세 이상	314,151	4.3	16,180	5.2
전체	7,343,591	100.0	1,655,108	22.5

1)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율

2) 전체 연령층에 대한 비율

출처: 독일연방통계국

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가정교육이 불충분하여 독일어 구사가 완전치 않고,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많다. 교회나 사회 복지 기관에는 이민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한 사회서비스(Sozialdienst)가 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연방, 주, 시)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 법률상담
- 강간, 고문을 받은 자들의 의료, 심리적 치료
- 국제 결혼, 가족 상담
-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 극우파 반대 홍보사업
- 독일, 이민 청소년들의 만남 주선(공동으로 스포츠, 음악, 서커스 연습 등)
- 이민자가족 보조정책(독일어 교육, 과외활동, 특수직업훈련 등)
-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예를 들면, 상호 문화간의 배움, 반인종차별주의 훈련 등
- 독일인과 외국인들간의 갈등 및 폭력을 방지하고, 평화적이며, 우애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교육한다(중재(meditation) 등)

이민자의 정치 참여 상황

유럽공동체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전체 외국인의 약 25%) 1995년부터 지역의회(시, 구)와 유럽의회선거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은 선거권이 전혀 없다. 그들은 동등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국가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독일사회 정치와의 동질성은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독일 정치문제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자기들의 고향인 고국의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주·객관적 이유로 이민자의 정치의 참여가 약하므로, 그들의 열악한 상황의 개선은 더 힘들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응답자의 78.7%가 사민당(SPD)을, 9.4%가 녹색당을, 그리고 8.2%가 보수당인 기민당(CDU)을 선호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들의 권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에서

그들의 역할은 크다. 중앙노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 부서도 설치 되어 있다. 그러나 노조 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거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1999년 WDR-TV의 조사에 의하면, 노조회원의 11%가 선거 때 극우당을 뽑겠다고 대답했다. 다른 한편, 양심있는 노조간부들은 계속 인종차별주의 퇴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으므로 시마다 외국인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이는 위원회(Ausländerbeirat)가 있으며, 독일 전체에 약 450개가 된다. 이들은 주·연방 단위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고 단지 조언할 권한만 있으나 이민자들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정치적 발언을 하고, 홍보작업에 적극적이다. 주에 따라선 2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예를 들면, 헤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외국인들의 이 위원회 선거 참여율은 10-20%로 미미하고, 유럽공동체국가 외국인들은 참정권이 생겨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인종차별주의 및 극우주의 동화정책의 걸림돌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서 거부, 배척을 당하면서 동화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사회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와 극우주의이다. 그 동안 독일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던 것이 통일 후 이민자에 대한 과격한 폭력행위의 형태로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극우파의 폭력행위는 1982년에 80건에서, 1990년에 309건, 2000년에 998 건으로 지난 20년간 1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동독에는 극우파들이 잘 조직되어 있어 어느 도시에선 이민자들이 저녁에는 거리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독의 극우파가 서독의 민주주의의 구조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직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아주 적은 동독에서는(큰 도시에는 약 1~3%가 외국인임) 청년들의 71%가 독일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인종차별주의나 그에 따른 폭력행위는 외국인 수가 많고 적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히틀러 시대(1933-1945) 600만의 유대인과 500만의 집시족을 학살하고, 3백만 명의 소련군을 죽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한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이 잘못된 과거 청산 문제는, 독일 사회에 아직도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정치상황으로 인해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민자들과 연대하여 일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구 나치 추종자들과 신 극우파들이 조직적인 연계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2000년 말 극우 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을 금지시키자는 내무부장관의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금년 1월에 연방헌법재판소에 금지신청을 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2001년에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극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6천 5백만 마르크를 투자하기도 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독일을 단일 민족으로 간주하고 독일의 유일한 혈통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망상이다. 독일 사회는 언제나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다. 독일 역사를 보면, 항상 민족 이동이 있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왔다. 가령, 로마 제국 패망 후 많은 로마 군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독일에 잔류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슬라브족, 켈트족, 츠에브족, 게르만족들이 독일 영내로 이동해 왔다. 즉, 지금의 독일 민족은 혼합민족이다. 또한, 독일 문화 역시 끊임없이 외래 문화(이태리, 유대인, 후게노트, 그리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허상이 많은 독일인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주의가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혈통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독일인들의 사고는 독일의 법률과 이민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300년 전에 러시아로

이민 간, 물론 독일어나 독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지한, 독일계 교포들이(Aussiedler)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경우 즉시 독일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특권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독일 문화에 익숙하며, 독일이 고향인 이민자 가족은 거주한지 40년이 지나도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

국적취득권 개혁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동화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독일 국적을 받으면, 독일 시민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사민, 녹색당 정부는 이에 대한 큰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합의안으로 타결되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중 한쪽이 적어도 8년 이상을 독일에 합법거주를 하였고 무기한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독일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 자녀들은 동시에 부모의 국적도 갖고 있다. 보수 야당은 '이중 국적 절대 반대' 캠페인을 열어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게 되었다. 외국인 자녀들은 만 24세 전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즉,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 국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외국 국적의 포기 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단, 만 22세 전 까지 그에 상응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독일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국인은 8년 동안 합법거주를 했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독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

- 헌법 준수
- 지금까지 소유한 국적을 포기한 증거
- 충분한 독일어 구사
-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실업자 연금이나 사회보조연금을 받지 않는다.
- 무범죄 경력

이로써, 혈통을 기본으로 했던(ius sanguis) 독일 국적법이 출생지역을 기본으로 하는(ius soli)법으로 바뀌었다. 몇 세대를 거쳐 외국인 취급을 받던 이민자들의 운명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고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 연합정부가 계획했던 다국적 소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가령,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 개혁 후에 독일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수는 점차 늘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고연령층의 원국적 포기에 대한 심리적 갈등 등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다.

반차별대우법(Antidiskriminierungsgesetz) 제정

독일 국적을 취득해도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택시 운전기사로 일할 때, 식당이나 유흥장을 이용할 때, 주택을 구할 때, 은행이나 보험 거래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유명한 축구선수도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적 야유를 받기도 한다.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이런 무시 및 차별대우는 현존하는 공법으로 다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새 연합정부는 연정계약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차별대우법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 그룹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신체장애, 출신민족,

피부색, 성취향(동성연애) 등으로 인해 무시를 받을 수 없다.' 반차별대우법은 이미 양당의 원내에서 토론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법안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다.

이민법 제정

독일은 컴퓨터 산업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부족하여 2000년부터 외국에서 전문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 내 이민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 불가피하다. 그 이유로는:

- 독일의 출생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른 노동력 결핍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으로도 충당하기 힘들 정도라 한다.
-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10개의 동 유럽국가와 사이프러스를 유럽공동체에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 국가들은 독일과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독일로의 이주 가능성이 높다.
- 급속한 세계화에 따라 자본, 통화, 물자 시장이 국제적으로 열리게 되고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정보 및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점점 커지는 국가간의 빈부 차이, 전쟁, 환경파괴에 따른 피난민의 증가로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3천만 명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다칠 이민 상황에 대해 특히 녹색당은 과거 50년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여 대처하기 위해 이민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 무엇을 기준으로 이민허가를 줄 것인가, 그에 따른 이들 이민자들을 위한 독일사회에 동화정책, 즉 독일어 교육, 주택, 유치원, 학교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사업이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노조는 꺼려하고 있다.

외국인법과 피난민법 개정

외국인법과 피난민법에서 수많은 개혁, 수정할 부문 중 정부연정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도(대부분 독일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허가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자들을 따라오는 가족이나 피난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는 정책상 이 실업자들에게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수정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피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미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가족도 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경우가 많다(베트남 난민들). 이들은 3~6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위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동화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외국인 수입관(Auslaenderbeauftragte), 다문화국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활동이다. 이 부처는 다른 행정부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

맺는 말

독일 정치사회에서 이민자 동화정책 만큼 감정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안은 드물 것이다. 특히, 보수 정당

(CDU/CSU)의 이념투쟁과 선거공세의 무기로 사용되어 이민자들을 독일 사회에 유해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열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사이에서도 이민자 동화정책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과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그리고 가족으로 서로가 동등하게 공존한다는 사실은 정치이념을 넘어서서 많은 인간들의 가슴 밑바닥 깊숙이 들어 있는 인종차별주의 정서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자들은 국적취득을 통해 여러 불평등을 극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독일 국적취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이민자들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사회, 정치상황에 대항하여 이민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하여 여러 정치가와 노조, 교회, 복지사업단체, 학계, 예술가, 기자, 수많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헌신적으로 참여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당인 기민당(CDU)내의 한 두 명 정치가들도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치문화는 이민자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독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인 것이다.

참여운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호가 “관용(Tolerance)”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에 대해 괴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관용(Tolerance)은 참아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모욕이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그들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독일 이민자들의 동화정책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은 「FES-Information-Series」(2001-03)로 발표된 논문으로, 동자를 발간하고 있는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의 허락을 얻어 여기에 전재한다.

민족분쟁의 대륙, 아프리카

킨샤사의 새로운 천년

2001년 1월 16일,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대통령궁에서 경호원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분간도 되지 않던 그 시각 얼마 후, 카빌라 대통령은 쿠데타에 가담한 경호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쿠데타인지 암살인지 모호한 채 총격전 직후 킨샤사에는 개탄 카쿠디 내무장관 명의로 계엄령이 내려지고 대통령궁 주변과 주요 도로는 북한제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콩고의 국경초소와 공항도 폐쇄됐다.

남미의 전설적 혁명가 체 게바라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도 그 술한 생존의 위기를 넘겨왔던 카빌라였다. 1997년 반군사령관으로 '아프리카의 도살자' 모부투 정권을 전복하고 대통령으로 킨샤사에 입성한 지 만 3년.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를 미국마저도 질서를 회복할 새로운 지도자라 승인해줄 만큼 중앙아프리카의 혼란은 심각한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나간 3년은 이 혼란의 뿌리가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를 확인해준 시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카빌라에게는 지난 30년간의 게릴라시절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그가 3년전 킨샤사에 입성하였을때, 그의 운명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다.

콩고 내전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 종족분쟁 뿐 아니라 정부군을 지원하는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르완다, 우간다간의 국제전 양상을 보이며 카빌라 집권 후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만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은 '피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킨샤사의 고요한 적막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 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날이 서있는 것처럼 매섭다.

피의 대륙, 아프리카

지난 3년, 전쟁은 비단 콩고와 중앙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사하라 이남 이른바 흑아프리카 권은 곧 학살의 땅 '피의 대륙'이었다.

앙골라 내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 분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분쟁이 진행중이었던 지역은 기니, 알제리, 시에라리온, 수단, 소말리아와

다큐멘터리

'전쟁과 학살의 대륙'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인에게 그들의 대륙은 피의 대륙, 죽음의 대륙이다. 식민유산과 그로 인한 종족분쟁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검은 대륙

강권찬 / 본원 연구원

민족분쟁의 대륙, 아프리카

킨샤사의 새로운 천년

2001년 1월 16일,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대통령궁에서 경호원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분간도 되지 않던 그 시각 얼마 후, 카빌라 대통령은 쿠데타에 가담한 경호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쿠데타인지 암살인지 모호한 채 총격전 직후 킨샤사에는 개탄 카쿠디 내무장관 명의로 계엄령이 내려지고 대통령궁 주변과 주요 도로는 북한제 탱크와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콩고의 국경초소와 공항도 폐쇄됐다.

남미의 전설적 혁명가 체 게바라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도 그 술한 생존의 위기를 넘겨왔던 카빌라였다. 1997년 반군사령관으로 '아프리카의 도살자' 모부투 정권을 전복하고 대통령으로 킨샤사에 입성한 지 만 3년.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를 미국마저도 질서를 회복할 새로운 지도자라 승인해줄 만큼 중앙아프리카의 혼란은 심각한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나간 3년은 이 혼란의 뿌리가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를 확인해준 시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카빌라에게는 지난 30년간의 게릴라시절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그가 3년전 킨샤사에 입성하였을때, 그의 운명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다.

콩고 내전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 종족분쟁뿐 아니라 정부군을 지원하는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르완다, 우간다간의 국제전 양상을 보이며 카빌라 집권 후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만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은 '피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킨샤사의 고요한 적막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 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날이 서있는 것처럼 매섭다.

피의 대륙, 아프리카

지난 3년, 전쟁은 비단 콩고와 중앙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사하라 이남 이른바 흑아프리카 권은 곧 학살의 땅 '피의 대륙'이었다.

앙골라 내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 분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분쟁이 진행중이었던 지역은 기니, 알제리, 시에라리온, 수단, 소말리아와

다큐멘터리

'전쟁과 학살의 대륙'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인에게 그들의 대륙은 피의 대륙, 죽음의 대륙이다. 식민유산과 그로 인한 종족분쟁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검은 대륙

강권찬 / 본원 연구원

나이지리아·카메룬 경계지역,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코모로 등이고, 분쟁이 항상적으로 잠복해있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스와질란드, 마다가스카르와 케냐 등 전쟁이 휩쓸지 않은 아프리카의 땅을 밟기란 최근에 이르러서도 그리 쉽지 않다.

반복되는 내전

영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세운 나라인 시에라리온에서는 1991년 이래 내전으로 2만명 이상이 숨지고, 인구 450만명 가운데 절반이 고향에서 쫓겨나거나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군이 "투표를 못하게 하겠다"며 무고한 주민들의 팔을 자른 잔학상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반군은 무기를 버리고 정부에 합류하는 대가로 4개 부처의 장관과 차관 자리를 각각 차지하게 되며, 내전중에 저지른 살인, 납치, 성폭행 등 잔학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10월 반역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RUF 지도자 산코는 광물자원

전나간 3년은 혼란의 뿌리가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를 확인해 준 시간이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어쩌면 가말라에게는 전나 30년간의 거릴라 시절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을 달아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그가 3년전 킨샤샤에 입성하였을 때, 그의 운명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암살은 아프리카에서 과연 평화라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과 재건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 실질적인 부통령 노릇을 하게 된다.

아마드 테잔 카바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반군인 혁명연합전선(RUF) 지도자 포데이 산코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파소, 라이베리아, 토고 등 주변국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8년에 걸친 내전을 끝낸 것도 잠시 서로간의 증오심은 평화협정의 사인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반군지도자 산코가 체포되고 새로운 반군지도자가 다시 등장하고 또 한번 정전안은 합의되지만 그것이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제사회의 '평화강제'가 진정한 역할을 할 뿐이다.

또다시 국제전의 포화

2000년 7월,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동원된 격렬한 국경분쟁이 벌어졌으며, 전쟁은 인접한 소말리아로 번져가고 있었다. 에리트레아가 2월 에티오피아에 내준 티그레주 바다메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면공격에 나서며 또다시 전쟁은 촉발되었다.

에리트레아는 소말리아의 군벌 후세인 아이디드로부터 무기와 훈련지원을 받는 한편, 케냐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의 반군인 '오로모해방전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3천명의 군대를 소말리아 국경 너머에 들여보내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또 아이디드에 대항하는 소말리아반군 라헨웨인저항군(RRA)을 지원해 이달 초 중남부 도시 바이도아를 탈환한 데 이어 계속 남쪽의 코리올레로 밀고 들어가 곳곳에서 난민 탈주사

민족의 活火山 ②

맨다

'아프리카', 그 통곡의 현장을 기보았다.

태가 벌어졌다.

20만이 동원되었던 1999년의 전쟁이후 최대규모의 전면전이었다. 아군인 적국의 반군을 포함해도 압도적 무력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그것이 전쟁개시의 충분조건이 되었다. 균형을 깨뜨리는 건 선제공격, 그것도 전면전이어야만 한다. 그만큼의 출혈은 감수해야 했지만 말이다.

아프리카의 내전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 평화와 정전의 반복, 그리고 지속되는 전쟁. 잔인한 학살과 뿌리깊은 증오의 확대재생산. 국제사회의 압력은 이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위기는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분쟁들의 비극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건 주변국들이 상대방의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무력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다시 반복되는 소모전속에 평화협상과 정전협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종교로의 도피마저도 그리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하긴 아프리카에 기독교와 토착종교가 어우러진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심분 이해되고도 남는다. 작년 우간다 남서부 카눈구 마을에서 발생한 신의 십계회복이라는 종말론 신도 500여명의 집단자살 사건은 아프리카에 전파돼 토착화된 기독교 종말론의 실태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쟁과 종교의 상관관계를 보려면 아프리카를 보면 된다. 르완다에서는 1994년의 집단학살 이후 기독교 교회수가 8개에서 300개로 급증했다. 특히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에서는 토착 아프리카 종교와 기독교가 융합되면서 서방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부정하는 종파가 생겨났다. 심지어

80년대의 과격한 성령운동의 한 분파인 신의 저항군'은 우간다 북부에서 현 정부를 몰아내고 국민들을 믿음의 길로 이끈다는 명분 아래 무력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종교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의 사신'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아프리카인에게 마지막 출구마져 봉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왜 죽어가고 있는가

제국주의 식민유산

세계 민족, 종교분쟁의 3분의 1 이상이 벌어지는 아프리카. 현재도 아프리카 53개국의 절반 이상이 분쟁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분쟁들이 워낙 뿌리가 깊어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 유혈분쟁이 특히 많은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가 결정적이었다. 아프리카 '국가건설' 과정은 곧 열강의 식민지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열강이 식민화 과정은 기존 그 지역의 지배적 세력을 대체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곧 역사적인 지배세력이 그곳에 '국가'를 건설하여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은 수많은 종족과 부족이 중앙집중적 국가형태를 갖지 못한 채 혼재해 있던 지역이었다. 당연히 식민화 과정은 종족 및 부족의 분포나 정치공동체에 따른 구획보다는 열강의 편의라든가 정세적 전략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민족주의는 애초에 부족간 종족간 대립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란 없는 것이었다. 국가건설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역시 형성되지 못했다. 그들에게 '상상된 공동체'라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 제국주의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식민통치 방식은 분할통치이다. 식민지 각 세력을 개별화 파편화하여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식민기구와 식민모국에 대한 저항을 분산, 왜곡 시켜야 했다. 다행히도 아프리카는 분할통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즉, 구역 및 종족, 부족간 분리, 차별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들은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건설방식과 통치정책은 곧 아프리카 제국의 독립과정으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사실 아프리카지역의 내전 가운데 대부분은 독립과정에서 획정된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국경 설정에 연유한다. 식민기구가 관할하던 지역이 그대로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배국들은 부족이나 종족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통치 영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제국을 독립시켰다. 그것을 고려하기에는 아프리카의 종족 구성이 너무나 복잡하였다. '무책임한 철수'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열강의 또 다른 식민정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부족과 종족이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상황에서 부족간 세력 다툼은 잦아졌고, 이는 분리독립운동을 낳거나 또는 정권쟁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세력 배후에는 유럽열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는 남아공, 라이베리아, 이티오피아, 이집트 4개국

아프리카의 내전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 평화와 정전의 반복, 그리고 전속되는 전쟁. 잔인한 학살과 뿌리깊은 증오의 확대재생산. 국제사회의 압력은 이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원기는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분쟁들의 비극적 실경을 파장 잘 드러내 준다.

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2차 대전후 급작스럽게 독립하게 된다. 2차 대전후 독립한 49개국의 식민모국 분포를 살펴보면 프랑스령은 21개국, 영국령 17개국, 포르투갈령 5개국, 벨기에령 3개국, 스페인령 2개국, 이탈리아령 1개국이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국경선은 곧 프랑스, 영국 등 열강들간의 국경선에 불과했다. 2차 대전후 갑작스런 독립과정은 곧 열강의 갑작스런 철수를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던 것은 식

민정책의 변화였지 결코 아프리카 민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래서 독립은 준비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급작스런 통치세력의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은 각 종족들의 치열한 쟁투와 내전, 그리고 국경선을 재구성하기 위한 국제전으로 비화된다. 식민모국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던 지배세력은 타도되고 새로운 지배종족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반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적국의 종족, 반복되는 피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몇몇의 대표적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차드'에는 존재하지 않는 '차드인'

인구 4백5십만의 '차드'는 프랑스가 그어놓은 국경선에 따라 언어와 관습이 다른 192개 소수 종족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다. 그래서 '차드'라는 국가를 형성한 것은 프랑스지 애초에 '차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지배적인 종족간에 정권을 둘러싼 쟁탈전은 곧 시작된다. 전체 인구 52%에 달하는 회교도인 아랍계 푸라니족은 북부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독립이후 지배세력

이었던 기독교도와 흑인 사라족, 고라족 등은 남부에서 푸라니족과 대립하고 있었다. 다수종족인 푸라니족은 곧 다른 소수민족연합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1966년 첫 반란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대종족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경우 내전확률은 100%에 이른다. 양상은 정권을 장악할때 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아마 대종족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소수종족은 곧이어 분리독립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차드인' 사이에 '차드'에서 공존한다는 개념을 지운 지는 오래다.

노예의 땅,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특수한 경우다. 라이베리아를 건국한 것은 미국 흑인 노예의 후손들이었다. 모진 노예의 삶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배운것은 '노예 경영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토착 흑인을 노예로 삼아버렸던 것이다. 그만큼 내전의 과정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쿠데타, 내전이 반복되었다. 지난 80년 육군 상사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90년 반군에게 살해된 사우엘도 대통령도 재임기간 불발 쿠데타가 30건이나 있었다. 그의 사망이후 상황은 더 혼미하게 진행되었다. 크란족, 만딩고족, 지오 마노족 등 22개 종족이 7개 파벌로 나뉘어 89년 이후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15만명이 숨지고 인구 230만명중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서부 아프리카 해안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베리아 경우는 사드와는 달리 지배적인 종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흑인노예출신의 지배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슷한 세력을 가진 수많은 종족간의 무차별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인구는 절반이하로 줄었던 것이다.

'민족' 독재의 작동방식

사하라이남, 이른바 흑 아프리카는 1천여개가 넘는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상이한 문화와 상호 정치적 대립속에 살아왔다. 즉,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인종들이 하나의 지역적 영역안에서 집결되어 공동의 시민권을 갖고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이 심각히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종족이나 정치집단은 독재적인 통치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독재는 군부에 의해 담당된다.

한 국가안에서 지배적인 소수종족의 경우는 민주주의의 실시가 곧 권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또한 여타의 다수 종족을 물리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군부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만약에 경우 국가 내외의 압력에 의해 민정이양, 내지 민주화를 약속하더라도 대부분 쿠데타로 다시 독재체제가 들어선다. 소수종족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기득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 구조의 작동메커니즘은 이러하다. 소수의 지배종족은 강력한 군부정권의 형태를 띤다. 이때 여타의 종족들은 연합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함으로써 종족간 대립양상은 독재-민주 대립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화가 왜곡되고 반동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로섬 게임에 있어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지배종족의 양보는 쉽지 않다. 양보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전반의 정치적 불안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사하라사막 남쪽 아프리카 47개국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쿠데타는 매년 두 차례꼴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성공한 쿠데타만 77차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기간 25명 남짓한 대통령 혹은 총리가 정치적 분

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정변의 배후에 종족간 세력 다툼이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세력의 기반을 민족, 부족에 두기 때문에 각 정치세력간의 갈등 협의와 조종은 이미 시작단계에서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세력에게 있어 정치력이란 상대정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지지를 유지함으로써 엘리트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분쟁의 대부분은 인종학살과 보복적 학살이라는 고강도 무력충돌을 반복하였다. 상대정파의 권력장악은 곧 피학살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군부엘리트의 권력담당을 해당 부족은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생존의 위협을 뜻하기 때문이다.

학살과 피학살의 악순환 속에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가정은 하나의 기적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다.

투치족과 후투족간의 충돌로 대량 학살의 악몽을 겪은 르완다와 부룬디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케냐에서도 대통령을 배출한 부족인 카렌진족과 다른 부족들간의 갈등에서 이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내건뿐 아니라 국제분쟁의 가장 빈번한 이유도 종족문제와 연관된 정치정서에 기인하고 있다. 즉 같은 종족을 탄압한다든지 혹은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가 주된 분쟁요인이 되어 있다. 한 국가 안에서 피지배 종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곧 이웃국가 같은 종족(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지배종족)에 의해 지지 받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국가에서 민주화세력에게 위협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 안에서 전례적인 소수종족은 강력한 군부독재를 실시하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만 민주화란 '공포'가 아니라 자기종족의 피학살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쉽게 배반당하고 어김없이 쿠데타는 성공한다.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연관된 거대한 체계가 형성된다. 즉 내정간섭의 일상적 구조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애국심에 대한 호소는 상황을 왜곡시킬 뿐이다. 국제분쟁은 국가간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민족간 전쟁, 부족간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가나와 토고, 수단과 우간다 등의 분쟁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웅변하는 국가는 카빌라의 콩고이다.

아프리카 분쟁의 축소판, 콩고민주공화국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는 아프리카 분쟁의 모든 가능성과 두려움을 다 보여주고 있다. 독립 직후 부족과 종족간 정권쟁탈전과 분리 독립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1965년 상황은 일단락 되어 모부투 정권이 수립되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모부투는 1997년 붕괴되기까지 4회에 걸쳐 헌법을 제정, 개정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을 통치해왔다. 32년간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준 모부투 정권은 냉전기에는 서방진영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모부투 정권에 대한 서방진영의 지원은 축소되었고, 따라서 모부투 체제는 약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 종식 이후 제1차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이 발발하였다. 1994년 인접국인 르완다에서 후투(Hutu)족과 투치(Tutsi)족간에 내전이 발생하였으며, 정권탈환에 실패한 르완다 후투족(구 르완다 정부군과 민병)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탈출하였다. 모부투는 유입된 난민을 강제로 송환

하는 한편, 약화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르완다 후투족을 이용하여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투치족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한 투치족 계열의 바나물랑게족은 1996년 10월 범 반정부 조직인 콩고·자이르 해방민주세력 연합(ADFL)을 결성하고, 반 모부투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르완다 정부는 모부투 정권이 르완다에서 축출된 구 르완다 정부군과 민병대를 지원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르완다는 ADFL을 지원하였으며, 르완다와 동맹관계에 있던 우간다, 앙골라, 부룬디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독재자 모부투가 축출되고 독재에 항거하던 세력이 집권함으로써 콩고민주공화국에는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카빌라는 자신의 노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 운동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르완다 투치족을 탄압하는 동시에 르완다와 우간다군 대해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주둔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카빌라의 조치에 배신감과 위협을 느낀 르완다계 투치군은 르완다, 우간다 등과 연대하여 한때 전우였던 카빌라군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으며, 이로써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제2차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카빌라군과 반군간의 전투가 전개되는 가운데 1998년 9월 15일 수단은 카빌라를 지원하기 위해 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고,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들이 카빌라 지원에 나섬으로써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은 국제전으로 치닫기 시작하였다. 즉, 제2차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은 카빌라 진영에는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잠비아 등이, 그리고 반 카빌라 진영에는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가 가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이처럼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동 내전과 관련된 주변 각국의 이해가 복잡

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르완다 반군(반정부군), 우간다 반군, 수단 반군, 앙골라 반군, 부룬디 반군, 그리고 콩고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국으로서 이들 반군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에 개입한 국가들은 각각 저항하는 반군을 소탕할 목적으로 친 카빌라 진영 혹은 반 카빌라 진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반 카빌라 진영의 경우,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중인 반 르완다 후투족(구 르완다 정부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후투족과 적대관계에 있는 반 카빌라 투치족을 이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우간다 또한, 카빌라 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 우간다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카빌라 정권에 대항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반 카빌라 진영을 선택하게 되었다. 제1차 내전시의 동지가 제2차 내전에서는 적이 된 셈이다.

한편, 앙골라는 반정부 세력인 앙골라독립민족연합(UNITA)이 반 카빌라 세력인 투치족과 연합전선을 구사하고 있는 UNITA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친 카빌라 진영을 선택하였다. 부룬디는 1962년 독립 이래 투치족에 의해 통치되어왔는데 후투족은 이에 반발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을 거점으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부룬디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르완다 후투족을 압박하기 위해서 친 카빌라 노선을 선택하였다.

민주화는 전쟁의 시작?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도 하고 장시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카빌라 대통령의 암살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을 뒤엎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듭되는 내전, 그리고 국제전으로의 확대, 이것은 아프리카 분쟁의 기본요소이다. 그리고 독재와 민주, 그 이면을 장악하는 것은 종족간 대결이었다.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반대파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마저도 위태롭다.

민주화는 오히려 불안하다. 완전한 독재는 오히려 강요되었을 지라도 차라리 평화스럽기조차 하다. 심각한 갈등을 통해 장기 독재가 막을 내리면 민주화의 여파가 정착되기 이전에 더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다. 민주주의적 갈등의 조절기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독재정권의 몰락은 지배종족의 힘의 약화일 뿐 민주화로의 도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와 함께 독재정권의 몰락은 소수종족의 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디오피아의 경우 1991년 멩기스투 정권이 무너지면서 분리 독립국가의 탄생(에리트리아)을 낳았다.

소말리아는 민족간 알력이 타종족 말살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 분쟁지다. 1991년 소말리족을 비롯한 6개 씨족인 연합전선을 구축해 21년간 장기 집권해 오던 독재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축출했지만 이후 이들이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벌이면서 내전이 격화됐다. 독재의 붕괴는 내전의 시작이라는 '비상식적인 역사적 퇴보'가 일어난 것이다. 소말리아는 1992년 한해동안만 무려 35만명이 사망하면서 서방세계에 그 참혹함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강대국의 외면

아프리카는 '카오스'의 세계이다. 양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인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흡스의 자연상태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제 '리바이던'은 외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게도 또다시

아프리카는 '카오스'의 세계이다. 양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인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흡스의 자연상태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제 '리바이던'은 외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게도 또다시 열강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강대국의 논리가 최악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열강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강대국의 논리가 최악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변화는 그리 아프리카 민중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강대국의 논리는 곧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 탈냉전은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변화시킴으로써 더이상 아프리카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분쟁을 악화시키는 외적 변수는 바로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

된 이후 미국 등 서방이 개입과 분쟁해결을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지역에 개입할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은 온전히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패권의 효율적 유지라든지 지하자원의 독점적 추출 등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콩고의 경우를 보라. 미국은 콩고정권을 지지해 왔다. 물론 그것이 중앙 아프리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프랑스간 패권싸움이 존재한다. 프랑스는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에 이어 콩고에 까지 미국의 후원을 입는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중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 상실해야만 했다. 그리고 콩고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그대로 미국에게 넘겨져야만 했다.

게다가 오히려 열강의 개입 아닌 개입은 해악적이기조차 하다. 강대국의 국가이익은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 무기수출로 인한 단기적 경제이익을 추

구하는 검은 거래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열강들의 무기시장이다. 많은 양심세력은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은 불법 무기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르완다의 종족대학살을 보면 강대국들의 무기판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대규모적인 학살'이 가능해 졌다. 한편에서는 난민구호, '인도주의적 개입'이 운위되면서 밤에는 무기를 대주고 있는 험오스런 광경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구공산권의 무기가 아프리카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것도 분쟁의 격화에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1994년 르완다의 투치적 대량학살 이후 르완다에 유엔의 무기금수조치가 시행되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최대 무기 공급원 역할을 자임했다. 물론 94년 이후에도 프랑스는 무기공급 이외에 무기분배를 위해 직접군을 파견해 오랜 동맹관계인 후투족을 지원해 왔다. 혁명의 나라, 자유아 평등, 그리고 인권의 전파자로서 프랑스의 자부심은 유독 아프리카에서만은 예외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냉전기에 중앙정보국의 비밀공작을 통해 자이르에 쏟아 부었던 수백만 달러 어치 미제무기들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4년 투치족이 장악한 르완다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군대를 훈련시키고 소화기들을 공급해왔다고 한다.

물론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은 이제 없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리전을 치를만한 관계에 있는 것도 분명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패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 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내전 내지 국제전하에 있는 서로 다른 종족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군대를 훈련함으로써 미, 소의 대리전 양상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과연 평화는 가능한가

아프리카에서 평화가 필요한 이유가 소박한 것은 그것의 목적이 단지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를 다시 보라. 이제 아프리카는 '피의 대륙'에서 '죽음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요구인 생존의 보장은 아프리카의 이름없는 민중들,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절실하다.

지금,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요구는 가장 적극적인 인류애의 표현이다.

평화는 생존에의 요구

아프리카인들은 이 지역에서 분쟁과 내란이 중단과 재발을 거듭함으로써 전쟁터를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극도의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난민들은 지역과 국경에 관계없이 안정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그 지역이 불안한 경우에는 또 다른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이른바 떠돌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지대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난민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엔고등난민위원회(UNHCR)가 집계한 지역별 난민시설 수용자 통계를 보면, 1998년 현재 아프리카 난민은 전세계 난민의 28.4%를 점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46.6%에 이른 적도 있다고 한다. 즉, 1989년도 아프리카 난민 수는 461만 명에서 1994년에는 67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후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1998년에도 그 규모는 327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 아프리카 지역 난민들은 비교적 안정화된 기니아, 수단, 탄자니아,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약 148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안정된 지역은 난민문제가 골칫거리이다. 그로 인해 안정된 지역이 곧 불안정 지역으로 바뀌기도 한다.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난민들도 비참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은 상황에서 난민들의 몸은 아위어가고 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과 앙골라, 그리고 짐바브웨에는 에이즈(AIDS)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짐바브웨의 성인가운데 25%가 양성환자라고 한다.

죽음의 대륙 아프리카,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의 대륙, 아직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상황은 절망에 가깝다. 하지만 최소한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당위이자 인류에의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희망은 국가, 지역, 세계라는 세 가지 차원의 다층적인 접근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워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자면 탈냉전이 가져다준 하나의 선물은 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아프리카의 신생민주주의가 걸어갈 길은 험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의 합리적 조절은 민주주의라는 기제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기구,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출신의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UN에 의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훨씬 멀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멸의 위기감이 확산되어 있다는 역설적 사실, 학살과 증오의 반복적 재생산은 이러한 공멸의 위기감으로 인해 임계점에 있다는 인식에서 그 출발을 찾을 뿐이다.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은 보다 보수적이고 심지어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민주화가 진행되어 간다. 하지만 이 경우 종족간의 무력대결 양상이 보다 통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성숙한 정전단계에서 평화단계로의 전진이냐란 말이다.

민주화는 평화의 지름길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은 보다 보수적이고 심지어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민주화가 진행되어 간다. 하지만 이 경우 종족간의 무력대결 양상이 보다 통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성숙한 정전단계에서 평화단계로의 전진이냐란 말

이다. 지배종족에 의한 반동 쿠데타라던가 피지배종족에 의한 무력투쟁은 양 종족의 엘리트간 협의를 통한 점진적인 민주화, 그리고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지배종족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보다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민주화가 보다 진전됨에 따라 피지배종족에 대한 배려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정치양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를 보자. 나이지리아는 200개의 다른 언어가 있고 (아프리카어는 모두 2천개가 된다. 그만큼 분쟁의 양태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종족수는 250여개이다.

1967년 기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비아프라 공화국'의 주인공 '이보족'의 독립 투쟁으로 1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3년 내전을 치뤄야만 했었다.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북부 회교도 하우자족(27%)은 군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해왔다. 한때 끈질긴 민정요구 시위에 굴복한 하우자족 중심의 군부정권이 민선을 약속,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남북 유로카족 출신의 아비올라가 당선되자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 무효를 선언했고 그

뒤를 하우스족 출신의 아바차 대통령을 잇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라세군 오바산조 군 최고사령관에 의해 15년만의 민정 이양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그는 신입 대통령이 되었다. 밀로부터의 열망을 보수적 형태로 수렴한 경우이고 나이지리아는 잠정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이룰수 있었다. 아직 갈등을 제도화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였지만 제로섬 게임적인 자연상태는 벗어나 상대방에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화다. 평화로 가기 위한 지름길은 곧 민주화다.

아프리카인의 희망, OAU

아프리카최대의 수뇌회담인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는 지역분쟁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5차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53개국 회원국 중 44명의 국가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는 기록적 참가율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내전으로 얼룩진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OAU의 사명감이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지는 않다. 회원국을 중심으로 집단안보의 개념이 아직 발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제재할 수 있는 물질적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도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존재적 의의를 부정하지 못한다.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평화협정의 중재와 이를 뒷받침 하는 보증으로도 이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국제사회의 노력-UN의 인도주의적 개입

아프리카 분쟁은 냉전 종식과 함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냉전기를 통해 민족자결권을 주장하는 내전 성격의 분쟁들은 국제기구나 강대국의 개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다. 냉전후도 아래서 특히 분쟁 당사국이 지리·전략적 가치를 지니거나 강대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노선을 추구할 경우, 강대국들은 중앙정부의 편에 서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애써 외면하기도 하였다.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개별국가의 주권 옹호와 내정 불간섭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의 역할도 상당 부분 제약받지 않을 수 없었다.

탈냉전기에 들어 강대국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유엔과 지역기구 등 국제기구의 분쟁 조정 및 관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적 측면에서 이제는 내전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래 세계 각 지역의 분쟁 상황이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지면서 국제여론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서방세계는 아프리카 분쟁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자국민들로부터의 압력에 부닥치면서 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UN등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국제기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물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비관적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UN의 개입으로 인해 보다 높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국익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분쟁의 빈도와 정도에 비해 UN의 개입은 신중하고 소극적이기 조차 하다. 사실 UN이 분

쟁당사자간에 협상을 제시하더라도 당사자들이 UN이 제시한 협상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특별한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기 앞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부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이다. 게다가 분쟁 당사자의 인접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마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심성은 시에라리온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UN은 시에라리온 반군이 정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전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 감시단과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UN은 반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평화유지군이 반군에 의해 사살되고 포로로 잡히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UN 평화유지군은 시에라리온 정부군과 합세하여 반군과 싸워야하는 불가피한 입장에 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콩고와 같이 인접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가에서 반복된다면 UN은 전쟁참가국수를 늘리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나오며

아프리카

데이빗 디오프

아프리카, 나의 아프리카!

대대로 물려받은 대초원에서 당당하던 무사들의 아프

탈냉전기에 들어 강대국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유엔과 지역기구 등 국제기구의 분쟁 조정 및 관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적 측면에서 인제는 내전 실패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카

나의 할머니가 머나먼 강둑에 앉아 노래한 아프리카,

나는 그대를 결코 알지 못하지만 내 얼굴은 그대의 피로 가득하다 들판을 적시는 그대의 아름다운 검은 피,

성급한 아들이, 이 젊고 튼튼한 나무

창백하게 시든 꽃들 가운데 눈부신 외로움으로서 있는 바로 이 나무,

이것이 아프리카다 새싹을 내미는

끈기 있게 고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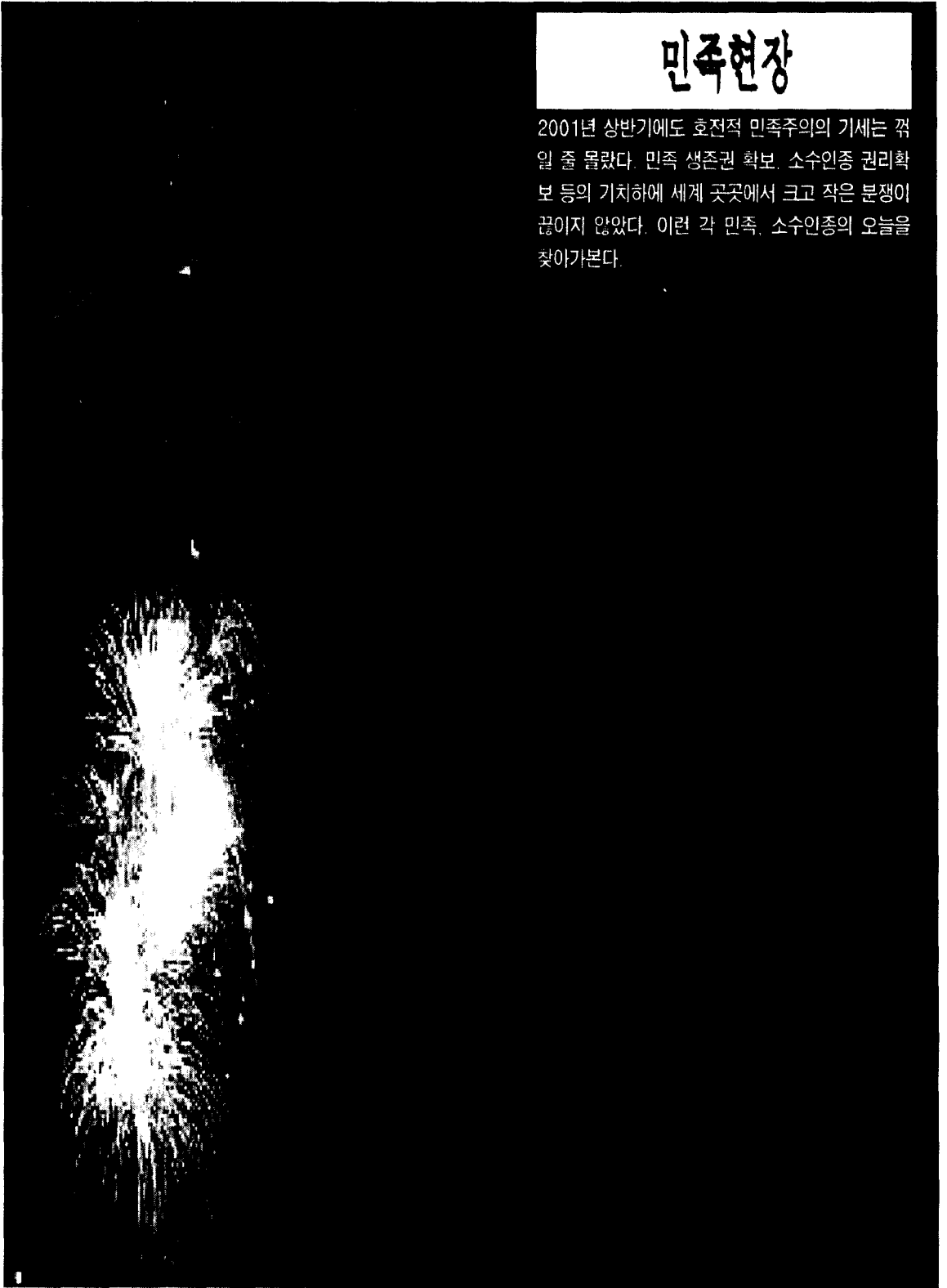
그리고 그 열매에 자유의 쓰라린 맛이/서서히 배어드는 이 나무가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종족 분쟁은 아프리카 전체 문제이다. 언어와 종교가 제각각인 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800년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임의로 그어버린 국경선에 따라 한 국가로 묶이면서 나라마다 갈등의 싹들이 불거져왔다. 그것이 탈냉전 이후 폭발하여 아프리카는 지금 카오스 상태다. 평화를 말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인의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요구 그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이 전쟁의 차목함을 웅변하고 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평화를 말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당위이다. 국가별로 민주주의가 조금씩 진척되고 지역 및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노력이 빛을 발할 때,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아프리카인에게 아프리카는 피의 대륙, 죽음의 대륙이다. 이제야 조금씩 희망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그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그 이상은 아니다.

민족현장

2001년 상반기에도 호전적 민족주의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민족 생존권 확보, 소수인종 권리 확보 등의 가치하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각 민족, 소수인종의 오늘을 찾아가본다.



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은 민족문제와 인종분규를 초국가적인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EU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의 유럽' (Europe of Regions)은 기존 민족국가내의 소수민족들이 자율과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족국가는 소수민족들에게 권력을 부분적으로 이양하면서도 분리운동은 철저히 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소수민족의 극단적인 분리운동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들이 EU와 민족국가에게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주민(immigrants) 문제이다. 이주민들은 각국마다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에 대한 반대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려는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지역에서 인종분규의 형태로 폭력적 대결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의 문제이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민족적, 종교적 차이가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코소보 사태 이후 유럽지역의 긴장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주민문제는 개별국가에서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동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칸문제는 EU가 미국과 공조 하에 중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이주민들은 카리브해에서 온 흑인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온 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운동은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당의 일부 세력과 극우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언술에 일부 사회적 소외계층이 주로 이주민들에 의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계층-호응하면서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갈등이 최근 표면화되었다.

올해 5월 26일과 27일 사이 맨체스터주 올덤시에서는 백인들의 아시아계 가정에 대한 공격 이후 아시아계와 백인들간의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 출신의 이주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백인과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1985년 런던, 버밍엄, 리버풀에서 발생한 인종분규 이후 최대규모의 사건이었다. 과거 흑인과 백인간의 인종분규가 문제였다면 이번의 경우 아시아계와 백인간의 충돌이어서 영국 인종분규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이다. 6월 7일 총선을 앞에 두고 보수당 일부 세력과 National Front 등의 극우세력은 공공연히 이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면서 백인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호응하는 일부 백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이주민들간의 잠재적인 적대 의식이 유혈충돌로 표면화된 것이다.

영국정부는 199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확대해왔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백인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잠재해있을 것이다.

한편 자치정부와 자치의회가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현재 노동당의 권력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은 자치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독립요구를 철회했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경우 6월 벨파스트에서 구교도와 신교도의 폭동이 3년만에 최대규모로 발생했으며 IRA가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치정부 수석장관이 사퇴하는 등 내부의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마케도니아

인구 200만의 마케도니아는 민족분규로 인해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마케도니아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민족분규가 인접 발칸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고연방에서 분리되면서 마케도니아는 남슬라브인들과 알바니아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올해 2월 알바니아계의 무장투쟁에 의해 분규가 증폭되었다. 알바니아계는 인근 코소보 무장세력의 지원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지속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해왔다.

최근 7월에는 NATO의 중재에 따라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계가 협상을 진행시켰으며 일단 휴전에는 합의했으나 공용어문제로 인해 회담의 진행이 어려움을 겪었다. 알바니아계는 전체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므로 알바니아어를 국가공용어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마케도니아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8월 8일 평화협정에 잠정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은 소수민족인 알바니아계 주민의 지위향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마케도니아 정부는 일단 휴전을 선언한 상태이다.

그러나 강경파인 반군조직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코소보지역 알바니아계 무장세력의 지원은 계속적인 분쟁의 불씨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슬라브와 알바니아라는 민족간의 차이와 함께 정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문제까지 더해져 민족분규는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내부에서는 최근 분리독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세르비아와 함께 신유고연방을 이루고 있는 몬테네그로가 독립할 경우 연방의 해체로 직결되기 때문에 세르비아정부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올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분리독립파는 42.1%를 차지했고, 연방유지파는 40.7%를 획득했다. 따라서 독립을 추진중인 집권여당은 내년 3월 독립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몬테네그로가 독립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만은 않다. 야당은 세르비아공화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연방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발칸지역에 또다시 분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발칸 지역을 제외하고 유럽 내에서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지역 중의 하나가 바스크 지역이다. 그러나 바스크 지역도 몇 년 사이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분리독립보다는 자치의 유지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5월에 시행된 선거에서도 온건파인 바스크 국민당과 제휴정당인 EA가 승리함으로써 자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반면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정치조직인 EH의 경우 기존석의 절반인 7석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는 자치의회와 자치정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동안 경제적 자치를 통해 얻은 부가 무장투쟁에 의해 손실되고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급진적인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무장단체인 ETA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는 것처럼 바스크 지역 민족문제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분쟁 해결사의 등장? 그러나....

대륙 전체가 심각한 민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 전쟁과 기아, 수백만의 난민, 그리고 질병, 가난으로 점점 죽음의 대륙이 되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 (AU)은 이제 한계상황에 다가왔다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공동인식의 산물이다. 지난 2001년 7월 9~11일 아프리카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모인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은 느슨한 협의기구였던 '아프리카단결기구(OAU)'를 해체하고 보다 높은 강제력은 갖는 새로운 성격 '아프리카연합' (AU)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AU의 주요기구로 각국 정상들로 구성되는 '정상회의', OAU 외무장관회의를 대체할 '집행위원회', OAU 사무국을 대신할 '운영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다. 또 OAU를 AU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지휘할 새 사무총장으로 아마라 에시 전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을 선출했다.

AU는 그 명칭에서도 연상되듯이 EC(유럽공동체)에서 전환한 EU(유럽연합)을 모델로 하고 있다. EU와 같은 단일 의회와 은행, 법원, 통화 등의 창설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의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63년 아프리카 32개국으로 출범, 53개국으로 늘어난 OAU는 각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한계로 인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학살, 기아와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분쟁 당사자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현실의 심각성'에 비해 활동력은 미약했다. 더군다나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유럽, 동남아, 미주 지역등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블럭에 자극받은 측면이 존재한다.

적극적인 분쟁해결노력과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현안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다 강화된 '연합' 형태로 해결하려는 아프리카인의 주체적 노력이 바로 '아프리카 연합'으로 결과했다.

금번 회담에서 41개국 정상들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빈곤 탈피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새 아프리카 계획'을 마련했다. '새 아프리카 계획'은 오는 2015까지 아프리카에서 분쟁, 빈곤, 질병을 몰아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 아프리카 발전 계획안인 '오메가 계획', '밀레니엄 아프리카 부흥 계획' 등을 한데 묶어 통합시킨 것이다.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AU의 창설을 의회, 사법재판소, 중앙은행 등 기구 설립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내년 정상회담에 공식으로 EU와 비슷한 AU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에서 '아프리카 연합' (AU)으로의 변화는 단지 이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더 많은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AU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무엇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이 과연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쟁의 대부분이 심각한 종족분쟁 양상을 띠었고 더군다나 학살과 피학살이라는 고강도의 물리력을 주고 받은 상대국과의 '협의', '조정' 그리고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유럽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빈곤과 질병이 시달리는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끼리의 교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이나 미주지역의 공동체와는 그 성

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아프리카의 현실이 AU에 대한 냉소와 회의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있다.

체첸 사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싶었던 체첸 사태는 반군세력의 끊임없는 저항 앞에 아직도 유혈사태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4월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체첸을 방문하여 전후 수습과정과 복구를 지시할 때까지만 해도 세력의 구심점을 잃은 체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러시아는 4월 20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규탄 성명에도 불구하고, 체첸 반군의 잔존세력이 벌이는 테러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통해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체첸 반군세력의 저항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이스탄불의 스위스 호텔에서 한국인 3명을 억류하기도 했던 체첸 반군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폭탄 테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7월 31일에는 러시아 남부 스텝브로셀 지방에서 노선버스를 납치하고, 1994년 비행기 납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체첸인 5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테러를 벌이다가 출동한 특공대에 의해 납치범 전원이 사살되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선 7월24일에는 체첸 반군 지도자급 인사인 마호메트 짜가라예프가 15명의 테러리스트를 이끌고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서 경찰 간부의 집을 습격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인 8월11일에는 그로즈니에서 러시아군 장갑수송차에 원격 조정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러시아 연방군은 체첸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인바 있다.

러시아측에서는 이미 체첸과의 전쟁을 종결된 것으로 보고, 전후복구와 러시아 체첸로의 완전한 흡수를 위한 조치들을 가동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첸 반군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 이미 처참하게 부서진 체첸이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것은 요원할 듯 보인다.

카스피해 연안

카스피해의 엄청난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연안 5개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과연 카스피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이 지역을 두고 미국, 유럽 등의 거대 정유업체와 러시아 및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연안5개국은 원유의 보고인 카스피해의 해저 유전 개발로 예상되는 막대한 이득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무력사용까지 불사할 태세다.

7월26일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측이 서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카스피해 남쪽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당국과의 계약아래 석유탐사 작업을 하던 영국 최대 정유회사 BP사의 지오피직 3호를 이란측이 전투기와 해상 초계선을 동원,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측이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지오피직 3호가 급히 분쟁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발포 등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유정(油井)을 차지하려는 연안국간에 무력 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이란측은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대에 지상군까지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값비싼 찻잔 속의 폭풍'에 비유하며 향후 과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카스피해가 첨예한 분쟁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은 해저에 막대한 원유가 매장돼 있지만 매장 확인장소에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옛 소련 출신 카스피해 연안 3국은 연간 3,500만~4,0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5년내 연간 1억 톤까지 생산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란은 현재까지 특별한 유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간 영토 분쟁의 초점은 카스피해가 바다이나, 호수이냐로 모아진다. 즉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 영토 분할의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국의 이해도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바다인 카스피해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카스피해는 연안국이 균등한 권리를 갖는 호수이기 때문에 20%씩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호수론을 펴던 러시아는 최근 영해에서 석유를 발견, 바다론쪽으로 기울고있다.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물리적 충돌에 따른 전쟁도 발발할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 연안국들 중 상대국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와 이란뿐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지난 1월 카스피해 전단을 동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변국들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우크라이나 함대와의 합동 행사를 통해 자국의 해군력이 매우 우수하며, 유사시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연합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자원개발은 낙후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소련의 종속적 경제구조 건설정책에 따라 특별한 자국산업을 보유하지 못한데다,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 국가들은 자원개발마저 외국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서방 거대기업들과 러시아의 신경전에 더하여, 자원의 보유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경쟁은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현재 개발중인 유전들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게 될 경우, 거대 산유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는 구소련권 4대 산유국인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벨로루시가 모여 OPEC형식의 기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러시아 - 벨로루시 국가연합

1999년 12월9일, 양국의 연합정부 수립 협정에 서명했던 양국의 통합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벨로루시는 이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해무기를 자국내에 배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분야에서 러시아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양국의 우호적인 밀월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저녁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의 남부에 위치한 대통령 숙소인 '보차로프 루지'에서 벨로루시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는 벨로루시의 내부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벨로루시에서 치뤄질 선거에 대하여, 선

거는 인민들이 치루는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뿌전은 벨로루시의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뿌전은 루카셴코와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연합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국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양측의 합의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카셴코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연합정부 구성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벨로루시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9월5일에 치뤄질 예정인데, 현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뿌전은 벨로루시와의 경제협력 수준과 발전 속도에 만족한다면서, 이러한 관계가 에너지 분야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스를 벨로루시를 통해 공급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경우, 벨로루시의 1년치 가스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뿌전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연합정부의 각료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따로 기자들을 만나, 벨로루시의 전체 무역량의 55%가 러시아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벨로루시는 독일에 이어 러시아의 제2의 무역상대국이라고 말했다.

소련 해체 이후 한동안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던 CIS 국가들은 현재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조화성 / 본원 연구원

2001년의 민족현장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베이징 올림픽 유치결정, 중국의 티베트 편입 50주년, 중국 서부대개발의 본격적 진행 등은 하나같이 중국의 민족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변수들이다. 이 글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유치가 중국의 민족문제에 지니는 의미, 그리고 티베트 자치와 경제개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중국 민족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베이징 올림픽과 하나의 중국

2001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결정은 그 자체가 중국의 중요한 국가목표였으며, 민족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이 결정되는 그 순간 대만의 IOC 위원 우징궈와 중국의 IOC 위원 허전량은 감격에 겨워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유치 결정이후 진행된 대만의 여론 조사에서는 중국의 일국양체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에 공동 개최를 제안한 바 있고, 올림픽의 성화는 대만을 경유하기로 되어 있어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의 깃발아래 '조국에의 기여'를 구호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화인들과 국내적으로는 소수민족의 내적 결속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더욱 더 세계적인 자유와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파룬궁과 티베트 문제 등 인권과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 점증하는 외국의 관심과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방미를 둘러싼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국내의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가 되는 것이다.

티베트 자치와 경제개발

달라이 라마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아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그의 한국방문이 시도된 바 있고, 미국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거센 외교전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1951년 5월 23일, 티베트와 중국의 대표가 '티베트 평화해방의 방법에 관한 합의'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티베트에 진주를 보장한 이래, 50년이 지난 현재도 티베트의 자치와 분리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는 51년의 협정이 강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완전한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티베트는 중국과는 다른 생활공간, 언어, 문자, 종교 등을 가진 독립된 국가 체제와 지위를 향유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티베트 점령은 조약체결에 의한 것이며, 티베트를 제국주의 세력과 봉건노예제도에서 평화적으로 해방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의 경제성장, 평균 수명 연장 등의 성과는 중국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티베트 문제의 중요성은 이것이 미·중간의 외교적 갈등의 한 요인이자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달라이 라마의 방미허용과 국무부 산하의 티베트 조정관을 임명하는 조치 등은 정반대로 중국의 분리주의 부추김이라는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무엇보다 티베트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1994년 본격화된 티베트 개발은 농민과 유목민에 대한 세금 면제, 각 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있어왔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서부대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티베트고원의 수자원을 서북부 황토고원으로 끌어들이 6개의 강줄기를 가로막고 19개의 댐을 만들려는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티베트의 풍부한 광산자원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도로건설, 철도부설)의 구축 역시 서부대개발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서부대개발을 통해 티베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이 과정에서 한족의 이주를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는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보여준다.

대만의 정계 변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이 국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신당창당을 선언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당창당과 집권 민진당과의 연합정부의 구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정계구도는 중국에 큰 우려를 제공하고 있다. 리 전총통은 재임시절 양국론을 제창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크게 대립한 바 있으며, 집권 민진당 역시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덩후이의 신당과 민진당의 연합정부가 들어서면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민족문제는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정치에 지니는 의미는 커지며, 나아가 미국의 대중정책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그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이 대만과 티베트의 지도자에 대해 방문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중간의 외교적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발표된 중국의 제5차 인구센서스 중 인구 증가세에서 한족의 11.22%에 비해 소수민족은 16.7% 늘어 소수민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족으로의 통합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정치와 현안에서 민족갈등과 정책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역할과 그 영향은 더 커지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금년 상반기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이수라장이었다. 전임 와히드 대통령이 금융스캔들에 연루되어 국회의 탄핵으로 사임하였고, 신임 메가와티 대통령이 뒤를 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격시위와 진압의 공방전이 있었고, 정국이 혼란한 틈을타 인도네시아 내 반군들의 활동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이수라장이었다. 현재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내각을 꾸미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로에 서 있으나, 그녀가 해야할 일은 적지 않다.

와히드 대통령은 99년 10월 추앙받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개혁의 기수로서 취임직후 그는 독재자 수하르토의 부패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동티모르 사태를 수습해 인기를 높였다. 4천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최대 이슬람단체 나드라틀 올라마(NU)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일련의 민주화 정책과 소탈한 대외 이미지는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았었다. 하지만, 대통령궁 전속 안마사가 조달청 공금 350억루피아(한화 약 44억원)를 횡령한 '블록 게이트'와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 받은 기부금 200만달러를 챙긴 이른바 '브루나이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부터 와히드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얽힌데 겹친격으로 뇌일혈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건강상의 약점과 아체, 이리안자야 등 분규지역의 사태해결 실패, 경제난 가중 등 국정운영의 미숙과 실정이 이어지고 잦은 해외순방으로 국정을 도외시한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민심은 급격히 이반하기 시작했고 그의 정치적 기반 역시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정국 혼란의 최저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와히드가 물러나고 메가와티가 등장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주로 와히드 대통령 집권시 축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각했으며, 전대통령 잔여 임기인 2004년까지 행정부를 이끌 새 내각은 총 32명으로 구성했다. 정치·사회·안보 조정장관에는 와히드 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다 해임됐던 육군 중장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나가 임명됐으며, 국방장관에는 군부 출신 발탁 설을 뒤엎고 마토리 압둘 잘릴 전 국민각성당(PKB) 원내총무가 동용됐다. 마토리는 와히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협의회(MPR) 특별총회를 거부기로 한 당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에 참석했다가 원내총무직을 박탈당한 뒤 메가와티 당선을 적극 지원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새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분리독립 투쟁 및 종교·종족 분쟁으로 촉발된 영토분열 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모든 일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연설이 있기 몇 일 전에는, 인도네시아 분리주의 단체 '자유아체운동(GAM)' 소속 반군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농민 테러가 발생했다. 자유아체 운동은 수마트라 서북단 아체주(州)의 분리 독립을 위해 지난 1970년대이래 투쟁해온 반정부 무장조직이다. 또 8월 6일에는 수하르토 아들이며 현재 도피중인 토미 수하르포가 대법원 판사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토미 수하르토는 자신에게 부패혐의로 작년에 18개월의 금고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사를 암살했다. 토미는 작년 11월 3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으며, 지난 7월 26일 카르타사스미타 판사는 차를 타고 출근 중 피살됐다.

8월 1일에는 아직 정체를 밝히지 못한 폭탄 테러가 있었다. 한 쇼펄물에서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부상한 것이다. 같은 날 이전의 며칠 간 폭우에 니아스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4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실종됐다. 7월 31일에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1천300km 떨어진 니아스섬 삼블루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103채가 파괴되고 최소한 64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으며 821명은 실종된 상태이고, 같은날 니아스섬 근처에서 진도 5.3-5.4의 지진이 3차례 기록됐다.

또한 대통령 취임전의 일이지만, 지난 2월 27일 종족분쟁으로 약 4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또다시 시신 118구가 추가발견 되었다. 희생자들은 2월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살해됐으며, 살해된 이유는 종족 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란기의 메가와티, 그녀가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국론을 중재, 통일하고, 인종분규를 해결해야 하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 경제재건 등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가장 어려운 시기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인도네시아 정국이 금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국혼란의 종지부를 찍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필리핀

필리핀에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전임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의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가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동남아에는 두 명의 여성지도자가 탄생한 셈이다. 아로요는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취임한 대통령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만큼 민중의 목소리를 저버릴수도 없는 입장이었던 그녀는 민중을 주도하기 보다 이끌려가는 대통령이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취임 후 7월 2일 정부기관인 필리핀 사회안전공사(SSS) 직원들의 항의시위에, 공사 기관장을 전격 해고하였고, 이후 공사직원들은 이번 주초부터 '기관장 비탈리아노 씨가 부패한데다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4000여 직원 중 상당수는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와 시내 치안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한 민중의 불만이 또 다른 민중의 불만을 낳았다.

한편 아로요는 취임후 반군과 공식 휴전을 맺어 내전의 불씨를 진화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최대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8월 7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팔라롬푸르에서 공식 휴전협약에 서명하며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필리핀 남부지방 사람들을 지칭하며,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됨.) 이제 아부 사야프(Abu Sayyaf)만이 휴전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필리핀 이슬람 반군으로 남았다. 이번 휴전 협정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남부 필리핀에서 이슬람계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리비아 합의(2001년 6월)를 재천명 한 것이다. 휴전 이행, 이슬람지역과의 관계정상화 방안, 보안, 사면 문제 등이 휴전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 해방전선은 지난 23년간 피비린내 나는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내전기간동안 12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에 민주화의 바람은 바람만큼이나 쉽사리 오지 않는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엔 변화라 할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미얀마에선 지난 1월 26일, 정치범 84명 석방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소속의 정치범 84명을 석방했다. 7월 8일에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루나이정부는,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국왕(술탄)의 동생이자 전 재무장관인 제프리 왕자를 기소하고, 그의 자산도 동결했다. 브루나이 총리실은 제프리 왕자에 대한 기소 절차 착수는 그가 경영했던 브루나이 최대

의 민간기업 아메데오 개발회사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이었다.

동티모르에선 지난 4월 2일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영웅 사나나 구스마오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시 의회적인 민족평의회 의장직을 사임한 데 이어 초대 대통령선거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베트남에선 향후 5년간 베트남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개혁성향의 농득만(Nong Duc Manh · 61) 국회의장이 내정되었다. 4월 20일 의신들에 따르면 19일부터 개막된 공산당 제9차 전당대회에서 올해 보수적 성향의 레카피에우(Le Kha Phieu · 70) 서기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를 농득만 의장이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선 4월 24 타밀 반군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종결했다. 스리랑카 타밀 분리주의 반군인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는 지난해 성탄절 전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했으나, 4월 24일 휴전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군이 지난 4개월간 휴전 중 반군 160여명을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방글라데시에선 7월 14일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과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당(BNP) 지지세력이 충돌, 3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사하부딘 아흐메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13일 의회를 해산, 총선 준비체제에 돌입했으며 과도정부는 오는 15일 출범했으며, 90일안에 총선준비를 모두 마무리짓게 된다.

미주

우평균 / 본원 연구원

미국에서의 이민자 유입의 증대와 그 의미

글로벌 시대가 전개되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세계의 미국화' 현상이다. 이른바 미국적 기준과 사고가 합리적인 세계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각에서는 반자유주의 시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글로벌화와 미국화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세계의 미국화와 더불어, 정작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계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동시에 진행중인 미국화와 세계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의 세계화는 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남미 출신이라는 데에서 미국의 기존 인종 구성상의 특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인구 2억 8140여 만명(2000년 4월1일 현재) 가운데 이민자 수는 약 3000만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이 가운데 850만명이 불법이민자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USA투데이 2001/7/23). 1990년에 1980만 명 수준이던 이민자 수는, 1990년대 미국이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누리는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여 미국 노동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불법이민 포함)은 2000년에 1930년대 이래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쿼터에 따라 매년 약 70만명의 정식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외에도 연간 30만 명이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 만료기간을 어긴 채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간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아시아계 이민은 대학교육이나 좋은 직업, 또는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데 더 나은 곳을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들은 미국 직업구조의 상층과 하층을 채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 벨리의 첨단 기술직종 종사자 중 3분의1이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인 반면, 이민자들의 대다수인 1770만명은 미국인들의 기피직종인 3D업종(청소, 정원사, 공장장 인부, 공장 직공 등)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사회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이민

자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민자들의 생활수준은 과거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이민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이민은 전체의 40%로 30년 전인 1970년의 26%를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중앙일보 2001/3/25). 따라서 미국내 산업노동시장의 하층 구조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미국경제가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농담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소득 직종에서 이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일단 약 300만명에 달하는 멕시코계 불법이민자들에게 취업을 위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가족 재결합 허용과 소득 인정, 법률상 주거 지위 부여, 근로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토마스 대슐(Thomas Daschle·사우스 타코타) 상원 원내총무와 리처드 게파르트(Richard Gephardt·미주리) 하원의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세금을 내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히스패닉계 정치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이민자 구성을 보면, 2001년 8월 미국 연방이민국(INS)은 이민자들 가운데 멕시코계가 약 78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대만계가 140만명, 필리핀 120만명, 쿠바 95만명, 도미니카 공화국 69만명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구성상의 변화는 미국의 인종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과거의 흑·백갈등 위주의 인종갈등보다는 유색인종 내지는 소수 종족 상호간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93년의 로스엔젤레스 폭동에서 나타났었던 한흑(韓黑) 갈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백인 주류사회가 어떤 소수 민족 집단과 정치적으로 연계하는가 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목의 재현

이스라엘 신임 샤론 총리가 들어선 이후 이-팔 분쟁이 그칠 날이 없다. 샤론은 이미 당선이 유력시 될 때부터, 전임 바락 총리와는 달리 강경파로써 자국 안전보장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와 폭력 앞에서는 절대 협상불가를 주장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확실한 선긋기 정책을 구사해왔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길고 긴 민족갈등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후 자살폭탄 테러를 다시 시작했고, 이는 또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응분의 보복, 피의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금 불거지는 이-팔 갈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의 한 팔레스타인 의사가 동포들에게 폭력종식을 호소하는 글을 3월 3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나쁜 민족은 아니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탓에 걸려있다며, 양자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화해의 길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 비폭력 저항의 길로 투쟁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견해는, 중동전문 주간지인 미들리스트 타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미들리스트 타임스는 이-팔 분쟁의 원인을 다루는 기사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고수하며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물'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분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미 1979년에 1948년 독립당시의 이스라엘 영토내에서는 사용가능한 수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0년대 초에 벌써 전체 물 수요량의 절반 가량을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아랍 땅에서 공급받게 됐다. 이스라엘은 특히 요르단강 서안내 지하 저수층의 85%를 확보, 유대인 정착촌의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물은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의 물 사용량은 격감, 이미 물 부족이 위협수위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의 견해이다. 촘스키는 최근 저작 '숙명의 트라이앵글'에서 이-팔 분쟁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촘스키는 친 서구적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정당한 전쟁으로 옹호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한다고 주장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팔분쟁의 실체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살 폭탄 테러 이후의 이스라엘의 보복성 공격은 정당한 것으로 보도되지만, 실제 사건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무모한 점령지 확장정책과 아랍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기인한다는 것, 둘째, 아랍 전체가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통설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 셋째, 아랍세계는 인종주의자들이라는 통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그는 이-팔의 특수한 갈등 관계를 옹호하고 고착화시키는 또 다른 삼각관계인 '지식인-언론-정치가'의 본질을 파악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세 당사자는 숙명의 트라이앵글에 서로 맞물려 파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원인은 어찌되었건, 현실은 냉정하다.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지난 7월 31일 이슬람 과격단체 하마스 사무실을 폭격해 팔레스타인인 8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중무장 헬기로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시 소재 하마스 사무실에 미사일을 발사, 자말 만수르(42) 등 하마스 지도자 2명 등 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근처 길을 지나던 6세·9세 형제가 현장에서 사망,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지하드의 조직원 1명과 팔레스타인 경찰 1명이 사망했고,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에선 이스라엘에 협조한 혐의를 받던 주민 한 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또다시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 발표했으나, 뼈아픈 과거를 가진 채, 무서운 현재를 살아가며, 중요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두 민족간의 갈등은 원인제거 아닌 단순한 중재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중재는 일시적 평화만을 보장했을 뿐, 갈등은 짧은 평화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재발했다.

복미

1. 3

인종-당적 아우름 '용광로 부시 내각'

부시 당선자는 일본계인 노먼 상무장관을 클린턴 행정부에서 첫 아시안계 각료로 발탁, 레바논계인 스펜서 에 이브러햄(Spencer Abraham) 상원의원을 에너지 장관에 임명. 레이건 행정부에서 인권위원회에 몸 담았던 차베스 노동장관 지명자는 히스패닉계 여성.

2. 27

미 외국 태생 입양아 국적 자동 부여

미국의 새로운 국적법이 2001년 2월 27 발효돼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 7만 5천여명이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였다. 미국의 아동시민권법에 의한 시민권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입양아가 18세 미만일 것. *입양아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출생이나 귀화에 의한 미국 시민권자일 것. *입양아가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의 법적 및 실질적인 보호 아래 미국에서 상주하고 있을 것. *입양아가 합법적인 상주 주민일 것

3. 18

미 불법 이민자 최고 1천 100만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 불법 이민인구가 최고 1천 100만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월 18일 센서스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3. 22

미국에 소년 '폭로 저널리스트' 주의보

16세 고교퇴학생, 온라인신문으로 인종차별등 고발. 교사와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한 소년의 온라인 신문인 '다힐러(www. dahiller. com)' 가 폭로 저널리즘의 대명사인 '드러지 리포트'의 소년판으로 불리며 미국 사회에 화제.

3. 30

미국 노동부 여성차관보급 한국계 전신애씨 지명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계 미국인인 전신애(58)씨를 차관보급인 노동부 여성실장에 지명했다. 전씨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부시 행정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최고위 행정부 관료가 될 것으로 전망.

4. 2

미국 경찰가-중국 전투기 충돌

미 해군 EP-3 항공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중국은 EP-3 정찰기 승무원 24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승무원 중 다친 사람은 없다고 보도. 문제의 미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의 카에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후 정찰임무 수행 중이었음.

4. 18

LA 교포사회 등 日역사해곡 시정 촉구

한국, 중국, 필리핀, 일본계 130여개 단체회원 약 200명등, 재미 교포 단체 회원들이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해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 영사관앞에서 가두행진을 하며 시위.

4. 25

미 대법원, 영어전용법 소송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24일 엘라베마주의 '영어전용' 정책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멕시코계 이민자에 대해 주(州)정책을 따르는 소수민족 또는 인종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시민권 소송을 제한하는 판결.

정리 :
유정석

4. 27

재미 교포 인구 105만명 추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인 1백 3만명에서 1백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대표적인 한인계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인 23만 4천 4백 35명으로 추정. 또한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11만 9천 846명.

5. 1

미국, 급행료만 내면 취업비자 OK

미국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유명인사와 운동선수, 연예인, 과학자 등 전문인력이 1천 달러(약 1백 30만원)을 내면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우선처리제도'가 5월 1일부터 시작.

5. 18

아프간에 4천300만불 원조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대량 기아 위협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에 4천300만달러 규모의 식량과 인도물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7일 밝혔다.

5. 21

미국 수십년 살던 한인, 죄짓고 국내추방 급증

새 이민법 발효후 250여명이상 새이민법에 적용못하고 각종 범죄등으로 추방당함. 고국서도 적용못해 떠돌이 신세.

6. 6

입학거부 혹은 65년만에 명예졸업장 받아

65년 전 흑인이라는 이유로 프린스턴 대학 입학을 거부당했던 브루스 라이트 (Bruce Wright · 84) 전 뉴욕주 대법원 판사가 4일(현지시각) 프린스턴 대학이 명예 졸업장을 수여.

7. 5

재미 한청년, 美 정부에 위안부소송 日 옹호 항의서한

재미한국청년연합(YKU)은 5일 일본군위안부 출신 생존자들의 법정소송과 관련해 미 정부가 일본을 옹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미 국무부에 보내기로 함. 공개 서한은 부시 행정부에 1. 위안부 소송 일본 옹호 즉각 철회 2. 2차 대전중 일본의 성적 노예행위 비난 3.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 및 배상 협상 개입 4. 일본의 모든 잔학 행위에 대한 소송 해결 촉구 등을 요구.

7. 5

미 콜로라도주서 총격사건 3명 사망, 4명부상

미국 콜로라도주의 라이플 마을에서 3일밤(현지시간) 40대 백인 1명이 권총을 난사, 라틴계 미국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마이크 스태그너로 신원이 밝혀진 범인은 이날밤 덴버 서쪽 약 320km에 위치한인구 5천600명의 마을 라이플에서 식료품점을 향해 총격을 가해 3명이 현장에서 사망.

7. 21

영주권 신청엔 비자거부 관행 미의원도 철폐운동 가세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한국인이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주한 미 대사관의 관행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교포사회를 넘어 미 의회로 확산되기 시작.

7. 29

재미교포 역이민 감소폭 좁어

주미 한국대사관은 7월 26일 2000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사람은 2천 6백 12명으로 역이민이 극심했던 91년 5천 5백 39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발표. 역이민 감소추세는 97년 환란 이후 한국의 경기가 크게 침체된데다 동포들이 학원과 과외수업 등 한국 교육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

7. 29

NYT 첫 흑인 편집국장 제럴드 보이드

미국 최고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에 첫 흑인 편집국장이 탄생. NYT는 정치 및 내신 담당 편집 부국장인 제럴드 보이드(51)가 9월에 취임할 차기 편집국장으로 내정됐다고 발표.

7. 30

미국·캐나다 국경개방 이르면 올 가을부터

미국과 캐나다가 올 하반기부터 양국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들이 7월 29일 보도.

8. 3

미 민주당, 불법 체류자 합법화 개정 추진

미국 민주당은 8월 2일 멕시코계와 비 멕시코계를 모두 포함,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백만명의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이민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제안.

남 미

3. 11

인디오 주민 권익 보호하라

지난 2주간 국토 순례 평화행진을 벌여온 멕시코 반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 11일(현지시각) 종착지인 수도 멕시코시티에 입성. 지난달 24일 본거지인 치아파스주를 출발, 인디오주민 권익보호 등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을 해 온 반군 대표들은 멕시코시티까지 12개주를 거치면서 행사 때마다 멕시코 국가를 부르는 등 인디오 주민 뿐 아니라 멕시코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을 강조.

3. 28

멕시코 반군지도자 첫 연설

멕시코 반군단체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지도자 마르코스(Marcos) 부사령관이 28일(현지시각) 멕시코 연방의회에서 연설한다. 반군지도자의 의회연설은 멕시코 사상 전례없는 일. 연설목적은 반군의 비폭력주의를 알리고 의회연설을 통해 원주민들의 실상을 의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3. 29

멕시코반군 의회 입성

멕시코 반군 민족해방군(EZLN)지도자들이 28일 멕시코시티의 연방의회에서 원주민 권리법안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

4. 22

페루 몬테시노스에 현상금 걸어

페루 정부는 도피 중인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전 국가정보부장 체포에 도움을 주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케턴 비달 내무장관이 20일 밝혔다.

5. 15

콜롬비아 내전... 52명 사망

콜롬비아 정부군과 좌익 반군 간의 교전으로 지난 주말 52명이 사망. 지금까지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수는 20여만명.

6. 4

페루 차기 퍼스트레이디, 7개언어구사 맹렬여성

페루에서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인디오계원주민 출신인 알레한드로 톨레도(55)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7개언어를 구사하며, 유대계 백인인 그의 부인 엘리안 카프(47)여사에게 여론의 관심을 집중.

6. 25

페루, 지진피해속 몬테시노스 검거 환호

강진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겪은페루 사회는 24일(현지시간) 지난 1년여간 페루 정국과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던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전국가정보부장이 검거. 당일 페루남부의 지진피해보다 몬테시노스 검거뉴스가 가 더 기쁘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표정.

7. 10

멕시코 집권당 지방선거도 승리

비센테 폭스 멕시코대통령의 국민행동당(PAN)이 8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멕시코북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지사선거에서 압승.

오세아니아

6. 2

호주 내 난민 수용소서 폭동 발생

호주 북서부 커틴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했으나 곧 진압. 호주 이민부는 망명신청이 거부된데 반발한 200여명의 난민이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면서 직원들이 최루가스 등을 사용해 난동을 진압했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

아프리카

1. 17

콩고 쿠데타 대통령 피살설...검은대륙 내전 확산우려

아프리카 최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이하 콩고)에 16일 쿠데타가 발생. 로랑 카빌라 대통령이 피살됐다. 97년 쿠데타를 일으켜 32년간 철권통치해온 아프리카의 도살자 모부투 세코 정권을 전복하고 집권 한 그 역시 쿠데타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콩고내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1. 23

콩고민주공 종족분쟁으로 200여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북부 국경지역인 부니아 에서 발생한 종족간 분쟁으로 22일까지 200여명이 숨졌다고 반 군과 유엔 구호단체가 보도. 사태는 헤마계와 렌두계간에 벌어진 충돌로, 무장한 렌두계가 19일 부니아 지역의 공항과 라디오방송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촉발됐으며 이는 오랜 인종 갈등에 따른 것으로 로랑 카 밀라 대통령의 사망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반군과 유엔 구호단체측 관계자가 밝힘.

2. 11

짐바브웨 경찰 '업기'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경찰이 야당지지자들을 사자 등 맹수가 우글대는 야생동물 서식지로 내몰아 야당 측 이 거세게 항의. 연행된 사람들은 이번 주말 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비키타에서 야당 지지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고나레주는 '코끼리의 땅'이라는 뜻으로 약 750마리의 코끼리와 사자, 물소 등이 살고 있는 지역.

2. 25

남아프리카 물난리로 피해 극심

모잠비크 등 남아프리카 일대가 2월 초부터 시작된 폭우에 최근 사이클론까지 겹친 물난리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어 24일 국제 사회가 긴급 구호 시작. 특히 지난 22일 사이클론 엘리네가 강타한 모잠비크에서는 최소 84명이 숨지고, 2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30만명 이상이 식량 원조 필요. 짐바브웨에도 폭우 때문에 25만명이 집을 떠나고, 강둑이 터지면서 5명이 사망.

2. 26

넬슨 만델라 前대통령, 지도급 흑인들에 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82) 전 대통령이 '거만한' 흑인 엘리트들의 소수민족 차별행위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남아공 유력지 선데이타임스가 25일 보도. 만델라는 25일 "아프리카인과 인도계의 마찰 등 남아공 내에 인종간 반목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만델라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정부에서 임명한 남아공 더번 극장의 흑인 이사장 에드문드 라데베(Edmund Radebe)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

4. 17

어린이 노예 합송 추정 선박 배낭으로 귀환

어린이 노예를 집단으로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선박이 17일 오전 1시경(현지시간) 베냉의 코토누로 귀항했으나 노예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한 관리자는 귀항한 에티레노호(號)에 올라타 확인한 결과 부모와 함께있는 어린이 수 명만 발견했다고 말하고 이 배가 과연 문제의 어린이 노예를 태운 배인지 혼동이 된다고.

4. 21

신 노예선 등장

나이지리아 소속 에티레노호는 지난 3월말 베냉의 코토누에서 출항해 가봉과 카메룬 등에 입항하려다 거부당한 뒤 이 달 17일 귀항했으며, 인신매매 목적의 어린이 노예 250명을 태운 사건에 연루돼 베냉 당국이 선주와 승무원 등에 대한 조사받는 중. 이중엔 부모가 14달러 정도의 '푼돈'을 받고 '노예상'에게 넘겨준 경우도.

5. 18

리비아 사막 조난... 93명 사망

리비아 입국을 시도하던중 조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인 93명이 리비아 남부 국경 부근의 사막지대에서 시신으로 발견. 니제르 국적의 트럭이 아프리카 여러국 출신 난민들을 태우고 지난 8일 리비아 영내로 들어온 후 고장났다면서 사막에 낙오됐던 93명이 목이 말라 사망했으나 수단출신 운전수를 포함한 다른 26명은 현장을 벗어나 리비아로 입국해 치료.

5. 27

알제리, 수주제 폭동 51명사망

알제리 북동부 카빌리에서 수주제 계속되고 있는 주민폭동으로 51명이 사망하고, 약 1300명이 부상했다고 내무부 관리가 26일 밝혔다. 이날도 카빌리 지역 티지 우주, 베자이아, 부이라에서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유혈 사태가 재발, 주민 3명이 사망. 지난달 18일 경찰이 10대 학생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경찰의 마찰로 유혈사태 지속.

6. 15

알제리 반정부 시위 2명 사망... 수백명 부상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14일 수 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현지 언론인 2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 알제리 근래 최대규모인 이번 시위는 고유 언어 공식 인정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와 충돌해 오던 소수민족 베르베르족이 주도했으나 야당 관계자를 비롯한 상당수 반정부 인파가 동조. 시위대는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의와 자유를 확대할 것을 요구.

"소수민족 탄압 중지하라"

알제리의 소수민족인 베르베르족 시위대가 14일 수도 알제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알제리 수십만명 유혈 반정부시위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14일 소수민족인 베르베르족 수십만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기차 2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베르베르족은 고유 언어의 공식 인정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중단

을 요구하며 시위. 야당 관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반정부 인사들도 시위에 동조.

6. 19

알제리 반군, 정부군 최소 20명 사살

알제리의 무장 이슬람 세력이 최근 정부군을 매복 공격해 최소한 20명이 사망. 수도 알제 서쪽 200km의 즐레프시 부근 지역에서 18일 새벽 이슬람 회교 무장세력이 정부군 차량 대열을 공격으로 발생.

7. 9

강력한 아프리카 만들자

9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는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마지막(37차) 정상회담이 40여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 일정으로 시작.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1963년 창설된 OAU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EU 형태의 강력한 정치·경제연합체 성격을 띤 아프리카연합으로 전환하는 문제. 현재 OAU의 53개국 중 46개국이 AU 창설조약을 비준.

중동·유럽

1. 1

팔레스타인 난민 373만명... 요르단 동 흩어져 살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총 37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미국-이스라엘, 전범재판소 조약 서명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등 3개국이 마감시한인 31일 저녁 세계 최초의 상설 전범재판소 설치를 위한 조약에 동참.

1. 10

세르비아계 플라브시치 전범재판 첫 출석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였던 빌라나 플라브시치(Biljana Plavsic · 70 · 여)가 9일 국제전범재판소의 소환에 응했다고 AP가 보도. 그는 보스니아 회교도와 크로아티아계를 상대로 인종청소를 '자연현상'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이슬람교도의 시체를 밟고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한 지휘관과 입맞추고 애국자라고 칭송하는 모습이 서방에 방영되기도.

1. 16

중동평화협상 중단

이스라엘은 15일 가자지구에서 한 유대인 정착민이 살해된 후 팔레스타인과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조치를 강화. 이는 지난14일 가자지구 남부에서 유대인 정착민 로니 찰라(32)가 납치, 살해됐기 때문이라고 전함.

1. 28

유럽 홀로코스트 추모 열기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의 유대인 구출 56주년을 맞은 27일, 런던에서 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2차 세계대전 중 대량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개최.

1. 31

영국 기업, 유대인 직원에 나치복장 벌칙 파문

영국의 한 금융회사가 유대계 직원이 지각한 데 대한 벌칙으로 2차대전 당시의 나치독일군복을 입을 것을 강요한 뒤 인종차별 소송 당함.

2. 4

이스라엘 우익정당들 거국연정 불참 경고

이스라엘 우익정당들과 골수 유대교 정당이 3일 아리엘 샤론 총리 당선자의 거국 연정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신정부 구성한다는 샤론 당선자의 계획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

다국적군 이라크 공격 일지

미국 주도 다국적군은 지난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몰아내기 위한 걸프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이라크에 공습과 미사일 공격. 다음은 걸프전 이후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격 일지.

- 1993. 1. 13 : 미·영·프 3국군 이라크 남부 군사기지 공습. 19명 사망
 - 1. 17 : 미 전함 바그다드 근처 공장에 토마호크 미사일 30여발 발사. 4명 사망, 40명 부상
 - 1. 18 : 다국적군 이라크 남. 북부 공군기지 공습. 21명 사망
 - 1. 23 : 미 전함 2척 이라크 정보사령부에 토마호크 미사일 23발 발사. 6명 사망
- 1996. 9. 3-4 : 미 공군 이라크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 방공 사령부 등에 크루즈 미사일 세례. 6명 사망 26명 부상
- 1998. 12. 16-19 : 미·영 공군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3일간 이라크 공습. 민간인 및 군인 550여명 사상
- 1999. 1. 25 : 미 공군 이라크 바소라 지역 5곳 공습. 100여명 사상
 - 2. 28 : 미 공군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 공습. 3명 사망(파이프라인 파괴)
 - 7. 18 : 미·영 공군 이라크 남부 공습. 30여명 사상.
 - 7. 29 : 미 공군 이라크 북부 공격. 8명 사망 26명 부상.
- 2001. 1. 20 : 미 공군 이라크 남부 공습. 6명 사망.
 - 2. 16 : 미·영 공군 바그다드 인근 방공기지 공습.

2. 6

홀로코스트 휴면계좌 명단 아인슈타인-프로이트 포함

스위스 은행은 5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2만1000개의 휴면계좌를 공개. 휴면계좌 명단에는 유대인 출신으로 20세기 물리학과 정신분석학의 태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과 지크문트 프로이트(1856~1939)도 포함.

2. 10

샤론 "오슬로협정은 죽었다"

이스라엘 총리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아리엘 샤론 리쿠드당 당수는 오슬로평화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9일 발표. 샤론은 오슬로평화협정이 팔레스타인의 폭력시위로 인해 스스로 파괴됐다며 이렇게 주장.

2. 12

아라파트, "팔, 아만적 전쟁 직면"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1일 팔레스타인이 아만적인 전쟁에 방치돼 있다며 아랍권의 지원을 호소.

2. 13

아-팔 살육전 지속... 팔인 2명 피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 당선자의 리쿠드당과 에후드 바라크 총리의 노동당이 12일 팔레스타인과 잠정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팔 양측의 유혈 충돌은 지속.

2. 17

코소보 폭탄테러 50명 사상...인종 유혈충돌 재연 긴장고조

'민중봉기'(피플파워)로 민주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발칸반도에서 또다시 테러사건이 발생해 긴장 고조. 17일 세르비아인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폭탄 공격을 받아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2. 18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소수민족 보호 위해 걸프전후 91년 설정

이라크의 남·북 '비행금지구역'은 서방의 대이라크 강경 제재의 상징. 미국·영국·프랑스는 걸프전 종전 후인 지난 91년 4월 '북부 비행금지구역'을 처음 설정.

2. 18

프랑스에서 쿠르드 난민선 좌초

이라크를 탈출한 쿠르드인 908명을 태운 화물선이 17일 새벽 남 프랑스 생·라파엘 부근 불루리 해변에 좌초. 현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선장 승무원과 상당수 쿠르드인들은 도주, 화물선 선창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300명을 포함한 쿠르드인 밀항자들이 발견.

2. 20

팔 하마스 지도자 총격으로 사망

이슬람 무장저항단체인 하마스의 주요 행동대원이 19일 이스라엘 군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총에 맞아 사망.

2. 21

프랑스, 쿠르드 밀입국자들에 정치망명 신청허용

프랑스 리비에라 해안에서 좌초된 캄보디아선적 화물선 이스트시호에 탑승했던 이라크 쿠르드족 900여명은 현재 수용되어있는 프랑스군 기지를 떠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토록 허용하는 관련 서류를 발급 준비 중이라고 보도.

바라크, 정계은퇴 선언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가 20일 거국내각의 국방장관직 수락을 거부하고 노동당 당수와 의원직마저 포기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노동당과 아리엘 샤론 총리 당선자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연정 구성이 원점으로.

2. 22

샤론 "수일내 연정 구성"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 당선자는 에후드바라크 총리의 연정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 일내에 노동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3. 7

샤론- "폭력 계속면 팔레스타인과 협상 안해"

이스라엘 총리 당선자인 아리엘 샤론(Ariel Sharon · 73) 리쿠드당 당수가 이끄는 거국내각이 7일 출범.

3. 18

마케도니아 내전 격화

마케도니아 제2의 도시인 테토보를 놓고 정부군과 알바니아계 반군과의 전투가 격화, 전면적으로 비화될 조짐.

3. 20

터키 사형제 폐지 통 개혁조치

터키 정부는 19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형제도 폐지, 표현의 자유 확대 등과 같은 폭넓은 경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 주요내용으로 IMF차관 도입안도 포함.

3. 21

마케도니아 정부군, 알바니아반군 거점 공격

유럽연합(EU)이 알바니아계 '테러범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마케도니아 정부군은 20일 마케도니아 제2도시 테토보 주변의 알바니아계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

3. 23

마케도니아, 반군에 폭격개시

마케도니아 정부군과 대치 중인 알바니아계 반군이 정부의 최후통첩시한 만료 직전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했음

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정부군은 22일 반군을 몰아내기위해 포격 개시.

3. 26

마케도니아군, 반군거점 탈환

마케도니아 정부군은 25일 북부 테토보시 일대의 알바니아계 반군 거점들에 대해 총공세를 단행,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마을들을 회복.

3. 28

아랍 정상회담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10여년 만에 아랍 22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 정상회담이 28일(현지시각) 종료. 회담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3. 30

마케도니아 내전 코소보 '불통'

마케도니아와의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코소보 남부 크리베니크에 29일 박격포탄들이 떨어져 AP텔레비전뉴스(APTN) 카메라맨 한 명을 포함, 3명이 숨지고 10~20명이 부상. 마케도니아 정부군이 국경 부근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알바니아계 반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코소보 쪽으로 불통이 된 것.

4. 1

밀로세비치 전 유고 대통령 체포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 · 59) 전 유고연방 대통령이 자택을 급습한 세르비아 경찰병력과 대치 끝에 1일 새벽(현지시각) 경찰에 투항, 체포돼 교도소로 이송.

4. 3

팔 의사, WP에 폭력종식 기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의 한 팔레스타인 의사가 동포들에게 폭력종식을 호소하는 글을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 그는 이스라엘인들도 팔레스타인인과 마찬가지로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

4. 7

이, 팔 경찰서 등 로켓공격...충돌 격화

이스라엘이 6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경찰서에 로켓공격.

4. 8

이스라엘 군경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간 충돌

8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경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18개월짜리 여자야기 등 팔레스타인인 6명이 부상.

네덜란드공항 화재...수천명 대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스키펀 국제공항에서 8일(현지시간)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공항 이용객 수천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 이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으며, 1명이 가벼운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고 공항 측은 밝힘.

4. 13

이 종교인 "아랍인 말살" 설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보책임자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가 '아랍인 전멸'을 간구한 사실이 양측의 충돌을 더욱 격화시킴.

4. 17

이, 팔 자치지구 대대적 공격

이스라엘 군은 16일 밤(현지시간) 무장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베이트 하눈 등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수개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

4. 21

뉘른베르크 유네스코 인권상 수상

도시로는 처음으로 독일 뉘른베르크시에 인권상을 수여. 유네스코 마쓰우라 고이치로(송포황일량) 사무총장은 이 도시가 나치 잔재 청산의 상징인 점을 강조.

4. 22

텔아비브 폭탄테러... 20여명 사상

텔아비브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도시인 크파르 사바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2일 오전 폭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

5. 6

마케도니아 민간인 최소 6명 사망

마케도니아 정부군이 5일 북부 지역의 알바니아계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6명의 현지 주민 사망.

프랑스 퇴역장성 잔혹행위 고백

프랑스 군대가 알제리 독립 전쟁(1954~1962년) 기간 중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의 투사들에게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한 퇴역 장성의 고백이 큰 파문.

가톨릭-이슬람 1400년만에 '약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80)가 6일 오후(현지시각)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에 입장, 기독교·이슬람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

독일군 소령 제2의 언들러 로 밝혀져

유대인들을 나치 학살에서 구해줬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언들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명의 유대인들을 구해준 당시 독일군 소령의 이야기가 밝혀졌다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

5. 8

네티달린 팔女兒 피살

7일(이하 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만 히조(Iman Hijo)라는 이름의 생후 4개월된 여아가 사망.

5. 8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주민, 이슬람계 집단 공격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주민이 7일 바냐 루카에서 열린 이슬람사원 복원 행사장에서 이슬람교도와 각국 외교관을 집단 공격해 수십 명이 부상.

5. 9

이 소년 팔인 돌에 맞아 사망... 긴장 고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10대 이스라엘 소년 2명이 9일오전 돌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돼 양측간 긴장이 고조.

5. 10

아-팔 충돌... 어린이 보복살인

이스라엘군이 10일 가자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보안군 사령부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스라엘 국경 담장을 보수하고 있던 2명의 루마니아 노동자가 숨지고 10여명이 부상.

5. 14

스페인 바스크선거 온건파 승리

13일 실시된 스페인 바스크 자치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 온건한 민족주의 성향의 바스크 국민당(PNV)이 승리. PNV와 민족주의계 제휴정당 에우스코 알카르타수나(EA)가 전체 75석 중 33석으로 최다 의석을 확보.

이태리 총선 온건파연합 승리,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 총리취임 압박

이탈리아 총선에서 언론 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 64) 후보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의 집' 동맹이 승리.

5. 20

예멘 무기시장 화약폭발 . 최소 32명 사망

예멘 북부 알-바이다지방의 한 무기시장에서 19일 화약이 폭발해 최소한 3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 예멘 내무부는 6천만정 이상의 무기가 국내에서 민간인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폴란드, 학살 유대인 유해 발굴기로

폴란드는 2차세계대전 당시 대학살로 숨진 유대인 1천600여명의 유해를 발굴할 계획. 폴란드 북서부 지역 관리인 키르스티나 루카주크는 지난 41년 대학살이 자행된 예드바브노에 매장된 시신의 발굴 승인.

5. 21

미국, 아팜 중재나서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첼위원회는 21일 중동 유혈사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양측의 즉각적인 폭력사태 종식과 유대인 정착촌건설 중지 및 팔레스타인의 테러활동 중단을 촉구.

5. 28

영국, 아시아계-백인 산발적 충돌 지속

아시아계 젊은이들과 백인 사이의 유혈 충돌사태가 발생한 영국 북서부 대(大)맨체스터주(州) 올덤시에서는 27일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벌어져 긴장 지속. 대부분 시위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계이며, 규모는 200여명 가량.

5. 29

영국 인종 폭동 선거이슈화

영국 북부 맨체스터 광역시의 올덤에서 지난주말 연속 이틀간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계 청소년들과 백인 청소년들간의 충돌이 선거이슈화.

6. 4

네팔아비브 자살테러

1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일 밤(현지시간) 자살폭탄테러 사건의 범인은 요르단강 서안 쿠알킬리아 난민 캠프 출신의 사이드 후타리(Said Hutari · 22)라는 청년. 그는 요르단 육군 하사관 출신.

6. 5

이스라엘, 테러보복 공격 명형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3일 저녁(현지시간) 가자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 박격포 공격이 가해지는 등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단체들이 인티파다(intifada · 봉기)의 지속을 다짐. 이스라엘 또한 하마스와 이슬람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요원들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른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을 인용, 보도.

6. 7

이스라엘-미국, 정착촌 문제 합의 접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6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테넷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집트에 도착, 중재활동을 시작.

6. 15

나치 강제노역 보상금 150만명에 지급 개시

나치 강제노역 보상금 지불 업무를 맡고 있는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은 15일 나치 강제노역 생존피해자 150만명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시작.

마케도니아도 휴전발효

반군 “그만 싸우자”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 반군은 15일0시(현지시각)를 기해 조건부로 휴전을 준수하겠다고 선언. 반군측 요구사항은 ▲마케도니아 전역에 나토군 배치 ▲반군 전사들에 대한 전면 사면 ▲경찰·군의 개혁 ▲알바니아계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등.

6. 18

불가리아 전 국왕 시메온2세, 55년만에 권좌복귀

불가리아에서, 동구권의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산혁명 이전의 옛 왕정 군주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 시메온(Simeon) 2세 전 불가리아 국왕이 이끄는 신당 ‘시메온2 민족운동’은 17일 총선에서 출구 조사 결과 40~43%의 지지를 얻어 승리.

동유럽 전 군주들 지금...

알바니아 전 국왕 조그 1세의 외아들인 레카 1세는 1979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고 있으나 조국의 군주제 회복 요구. 1947년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수립 당시 영국으로 망명한 미카엘 전 국왕은 1997년 시민권을 회복. 현재 스위스에 살고 있는 그는 이번 달 고국을 3주간 방문, 이온 일리에스쿠 전 대통령과 화해. 1945년 요시프 티토가 군주제를 폐지하자 영국으로 망명했던 유고슬라비아의 알렉산데르 공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정권이 몰락한 후인 지난해 10월 귀국. 이에 공항에서 군주제 지지자들은 환영. 그는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만 표명.

6. 19

불가리아 시메온2세, 1석 모자라 연정구성

불가리아 총선에서 시메온(Simeon) 2세 전 불가리아 국왕이 이끄는 ‘시메온 II 민족운동(NMS II)’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페타르 스토야노프(Petar Stoyanov) 대통령이 18일 연정 제안. NMS II가 총 240석 중 절대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20석 획득에 그쳐,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기 때문.

6. 23

팔보안군, 이슬람 무장단체 지도자 체포

윌리엄 번스 미국 특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휴전 강화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피난촌 가옥을 파괴하고 1명을 사살했으며 이슬람 무장단체 지도자 1명이 팔레스타인 보안군에 의해 체포.

7. 1

총선압승 불가리아 전왕 총리직 수락

6월 총선에서 자신의 정당의 압승을 이끌었던 불가리아 전 국왕 시메온 2세(Simeon II·64)가 12일 총리직 임명을 수락. 그는 24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 이후 최초로 정치 권력을 회복하는 왕이 됨.

7. 2

세르비아 총리-“유고연방 붕괴 위기”

조란 지지치(Zoran Djindjic) 세르비아 공화국 총리는 1일 “유고연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도. 조란 지지치(Zoran Zizic) 연방 총리와 그가 이끄는 몬테네그로 사회인민당 소속 각료들이 밀로세비치의 인도에 반발해 사임. 연방정부는 사실상 붕괴.

7. 4

유럽인권단체, 독일 인종주의 경고

유럽의 한 인권단체가 독일인들의 심각한 반외국인 정서와 극우파의 외국인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독일 공영 ARD 방송이 3일 보도.

7. 6

이, 팔 공격으로 6명 사상

이스라엘군은 5일 하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도시칸 유니스를 탱크와 기관총으로 공격. 이번 공격은 무장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충돌을 벌인 직후 감행.

영국서 또 아시아계 폭동

영국에서 열흘 만에 또다시 아시아계 청년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잉글랜드 북부 도시 리즈에서 5일 밤(현지시각) 주로 방글라데시 이주민인 300여명의 아시아계 청년들이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

7. 9

영국, 백인-아시아계 충돌

경찰 120명-민간인 19명 부상 영국 잉글랜드 북부 브래드퍼드에서 7일 오후 발생한 백인과 남아시아계 주민간 인종충돌이 140여 명의 부상.

7. 10

철거되는 팔레스타인 주거지

예루살렘 외곽 슈아파트 난민캠프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한 건물이 9일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간 예루살렘 경제지역에 있는 10여채의 팔레스타인인 주거 가옥을 철거.

7. 11

폴란드인 유대인 학살사건 사과

"폴란드인의 이름으로 유대인 학살 사건에 대해 사과합니다."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진심으로 사과해주시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 생존자) '에드바르네 학살' 은 1941년 7월10일 1600여명의 유대인이 에드바르네의 한 농가 헛간에 갇힌 채 불태워진 사건.

7. 17

오스카 윈들러 미망인 독일 정착키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1200여명의 목숨을 구한 오스카 윈들러의 부인 에밀리 윈들러 (94) 여사가 독일에서 만년을 보낸다고 친구이며 전기작가인 에리카 로젠버그가 16일 밝힘.

팔 자폭테러... 14명 사상

이스라엘 북부 비냐미나 지역에서 16일 저녁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 팔레스타인 테러용의자 1명과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

7. 22

이스라엘군 비상사태 돌입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 밤 유대인 정착민들에 의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3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대비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공영 TV방송이 21일 보도.

유럽 각지에서 시위대 사망에 항의 시위

제노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다 시위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21일 독일과 그리스 등 유럽각지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져 경찰과 격심한 몸싸움.

7. 25

교황청 전시 역할 조사 중단

세계유대인총회는 유대인과 카톨릭 역사가 합동연구팀이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교황청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중단. 역사가들은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 학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시 교황 피우스 12세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 서류들은 교황청이 공개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 공개할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

7. 26

고문경력 대사 부임시 구금

이스라엘 정·관계 지도자들의 팔레스타인 인에 대한 가혹행위 전력을 둘러싸고 유럽 각국과 이스라엘이 갈등. 덴마크 정부는 오는 9월 공식 부임 예정인 이스라엘 대사 내정자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장 제직 당시 고문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고문을 범죄로 규정한 유엔 협약에 따라 그를 체포할 수 있음을 밝힘.

7. 30

아팔 성지서 충돌... 30여명 부상

이스라엘의 과격 유대교 단체가 동예루살렘내 템플마운트(아랍명 하람 알 샤리프) 부지에 새 유대교 성전 건설을 위한 초석을 설치한뒤 29일 기도회를 가지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에 반발, 충돌.

8. 3

집단학살 세르비아계 장성. 전범 재판서 46년형 선고

유엔 산하 구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는 2일, 지난 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의 집단학살사건에 관련된 당시 세르비아계 장군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53)에게 집단학살죄를 적용해 징역 46년형을 선고.

8. 5

이, 팔 경찰사령부 로켓공격

이스라엘 무장 헬기들이 4일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인 '파타운동'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가 탄 승용차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양국간의 교전이 격화.

8. 8

마케도니아 정부 · 반군, 평화협정 가조인

마케도니아 정부와 알바니아계 반군은 8일 평화협정에 가조인후, 13일 협정에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협상을 증대하고 있는 프랑수아 레오타드(Francois Leotard) 유럽연합(EU) 특사가 이날 전함.

아시아

1. 2

민간인 6명 피살... 태국-미얀마 국경 긴장

태국-미얀마 서부 국경지역에서 태국 민간인 6명이 피살된 사건이 미얀마군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 고조. 이들은 식품가게를 약탈후 미얀마쪽으로 도주.

1. 10

몽고, 러시아 영화 50도 한파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내몽고 자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 9일 현재 2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 러시아 기상당국은 시베리아를 덮친 이번 한파는 볼셰비키 혁명 직전인 1916년 이후 최악이라고.

1. 22

태국총선 109명 당선무효확실

6일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400명 중 109명이 당선 무효 처리돼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1. 26

미얀마, 정치범 84명 석방

미얀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소속 정치범 84명을 석방. 여성 당원 38명을 포함한 NLD 당원들은 지난해 4월과 9월에 걸쳐 당국에 연행,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25일 풀려났다고 익명의 당 간부가 확인.

1. 28

3차 남북적십자회담 내일 열려

남북은 29~31일 북측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 확대, 면회소 설치, 운영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 예정.

1. 30

"에스트라다 부인, 총선 출마"

불명에 퇴진한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루이사 에제르시토 여사가 오는 5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일간 인콰이어러지(紙)가 30일 보도. 이 신문은 루이사 여사가 31일 열리는 민족주의자 대중투쟁당 당대회에서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2. 4

인도, 카르마파 난민 지위 인정

인도정부는 지난해 중국을 탈출해 인도에 망명을 신청한 티베트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제17대 카르마파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2. 22

인니 종족분쟁- 시신 118구 추가발견

종족분쟁으로 약 4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27일 또다시 시신 118구가 추가발견. 중앙 칼리만탄 통제부대의 타토 수하르트(Tato Suharto) 사령관은 "희생자들이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살해됐다"며, "이들은 종족 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전함.

2. 24

브루나이정부, 국왕동생 기소 등

브루나이 정부는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국왕(술탄)의 동생이자 전 재무장관인 제프리 왕자에 대한 기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의 자산도 동결했다고 23일 발표. 브루나이 총리실은 제프리 왕자에 대한 기소 절차 착수는 그가 경영했던 브루나이 최대의 민간기업 아메테오 개발회사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이라고 밝힘.

2. 25

탈레반 정권 힌두교도에 배지 부착 의무화

아프가니스탄의 과격 이슬람 탈레반 집권세력이 국내 거주 힌두교도에게 엄지 크기의 노란색 배지를 상의 호주머니 안쪽에 붙이도록 22일 명령. 유엔과 인도 미국 등 각국 정부, 인권단체는 23일 일제히 "나치 독일의 명령"이라며 철회를 요구.

2. 26

남북 이산가족 '별육상봉'

남북한 이산가족 각 100명으로 구성된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이 26일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 반세기 만에 가족 상봉.

2. 27

인도네시아 종족분쟁 살육전 앙상... 비상사태 검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 탄주(州) 종족 분쟁이 대량 살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학살을 피해 도망친 5천여명의 마두라족 피난민들이 보르네오 정글에 고립돼 기아 상태 악화.

아프간 회교정권 "석상 파괴"

세계 최대 석불 등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고대 동·서양 교류의 문화적 유산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 정권의 '우상 파괴' 명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함. "신은 하나뿐이므로 조각상이 숭배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

3. 3

남북 역사학자, 日역사왜곡 공동규탄

남북 역사학자들은 2일 일본 당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은 역사왜곡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3. 5

중국 전인대 제 10차 5개년 계획 요강 요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5기 제5차 전원회의는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제정과 관련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의'를 채택, 향후 5년간의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목표와 지도 방침, 주요 임무를 제

시.

3. 7

‘화교자본 한국에 2년간 5억달러투자’ 타갈다환 피터 천

다국적 투자기업 타갈다사가 최근 쌍용그룹의 용산부지(옛 상명여중고 자리)를 인수키로 해 주목. 피터 천 사장(36·사진)이 기자와 만나 대한(對韓) 투자계획을 밝힘. 캐나다와 홍콩을 주무대로 삼고 있는 이 회사는 쌍용 신사옥 예정부지를 3200만달러(약 4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함.

3. 11

말련, 인종분규로 5명 사망... 37명 부상

말레이시아 수도 팔라렘푸르 인근에서 인종분규가 발생,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으며 153명이 체포. 8일 시작돼 나흘간 지속된 충돌은 팔라렘푸르 남서쪽 페탈링 자야의 자란 클랑 라마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 군병력, 경찰 헬리콥터 등이 동원돼 순찰활동 중.

3. 13

평양방송 “사대주의-외세 배격울”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대남 흑색선전 방송인 ‘한국민족민주전선(통칭 민민전)방송’(과거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라는 제목의 ‘연속좌담’을 내보내며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하고 있어, 북측의 5차 장관급회담 불참과 연관돼 주목.

3. 21

몽골 구제역 인접국가 확산

중국 북부와 몽골 접경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봄철 황사와 함께 아시아 일대로 전파될 가능성 농후. 베이징 청년보는 19일 지난달 몽골의 쉰허바터 등 11개 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이달 초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이 6만 마리에 달했으며 지난 13일 킨터성에서까지 구제역이 발견돼 확산추세에 있다고 보도.

3. 25

우크라이나 반정부시위 재개

레오니드 쿠츠마(Leonid Kuchma)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5000여명이 24일 수도 키예프에서 ‘전체주의 체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집회 후 시위. 이 나라에서는 반정부 언론인 게오르기 곤가드제(Georgy Gongadze) 피살사건에 쿠츠마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래 지난 3개월 동안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시위가 지속됨.

3. 26

‘잃어버린 러시아’로 기반 굳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26일 당선 1주년.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55~60%.

3. 30

화교들, 영주권 부여 방침에 ‘활짝’

5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 화교는 전세계 100여개국 이상에 3000여만명이 퍼져 살면서 대부분 귀화하지 않고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화교에게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나라”라는 게 화교들의 설명.

4. 2

동티모르-사나나 구스마오 대선 불출마 선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는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동티모르의 만델라」라고 불리는 독립영웅. 하지만, 지난주 임시의회격인 민족평의회 의장직을 사임한 데 이어 초대 대통령선거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

4. 10

장쩌민 “미국에 굴복 안한다”

중남미를 방문중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9일(현지시각) “국가 주권 및 영토와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최근 군용기 충돌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

4. 20

베트남 새 지도자에 농дук만

향후 5년간 베트남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개혁성향의 농дук만(Nong Duc Manh · 61) 국회의장이 내정. 20일 외신들에 따르면 19일부터 개막된 공산당 제9차 전당대회에서 올해 보수적 성향의 레카피에우(Le Kha Phieu · 70) 서기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를 농дук만 의장이 승계하기로 결정.

4. 24

타밀반군, 일방 휴전 종결

스리랑카 타밀 분리주의 반군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는 지난해 성탄절 전야 일방적으로 선포, 실시해 온 휴전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군이 지난 4개월간의 휴전중 반군 160여명을 살해했다고 비난.

5. 1

인도네시아 권력 공백상태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달 30일 압두라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대통령에게 금융스캔들과 관련, 2차 해명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 나라에 지도력 공백상태가 야기.

5. 4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대표-“헌법에 자위대 제약규정 필요”

소속의원 181명으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54) 대표가 방한 중 나온 질문 “일본에선 요즘 개헌론이 활발한 것 같다.”에 대해 “현실적으로 자위대는 군대다. 한국군에 비해서도 규모나 장비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자위대에 대해 헌법에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두번 다시 과거의 침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형태로건 제약규정을 두려 한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자민당 정권과는 다르다.”

5. 9

일본 언론 ‘교과서 재수정’ 찬반 공방

일본의 주요 신문은 9일 우익교과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관해 일제히 사설을 싣고 ‘재수정 찬반’ 공방.

5. 13

이시하라 “중국인 흉악범죄는 DNA 때문”

또 망언... 외국인인 일본 망친다는 논리.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지사가 ‘중국인의 흉악 범죄는 민족적 DNA에 의한 것’이라는 극단적 인종차별론을 주장. 이시하라 지사는 지난 8일 산케이 신문 1면 ‘일본이여(일본よ)’라는 칼럼을 통해, 범죄엔 ‘민족적 DNA’가 표시된다고 일본인의 DNA로는 불가능한 흉악범죄가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의해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 즉, ‘인종적으로 열성’인 외국인이 일본을 망친다는 논리 제시.

필리핀 ‘폭력업폭’... 사망자 63명으로

총선 공식 유세 마지막날인 12일에도 이어진 선거 관련 폭력사태에서 10명이 숨져 총 사망자수는 63명으로 증가. 3600만 필리핀 유권자들은 14일 상원의원 24명 중 13명과 하원의원 절반인 209명을 선출. 여론 조사는 아로요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를 예견.

6. 2

일본, 왼쪽피해 한국인에 첫 배상판결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1일 한국으로 이주해 의료보험이 말소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광기훈씨에게 오사카 지방정부는 200만엔(약 21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의 피해 배상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6. 4

러시아 독일에 사과

러시아 하원은 4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정부가 소련에 거주하던 독일계 주민에 대해 강제 이주 등의 탄압을 가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사과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

6. 7

한인 러시아 유학생 의문사

6월 7일 오후 11시 30분 러시아의 상트 피터스버그에 위치한 상트 피터스버그 국립대학 기숙사에서 게르첸 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이희연(22) 학생이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

6. 19

인도네시아 시위대 주의사당 방화 진압경찰 발포 13명 숨져

인도 마니푸르주(州)에 18일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방화폭력 시위가 발생,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원 13명이 사망. 시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 1명을 살해.

6. 29

체첸반군지도자 바라예프 사망

외국인들을 납치해 살해한 체첸반군 지도자 바라예프가 러시아 보안군의 특수작전으로 사망.

6. 30

김수가족 서울도착

탈북자 장길수군 가족 7명의 서울 도착.

7. 3

한-러 최종합의 "남쿠릴 뾰족섬이 내달 조업"

해양수산부는 남쿠릴열도 입어 조건에 관해 러시아와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발표. 남쿠릴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해 최근 일본은 산리쿠(三陸) 수역에서 한국의 풍치 봉수망어선의 입어허가를 유보함으로써 한일간 어업분쟁이 촉발 되었음.

7. 4

러 항공기 추락, 143명 사망

승객과 승무원 등 143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3일 남부 시베리아 상공에서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

7. 6

필리핀, 이슬람반군과 평화협상 끝 서명

필리핀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슬람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평화협상에 서명예정.

7. 8

미얀마 군부-야당 화해 움직임

미얀마 군사정권이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미얀마 군사정부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소속 인사 200여명을 교도소에서 석방하거나 가택연금에서 해제. 이로써 1998년 민주화 운동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구금됐던 주요 인사가 대부분 석방됨.

7. 10

일러 어업협력실패

남부 쿠릴열도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어업협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일본측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외교 소식통을 인용, 9일 보도.

7. 13

미국, "한국, 인신매매 방치" 3등급 분류

미국은 12일 전세계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인신매매행위와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총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담은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미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 이에 한국 정부는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해 인신 매매 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

중국 올림픽 유치

13일 밤 11시10분(한국시간) 모스크바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베이징" 선언이 나오는 순간, 13억 중국인들이 일제히 환호. 중국의 승리를 알리는 방송이 나오는 순간 베이징 곳곳에서 폭죽이 터져오르고,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등, 국민적 축제상태.

7. 14

러 화물기 추락...10명 사망

모스크바 근교 군(軍) 비행장을 이륙한 러시아 일류신(IL) -76 화물기 1대가 14일 이륙 직후에 추락, 승무원 10명 전원이 사망. 러시아 비상대책부는 이날 오전 II-76기가 모스크바 근교의 츠칼롭스키 군 공항을 이륙해 30~40m 상공에 이르러 곧바로 지상에 추락, 10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발표.

방글라데시 폭력사태 3명 사망...150명 부상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글라데시에서 14일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과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당(BNP) 지지세력이 충돌,3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 사하부딘 아흐메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13일 의회를 해산, 총선 준비체제에 돌입했으며 과도정부는 오는 15일 출범, 앞으로 90일안에 총선준비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됨.

7. 15

베이징 올림픽에 대만 환영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4일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신문국, 체육회 등이 이날 저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양안관계에 대한 영향 등도 전망할 예정이라고 보도.

7. 16

마하티르 총리 집권20년 맞아

마하티르 모하마드(76) 말레이시아 총리가 7월 16일로 집권 20주년. 마하티르 총리는 1946년 영국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될 당시 결성된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에 가담한 뒤 81년 7월16일 UMNO의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말레이시아 4대 총리로 취임해 20년 동안 집권.

7. 23

"중국, 탈북자 단속 및 강제송환 강화"

중국은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최근북한 국경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붙잡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

인도네시아 국회, 와히드 해산명속 탄핵강행

탄핵 위기에 몰린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대통령이 23일 새벽 국회(DPR)와 국민협의회(MPR)의 활동을 정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협의회가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10시) 탄핵 청문회를 강행키로 해 인도네시아 정국 일촉즉발.

7. 25

한국, 일본 변호사단체 “역교과서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하 민변)과 1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일본의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자유법조단’은 24일 오후 일본 중학교의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

7. 26

김정일 방러

러시아 방문에 나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오전 국경을 통과,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다음달 4일과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예정.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한반도연결 등 양국간 경제, 군사협력 강화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

7. 30

러시아 체제 전환 후 국민건강 실각

공산주의 붕괴 이후 지난 10년간 주로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정신 질환 사례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 현재 러시아인 10만명당 300명 가량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10년전 인구 10만명당 2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7. 31

러시아에 에이즈가 창궐.

유엔산하 에이즈 구호기관인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 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미국 등에 비해 적지만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

탈북자 국회비서 첫 탄생

지난 93년 탈북해 남한에 귀순한 김형덕(金亨德, 27)씨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실 6급 정식비서로 채용. 탈북자로서 국회정식비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

NYT “중국, 북한 접경지역서 난민 색출작업”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 마을에서 인구조사 요원을 동원해 집집마다 돌며 북한난민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NYT는 “조사요원들은 얼굴 표정 등을 통해 북한 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북한 난민이면 체포돼 송환된다”고 전함.

8. 1

러시아 콜레라 발생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 최고 17명의 환자가 보고됐다고 러시아 통신들이 30일(현지시각) 보도.

러시아 버스 인질극

러시아 남부에서 31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이 승객 41명을 인질로 잡고 있던 버스에 특공대가 급습하여 인질범 1명을 사망시켰으며 다른 1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 이에 앞서 무장 괴한들은 지난 1994년 비슷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수감중인 체첸 게릴라들의 석방을 요구.

8. 3

북한 “미국, 적대계속엔 군사력 강화”

북한은 7월 25일 베트남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제출한 ‘연례안보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한반도 상황을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

8. 4

“푸틴, 남북한 모두와 다양한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남북한 모두와 다양하고 실속있는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중양방송이 5일 보도.

8. 7

북한 대러시아 채무 90% 노동력으로 갚아...국제법위반 논란

북한이 대 러시아 채무의 90% 가량을 노동력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동원된 노동자는 4000여명이 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러시아 경제통상성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7일 모스크바발로 보도. 러시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 북한 수출액은 5460만달러, 수입액은 5040만달러인데 수입의 90% 이상이 '노동력' 이라는 것.

일본- 80년대 이후 간 300여명 새 교민조직 발족

민단과 조총련으로만 구성됐던 재일동포 사회에 새 교민 조직이 탄생. 정용 등으로 건너갔던 과거 동포들과 달리, 최근 10~20년 사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 300여명은 20일 '재일 한국인 사회를 생각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를 발족.

8. 8

필리핀 정부 · 반군 공식 휴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최대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7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콰라룸푸르에서 공식 휴전협약에 서명.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휴전협약 체결 후 무라드 이브라힘(Murad Eibrahim) MILF 참모장과 만나 평화에 대한 의지 표명. 의제는 휴전 이행, 이슬람지역과의 관계정상화 방안, 보안, 사면 문제 등.

세계 36개 분쟁지역, 18세미만 소년병 30만명 동원

현재 세계 36개 분쟁지역에 동원된 18세 미만의 소년병 수는 30만명 으로, 이중 아프리카 지역이 10개국 12만명에 달한다고 19일 '국제사면 위원회(AI)'와 '인권(Human Rights) 워치' 등 세계 민간인권단체들이 합동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병들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징병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대 10만명의 소년병이 징병되었고, 또 미얀마 5만4000명, 수단 3만2000명, 콩고 르완다 각각 2만명, 콜롬비아 1만4000명이 동원되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군의 80%가 소년병으로 구성되었고, 우간다에서는 5세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기도 했다. 유엔은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200만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했다. 심각한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터키의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다.

우간다에서 납치된 '콘사 A' (14) 소녀의 경우 수단으로 끌려가 반군인 '신의 저항군' 병사에게 '분배'된 뒤 마을에서 음식을 훔치거나 어린이를 납치하는데 동원됐으며, 브룬디 정부는 정규군 외에 12~25세 연령으로 구성된 '투치족군'을 지원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12세 안팎의 소년 반군이 15세 소녀의 목을 베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우간다군은 지난 1월 반군으로 의심하는 14~17세 소년 5명을 처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어린이들은 직접 전투에 동원되지 않을 때도 검문소 등에 성인 병사 앞에 세워져 '총알받이'로 쓰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8세 미만 징집 불가' 규정을 요구하지만, 미국과 영국(16세)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17세)도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00년 1월 22일 유엔은 18세 미만의 소년병 징집 및 참전 금지를 합의했다. 제네바에서 2주간 열린 유엔 산하 국제회의에서 70개국 대표단은 21일 전쟁 징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고, 또 국가가 아닌 기구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제네바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6세 이상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합의는 합의일 뿐이다. 소년병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오랜 내전으로 정규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으로 소년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이 제한을 통해 소년병 징집을 금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정석)

멕시코인들, 한국인은 공존 못할 민족?

지난 3월 멕시코 언론은 한국인을 공존 못 할 민족이라 보도했었다. 약 9000명의 멕시코 거주 한인은 현지법을 어기는 사례가 잦고, 한국인들은 이주한 후, 멕시코 국민과 섞이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내에서 산다는 것이며,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래방이나 한국식 단란주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국인들은 현지법을 무시한 채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밤새 노래를 부르는 등 흥청거리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매춘까지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민족"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뉴욕에서도 한인-멕시코계가 갈등 관계에 있다. 지난 7월 뉴욕 청과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과 멕시코계 근로자들간의 갈등이 미국의 주류 언론에 보도되며 뉴욕지역의 사회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뉴욕시내 2천여개 청과상 중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계 근로자 1만여명을 고용중이다. 한인 청과상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윤이 박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멕시코계 근로자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으며 노조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인 청과상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오던중이었다고 한다.

〈유점석〉

●●●● 신간안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사상과 혁명

조정남 편역 / 교양사회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Sarajevo Chronology

▶ 6TH to 14TH CENTURY :

Slavic tribes, including the forefathers of today's Serbs, Croats, and Bosnian Muslims, cross southward over the Danube River and settle in the Balkans, a mountainous region partially populated by Illyrian tribesmen who are the forefathers of today's Albanians. Many settle around the mineral springs at Ilidza, a suburb of modern-day Sarajevo. A number of substantial but ephemeral Slavic states are created during medieval times. The largest of these is the Serbian Nemanjic dynasty, which flourishes from the mid 12th to the mid 14th century. Modern-day Serbs consider the Nemanjic dynasty to be the "Golden Age" of Serbian culture and political power.

▶ 14TH CENTURY :

The Ottoman Turks begin their advance into the Balkans. The region's Christian principalities fail to muster an effective combined resistance or secure sufficient military support from the larger European powers. On June 28, 1389, Serbia's Prince Lazar and his allies, including Albanians and Bosnians, fight the invading Ottoman Turks to a draw at Kosovo Polje. The battle, however, deals a fatal blow to the medieval Serbian state, and the Ottoman Empire eventually completes its conquest of Serbia in 1459. Among the Serbian people, however, a mythological cycle develops around the Battle of Kosovo, depicting it as a cataclysmic defeat in which the flower of the medieval Serbian aristocracy, including Prince Lazar, died as martyrs. According to legend, at the opening of the Kosovo battle, the Turks offered Lazar the choice between surrender and a fight to the death. Lazar chose to fight. Six hundred years later, Serbs still recall the epic poems about the battle and make pilgrimages to pray before Lazar's mortal remains at Gracanica monastery in Kosovo.

▶ 15TH to 17TH CENTURY :

The Ottoman Turks seize Constantinople in 1453 and extinguish the Byzantine Empire. In 1463, they conquer most of Bosnia and make Sarajevo the capital. In 1521, they take Belgrade. In 1526, they conquer Hungary. And in 1529, they push to the gates of Vienna before being repulsed. Ottoman sultans rule the Balkans for most of the next 400 years. The stability, prosperity, religious toleranc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ir regime are initially far superior to the conditions that had existed within the petty feudal principalities conquered by the Ottoman armies. After a few decades many Bosnian and Albanian Christians have converted to Islam. But the Ottoman Empire's stability is dependent upon wealth acquired through constant military expansion, and this expansion is halted in 1683 with the rout of an Ottoman army before Vienna. The Ottoman ruling elite subsequently proves to be incapable of engineering effective changes in the empire's system of government. Law and order gradually break down. Corruption and inefficient administration become the rule. Local rebellions present the rising European powers, Austria and Russia, with opportunities to intervene in the Balkans.

At the conclusion of the war of 1683-99, Austria forces the Ottoman Empire to sign the Treaty of Karlowitz, in which the Ottomans surrender most of Hungary, Croatia, and Slavonia. This agreement

establishes a relatively stable Austrian-Ottoman frontier along the Danube, Sava, and Una rivers for more than the next two centuries.

▶ 18TH CENTURY :

Russia extends its borders southward to the Black Sea at the expense of the Ottoman Empire. With a treaty in 1774, Russia wins the right to intervene on behalf of the Ottoman Empire's Christians in their relations with the sultan's government. Ottoman authority in the Balkans continues to erode.

▶ 19TH CENTURY :

Supported by Russia, Serbs living in central Serbia rebel in 1804 and 1815 and win autonomy within the Ottoman Empire. The principality of Serbia is created after Russia deals yet another defeat to Ottoman forces in 1829. Thereafter, the disposition of the collapsing Ottoman Empire's remaining Balkan territories becomes a bone of contention between Austria, which looks to expand toward the southeast, and Russia's ally, Serbia, which wants to expand its territory to include regions within the Ottoman Empire that have significant Serb or Slavic populations. These regions include Kosovo and swathes of northern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and the lands that today make up Macedonia. A feudal uprising against Ottoman landlords in Herzegovina in 1875 sparks a major European war. Serbia, Montenegro, Romania, and Russia join the fighting, which lasts until 1878 and ends with the Ottoman Empire's defeat. The subsequent Congress of Berlin in 1878 enlarges both Serbia and Montenegro but, to Serbia's chagrin, allows Austria to occupy Bosnia and Herzegovina. Austria ignites a major international crisis in 1908 by annexing Bosnia outright. Macedonia, Albania, Kosovo, the Sandzak of Novi Pazar, and parts of northern Greece and Bulgaria are now the only Balkan lands left within the Ottoman Empire.

▶ 1912 - 1913 :

By the turn of the century, the power of the Ottoman Empire has waned dramatically. In 1912, the Albanians of Kosovo mount an uprising and throw off their Ottoman overlords. But before they can join with the Albanian clans of Albania itself and form a united Albanian nation-state, Serbia's rulers spot their chance to avenge the mythical defeat at Kosovo Polje in 1389. The government in Belgrade quickly bolts together an alliance with Bulgaria, Greece, and Montenegro. They attack Ottoman forces all across the northern Balkans and drive them almost to the gates of Constantinople. Serbia wins control of Kosovo and other lands; Macedonia is divided between Greece and Serbia; and an independent Albania is formed.

The borders drawn in 1913 become the basis for the modern map of the Balkans. But instability will continue to plague the region, largely due to conflicting Austro-Hungarian and Serbian claims over Bosnia and Herzegovina and discontent among the Albanians of Kosovo, who suffer repression under heavy-handed Serb rule.

▶ 1914 :

On June 28, 1914, a young Serb revolutionary assassinates the Austrian archduke, Franz Ferdinand, and his wife in front of Sarajevo's national library. The killing gives Austria a pretext to settle scores with Serbia. Austria issues an ultimatum demanding that Vienna be allowed to join the murder investigation and suppress secret nationalist societies within Serbia. When Serbia refuses to comply, Austria declares war. Russia rushes to Serbia's defense and Europe's great military alliances face off in World War I.

After four years of brutal trench warfare, Germany is defeated and Austria-Hungary destroyed.

▶ **Interwar years :**

The dissolution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necessitates a redrawing of the borders in the Balkans. Slovenia, Croatia, Vojvodina, Bosnia and Herzegovina, and Montenegro become unified under the Serb-dominated Kingdom of Serbs, Croats, and Slovenes. Nationalist animosities, religious rivalries, economic disparities,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conflicts plague the Kingdom from its inception, and the question of central rule from Belgrade versus local rule from Zagreb bitterly splits the Serbs and Croats. After a period of political chaos, King Aleksandar Karadjordjevic declares a royal dictatorship in 1929 and renames the country the Kingdom of Yugoslavia. He is assassinated on the streets of Marseilles in a plot hatched by nationalist Croat extremists in 1934.

▶ **World War II :**

During World War II, Europe's Great Powers once again fight for control of the Balkan Peninsula. After a failed attempt to remain neutral, Yugoslavia is invaded and dismembered by Nazi Germany. The Germans, looking for an inexpensive and easy way to manage the country, create an independent Croatian state, which includes Bosnia and Herzegovina and barely enjoys a fifty-percent ethnic-Croat population. Hitler gives control of this Croatian state to the same extremists who had killed King Aleksandar, and they promptly set out to create an ethnically pure country by lashing out at minority Serbs, Jews, and Gypsies, killing them wholesale along with communists and homosexuals. This unleashes an interethnic bloodbath that claims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After gaining support from Great Britain, the communist Partisans of Marshal Tito emerge as the victors in Yugoslavia's civil war without significant help from the Soviet Red Army.

▶ **1945 - 1979 :**

Yugoslavia is reborn as a communist federation on Nov. 29, 1945. Tito's communists remain loyal to the leader of the communist world, Stalin, until a dramatic split with Moscow in 1948. A Soviet-led economic blockade compels the Yugoslav communists to devise a hybrid economic system, known as socialist self-management, and seek economic support from the capitalist nations of the West. In the 1950s, the self-management system produces one of the most rapid developmental take-offs in recorded history. But within a decade Yugoslavia's growth curve levels out and the economy does not create enough jobs to absorb an expanding work force. In an effort to reduce rising unemployment and attract foreign-currency income, Tito opens Yugoslavia's borders so its workers can seek jobs abroad.

▶ **1980 - 1990 :**

Marshal Tito dies on May 4, 1980. Despite large foreign loans and hard-currency remittances from Yugoslavs working abroad, the country's economy nears total collapse. It is briefly energized in 1984 when Sarajevo hosts the Fourteenth Winter Olympic Games. The republic's Muslims, Croats and Serbs work together to transform the Bosnian capital, clearing trees from the wild mountains surrounding Sarajevo and building chair lifts, ski jumps, and Olympic housing. Despite pulling off engineering feats on time to Olympic perfection, Sarajevo fails to burst onto the international scene as a ski resort and by the late 1980s, with inflation driving up prices by the hour, the entire country is on the verge of economic collapse.

The economic chaos brings political instability. With the rise of Mikhail Gorbachev in Russia and the opening of Soviet society in the late 1980s, it becomes clear to the communist leaders of Yugoslavia that sooner or later they will have to surrender their monopoly on political power and allow free elections. Slovenia's communists begin demanding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Serbia's communists, led by Slobodan Milosevic, oppose it. Milosevic rose to power by exploiting the anger of minority Serbs in Kosovo, who have been complaining for years of discrimination and repression by the region's ethnic-Albanian authorities. Milosevic forces out the ethnic-Albanian leaders of Kosovo and introduces a repressive Serbian regime. Serb riot police crush Albanian protests. An explosion of nationalist hysteria in Serbia, stage-managed by Milosevic, leads to a nationalist backlash in Croatia and calls for Croatia's independence. In Bosnia, too, the Muslims and Croats form nationalist parties and advocate splitting from a Yugoslavia that looks more and more like it will become a Serb-dominated dictatorship under Milosevic. Serbs in Croatia and Bosnia are loath to become part of an independent Croatia or Bosnia. They see their future with Serbia.

▶ The War 1991 - 1996 :

June 1991 : Slovenia and Croatia declare independence and European Union nations recognize the newly-created states. The Serb-dominated Yugoslav army mounts a half-hearted effort to stop Slovenia from breaking away, but it fails within ten days. Fighting begins in Croatia within days.

September 1991 : The United Nations imposes an arms embargo on all the republics of the former Yugoslavia, thereby locking in the firepower advantage of the Serbs, who had taken control of the weapons stocks of the Yugoslav army.

Decemebr 1991 : After four months of fighting, including attacks on the historic old town of Dubrovnik and the destruction of the town of Vukovar, Yugoslav Army and Serb irregulars take a third of Croatia's territory.

January 1992 : United Nations negotiators broker a cease-fire between the Croatian government and the Serbs. The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UNPROFOR) is created with its headquarters in Sarajevo, which is believed to be the safest place because Bosnia is perceived as neutral in the war between Serbia and Croatia. Eventually 14,000 peacekeeping troops are deployed in United Nations Protected Areas, whose boundaries line up with those of the Serb-held areas of Croatia. Thus, the United Nations acts as a protection force for the Serbs. This allows Milosevic to transfer his military forces to Bosnia.

March 1992 : Passionately opposed to becoming second-class citizens in a Milosevic-dominated rump Yugoslavia, Bosnia's Muslims and Croats vote for independence in a referendum boycotted by most Bosnian Serbs.

April 1992 :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nations recognize Bosnia and Herzegovina as an independent state. Serbia and Montenegro form a new Yugoslav federation with Slobodan Milosevic as its paramount leader. Serbs under Milosevic's control launch a war in Bosnia aimed at carving away Bosnian territory for a Greater Serbian state. Thousands of people stage a peace march in Sarajevo but

Serb snipers stationed in the Holiday Inn open fire on them. Within a matter of weeks, the Bosnian capital is under siege and suffering daily artillery barrages. The Bosnian government, arguing that it is now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a recognized, United Nations member-state facing foreign aggression, calls for a lifting of the United Nations arms embargo against it.

May 1992 :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mposes economic sanctions on Serbia for backing the rebel Serbs' carve up of Bosnia. Sarajevo is repeatedly shelled; on May 27, the crowded Vase Miskina marketplace is hit.

August 1992 : Viewers worldwide are shocked by television pictures of emaciated Muslim prisoners in Serb-run concentration camps in Bosnia. But at a conference in London, world leaders decide neither to lift the United Nations arms embargo nor to intervene militarily to stop the Bosnian war. Instead, they agree to send "peacekeeping" troops to Bosnia to protect deliveries of humanitarian aid to the war's victims. The Bosnian Muslims come to be called the "well-fed dead."

January 1993 : The Serb siege of Sarajevo continues. Bosnia's Prime Minister, Hakiya Turajlic, is pulled from a UN vehicle and executed by Serb forces in front of French peacekeepers near Sarajevo's airport. Meanwhile, a United Nations ? European Union peace plan is unveiled. The Muslims and Croats agree to sign it, but the Serbs refuse and the peace plan eventually collapses. With support from Croatia, nationalist Bosnian Croats ? who sens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 longer back a united Bosnian state-launch ethnic cleansing operations against Muslims in Herzegovina and central Bosnia.

February 1993 : A large-scale offensive against the eastern Bosnian town of Srebrenica begins a concerted Serb effort to drive the last of the Muslims from the Drina river valley. Thousands of refugees are sent fleeing through deep snow. The government of Bosnia-Herzegovina begins blocking distribution of food in Sarajevo in a protest against ineffective international attempts to call a cease-fire.

April 1993 : NATO begins combat patrols over Bosnia to enforce a United Nations ban on flights.

May 1993 :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eclares six towns in Bosnia, including besieged Sarajevo and Srebrenica, to be "safe areas" and promises to protect them. Serb forces mount one last drive to take Srebrenica, but are stymied by the Muslim resistance.

June 1993 : NATO offers "close air support" to the United Nations troops in the "safe areas," but the Security Council fails to find countries willing to deploy significant numbers of peacekeeping troops.

Feb. 6, 1994 : A shell kills 68 people in Sarajevo's downtown marketplace. NATO threatens air strikes against Serb artillery positions unless they are withdrawn from around the city. Within minutes of the deadline for withdrawal, the United Nations announces that the Serbs have complied. Numerous violations of the ultimatum are reported, but a temporary pause in the shelling of the city begins and no new NATO air action is ordered.

March 1994 : A US-brokered "federation-agreement" ends the fighting between the Muslims and Croats.

April 10, 1994 : NATO launches the first attack in its history, carrying out pin-prick air strikes against Serbs conducting an offensive against the Muslims in the eastern enclave of Gorazde, another of the six United Nations "safe areas."

November 1994 : After Muslim forces from the "safe area" of Bihac overrun surrounding Bosnian Serb positions, the Serb army launches a counterattack that goes unanswered by NATO.

January 1995 : Serb and Bosnian government leaders begin what is supposed to be a four-month truce. They use the respite to refresh their forces and replenish munitions stocks.

March 1995 : The Bosnian army, now almost all Muslim, joins with Bosnian Croat forces and units of Croatia's army in a major offensive in the northwestern corner of Bosnia.

May 1995 : The Croatian army captures the Serb enclave of Western Slavonia, a United Nations Protected Area under the Jan. 1992 cease-fire agreement. The Serbs bombard Sarajevo. NATO launches retaliatory air strikes, and the Serbs take more than 350 United Nations peacekeepers hostage. United Nations commanders and Western diplomats carry on secret negotiations with the Serbs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and agree to maintain strict neutrality in the future. Serbia, trying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West in order to win an easing of United Nations economic sanctions, helps to expedite the hostages' release.

July 1995 : The Bosnian Serbs overrun the United Nations "safe area" of Srebrenica after United Nations diplomats and military commanders refuse to call in NATO air action that could have repulsed the attack. Some 7,000 Muslim men are captured and executed by Serbs under the command of Serb General Ratko Mladic. Srebrenica's entire population is expelled. Serb forces overrun Zepa, another United Nations "safe area" two weeks later. More executions result and the United Nations does nothing.

Aug. 1, 1995 : NATO threatens to launch major air strikes against the Serbs if the remaining "safe areas" are attacked.

Aug. 4, 1995 : After receiving planning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Croatia launches a four-day offensive that captures the Serb-held Krajina region, another United Nations Protected Area. Serb refugees flee the area in droves as Croat soldiers kill stragglers.

Aug. 11, 1995 : President Bill Clinton vetoes a bill to end the arms embargo against Bosnia and sends his special envoy, Richard Holbrooke, to negotiate a peace treaty.

Aug. 28, 1995 : A Serb shell hits the market area of Sarajevo, killing 37 people and wounding 85 others. NATO prepares for air strikes.

Aug. 30 - 31, 1995 : NATO planes and United Nations artillery blast Serb targets in Bosnia. The attacks destroy ammunition depots, roads and bridges,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give the Muslims and Croats the strategic advant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war. Humbled Bosnian Serb leaders grant Slobodan Milosevic authority to negotiate on their behalf with Western diplomats. The Bosnian

Serbs agree to move heavy weapons and tanks away from Sarajevo. NATO halts its bombing.

September - October 1995 : A Muslim-Croat offensive recaptures 1,500 square miles of land, roughly a third of the territory held by Serb forces. Tens of thousands of Serbs flee toward Serbia from northwestern Bosnia. The United States halts the Muslim-Croat offensive that threatens to unleash an uncontrolled wave of Serb refugees and retreating soldiers that would have threatened the position of Slobodan Milosevic. On Oct. 5, President Clinton announces that the Muslims, Serbs, and Croats had agreed to begin a cease-fire and attend peace talks. After a two-day delay, the cease-fire takes effect.

Nov. 1, 1995 : Peace talks begin in Dayton, Ohio.

Nov. 21, 1995 : 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is reached.

Dec. 14, 1995: The peace agreement is signed in Paris by Franjo Tudjman of Croatia, Alija Izetbegovic of Bosnia, and Slobodan Milosevic of Serbia. Compliance with the accord is to be assured by a 60,000-strong military force under NATO's command. Troop deployments begin in late 1995.

Since the War 1996 - 2000 : NATO troops ensure that the military aspects of the Dayton Accord are fulfilled, but they refuse to assist in the return of refugees to their homes, but rather stated that it was up to the "warring factions" to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refugees could return in safety. By Nov. 1996, one year after the signing of the Dayton Peace Agreement, only 250,000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had returned to their homes, virtually all to areas where their ethnic group formed the majority.

By 1997, little progress had been made and states that had given refugees "temporary protection" status were questioning how much longer they should play host to Bosnians. Some countries began forcibly repatriating Bosnian refugees. Two years after the Peace Agreement was signed, Bosnia had no properly functioning common institutions, no legal definition of citizenship, no strong multi-ethnic political parties and no structured civil societies.

Thus far, over half a million people who left the country during the war have returned to Bosnia from abroad but only an estimated 6,000 minorities have returned to the Serb half of Bosnia. At the same time, Serb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expel remaining minorities as well. Overall, since the Peace Agreement was signed, there has been a net increase in ethnic separation inside Bosnia. Moreover, 1.7 million people affected by the war in Bosnia still remain displaced.

Sarajevo, meanwhile, became home to tens of thousands of villagers who were displaced from across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many of the city's urban dwellers fled the country and have remained abroad since the war ended.

출처 :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photo/onassignment/sarajevo/chronology.htm>